

調查報告書
第9輯(1996.1)

獨逸會社法

—原典翻譯 吳 註解—

韓國稅務士會 附設

韓國租稅研究所

◇研究責任者◇

李 炯 珪 (漢陽大 教授・法博)

머 리 말

本書는 우리 會社法(商法)의 立法과 理論的 發展에 크게 영향을 미친 獨逸의 會社法을 번역한 것이다. 獨逸에 있어서 會社의 法的 形態는 合名會社, 合資會社, 株式會社, 株式合資會社 및 有限會社가 있다. 이에 관한 法制는 單行法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合名會社와 合資會社는 商法典에 규정되어 있고, 株式會社와 株式合資會社는 株式法에 규정되어 있으며, 有限會社는 有限會社法에 규정되어 있다.

獨逸은 1980년대 이후에 EU의 市場統合과 獨逸統一 등에 따른 經濟社會的 與件의 變化에 대응하기 위하여 會社法의 상당한 부분을 改正하였다. 특히 EU의 貸借對照表指針에 의하여 商法 第3編에 商業帳簿에 관한 상세한 規定이 신설되었는데, 이 가운데 資本會社에 대한 補充規定도 72個 條文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會社法은 獨逸의 會社法을 기초로 하고 이에 英美法上의 制度를 약간 가미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최근까지 개정된 獨逸會社法을 理解하는 것은 우리 會社法의 研究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본다. 바쁜 가운데에서도 獨逸會社法의 翻譯을 맡아 준 漢陽大學校 李炯珪 教授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1996. 1.

韓國租稅研究所長 申 相 式

目 次

【第1部 合名會社】

第2編 商事會社와 匿名組合	1
第1章 合名會社	1
第1節 會社의 設立	1
第2節 社員 相互間의 法律關係	2
第3節 社員과 第三者의 法律關係	6
第4節 會社의 解散 및 社員의 退社	10
第5節 會社의 清算	15
第6節 消滅時效, 責任期間制限	18

【第2部 合資會社】

第2章 合資會社	20
----------------	----

【第3部 株式會社】

第1編 株式會社	26
第1章 總 則	26
第2章 會社의 設立	32
第3章 會社와 社員의 法律關係	46
第4章 株式會社의 組織	58

第1節 理事會	58
第2節 監事會	68
第3節 會社에 대한 影響力의 利用	82
第4節 株主總會	84
第1款 株主總會의 權利	84
第2款 株主總會의 召集	85
第3款 議事錄·說明請求權	91
第4款 議決權	94
第5款 特別決議	98
第6款 議決權없는 優先株	99
第7款 特別檢查·損害賠償請求權의 行使	100
第5章 計算·利益處分	104
第1節 年度決算書와 狀況報告書	104
第2節 年度決算書의 檢查	108
第1款 決算檢查人에 의한 檢查	108
第2款 監事會의 檢查	108
第3節 年度決算書의 確定, 利益의 使用	109
第1款 年度決算書의 確定	109
第2款 利益의 使用	110
第3款 定期株主總會	111
第4節 年度決算書의 公告	112
第6章 定款의 變更·資本調達과 資本減少의 節次	112
第1節 定款의 變更	112
第2節 資本調達の 措置	114
第1款 出資에 의한 資本增加	114
第2款 條件附 資本增加	118
第3款 認可資本	122

第3節 會社 및 債權者의 保護	170
第4節 支配契約 및 利益支給契約에 있어서의 外部株主의 保護	172
第2章 企業從屬時의 指揮權 및 責任	176
第1節 支配契約存在時의 指揮權 및 責任	176
第2節 支配契約不在時의 責任	178
第3章 編入會社	183
第4章 相互參加企業	189
第5章 콘체른에 있어서의 計算	190

第4編 特別規定, 罰則 및 終結規定	191
---------------------------	-----

第1章 地域團體의 參加時의 特別規定	191
第2章 法院에 의한 解散	192
第3章 罰則 및 罰金規定, 終結規定	192

【第4部 有限會社】

第1節 會社의 設立	199
第2節 會社와 社員의 法律關係	204
第3節 代表 및 業務執行	213
第4節 定款의 變更	221
第5節 會社의 解散과 無效	224
第6節 終結規定	230

【第5部 資本會社(株式會社,株式合資會社 및 有限會社)에 관한 補充規定】

第3編 商業帳簿	233
----------------	-----

第2章 資本會社(株式會社, 株式合資會社 및 有限會社)에 관한 補充規定	233
第1節 資本會社의 年度決算書 및 狀況報告書	233
第1款 總 則	233
第2款 貸借對照表	235
第3款 損益計算書	243
第4款 評價規定	247
第5款 附屬明細書	248
第6款 狀況報告書	252
第2節 콘체른決算書 및 콘체른狀況報告書	253
第1款 適用領域	253
第2款 連結의 範圍	259
第3款 콘체른決算書의 內容 및 形式	260
第4款 全部連結	262
第5款 評價規定	266
第6款 比例連結	268
第7款 關聯企業	268
第8款 콘체른附屬明細書	270
第9款 콘체른狀況報告書	274
第3節 監 查	275
第4節 公示(登記所에 提出, 聯邦官報에의 公告),公表 및 複寫, 登記法院에 의한 檢査	283
第5節 樣式 및 기타 規定에 관한 法令授權	288
第6節 罰則 및 過怠料規定, 強制金	288

【第1部 合名會社】 1)

第2編 商事會社와 匿名組合(Handelsgesellschaft und stille Gesellschaft)

第1章 合名會社(Offene Handelsgesellschaft)

第1節 會社의 設立(Errichtung der Gesellschaft)

第105條 [合名會社의 概念; 民法의 準用] ① 共同의 商號下에 商業을 영위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會社로서, 各 社員에게 會社債權者에 대한 責任의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合名會社이다.

② 合名會社에 대하여, 이 章에 다른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組合에 관한 民法의 規定이 준용된다.

第106條 [商業登記의 申請] ① 會社는 그 所在地를 관할하는 法院의 商業登記簿에 登記하기 위하여 申請하여야 한다.

② 申請書에는 다음의 事項을 기재하여야 한다:

1. 各 社員의 姓名·身分 및 住所;
2. 會社의 商號 및 本店의 所在地;
3. 會社가 開業을 한 時點.

1) 合名會社에 관하여는 獨逸 商法(Handelsgesetzbuch) 第2編 第1章 第105條 내지 第160條에 規定되어 있다. 現行 獨逸商法은 1897년에 제정되어 190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第1編 商人, 第2編 商事會社와 匿名組合, 第3編 商業帳簿, 第4編 商行爲 및 第5編 海商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法 第2編에는 合名會社와 合資會社 이외에도 株式會社와 株式合資會社에 관한 規定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1937년에 株式法이 별도의 法典으로 제정됨으로써 株式會社와 株式合資會社에 관한 規定이 폐지되었다. 독일 商法上 合名會社는 우리 商法上 合名會社와 유사하지만 前者에 대하여는 法人格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第107條【變更의 登記申請】會社가 그 商號를 변경하거나 그 所在地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새로 社員이 入社한 때에는, 이를 商業登記簿에 登記하기 위한 申請을 하여야 한다.

第108條【總社員에 의한 登記申請; 署名의 保存】① 登記申請은 總社員이 하여야 한다.

② 會社를 대표할 社員은 法院에 보존하기 위하여 商號를 기재하고 署名을 하여야 한다.

第2節 社員 相互間의 法律關係(Rechtsverhältnis der Gesellschafter untereinander)

第109條【定款】社員 相互間의 法律關係는 우선 定款에 따른다; 定款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第110條 내지 第122條의 規定이 적용된다.

第110條【費用과 損失의 補償】① 社員이 會社의 業務에 관하여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費用을 지출하거나 직접 그 業務執行으로 인하여 또는 이와 불가분하게 결합된 危險으로부터 損失을 입은 경우에, 會社는 그 社員에 대하여 이를 보상할 義務를 진다.

② 會社는 費用에 대하여 지출한 때로부터 利子를 지급하여야 한다.

第111條【利子支給의 義務】① 社員은 그 金錢出資를 적당한 時期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會社에 납입된 金錢을 적당한 시기에 會社의 金庫에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권한없이 會社의 金庫에서 자기를 위하여 金錢을 인출한 때에는 納入 또는 引渡를 하여야 할 날 또는 金錢을 引出한 날로부터 利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損害에 대한 賠償을 청구하는 것은 배제되지 아니한다.

第112條【競業禁止】 ① 社員은 다른 社員의 同意없이 그 會社의 營業部類에 속하는 去來를 하거나 同種類의 營業을 하는 다른 會社에 人的責任社員으로 참가할 수 없다.

② 會社의 入社時에 社員이 다른 會社의 人的責任社員으로 참가하고 있음을 그 밖의 社員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가의 포기를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參加에 대하여 同意한 것으로 본다.

第113條【競業禁止의 違反】 ① 社員이 第112條에 의하여 부담하는 義務에 違反한 경우에, 會社는 損害賠償을 청구할 수 있다; 會社는 이에 갈음하여 社員에 대하여 社員이 자기의 計算으로 한 去來를 會社의 計算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他人의 計算으로 한 去來에 의하여 얻은 報酬를 返還하거나 그 報酬請求權을 讓渡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請求權의 行使에 관하여는 그 밖의 社員들의 決議가 있어야 한다.

③ 이 請求權은 그 밖의 社員들이 去來의 成立 또는 다른 會社의 社員으로 참가한 것을 안 때로부터 3월의 경과로 時效에 의하여 소멸한다; 이 請求權은 그 事實의 認知와 관계없이 그 成立時로부터 5년의 경과로 時效에 의하여 소멸한다.

④ 會社의 解散을 청구할 수 있는 社員의 權利는 이 規定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第114條【業務執行】 ① 모든 社員은 會社의 業務를 집행할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② 定款으로 1人 또는 數人の 社員에게 業務執行을 위임한 때에는 그 밖의 社員은 業務執行에서 배제된다.

第115條【數人の社員에 의한 業務執行】① 總社員 또는 數人の社員에게 業務執行의 權限이 있는 경우에, 각社員은 단독으로 業務執行을 할 權限이 있다; 다만 다른 業務執行社員이 그 業務의 執行에 대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

② 定款으로 業務執行의 權限을 가진社員이 共同으로만 業務執行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각 業務執行行爲에 대하여 業務執行社員 全員の 同意가 있어야 한다. 다만 遲滯로 인한 危險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16條【業務執行權의 範圍】① 業務執行의 權限은 會社の 통상적인 營業에 수반되는 모든 行爲에 미친다.

② 통상적인 營業의 範圍를 초과하는 行爲를 하기 위하여는 總社員의 決議가 필요하다.

③ 支配人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業務執行社員 全員の 同意가 있어야 한다. 다만 遲滯로 인한 危險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支配權의 撤回을 이를 授與하거나 그 授與에 협력할 權限이 있는 각社員에 의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

第117條【業務執行權의 剝脫】重要한 事由가 있는 경우에,社員의 業務執行의 權限은 그 밖의社員의 申請으로 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박탈될 수 있다. 重要한 事由란 특히 중대한 義務違反이나 정상적인 業務執行能力의 欠缺 등이다.

第118條【社員의 監督權】①社員은 業務執行으로부터 배제되었을 경우에도 스스로 會社の 業務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會社の 商業帳簿 및 書類를 열람할 수 있으며 또 이에 의하여 貸借對照表 및 年度決算書를 작성할 수

있다.

② 前項의 權利를 排除 또는 制限하는 合意가 있는 경우에도 부정한 業務執行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權利의 行使에 對抗하지 못한다.

第119條【決議】 ① 社員이 하여야 할 決議에 대하여는 議決에 참가한 社員全員の 同意가 필요하다.

② 定款에 의하여 議決權의 過半數로 결정하여야 할 경우에 의심스러운 때에는 그 過半數는 社員의 數에 의하여 산정한다.

第120條【利益과 損失】 ① 每營業年度末에 貸借對照表를 근거로 그 年度の 利益 또는 損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각 社員의 配當分을 산정한다.

② 各 社員에게 귀속될 利益은 그 社員의 資本持分에 산입된다. 또 各 社員이 분담할 損失과 그 營業年度중에 資本持分으로부터 인출된 金額은 社員의 資本持分에서 공제된다.

第121條【損益의 分配】 ① 年度利益으로부터 各 社員에게 우선 그 資本持分の 100분의 4에 해당하는 額을 배당한다. 年度利益이 이 配當額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낮은 比率로 배당한다.

② 第1項에 의하여 각 社員에게 귀속될 利益配當分을 산정할 때에는 社員이 그 營業年度중에 出資로서 한 給付는 그 經過期間의 比率에 따라 고려된다. 社員이 營業年度중에 그 資本持分으로부터 金錢을 인출한 때에는 그 引出額은 인출시까지 경과한 기간의 比率에 따라 고려된다.

③ 年度利益중에서 第1項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利益配當分을 초과하는 部分, 그리고 營業年度の 損失은 社員에게 균등하게 분배된다.

- 第122條 [引出] ① 각 社員은 前營業年度에 대하여 확정된 그의 資本持分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金額까지 자기의 부담으로 會社의 金庫에서 金錢을 引出할 수 있고, 會社에 명백한 損害가 되지 아니하는 한 그 金額을 초과하는 前年度의 利益配當分의 支給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그 밖의 경우에 社員은 다른 社員의 同意가 없으면 그의 資本持分을 감소시킬 수 없다.

第3節 社員과 第3者의 法律關係((Rechtsverhältnis der Gesellschafter zu Dritten)

- 第123條 [第3者에 대한 關係에서의 效力] ① 合名會社는 第3者에 대한 關 係에서 會社를 商業登記簿에 登記한 때에 그 效力을 발생한다.
- ② 會社가 登記前에 이미 營業을 開始한 경우에는, 第2條에 의하여 다른 結果가 발생되지 않는 한, 營業開始時에 그 效力을 발생한다.
- ③ 會社가 그 이후의 時點에 비로소 效力을 발생한다고 한 合意는 第3者 에 대하여 效力을 가지지 아니한다.

- 第124條 [法的 獨立性; 會社財産의 強制執行] ① 合名會社는 그 商號下에 서 權利를 얻거나 義務를 지고, 土地에 대한 所有權 또는 기타의 物權을 취득하며, 法院에 提訴하고 被訴될 수 있다.
- ② 會社財産에 대한 強制執行에는 會社에 대하여 執行力있는 債務名義가 필요하다.

- 第125條 [會社의 代表] ① 各 社員은 定款에 의하여 會社代表에서 배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會社를 대표할 權限을 가진다.
- ② 定款으로 總社員 또는 數人의 社員이 共同으로만 會社를 대표할 수 있 도록 정할 수 있다[共同代表]. 共同代表의 權限을 가진 社員은 그 중의 1人

또는 數人에 대하여 특정한 行爲 또는 특정한 種類의 行爲를 할 權限을 수여할 수 있다. 會社에 대하여 意思表示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共同으로 會社를 代表할 權限을 가진 社員중의 1人에게 함으로써 충분하다.

③ 數人の 社員이 共同으로 行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社員은 支配人과 공동으로만 會社를 대표할 수 있도록 定款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第2項 第2文 및 第3文의 規定이 준용된다.

④ 社員에 대한 會社代表權의 排除, 共同代表의 規定 또는 第3項 第1文에 의한 規定 및 社員의 代表權에 관한 모든 變更에 대하여는 總社員이 商業登記簿에 등기하기 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第125a條 [業務書信의 記載事項] ① 自然人인 社員이 없는 會社에 있어서 특정한 受領人에 대하여 送達되는 모든 業務書信에는 會社의 法的 形態와 住所, 會社住所地の 登記法院과 會社가 登記된 商業登記簿上の 番號 및 社員의 商號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 밖에 社員에 대한 會社의 業務書信에는 有限會社法 第35a條 또는 株式法 第80條에 規定된 業務書信을 위한 記載事項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表示는 會社의 社員중에, 自然人인 人的 責任社員을 포함한, 合名會社 또는 合資會社가 속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

② 印刷書式과 注文書에 대하여는 有限會社法 第35a條 第2項과 第3項이 준용되고, 會社를 대표할 權限이 부여된 社員과 清算人의 機關上 代表者에 대한 強制金에 관하여는 有限會社法 第79條 第1項이 준용될 수 있다.

第126條 [代表權의 範圍] ① 社員의 代表權은 土地의 讓渡와 그 負擔의 設定 및 支配權의 授與와 撤回를 포함한 일체의 裁判上 및 裁判外의 行爲 및 法律行爲에 미친다.

② 代表權의 範圍에 관한 制限은 第3者에 대하여 效力을 가지지 아니한다; 특히 代表를 일정한 行爲 또는 일정한 種類의 行爲에만 미치게 하거나, 오

獨逸商法

직 일정한 狀況下에서만, 일정한 期間에만 또는 개별적인 場所에서만 대표하도록 하는 制限에 대하여도 같다.

③ 會社가 가진 數個의 營業所중 1개의 營業所의 營業에 代表權을 制限한 경우에는 第50條 第3項의 規定이 준용된다.

第127條【代表權의 剝脫】 중요한 事由가 있는 경우에 法院은 다른 社員의 申請에 의하여 判決로써 社員의 代表權을 박탈할 수 있다; 중요한 事由란 특히 현저한 義務違反이나 또는 정상적인 會社代表能力의 欠缺 등이다.

第128條【社員의 人的責任】 社員은 會社의 債務에 관하여 債權者에게 連帶 債務者로서 人的責任을 진다. 이에 반하는 合意는 第3者에 대하여 效力을 가지지 아니한다.

第129條【社員의 抗辯】 ① 社員이 會社의 債務에 대하여 請求를 받은 때에 그 社員은 자신에게 성립되지 아니한 抗辯으로, 오직 그 抗辯이 會社에 의하여 제출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會社가 그 債務의 原因인 法律行爲를 취소할 권리를 가진 경우에 社員은 債權者에 대한 辨濟를 거부할 수 있다.

③ 債權者가 辨濟期에 있는 會社의 債券에 대한 相計에 의하여 滿足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社員은 前項과 같은 權利를 가진다.

④ 會社에 대하여 執行力이 있는 債務名義에 의하여는 社員에 대한 強制 執行을 할 수 없다.

第129a條【消費貸借의 還給】 自然人인 社員이 없는 合名會社에 있어서는 그 社員 또는 社員의 構成員이 有限會社社員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여 有限會社法 第32a條와 第32b條가 준용된다. 合名會社의 社員중에, 自然人인 人的責任社員을 포함한, 다른 合名會社 또는 合資會社가 속해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30條 [新入社員의 責任] ① 存續중의 會社에 加入한 者는 商號의 變更與否를 불문하고 그의 入社前에 성립된 會社의 債務에 대하여 다른 社員과 같이 第128條 및 第129條의 規定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이에 반하는 合意는 第3者에 대하여 效力을 가지지 아니한다.

第130a條 [支給不能時 또는 債務超過時의 申請義務] ① 自然人인 社員이 없는 會社가 支給不能이거나 會社의 財産으로 債務를 變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破産節次의 開始 또는 裁判上의 和議節次가 신청되어야 한다; 合名會社의 社員중에, 自然人인 人的責任社員을 포함한, 다른 合名會社 또는 合資會社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會社를 대표할 權限이 부여된 社員의 機關의代表者와 清算人이 申請義務를 진다. 會社의 支給不能 또는 債務超過 發生 후 지체없이, 늦어도 3주간내에 그 申請이 되어야 한다. 그 申請義務者가 보통 성실한 業務指揮者의 注意로 裁判上 和議節次의 開始에 노력한 경우에는 책임져야 할 申請의 遲滯가 아니다.

② 會社의 支給不能이 발생되었거나 債務超過가 분명해진 후에 會社를 대표할 權限이 부여된 社員의 機關의代表者와 清算人은 會社를 위하여 支給을 할 수 없다. 이 時點 이후라도 보통 성실한 業務指揮者의 注意에 합치된 支給에 관하여는 이 規定은 적용되지 아니하다.

③ 第1項을 위반하여 破産節次의 開始 또는 裁判上의 和議節次가 신청되지 않았거나 적시에 않았거나, 또는 第2項에 위반하여 會社의 支給不能이 발생되었거나 그 債務超過가 분명해진 후에 支給을 한 경우에는, 會社를 대표할 權限이 부여된 社員의 機關의代表者와 清算人이 連帶債務者로서 會社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損害를 賠償할 義務를 진다. 그들이 보통 성실한 業務指揮者의 注意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긴 경우에는 그들이 그 立證責任을 부담한다. 賠償義務는 社員들과의 合意에 의하여 제

獨逸商法

한되거나 배제될 수 없다. 會社債權者에 대한 辨濟를 위하여 賠償이 필요한 한, 賠償義務는 會社の 拋棄나 和解에 의하여 면제될 수도 없고 그 行爲가 社員의 決議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에 의하여 면제될 수도 없다. 強制和議 또는 和議節次에서 이루어진 和議는 그 會社の 債權에 대하여 유리 또는 불리하게 그 效力을 가진다. 이 規定에 의한 請求權은 5년의 經過로 時效에 의하여 소멸한다.

④ 前3項의 規定은, 第1項 내지 第3項에서 前述한 機關上의 代表者가 自然人인 社員이 없는 會社이거나 이러한 會社の 結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준용된다.

第130b條【罰則】 ① 機關의 代表者 또는 清算人으로서 第130條 第1項 또는 第4項을 위반하여 會社の 支給不能이나 債務超過時에 破産節次 또는 裁判上 和議節次の 開始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自由刑 또는 罰金刑에 처해진다.

② 위의 行爲者가 過失로 行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自由刑 또는 罰金刑에 처해진다.

第4節 會社の 解散 및 社員의 退社(Auflösung der Gesellschaft und Ausscheiden von Gesellschaftern)

第131條【解散原因】 合名會社は 다음의 事由로 인하여 解散된다:

1. 存立期間의 滿了;
2. 社員의 決議;
3. 會社の 財産에 대한 破産의 開始;
4. 定款에 다른 規定이 없는 한, 社員 1人의 死亡;
5. 社員 1人의 財産에 대한 破産의 開始;

6. 解散告知 및 法院의 判決.

第132條【社員の 解散告知】會社の 存立期間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社員の 解散告知는 營業年度の 終了時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解散告知는 적어도 이 時點의 6월전에 하여야 한다.

第133條【判決에 의한 解散】① 중요한 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社員 1人の 申請에 의하여 會社の 存立期間의 滿了前에 또는 存立期間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會社에 있어서는 解散告知없이 判決로써 會社の 解散을 宣告할 수 있다.

② 특히 다른 社員 1人이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定款에 의하여 부과된 중요한 義務에 違反하거나 또는 그러한 義務의 履行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중요한 事由가 존재하는 것이다.

③ 會社の 解散을 請求할 수 있는 社員の 權利를 배제하거나 이 規定에 반하여 제한하는 合意는 無效이다.

第134條【終身間の 會社; 會社の 繼續】社員 1人の 生存期間동안 존속하기로 한 會社 또는 정하여진 存立期間의 滿了 後에 묵시적으로 계속되는 會社는 第132條와 第133條 규정의 의미에서는 存立期間를 정하지 아니한 會社와 동일하다.

第135條【私債權者에 의한 解散告知】社員の 개인적인 債權者가 최근 6월내에 그 社員の 動産에 대하여 한 強制執行이 주효하지 아니한 후에 단순히 假執行할 수 있음에 그치지 아니하는 債務名義에 의하여 會社の 清算時에 그 社員에게 귀속될 持分에 대한 請求權의 押留와 轉付를 받은 경우에는, 그 債權者는 會社에 대하여 存立期間이 정하여졌거나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營業年度末에 解散한다는 것을 그 6월전에 告知할 수 있다.

第136條 [善意的 社員에 대한 保護] 會社가 解散告知 이외의 方法에 의하여 解散된 경우에 業務執行에 관한 社員의 權限은 그가 解散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까지 그 社員을 위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第137條 [社員의 死亡 또는 破産] ① 會社가 社員 1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해산된 경우에는 死亡한 社員의 相續人은 지체없이 그 死亡을 다른 社員에게 通知하여야 하고, 遲滯로 인한 危險이 있을 때에는 다른 社員이 그와 공동으로 다른 措置를 취할 수 있게 될 때까지 被相續人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業務를 속행하여야 한다. 다른 社員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業務를 잠정적으로 속행할 義務를 진다. 이 한도내에서 會社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 第1項 第2文과 第3文의 規定은 社員 1人의 財産에 대한 破産의 開始로 인하여 會社가 解散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第138條 [社員 1人의 退社] 定款으로 社員 1人이 解散告知를 하거나 死亡하거나 그 財産에 대하여 破産이 開始된 때에 그 밖의 社員間에 會社를 계속시킬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자기의 일신상에 그 事件이 생긴 社員은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會社가 解散되었을 時點에 퇴사한다.

第139條 [相續人과의 繼續] ① 定款으로 社員 1人이 사망한 경우에 그 相續人과 함께 會社를 계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相續人은 종전의 利益持分을 据置함으로써 有限責任社員의 地位를 부여받고 被相續人의 出資중에서 자기에게 속하는 부분을 그의 有限責任社員出資로서 인정받는 것을 조건으로 會社에 殘留할 수 있다.

② 다른 社員들이 이러한 相續人의 申請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 相續人은 解散告知期間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退社의 意思表示를 할 수 있다.

③ 이러한 權利는, 相續人이 相續의 開始를 안 時點으로부터 3월 이내에 한하여, 相續人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다. 이 期間의 經過에 대하여는 時效에 관한 民法 第206條의 規定이 준용된다. 3월의 경과에 있어서 相續을 포기할 權利가 喪失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期間은 拋棄期間의 滿了 前에는 종료하지 아니한다.

④ 第3項의 기간내에 相續人이 退社하거나 이 기간내에 會社가 解散되거나 相續人에게 有限責任社員의 지위가 부여된 경우에, 相續人은 그 때까지 성립된 會社債務에 관하여 遺産債務에 대한 相續人의 責任에 관한 民法의 規定에 의해서만 책임을 진다.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定款으로 그 適用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相續人이 有限責任社員의 地位를 부여받는 것을 조건으로 會社에 殘留하는 경우에는 被相續人의 利益持分과 달리 相續人의 利益持分을 정할 수 있다.

第140條【社員의 除名】 ① 社員 1인에게 第133條에 의하여 다른 社員들에 대하여 會社의 解散을 청구할 權利의 근거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다른 社員들이 그 社員의 除名을 申請하면 法院은 會社의 解散에 갈음하여 그 社員의 除名을 宣告할 수 있다.

② 會社와 제명된 社員간의 計算에 대하여는 除名の 訴를 제기한 때의 會社의 財産狀態標準이 된다.

第141條【債權者の 解散告知 또는 破産時の 繼續】 ① 社員의 私債權者가 第135條에 의하여 가지는 權利를 행사한 경우에 다른 社員들은 決議에 의하여 債權者에게 그들이 會社를 계속한다는 意思表示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社員은 營業年度の 終了時에 퇴사한다.

② 前項의 規定은 社員 1인의 財産에 대한 破産開始의 경우에 적용되는데, 意思表示는 破産管財人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破産債務者는 破産開始의

時點에 退社한 것으로 본다.

第142條 [社員에 의한 營業의 引受] ① 오직 2人의 社員만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보다 많은 數의 社員이 이었다면 그중의 1人에게 除名이 허용될 條件이 있을 때에는 다른 社員은 申請에 의하여 法院으로부터 清算없이 資産과 負債를 포함하여 營業을 인수할 권한이 있다는 宣告를 받을 수 있다.

② 2人의 社員으로 구성된 會社에서 社員의 私債權者가 第135條에 의하여 가지는 權限을 행사하거나 또는 社員 1人의 財産에 대하여 破産이 개시된 경우에 다른 社員은 前項에 규정된 方法에 의하여 營業을 인수할 權利를 가진다.

③ 計算에 있어서는 社員이 退社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規定이 준용된다.

第143條 [解散과 退社의 登記申請] ① 會社의 解散은 會社의 財産에 대한 破産의 開始로 인한 경우 이외에는 總社員에 의하여 商業登記簿에 등기하기 위하여 신청되어야 한다.

② 社員의 退社에 관하여도 같다.

③ 解散 또는 退社가 社員 1人의 死亡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될 경우에는 相續人이 申請에 참여하지 아니하더라도, 특별한 장애로 인하여 참여할 수 없는 한, 登記를 할 수 있다.

第144條 [會社破産後의 繼續] ① 會社가 그 財産에 대한 破産의 開始로 인하여 解散되었으나, 強制和議의 成立으로 인하여 破産이 終結되거나 破産者의 申請에 의하여 破産이 폐지된 경우에 社員은 會社의 繼續을 결의할 수 있다.

② 會社의 繼續은 總社員에 의하여 商業登記簿에 등기하기 위하여 신청되어야 한다.

第5節 會社의 清算(Liquidation der Gesellschaft)

第145條 [清算의 必要性] ① 會社의 解散 後에 社員들에 의하여 달리 清算 方法을 合意되지 않았거나 會社의 財産에 대하여 破産이 開始되지 않은 경우에는 清算을 한다.

② 會社가 社員 1人의 債權者에 의한 解散告知로 인하여 또는 社員 1人의 財産에 대한 破産의 開始로 인하여 解散된 때에는 오직 債權者 또는 破産 管財人의 同意를 얻음으로써 清算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146條 [清算人의 選任] ① 清算은, 社員의 決議 또는 定款에 의하여 일부의 社員 또는 그 이외의 者에게 委任하지 아니하는 한, 總社員이 清算人으로 되어 행한다. 社員 1人에 대하여 數人의 相續人이 있으면 1人의 共同代理人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중요한 事由가 있는 경우에 會社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法院은 利害關係人의 申請에 의하여 清算人을 選任할 수 있다; 이 경우에 法院은 社員이 아닌 자를 清算人으로 選任할 수 있다. 利害關係人으로서 社員 이외에 第135條의 경우에 解散告知를 한 債權者도 해당된다.

③ 社員 1人의 財産에 대하여 破産이 開始된 때에는 破産管財人이 그 社員에 갈음한다.

第147條 [清算人의 解任] 清算人의 解任은 第146條 第2項 및 第3項의 利害關係人의 일치된 決議에 의하여 행한다. 중요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法院도 利害關係人의 申請에 의하여 清算人을 解任할 수 있다.

第148條 [清算人의 登記申請] ① 清算人은 總社員에 의하여 商業登記簿에 등기하기 위하여 申請되어야 한다. 清算人의 變更 또는 그 代理權에 관한

變更에 대하여도 같다. 社員 1인이 死亡한 경우에 申請이 事實에 합치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 相續인이 申請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특별한 障礙로 인하여 참여할 수 없는 한, 登記를 할 수 있다.

② 法院에 의하여 선임된 清算人の 登記와 法院에 의한 清算人の 解任登記는 職權으로 한다.

③ 清算人は 法院에 보존하기 위하여 商號 및 자기의 署名을 自署하여야 한다.

第149條【清算人の 權利와 義務】 清算人は 現存事務의 終結, 債權의 推尋, 殘餘財産의 換價 및 債權者에 대한 辨濟를 하여야 한다; 清算人は 完決되지 아니한 去來를 종료하기 위하여 새로운 去來도 할 수 있다. 清算人は 그 業務範圍 안에서 裁判上 및 裁判外에 있어서 會社를 대표한다.

第150條【數人の 清算人】 ① 數人の 清算인이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行爲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하지 아니한 한, 그들은 共同으로만 清算에 속하는 行爲를 할 수 있다; 단독으로 行爲를 할 수 있다는 規定은 商業登記簿에 등기되어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清算인이 개별적으로 특정한 行爲 또는 특정한 種類의 行爲를 할 權限을 부여하는 것을 배제되지 아니한다. 會社에 대하여 意思表示를 할 경우에는 第125條 第2項 第3文의 規定이 준용된다.

第151條【權限의 制限不可性】 清算人の 權限의 範圍에 관한 制限은 第3者에 대하여 效力을 가지지 아니한다.

第152條【指示에 대한 拘束】 清算人は, 法院에 의하여 選任된 清算人이라도, 第146條 第2項 및 第3項의 利害關係인이 業務執行에 관하여 全員一致로 결의한 指示에 따라야 한다.

第153條【署名】清算人は清算商號로서 표시되어야 할 從前의 商號에 자기의 姓名을 붙여 署名하여야 한다.

第154條【貸借對照表】清算人は清算의 開始時와 終了時에 貸借對照表를 작성하여야 한다.

第155條【會社財産의 分配】① 債務의 辨濟 後에 잔존하는 會社財産은 清算 終了의 貸借對照表에 표시된 資本持分의 比率에 따라 清算人에 의하여 社員에게 分배되어야 한다.

② 清算중에 불필요한 金錢은 假分配된다. 다만 아직 辨濟期에 달하지 아니한 債務 또는 係爭중의 債務의 辨濟에 대비하기 위하여 또는 最終分配에서 社員에게 귀속되어야 할 金額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部分은 留保되어야 한다. 第122條 第1項의 規定은 清算중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會社財産의 分配에 관하여 社員間에 다툼이 생긴 경우에, 清算人은 그 다툼에 대한 決定時까지 分配를 停止하여야 한다.

第156條【社員의 法律關係】清算의 終了에 이르기까지 종래의 社員 相互間 및 會社와 第三者의 法律關係에 관하여는, 이 節에 의하여 또는 清算의 目的에 의하여 다른 正함이 없는 한, 第2節 및 第3節의 規定이 적용된다.

第157條【消滅의 登記申請; 商業帳簿】① 清算이 終了한 後에 清算人은 商號의 消滅을 商業登記簿에 登記하기 위하여 申請하여야 한다.

② 해산된 會社의 帳簿 및 書類는 社員중의 1人 또는 第三者에게 보관된다. 보관할 社員 또는 第三者는, 協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會社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法院에 의하여 正해진다.

③ 社員과 相續人은 帳簿 및 書類를 謄寫하고 이용할 權利를 가진다.

第158條 [다른 清算方法] 社員이 法定清算에 갈음하여 다른 清算方法을 合意한 경우에는, 아직 分配되지 아니한 會社財産이 존재하는 한, 第3者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法定清算에 관한 規定이 준용된다.

第6節 消滅時效, 責任期間制限(Verjährung,
Zeitliche Begrenzung der Haftung)

第159條 [社員에 대한 請求權] ① 會社の 債務로 인한 請求權은 社員에 대한 請求權은 그 請求權이 5年보다 短期의 消滅時效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한 會社の 解散後 5年이 경과하면 時效에 의하여 소멸한다.

② 前項의 消滅時效는 會社の 所在地를 관할하는 法院의 商業登記簿에 會社の 解散이 登記된 날의 終了時로부터 진행된다.

③ 登記 後에 비로소 會社에 대한 債權者의 請求權이 辨濟期에 달한 경우에 消滅時效는 그 辨濟期가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된다.

④ 解散된 會社에 대한 消滅時效의 中斷은 解散 당시에 會社에 속했던 社員에 대하여도 역시 效力이 있다.

第160條 [退社한 社員의 責任; 期間; 有限責任社員으로서의 責任] ① 社員이 會社로부터 退社한 경우에 그 당시까지 발생된 會社債務의 辨濟期가 退社後 5年이 경과하기 전에 도래하고 그 社員에 대하여 그로 인한 請求의 訴訟이 제기된 때에는 社員은 그 債務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公法上的 債務에 있어서 그 主張은 行政處分을 함으로써 충분하다. 消滅時效에 관한 民法 第203條, 第206條, 第207條, 第210條, 第212條 내지 第216條 및 第220條는 이에 준용된다.

② 社員이 그 請求權을 書面으로 承認한 때에는 訴訟上の 請求는 필요하지 않다.

③ 社員이 有限責任社員인 경우에는 商業登記簿에 變更登記를 한 時點에 발생된 債務에 대한 責任의 制限에 관하여 第1項과 第2項이 준용된다. 社員이 그 會社에서 또는 社員으로서 그 會社에 속한 企業에서 業務執行을 한 경우에도 역시 동일하다. 이것은 有限責任社員으로서의 責任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2部 合資會社】 2)

第2章 合資會社(Kommanditgesellschaft)

第161條 [合資會社의 概念; 合名會社에 관한 規定의 準用] ① 共同的 商號 下에서 商業을 영위할 目的으로 하는 會社로서, 그 社員중의 1人 또는 數人에게는 會社債權者에 대한 責任이 일정한 財産出資의 價額으로 제한되고[有限責任社員], 다른 社員에게는 그 責任의 制限이 없는 경우에는(人的 責任社員), 合資會社이다.

② 合資會社에 대하여는, 이 章에 다른 規定이 없는 한, 合名會社에 관한 規定이 準用된다.

第162條 [合資會社의 登記申請] ① 會社의 設立登記의 申請書에는 第106條 第2項에 規定된 事項 외에 有限責任社員의 表示와 各 有限責任社員의 出資價額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登記의 公告에 있어서는 오직 有限責任社員의 數만을 기재하면 된다; 有限責任社員의 姓名, 身分과 住所 및 그 出資價額은 公告하지 아니한다.

③ 이 規定은 存續중의 商事會社에 有限責任社員이 入社한 경우와 合資會社로부터 有限責任社員이 退社한 경우에 準用된다.

第163條 [社員 相互間의 法律關係] 社員 相互間의 關係에 대하여 定款에

-
- 2) 合資會社에 관하여는 獨逸 商法(Handelsgesetzbuch) 第2編 第2章 第161條 내지 第177a條에 規定되어 있다. 현행 獨逸商法은 1897년에 제정되어 190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第1編 商人, 第2編 商事會社와 匿名組合, 第3編 商業帳簿, 第4編 商行爲 및 第5編 海商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法 第2編에는 合名會社와 合資會社 이외에도 株式會社와 株式合資會社에 관한 規定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1937년에 株式法이 별도의 法典으로 제정됨으로써 株式會社와 株式合資會社에 관한 規定이 폐지되었다. 독일 商法上 合資會社는 우리 商法上 合資會社와 유사하지만, 前者에 대하여는 法人格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다른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第164條 내지 第169條의 特別規定이 적용된다.

第164條【業務執行】 有限責任社員은 會社의 業務執行으로부터 제외된다. 有限責任社員은 人的責任社員의 行爲에 대하여, 會社의 통상적인 營業範圍를 벗어난 행위가 아닌 한, 異議를 할 수 없다. 第116條 第3項의 規定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第165條【競業禁止】 第112條 및 第113條의 規定은 有限責任社員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第166條【監督權】 ① 有限責任社員은 年度決算書의 謄本の 交付를 청구하고 帳簿와 書類를 열람하여 그 年度決算書의 適正性을 監査할 수 있다.
② 第118條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執行으로부터 제외된 社員에게 부여된 것 이상의 權利를 有限責任社員에게 부여할 수는 없다.
③ 중요한 事由가 있는 경우에, 法院은 有限責任社員의 申請에 의하여 언제든지 貸借對照表와 年度決算書 또는 기타의 說明의 報告 및 帳簿와 書類의 提出을 명할 수 있다.

第167條【利益과 損失】 ① 利益 또는 損失의 計算에 관한 第120條의 規定은 有限責任社員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② 그러나 有限責任社員에게 귀속될 利益은, 그 社員의 資本持分이 약정한 出資額에 달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그의 資本持분에 산입한다.
③ 有限責任社員은 그의 資本持分과 아직 이행하지 아니한 出資의 價額을 限度로 하여 損失을 분담한다.

第168條【損益의 分配】 ① 社員에 대한 利益配當은 利益이 資本持分の 100분의 4에 해당하는 金額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第121條 第1項 및 第2項

의 規定에 의하여 정한다.

② 前項의 金額을 초과하는 利益 및 損失에 대하여는, 다른 合意가 없는 한, 事情에 따라 適정한 比率의 配當分을 정한 것으로 본다.

第169條【利益의 支給】① 第122條는 有限責任社員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有限責任社員은 자기에 귀속된 利益에 대한 支給의 請求權만을 가진다; 다만 有限責任社員은, 그의 資本持分이 損失로 인하여 約定된 出資에 대한 履行金額 이하로 감소되었거나 그 支給으로 인하여 이 金額 이하로 감소될 경우에도, 利益의 支給을 청구할 수 없다.

② 有限責任社員은 이미 수취한 利益을 그 후에 발생한 損失로 인하여 반환할 義務를 지지 아니한다.

第170條【合資會社の 代表】有限責任社員은 會社를 대표할 權限을 가지지 아니한다.

第171條【有限責任社員의 責任】① 有限責任社員은 그 出資額의 限度까지 會社の 債權者에 대하여 直接 責任을 진다; 다만 出資가 이행된 限度內에서는 그 責任이 배제된다.

② 會社の 財産에 관하여 破産이 개시된 경우에는 破産節次가 계속되는 동안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會社債權者에게 속하는 權利는 破産管財人에 의하여 행사된다.

第172條【責任의 範圍】① 商業登記簿에 登記된 후에 會社債權者에 대한 關係에 있어서 有限責任社員의 出資는 그 등기된 價額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② 商業登記簿에 기재된 出資에 대한 增加가 아직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商慣習의 方法으로 告示하거나 기타의 方法으로 會社에 의하여 債權者에게 通知된 때에 한하여, 債權者가 이를 援用할 수 있다.

- ③ 有限責任社員에 대하여 出資을 免除하거나 猶豫하기로 하는 社員들의 合意는 債權者에 대하여 效力을 가지지 아니한다.
- ④ 有限責任社員의 出資가 還給된 경우에 債權者에 대하여는 그 出資는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有限責任社員의 資本持分이 損失로 인하여 이행된 出資價額 이하로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利益配當分을 인출하거나, 또는 그 引出로 인하여 資本持分이 이행된 出資金額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같다.
- ⑤ 有限責任社員은 善意로 작성된 貸借對照表에 의하여 善意로 利益으로서 수취한 것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할 義務를 지지 아니한다.
- ⑥ 自然人인 人的責任社員이 없는 會社의 債權者에 대하여, 有限責任社員의 出資가 人的責任社員에 대한 持分으로 실현된 한도내에서는 그 出資는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人的責任社員중에, 自然人인 人的責任社員을 포함한, 合名會社 또는 合資會社가 속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72a條 [消費貸借의 還給] 自然人인 人的責任社員이 없는 合資會社에 있어서는 그 社員 또는 人的責任社員의 構成員 및 有限責任社員이 有限會社 社員의 地位에 있는 경우에 관한 有限會社法 第32a條와 第32b條가 준용된다. 人的責任社員중에, 自然人인 人的責任社員을 포함한, 合名會社 또는 合資會社가 속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73條 [有限責任社員으로 入社한 경우의 責任] ① 存續중인 會社에 有限責任社員으로 가입한 자는 商號의 變更與否에 관계없이 그의 入社 前에 설립된 會社의 債務에 대하여 第171條 및 第172條의 規定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前項의 規定에 반하는 合意는 第3者에 대하여 效力을 가지지 아니한다.

第174條【出資의 減少】 有限責任社員의 出資의 減少는 會社의 所在地를 管할하는 法院의 商業登記簿에 登記하지 아니하면 債權者에 대하여 效力을 가지지 아니한다. 登記時에 이미 성립된 債權을 가진 債權者는 그 減少의 效力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第175條【出資額의 變更에 관한 登記申請】 出資의 增加 및 減少는 總社員에 의하여 商業登記簿에 登記하기 위하여 申請되어야 한다. 登記의 公告는 第162條 第2項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會社의 所在地의 商業登記簿에 하는 登記에 관하여는 第14條의 規定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第176條【登記前의 責任】 ① 會社가 그 所在地를 管할하는 法院의 商業登記簿에 登記되기 전에 營業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營業開始에 대하여 동의한 모든 有限責任社員은 登記時까지 성립된 會社債務에 대하여 人的責任社員과 동일한 責任을 진다. 다만 有限責任社員으로서 참가한 것을 債權者가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規定은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結果를 생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存續중의 會社에 有限責任社員이 入社한 경우에 第1項 第1文의 規定은 그의 入社時로부터 商業登記簿에 이를 登記한 때까지 성립된 會社의 債務에 관하여 준용된다.

第177條【有限責任社員의 死亡】 會社는 有限責任社員의 死亡으로 인하여 해산되지 아니한다.

第177a條【業務書信의 記載事項; 支給不能時 또는 債務超過時의 申請義務】 第125a條, 第130a條 및 第130b條는 自然人인 有限責任社員이 있는 會社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다만 第130a條는 第1項 第1文 後段 대신에 第172條 第6項 第2文을 채용하는 것으로 하여 적용된다. 第125a條에서 社員에

대하여 규정된 記載事項은 오직 會社의 人的責任社員에 대하여만 요구된다.

【第3部 株式會社】³⁾

第1編 株式會社(Aktiengesellschaft)

第1章 總則(Allgemeine Vorschriften)

第1條 [株式會社의 本質] ① 株式會社は 고유한 法人格을 가진 會社이다. 會社의 債務에 대하여는 會社財産만이 債權者에게 責任을 진다.

② 株式會社は 株式으로 분할된 資本을 가진다.

第2條 [發起人의 數] 會社契約(定款)의 確定에는 出資로써 株式을 인수한 1인 또는 多數人이 참가하여야 한다.

第3條 [商事會社로서의 株式會社] 株式會社は 企業의 목적이 商業의 經營에 있지 아니한 때에도 商事會社로 본다.

第4條 [商號] ① 株式會社의 商號는 원칙적으로 企業의 目的으로부터 채택되어야 한다. 그 商號는 “株式會社”(Aktiengesellschaft)라는 표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株式會社가 그 會社에 이전된 商業의 商號를 續用할 경우(商法 第22條)에는 商號중에 “株式會社”라는 표시를 포함하여야 한다.

第5條 [住所] ① 會社의 住所는 定款에 규정된 場所이다.

3) 株式會社에 관하여는 獨逸 株式法(Aktiengesetz)에 규정되어 있다. 현행 獨逸 株式法은 1965년에 제정되었으며, 1976년의 共同決定法, 1985년의 貸借對照表指針法, 1994년의 組織變更法의 制定 및 유럽연합(EU) 會社法의 조화와 통일정책에 의하여 많은 규정에 개정되었다. 특히 1994년에 株式法의 改正을 통하여 1인의 發起人에 의한 株式會社의 設立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1株의 最低券面額도 5 독일 마르크(DM)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② 定款은 원칙적으로 會社가 營業을 하는 場所 또는 營業의 지휘가 이루어지거나 관리가 행하여지는 場所를 住所로 정하여야 한다.

第6條 [資本] 資本과 株式은 金額을 독일 마르크로 표시하여야 한다.

第7條 [資本의 最低券面額] ① 資本의 最低券面額은 10만 독일 마르크이다.

第8條 [株式의 最低券面額] ① 株式의 最低券面額은 5 독일 마르크이다. 이보다 적은 券面額의 株式은 無效이다. 그 發行으로 인한 損害에 대하여는 發行人이 所持人에 대하여 連帶債務者로서 責任을 진다.

② 이보다 높은 株式券面額은 5 독일 마르크의 倍數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株式은 분할할 수 없다.

④ 本條의 規定은 株式의 發行前에 株主에게 부여되는 持分權에도 적용된다(假株券).

第9條 [株式의 發行價額] ① 株式은 額面보다 낮은 金額으로 발행될 수 없다.

② 額面보다 높은 金額으로 발행되는 것은 허용된다.

第10條 [株式과 假株券] ① 株式은 無記名式 또는 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② 株式이 額面 또는 額面보다 높은 發行價額의 全額納入前에 發行되는 경우에는 記名式이어야 한다. 分割納入의 價額은 株式에 기재되어야 한다.

③ 假株券은 記名式이어야 한다.

④ 無記名式 假株券은 無效이다. 그 發行으로 인한 損害에 대하여는 發行人이 所持人에 대하여 連帶債務者로서 責任을 진다.

⑤ 株式에 대한 個別株券發行請求權은 定款으로 배제 또는 제한될 수 있다.

第11條 [특별한 종류의 株式] 株式은 특히 利益과 會社財産의 分配에 관하여 서로 다른 權利를 가질 수 있다. 동일한 權利를 가진 株式은 하나의 種類를 형성한다.

第12條 [議決權, 複數議決權의 禁止] ① 各 株式은 議決權을 가진다. 優先株은 이 法의 規定에 따라 議決權없는 株式으로서 발행될 수 있다.

② 複數議決權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會社の 住所가 있는 州의 經濟를 管할하는 最上級官廳은 중요한 全體經濟上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例外를 인정할 수 있다.

第13條 [株式의 署名] 株式과 假株券의 署名은 複寫에 의한 署名으로써 충분하다. 署名의 效力을 특별한 方式의 준수에 의존하게 할 수 있다. 이 方式 規定은 證券에 기재되어야 한다.

第14條 [管轄] 이 法에서 法院이란 다른 規定이 없는 한 會社の 住所地를 管할하는 法院을 말한다.

第15條 [結合企業] 結合企業이란 法律上 독립된 企業으로서 相互間에 過半數占有된 企業과 過半數參加한 企業(第16條), 從屬企業과 支配企業(第17條), 콘체른企業(第18條), 相互參加企業(第19條) 또는 企業契約(第291條, 第292條)의 契約當事者인 관계에 있는 企業을 말한다.

第16條 [過半數占有된 企業과 過半數參加한 企業] ① 法律上 독립된 企業의 持分の 過半數가 다른 企業에 속하거나 議決權의 過半數가 다른 企業에 속하는 경우(過半數參加)에는 그 企業은 過半數占有된 企業이며, 그 다른 企業은 過半數參加한 企業이다.

② 持分の 어떠한 부분이 한 企業에 속하는가는 資本會社에서는 그 企業이 소유한 持分の 總券面額이 公稱資本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鑛業法上の 鑛業會社에서는 鑛山株의 數에 따라 정해진다. 自己持分은 資本會社에서는 公稱資本으로부터, 鑛業法上の 鑛業會社에서는 鑛山株의 數로부터 공제되어야 한다. 그 企業의 計算으로 다른 企業에 속하는 持分은 그 企業의 自己持분과 같다.

③ 議決權의 어떠한 부분이 한 企業에 속하는가는 그 企業이 자기에 속한 持분에 의거하여 行使할 수 있는 議決權數의 議決權總數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自己持分 및 第2項 第3文에 의하여 自己持분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持분에 의한 議決權은 議決權의 總數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④ 한 企業에 종속된 企業에 속한 持分 또는 그 企業이나 그 企業에 종속된 企業의 計算으로 다른 企業에 속한 持분과, 企業의 所有者가 個人 商人인 경우에는, 所有者의 그 밖의 財産인 持분도 그 企業에 속한 持분으로 본다.

第17條 [從屬企業과 支配企業] ① 從屬企業이란 法律上 독립된 企業으로서, 그 企業에 대하여 다른 企業(支配企業)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적 影響力을 행사할 수 있는 企業을 말한다.

② 過半數占有된 企業은 그 企業에 過半數參加한 企業에 종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第18條 [콘체른과 콘체른企業] ① 하나의 支配企業과 1個 또는 數個의 從屬企業이 支配企業의 통일적 지휘하에 총괄되는 경우에 그 企業들은 콘체른을 형성하며, 各 企業들은 콘체른企業이다. 企業들 사이에 支配契約(第291條)이 존재하거나, 企業들중에 하나의 企業이 다른 企業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에 그 企業들은 통일적 지휘하에 총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從屬企業은 支配企業과 콘체른을 형성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그 企業, 그 企業에 從屬된 企業, 또는 그 企業이나 그 企業에 從屬된 企業의 計算으로 다른 企業이 인수할 義務를 지는 株式.

③ 그 企業이 資本會社 또는 鑛業法上的 鑛業會社인 경우에는 第2項에 의한 株式을 가산함이 없이 株式의 4분의 1 이상이 그 企業에 속하게 된 때에는 그 企業은 會社에 대하여 이를 지체없이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企業에 過半數參加(第13條 第1項)가 속하게 된 경우에도 그 會社에 대하여 이를 지체없이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그 參加가 第1項, 第3項 또는 第4項에 의하여 通知義務를 지는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 會社에 대하여 이를 지체없이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會社は 第1項 또는 第4項에 의하여 통지받은 參加의 존재를 지체없이 會社公告紙에 公告하여야 하며, 그 公告에는 參加가 속한 企業이 기재되어야 한다. 參加가 第1項 또는 第4項에 의하여 통지할 義務를 지는 수준이하로 되었다고 會社에 통지된 때에도 역시 이를 지체없이 會社公告紙에 公告하여야 한다.

⑦ 第1項 또는 第4項에 의하여 通知義務를 지는 企業에 속한 株式의 權利는 그 企業이 通知를 하지 아니한 期間 동안에는 그 企業, 그 企業에 종속된 企業, 또는 그 企業이나 그 企業에 종속된 企業의 計算으로 다른 企業에 의하여 행사되지 못한다.

第21條 [會社の 通知義務] ① 國內에 住所를 둔 다른 資本會社 또는 鑛業法上的 鑛業會社の 持分の 4분의 1 이상이 會社에 속하게 된 경우에 그 會社は 參加가 존재하는 企業에 대하여 이를 遲滯없이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會社에 持分の 4분의 1 이상이 속하는가 與否의 확정에 관하여는 第16條 第1項 第1文 및 第4項이 준용된다.

② 會社에 다른 企業에 대한 過半數參加(第16條 第1項)가 속하게 된 경우에 會社は 그 企業에 대하여 이를 지체없이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獨逸株式法

③ 參加가 第1項 또는 第2項에 의하여 通知義務를 지는 수준 이하로 된 경우에 會社는 그 다른 企業에 대하여 이를 지체없이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第1項 또는 第2項에 의하여 通知義務를 지는 會社에 속하는 持分の 權利는 그 會社가 通知를 하지 아니한 期間 동안에는 행사될 수 없다.

第22條 [參加通知의 證明] 第20條 第1項, 第3項 또는 第4項, 第21條 第1項 또는 第2項에 의하여 通知를 받은 企業은 언제든지 參加의 존재를 그 企業에게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第2章 會社の 設立(Gründung der Gesellschaft)

第23條 [定款의 確定] ① 定款은 法院 또는 公證人의 書面認證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代理人은 公證人에 의하여 인증된 代理權을 필요로 한다.

② 이 證書에는 다음 사항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發起人;

2. 各 發起人이 인수한 株式의 券面額, 發行價額 및 數種의 株式이 있을 때에는 그 種類;

3. 納入된 資本額.

③ 定款은 다음의 事項을 규정하여야 한다.

1. 會社の 商號와 住所;

2. 企業의 目的; 특히 工業과 商業에 있어서는 생산되고 거래될 製品과 商品의 種類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3. 資本의 額;

4. 各 株式의 券面額과 各 券面額의 株式數 및, 數種의 株式이 있을 때에는, 各 株式의 種類와 各 種類의 株式數;

5. 記名株式 또는 無記名株式의 發行與否;

6. 理事會構成員의 數 또는 그 數의 確定에 관한 規定.

④ 그 밖에 定款은 會社의 公示方法에 관한 規定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定款은 이 法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이 法의 規定과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이 法에 排他的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定款의 補充 規定이 허용된다.

第24條 [株式의 轉換] 定款은 株主의 請求가 있으면 그의 無記名株式을 記名 株式으로 또는 그의 記名株式을 無記名株式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第25條 [會社의 公告] 이 法 또는 定款에 會社의 公告는 會社公告紙에 의하 여 하도록 規定된 경우에는 聯邦官報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그 밖에 定 款은 다른 新聞紙를 會社公告紙로 기재할 수 있다.

第26條 [特別利益·設立費用] ① 各 株主 또는 第3者에게 부여된 特別利益은 모두 定款中에 그 權利者를 表示하여 確定되어야 한다.

② 設立 또는 그 準備를 위하여 會社의 부담으로 株主 또는 기타의 者에 대하여 補償 또는 報酬로서 부여되는 總費用은 별도로 定款중에 確定되어 야 한다.

③ 前2項의 確定이 없으면 契約과 그 實行을 위한 法律行爲는 會社에 대 하여 無效이다. 商業登記簿에 會社의 登記後에는 이 無效가 定款變更에 의 하여 治癒될 수 없다.

④ 이러한 確定은 會社가 商業登記簿에 5년간 登記된 때에 비로소 變更될 수 있다.

⑤ 이러한 確定에 관한 定款規定은 會社가 商業登記簿에 30년간 登記되어 있고 確定의 基礎가 되는 法律關係가 적어도 5년전에 清算된 때에 비로소 定款變更을 통하여 除去될 수 있다.

第27條 [現物出資·財産引受] ① 株主가 株式의 券面額 또는 額面超過의 發行價額의 納入에 의하지 아니하고 出資를 할 때(現物出資) 또는 會社가 現存하거나 創設될 施設 또는 其他의 財産을 引受할 때(財産引受)에는 定款중에 現物出資 또는 財産引受의 目的物, 會社가 目的物을 취득한 相對方 및 現物出資에 있어서는 이에 대하여 부여할 株式의 券面額 또는 財産引受에 있어서는 이에 대하여 부여할 대가를 確定하여야 한다.

② 경제적 價値를 확정할 수 있는 財産만이 現物出資 또는 財産引受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勞務는 現物出資 또는 財産引受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第1項에 의한 確定이 없는 경우에는 現物出資 및 財産引受에 관한 契約과 그 實行을 위한 法律行爲는 會社에 대하여 無効이다. 會社가 登記되어 있는 때에는 定款의 效力은 이 無効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現物出資의 契約이 無効인 때에는 株主는 株式의 券面額 또는 額面超過의 發行價額을 납입할 義務를 진다.

④ 商業登記簿에 會社의 登記가 있는 후에는 이 無効가 定款變更에 의하여 치유될 수 없다.

⑤ 法的 效力을 발생한 確定의 變更에 관하여는 第26條 第4項, 定款規定의 除去에 관하여는 第26條 第5項이 적용된다.

第28條 [發起人] 定款을 確定한 株主는 會社의 發起人이다.

第29條 [會社의 成立] 會社는 發起人에 의한 株式總數의 引受와 동시에 창립된다.

第30條 [監事會·理事會 및 決算檢查人의 選任] ① 發起人은 최초의 監事會 및 최초의 全營業年度 또는 殘餘營業年度를 위한 決算檢查人을 선임하여야 한다. 選任에는 公證人의 書面認證이 필요하다.

- ② 최초의 監事會의 構成 및 選任에 관하여는 勞動者의 監事의 選任에 관한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최초의 監事會의 構成員은 최초의 全營業年度 또는 殘餘營業年度에 대한 責任免除을 결의하는 株主總會의 終了時보다 長期間의 任期로 선임될 수 없다. 理事會는 최초의 監事會의 任期滿了前 적당한 시기에 그의 意見에 의하면 次期の 監事會가 어떠한 法規定에 따라 구성되어야 하는가를 公告하여야 하며, 第96條 내지 第99條가 이에 적용된다.
- ④ 監事會는 최초의 理事會를 選任한다.

第31條 [現物出資設立時 監事會의 選任] ① 定款중에 現物出資 또는 財産引受의 目的物로서 한 企業 또는 企業의 일부의 引渡 또는 引受가 확정된 경우에는 發起人은 그의 의견에 의하면 引渡 또는 引受後에 監事會의 構成을 위하여 基準이 된다고 생각하는 法規定에 따른 數의 監事를 選任하여야 하며, 株主總會에 의한 選任提案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發起人은 이와 같이 선임될 監事會의 構成員이 2人뿐인 때에는 3人의 監事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第1項 第1文에 따라 선임된 監事會는, 定款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그 構成員의 半數, 그러나 적어도 3人 이상이 決議에 참가한 때에는 議決能力이 있다.

③ 企業 또는 企業의 일부를 引渡 또는 引受한 때에는 理事會는 지체없이 그의 의견에 의하면 어떠한 法規定에 따라 監事會가 구성되어야 하는가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97條 내지 第99條가 이에 준용된다. 종전의 監事의 職務는 發起人에 의하여 選任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한 法規定 이외의 規定에 의하여 監事會가 구성되어야 할 때 또는 發起人이 3人의 監事를 선임하였으나 監事會에 勞動者인 監事도 있어야 할 때에 한하여 소멸한다.

④ 第3項은 企業 또는 企業의 일부가 第30條 第3項 第2文에 의한 理事會의 公告後에 비로소 引渡 또는 引受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第30條 第3項 第1文은 第3項에 의하여 선임된 監事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 한다.

第32條 [設立報告書] ① 發起人은 設立의 經過에 관하여 書面으로 보고하여야 한다(設立報告書).

- ② 設立報告書에는 現物出資 또는 財産引受에 대한 給與의 妥當性에 관한 중요한 事情을 설명하여야 한다. 그 밖에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會社에 의한 取得을 目的으로 행하여진 先行의 法律行爲;

2. 最近 2年間의 取得 및 製作價額

3. 會社에 대하여 企業을 移轉한 경우에는 最近 2營業年度의 營業收益

- ③ 그 밖에 設立報告書에는 設立時에 理事 또는 監事の 計算으로 株式이 引受되었는지 여부와 그 範圍 및 理事 또는 監事に 대하여 特別利益 또는 設立이나 그 準備에 대하여 費用 또는 報酬를 約定하였는지 여부와 그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第33條 [設立檢査. 總則] ① 理事와 監事は 設立의 經過를 檢査하여야 한다.

- ② 그 밖에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1人 또는 數人の 檢査人(設立檢査人)에 의한 檢査를 하여야 한다.

1. 理事 또는 監事が 發起人인 때

2. 設立時에 理事 또는 監事の 計算으로 株式이 인수된 때

3. 理事 또는 監事に 대하여 特別利益을 約定하거나 設立 또는 그 準備에 대하여 費用 또는 報酬를 約정한 때

4. 現物出資 또는 財産引受를 포함하는 設立이 있을 때

- ③ 設立檢査人은 商工會議所(Industrie und Handelskammer)의 意見を 들은 후 法院이 선임한다. 選任決定에 대하여는 即時 抗告가 허용된다.

- ④ 檢査에 있어서 특별한 知識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設立檢査人

으로 다음各號에 해당되는 者가 선임되어야 한다.

1. 簿記에 관하여 충분한 學識 및 經驗을 가진 者;
2. 그 法律上の 代理人중 적어도 1인이 簿記에 관하여 충분한 學識 및 經驗을 가진 者인 檢査會社.

⑤ 第143條 第2項에 의하여 特別檢査人이 될 수 없는 者는 設立檢査人으로 選任될 수 없다. 發起人, 또는 他人의 計算으로 發起人이 株式을 引受한 경우에, 그 他人이 業務執行에 決定적 影響을 미치는 檢査會社 또는 타인에 대하여도 같다.

第34條 [設立檢査의 範圍] ① 理事와 監事에 의한 檢査 및 設立檢査人에 의한 檢査는 특히 다음各號의 事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株式의 引受, 資本에 대한 出資 및 第26條와 第27條에 의한 確定에 관한 發起人의 記載가 정확하고 완전한가의 여부;
2. 現物出資 또는 財産引受의 價値가 이에 대하여 부여할 株式의 券面額 또는 이에 대하여 부여할 給與의 價値에 달하는가의 여부.

② 모든 檢査에 관하여는 前項의 事項을 설명하여 書面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報告書에는 各 現物出資와 財産引受의 목적물이 기술되어야 하고 또한 그 價値의 調査에서는 어떠한 評價方法이 적용되었는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③ 設立檢査人의 報告書는 法院과 理事會에 各 1통씩 제출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法院에서 報告書を 열람할 수 있다.

第35條 [發起人과 設立檢査人間의 意見相違, 設立檢査人의 報酬와 替當金]

- ① 設立檢査人은 發起人에 대하여신중한 檢査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說明과 證明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發起人과 設立檢査人間에 發起人이 하여야 할 說明과 證明의 範圍에 관하여 意見의 相違가 있는 경우에는 法院이 결정한다. 이 決定에 대하여

獨逸株式法

는 不服할 수 없다. 發起人이 이 決定에 따를 것을 거절하는 한 檢査報告書는 작성되지 아니한다.

③ 設立檢査人은 상당한 現金替當金の 賠償 및 그의 活動에 대한 報酬의 請求權을 가진다. 替當金 및 報酬는 法院이 確定한다. 이 決定에 대하여는 即時抗告가 허용된다. 再抗告는 할 수 없다. 既判力있는 決定에 의거하여 民事訴訟法에 의한 強制執行을 할 수 있다.

第36條【會社の申請】 ① 會社は 法院에 發起人·理事 및 監事の 全員에 의하여 商業登記簿上에 登記하기 위하여 申請되어야 한다.

② 申請은, 現物出資가 合意되지 아니한 한, 各 株式에 대하여 催告된 金額이 적정하게 納入되고(第54條 第3項), 그 金額이 設立時에 부담한 租稅와 手數料의 納入을 위하여 이미 사용된 것이 아닌 한, 總括적으로 理事會의 자유로운 處分에 맡겨진 때에, 비로소 할 수 있다. 會社가 오직 1인에 의하여 설립되는 경우에는 發起人은 催告된 金額을 초과하는 金錢出資部分에 대하여 擔保를 제공하여야 한다.

第36a條【出資의 履行】 ① 金錢出資에서 催告된 金額(第36條 ②)은 적어도 額面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額面이상으로 株式을 發行한 때에는 그 超過額도 포함하여야 한다.

② 現物出資는 완전히 이행되어야 한다. 現物出資가 會社에 대하여 財産目的의 物을 양도할 義務인 경우에 그 履行은 商業登記를 한 후 5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 價値는 額面에 상응하여야 하고 額面 이상으로 株式을 發行한 때에는 역시 그 超過額에 상응하여야 한다.

第37條【申請의 內容】 ① 申請에는 第36條 第2項과 第36a條의 要件을 구비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株式을 發行한 價額 및 이에 대하여 納入된 金額을 표시하여야 한다. 納入된 金額이 理事會의 處分에 맡겨졌음을

證明하여야 한다. 이金額은 獨逸聯邦銀行 또는 金融機關에 있는 會社 또는 理事會의 計定上 貸邊에 기입됨으로써(第54條 第3項) 납입된 경우에는 그 證明은 金融機關의 確認書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確認의 정확성에 관하여는 金融機關이 會社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납입된 金額중에서 租稅 및 手數料가 지급된 때에는 그 種類 및 金額을 표시하고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申請書에는 理事가 그들의 選任에 第76條 第3項 第3, 4文에 위반되는 어떤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과 理事는 法院에 대하여 무제한의 說明義務를 진다는 것에 관하여 교육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1976년 7월 22일 공고된 中央登記簿와 教育登記簿에 관한 法 第51條 第2項에 따른 教育(聯邦官報 I 2005면)은 公證人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③ 그 밖에 申請書에는 理事가 어떠한 代表權을 가지는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1. 定款 및 定款確定과 發起人の 株式引受에 관한 證書;

2. 第26條 및 第27條의 경우에는 確定의 基礎가 되거나 그 實行을 위하여 체결한 契約書 및 會社의 부담이 될 設立費用의 計算書. 이 計算書에는 報酬의 種類 및 金額과 그 受取人을 各各 記載하여야 한다;

3. 理事會 및 監事會의 選任에 관한 書類;

4. 理事, 監事 및 設立檢查人の 設立報告書 및 檢查報告書와 그 기초가 되는 證書;

5. 企業의 目的 또는 다른 定款規定에 國家의 認可가 필요한 때에는 그 認可證

⑤ 理事는 法院에 보존하기 위하여 그의 署名을 提出하여야 한다.

⑥ 提出된 書類는 原本, 正本 또는 공적으로 인증된 謄本으로 法院에 보존된다.

第38條 [法院에 의한 審査] ① 法院은 會社가 적법하게 창립되고 신청되었는
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적법하게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은 登
記를 거절하여야 한다.

② 理事와 監事の 設立報告書 또는 檢查報告書가 부정확 또는 불완전하거
나 法律의 規定에 위반하였음을 設立檢查人이 표시하거나 이것이 명백한
때에도 法院은 역시 登記를 거절할 수 있다. 現物出資 또는 財産引受의 價
値가 그에 대하여 부여된 株式의 券面額 또는 그에 대하여 부여된 給與의
價值에 전혀 미치지 못함을 設立檢查人이 표시하거나 法院이 그와 같은
見解를 가진 때에도 같다.

第39條 [登記의 內容] ① 會社의 登記에는 會社의 商號와 住所, 企業의 目的,
資本의 額, 定款確定日과 理事를 記載하여야 한다. 그 밖에 理事가 어떠한
代表權을 가지는가를 등기되어야 한다.

② 定款에 會社의 存立期間에 관한 規定 또는 認可資本(genehmigte
Kapital)에 관한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規定들도 登記되어야 한다.

第40條 [登記의 公告] ① 登記의 公告에는 登記의 內容외에 다음 各號의 事
項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第23條 第3項과 第4項, 第24條, 第25條 第2文, 第26條와 第27條에 의한
確定 및 理事會의 構成에 관한 定款의 規定

2. 株式의 發行價額

3. 發起人の 姓名, 職業 및 住所

4. 최초의 監事の 姓名, 職業 및 住所

② 申請時에 제출된 書類, 특히 理事와 監事 및 設立檢查人의 檢查報告書
를 法院에서 閱覽할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公告하여야 한다.

第41條 [登記前에 會社의 名義로 한 行爲. 株式發行의 禁止] ① 株式會社는

商業登記簿에 登記되기 전에는 株式會社로서 성립되지 아니한다. 會社登記前에 會社의 名義로 행위를 한 者는 개인적으로 責任을 지며 數人이 행위를 한 때에는 그 數人이 連帶債務者로서 責任을 진다.

② 會社가 會社登記前에 會社의 名義로 부담한 義務를 債務者와의 契約에 의하여 引受하고 會社가 舊債務者를 대신한 경우에 그 債務引受가 會社登記後 3月 이내에 합의되고 또 會社 또는 債務者에 의하여 債權者에게 통지된 때에는 債務引受가 有效하기 위하여 債權者의 同意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 特別利益, 設立費用, 現物出資 또는 財産引受에 관한 契約으로서 定款에 確定되지 아니한 것에 의한 義務는 會社가 이를 引受하지 못한다.

④ 會社의 登記前에는 持分權을 讓渡할 수 없으며 株式 또는 假株券을 發行하지 못한다. 登記前에 發行한 株式 또는 假株券은 無效이다. 그 發行으로 인한 損害에 대하여는 發行人이 所持人에 대하여 連帶債務者로서 責任을 진다.

第42條 [1人會社] 모든 株式이 오직 1인 또는 會社외에 1인에 속한 때에는 單獨株主의 姓名, 職業 및 住所를 지체없이 法院에 신고하여야 한다.

第43條, 第44條 (削除)

第45條 [住所移轉] ① 國內에서 會社의 住所를 이전하는 때에는 그 移轉을 종전의 住所地의 法院에 申請하여야 한다.

② 住所가 종전의 住所地의 法院의 管轄權 밖으로 이전된 때에는 이 法院은 遲滯없이 職權으로 新住所地의 法院에 대하여 이전을 通知하여야 한다. 通知서에는 종전의 住所에 관한 登記와 종전의 管轄法院에서 보관한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新住所地의 法院은 이전이 合法的으로 決定되었는가와 商法 第30條를 준수하였는가의 與否를 檢査하여야 한다. 이것이 적당한

獨逸株式法

때에는 住所移轉을 登記하고 또 이 경우에는 同法院에 通知된 登記事項을 다시 심사함이 없이 同法院의 商業登記簿에 移記하여야 한다. 住所移轉은 登記함으로써 效力을 발생한다. 登記는 종전의 住所地的 法院에 통지되어야 한다. 同法院은 職權으로 필요한 抹消를 하여야 한다.

③ 原住所地的 商業登記簿상의 會社の 登記後 최초의 2년내에 종전의 住所地的 法院의 管轄權밖으로 한 住所移轉이 登記된 때에는 第40條 第1項에 의한 모든 事項을 登記의 公告 중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 住所가 종전의 住所地的 法院의 管轄權내의 다른 場所로 이전된 때에는 法院은 住所移轉이 合法的으로 決定되었는가와 商法典 第30條를 준수하였는가의 與否를 檢査하여야 한다. 이것이 적정한 경우에는 住所移轉을 登記하여야 한다. 登記함으로써 住所移轉은 效力을 발생한다.

第46條 [發起人の 責任] ① 發起人은 會社設立의 目的을 위하여 株式의 引受, 株式의 納入, 納入金額의 사용, 特別利益, 設立費用, 現物出資 및 財産引受에 관하여 한 記載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관하여 會社에 대하여 連帶債務者로서 責任을 진다. 또한 發起人은 資本에 대한 納入의 受領에 관하여 정하여진 場所(第54條 第3項)가 이에 적합하다는 것과 納入된 金額이 理事會의 자유로운 處分에 맡겨진다는 것에 관하여 責任을 진다. 發起人은 기타의 발생한 損害를 賠償할 義務를 방해받지 아니하고 納入되지 아니한 金額을 給與하고 設立費用중에 記載되지 아니한 報酬를 賠償하여야 한다.

② 發起人이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出資·財産引受 또는 設立費用에 의하여 會社에 損害를 가한 때에는 發起人 全員이 連帶債務者로서 會社에 대하여 賠償의 義務를 진다.

③ 發起人이 賠償義務의 原因이 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통상의 거래인의 주의를 다하여도 이를 알 수 없었을 때에는 전2項의 賠償義務를 지지 아니한다.

④ 株主의 支給不能 또는 現物出資의 履行不能 때문에 會社에 缺損이 발

생한 때에는 그 株主의 支給不能 또는 履行不能을 알면서 參加를 인정한 發起人은 會社에 대하여 連帶債務者로서 賠償의 義務을 진다.

⑤ 發起人외에도 發起人이 他人의 計算으로 株式을 인수한 때에는 그 他人은 發起人과 동일한 方法으로 責任을 진다. 그 他人은 그의 計算으로 행위를 한 發起人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사정에 관하여 自己의 無知를 주장할 수 없다.

第47條 [發起人 이외의 者의 責任] 發起人과, 他人의 計算으로 發起人이 株式을 引受한 경우에, 그 他人외에도 다음의 者는 會社에 대하여 連帶債務者로서 損害賠償의 義務을 진다.

1. 規定에 違反하여 設立費用중에 記載되지 아니한 報酬를 수령함에 있어서 隱匿이 기도되거나 실행되었음을 알았거나 알고 있어야 할 상황에 있었던 者, 또는 알면서 隱匿에 협력한 者.

2.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出資 또는 財産引受에 의하여 會社에 損害를 가한 경우에 알면서 그 損害를 가하는 것에 협력한 者.

3. 會社設立의 目的을 위하여 한 記載(第46條 第2項)가 부정확한 것이나 불완전한 것 또는 出資나 財産引受에 의하여 會社에 損害를 가한 것을 알았거나 通常의 去來人의 注意를 다하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商業登記簿上の 會社の 登記 전 또는 登記 후 2년 이내에 株式을 유통시키기 위하여 公적으로 告示한 者.

第48條 [理事會 및 監事會의 責任] 設立時에 自己의 義務을 대만이 한 理事와 監事は 會社에 대하여 連帶債務者로서 이로 인하여 발생한 損害를 賠償할 義務을 지며 특히 株式에 대한 納入의 수령에 관하여 정하여진 場所(第54條 第3項)가 적당하다는 것과 納入된 額이 理事會의 자유로운 處分에 맡겨진다는 것에 관하여 責任을 진다. 그 밖에 設立時의 理事와 監事の 注意義務와 責任에 관하여는 第93條 第4項 第3文과 第4文 및 第6項을 제외

한 第93條 및 第116條가 적용된다.

第49條 [設立檢査人の 責任] 決算檢査人の 責任에 관한 第323條 第1項 내지 第4項이 이에 준용된다.

第50條 [拋棄 및 和解] 發起人, 發起人과 함께 責任을 지는 者 및 理事와 監事에 대한 賠償請求權(第46條 내지 第48條)에 대하여 會社는 商業登記簿上의 會社の 登記 후 3년이 지나서 비로소 株主總會가 이에 同意하고 그 持分이 資本의 10분의 1에 달하는 少數株主가 議事錄에 대하여 異議를提起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포기하거나 이에 관하여 화해할 수 있다. 이 期間에 관한 制限은 賠償義務者가 支給不能이고 또 破産節次의 豫防 또는 除去를 위하여 그의 債務者와 화해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51條 [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第46條 내지 第49條에 의한 會社の 賠償請求權은 5년이 지나면 時效에 의하여 소멸된다. 消滅時效는 商業登記簿上의 會社の 登記時로부터 또는 賠償義務를 지게된 행위가 보다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行爲의 착 언제나부터 개시한다.

第52條 [事後設立] ① 會社가 현존하거나 설치될 시설 또는 다른 財産을 資本의 10분의 1 이상의 對價로 取得할 것을 內容으로 하는 契約이 商業登記簿上의 會社の 登記後 2년내에 체결되는 경우에는 株主總會의 同意와 商業登記簿上의 登記가 있어야 效力을 가진다. 株主總會의 同意 또는 商業登記簿上의 登記가 없으면 그 실행을 위한 法律行爲도 效力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第1項에 의한 契約은 다른 形式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한 書面形式이 필요하다. 契約書에는 그 同意에 관하여 결의할 株主總會의 召集時부터 株主의 閱覽을 위하여 會社の 營業所내에 備置하여야 한다. 請求가 있으면

모든 株主에게 지체없이 謄本을 교부하여야 한다. 契約書는 株主總會에 제출되어야 한다. 理事會는 議事の 開始時에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契約書는 議事錄에 附屬書類로서 첨부되어야 한다.

③ 監事會는 株主總會의 決議에 앞서 前項의 契約書を 檢査하여 書面으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事後設立報告書). 事後設立報告書에 대하여는 設立報告書에 관한 第32條 第2項과 第3項이 준용된다.

④ 그 밖에 決議에 앞서 1人 또는 數人의 設立檢査人인에 의한 檢査가 있어야 한다. 設立檢査에 관한 第33條 第3項 내지 第5項, 第34條, 第35條가 준용된다.

⑤ 株主總會의 決議는 그 決議에 참가된 資本의 4분의 3 이상을 포함하는 多數가 필요하다. 그 밖에 契約이 商業登記簿上의 會社의 登記時로부터 1년내에 체결되는 때에는 同意한 多數株主의 持分이 적어도 總資本의 4분의 1에 달하여야 한다. 定款으로 이 多數決에 같음하여 이 보다 큰 資本多數決 및 그 이외의 要件을 규정할 수 있다.

⑥ 株主總會의 同意가 있는 후에 理事會는 商業登記簿上에 登記하기 위하여 契約書を 제출하여야 한다. 이 提出에는 契約書の 原本, 正本 또는 公적 認證을 거친 謄本 및 事後設立報告書와 設立檢査人의 報告書 및 그 기초가 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事後設立報告書가 부정확 또는 불완전하거나 法律의 規定에 위반된 것 또는 취득한 財産에 대하여 부여한 對價가 부당하게 多額인 것을 設立檢査人이 표시하였거나 또는 이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登記에 대하여 疑問이 있을 때에는 法院은 그 登記를 거절할 수 있다.

⑧ 登記에 있어서는 提出된 書類의 引用으로 충분하다. 登記의 公告에는 契約締結日과 株主總會의 同意日 및 취득할 財産, 會社가 그 財産을 취득할 相對方 및 이에 대하여 부여할 對價를 記載하여야 한다.

⑨ 이 條의 規定은 財産의 取得이 企業의 目的에 해당되는 때 또는 強制競賣로 이를 取得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獨逸株式法

⑩ 第1項에 의한 契約은 商業登記簿上의 會社의 登記時로부터 2년이 經過하기 전 또는 經過한 후에 체결되었는가를 不問하고 동일한 目的物에 관한 發起人의 契約이 第27條 第2項에 의하여 會社에 대하여 效力을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無效가 되지 아니한다.

第53條 [事後設立에 있어서의 賠償請求權] 事後設立에 관하여는 會社의 賠償請求權에 관한 第46條, 第47條, 第49條 내지 第51條가 준용된다. 理事와 監事가 發起人을 대신한다. 理事와 監事は 통상의 그리고 성실한 業務執行者의 注意義務를 다하여야 한다. 商業登記簿上에 會社의 登記를 함으로써 期間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事後設立에 관한 契約의 登記가 會社의 登記를 대신한다.

第3章 會社와 社員의 法律關係(Rechtsverhältnisse der Gesellschaft und der Gesellschafter)

第53a條 [株主의 平等取扱] 株主는 동등한 條件下에서는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第54條 [株主의 주된 義務] ① 株主의 出資給與義務는 株式의 額面 또는 額面 이상의 發行價額을 그 한도로 한다.

② 定款에 現物出資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 한 株主는 株式의 額面 또는 額面 이상의 發行價額을 納入하여야 한다.

③ 會社의 申請에 앞서 納入催告된 金額은 오직 法律上的 支給手段으로, 獨逸聯邦銀行이 보증한 手票로, 理事會가 자유롭게 處分할 수 있도록 會社 또는 理事會의 名義로 된 國內의 獨逸聯邦銀行이나 金融機關에 있는 計定 또는 郵便換計定上の 貸邊記入을 통하여 납입될 수 있다. 이 納入으로 인한 理事會의 債權은 會社의 債權으로 본다.

第55條 [株主의 從된 義務] ① 株式의 讓渡에 會社의 同意가 있어야 하는 때에는 定款으로 株主에게 資本에 의한 出資외에 金錢 이외의 給與를 할 義務를 부가할 수 있다. 이 때 定款에 給與를 有償으로 할 것인가 또는 無償으로 할 것인가를 정하여야 한다. 給與의 義務와 範圍는 株式과 假株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定款으로 違約金을 정할 수 있다.

第56條 [自己株式의 引受禁止, 會社의 計算에 의한 株式引受 또는 從屬企業이나 過半數 占有된 企業에 의한 株式引受] ① 會社は 自己株式을 인수할 수 없다.

② 發起人이나 株式引受人으로서 또는 條件附 資本增加時에 부여된 轉換權이나 引受權의 行使에 의하여 從屬企業은 支配會社의 株式을 인수하지 못하며, 過半數占有된 企業은 過半數參加한 會社의 株式을 인수하지 못한다. 이 規定의 違反으로 인하여 引受가 無效가 되지는 않는다.

③ 發起人이나 株式引受人으로서 또는 條件附 資本增加時에 부여된 轉換權이나 引受權의 行使에 의하여 會社 또는 從屬企業이나 過半數占有된 企業의 計算으로 株式을 引受한 者は 그 株式을 自己의 計算으로 引受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 이 者は 會社 또는 從屬企業이나 過半數占有된 企業과의 合意에 관계없이 全出資額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이 者は 自己의 計算으로 株式을 引受하기 전에는 株式으로 인한 權利를 가지지 아니한다.

④ 資本增加時에 第1項이나 第2項을 위반하여 引受가 된 경우에는 會社의 各 理事도 역시 全出資額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理事가 그에 관하여 아무런 過失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7條【出資의 返還禁止, 利子禁止】① 出資는 株主에게 반환되어서는 아니 된다. 허용된 自己株式의 取得時의 取得價額의 지급은 出資의 返還으로 보지 않는다.

② 株主에게 利子が 약속되거나 지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會社의 解散前에는 株主에게 오직 貸借對照表上의 利益만이 分배될 수 있다.

第58條【年度剩餘金의 處分】① 定款에는 株主總會가 年度決算書를 확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年度剩餘金중에서 기타의 利益準備金으로 적립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定款規定에 의하여 최고 年度剩餘金의 2분의 1까지 기타의 利益準備金으로 적립할 수 있다. 이 때 法定準備金으로 적립할 額과 缺損移越金은 미리 年度剩餘金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② 理事會와 監事會가 年度決算書를 확정하는 경우에는 年度剩餘金의 일부, 최고 그 2분의 1까지를 기타의 利益準備金으로 적립할 수 있다. 定款으로 理事會와 監事會에 대하여 年度剩餘金의 2분의 1 이상 또는 이하를 적립할 權限을 부여할 수 있고, 上場會社의 경우에는 오직 年度剩餘金의 2분의 1 이상을 적립할 權限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定款規定에 의하여 理事會와 監事會는 기타의 利益準備金이 資本金의 2분의 1 이상을 초과하는 때 또는 그 準備金의 적립에 의하여 資本金의 2분의 1을 초과하게 되는 한 기타의 利益準備金을 적립할 수 없다. 第1項 第3文은 이에 준용된다.

②a 第1項과 第2項에 관계없이 理事會와 監事會는 固定資産과 流動資産의 財産目的物에 있어서 價值回復에 의하여 그리고 準備金部分을 포함한 特別項目에 표시될 수 없는, 稅法上의 利益確定에서 형성된 貸邊項目에 의하여 自己資本의 持分을 기타의 利益準備金으로 적립할 수 있다. 이 準備金은 貸借對照表에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附屬明細書에 기재되어야 한다.

③ 株主總會는 貸借對照表利益의 處分에 관한 決議로써 그 이상의 金額을

利益準備金으로 적립하거나 利益으로 移越할 수 있다. 또한 定款으로 이에 대한 權限을 부여한 경우에 株主總會는 第1文에 의한 이외의 處分 또는 株主에 대한 配當 이외의 處分을 결의할 수 있다.

④ 株主는, 法律이나 定款에 의하여, 第3項에 의한 株主總會의 決議를 통하여 또는 利益處分決議에 의한 追加費用으로서 貸借對照表上 利益이 株主에 대한 配當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한, 貸借對照表利益에 대하여 請求權을 가진다.

第59條【貸借對照表利益의 假支給】① 定款으로 理事會에 대하여 營業年度の 滿了後에 예측할 수 있는 貸借對照表利益을 株主에게 假支給할 權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理事會는 만료된 營業年度の 假決算에서 年度剩餘金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假支給을 할 수 있다. 假支給은 法律이나 定款에 의하여 利益準備金으로 적립할 額을 年度剩餘金에서 控除한 후 남은 金額의 최고 2분의 1 까지 허용된다. 그 밖에 假支給은 前年度の 貸借對照表利益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假支給에는 監事會의 同意가 필요하다.

第60條【利益配當】① 利益에 대한 株主의 持分은 株式의 券面額에 비례하여 정한다.

② 資本에 대한 出資가 總株式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株主는 배당받을 수 있는 利益에서 우선 이행된 出資의 100분의 4의 金額을 받는다. 利益이 이에 미달될 때에는 그 額은 이에 상응하는 低率에 따라 정한다. 營業年度중에 이행된 出資는 그 履行時로부터 경과한 期間에 비례하여 고려된다.

③ 定款으로 다른 利益配當方法을 정할 수 있다.

第61條 [從된 給與의 報償] 定款에 의하여 株主가 資本에 대한 出資에 부수하여 義務를 진 반복적 給與에 대하여는 貸借對照表利益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給與의 價額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報償을 지급할 수 있다.

第62條 [禁止된 給與를 수령한 경우의 株主의 責任] ① 株主는 이 法의 規定에 違反하여 會社로부터 수령한 給與를 會社에 반환하여야 한다. 株主가 그 金額을 利益配當으로서 받은 경우에는 그가 取得할 權利가 없음을 알았거나 重大한 過失로 알지 못할 때에 한하여 그 義務가 있다.

② 會社의 債權者가 會社로부터 辨濟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한하여 會社의 債權者도 會社의 請求權을 주장할 수 있다. 會社의 財産에 대하여 破産節次가 開始된 경우에는 破産管財人이 그 期間 동안에 會社債權者의 株主에 대한 權利를 행사한다.

③ 이 條의 規定에 의한 請求權은 給與의 受領時로부터 5년이 지나면 時效에 의하여 소멸된다.

第63條 [適時에 納入하지 아니한 效果] ① 株主는 理事會의 최고후에 出資를 納入하여야 한다. 催告는, 定款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會社公告紙에 公高하여야 한다.

② 催告된 金額을 適時에 납입하지 아니한 株主는 履行期가 도래한 때로부터 연 5%의 利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밖의 損害의 主張은 이로 인하여 排除되지 아니한다.

③ 適時에 納入하지 아니한 경우에 關하여 定款으로 違約金을 確定할 수 있다.

第64條 [延滯株主의 除名] ① 최고된 金額을 適時에 納入하지 아니한 株主에 대하여는 猶豫期間을 定하여 그 期間經過후에는 그 株主의 株式과 이행된

出資를 상실한다는 것을 豫告할 수 있다.

② 猶豫期間은 會社公告紙에 3회 公告하여야 한다. 최초의 公告는 猶豫期間이 經過하기 적어도 3월 이전에, 最終의 公告는 猶豫期間이 經過되기 적어도 1월 이전에 하여야 한다. 各 公告期間에는 적어도 3주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株式의 讓渡에 會社の 同意가 필요한 때에는 公的인 公告에 갈음하여 軟滯株主에 대한 1회의 個別催告를 함으로써 충분하다. 이 경우에는 催告의 受領時로부터 최소한 1월의 猶豫期間을 두어야 한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催告된 金額을 納入하지 아니한 株主는 會社公告紙上的 公告를 통하여 그의 株式과 이행한 出資를 會社를 위하여 상실한다고 선언된다. 그 公告에는 喪失이 선언된 株式을 그 區別表示와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舊株券에 갈음하여 新株券을 발행한다; 新株券에는 給與된 一部納入額의 滯納된 金額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金額 또는 그 후에 최고된 金額에 관한 會社の 損失에 대하여는 除名된 株主가 責任을 진다.

第65條 [前者의 納入義務] ① 除名된 株主의 前者로 株主名簿에 기재된 者는, 會社가 그의 後者로부터 納入을 받을 수 없는 한, 會社에 대하여 滯納된 金額을 지급할 義務를 진다. 會社는 종전의 株主에 대한 納入催告에 관하여 그의 직접 前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納入催告와 前者에 대한 通知時로부터 1월 이내에 納入이 없는 때에는 納入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滯納된 金額의 納入에 대하여는 新株券이 發行된다.

② 모든 前者는 2년내에 최고된 金額에 대하여만 納入할 義務를 진다. 그 期間은 株式의 讓渡를 會社の 株主名簿에 신고한 날로부터 進行한다.

③ 前者로부터 滯納金額의 納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會社는 그 株式을 지체없이 市場仲介人의 중개를 통한 公的인 去來所價格으로 그리고 去來所價格이 없는 때에는 公的인 競賣에 의하여 賣却하여야 한다. 會社の 住所에서의 競賣에서 적절한 成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株式을 직

당한 場所에서 賣却하여야 한다. 競賣의 時期, 場所 및 目的物은 공적으로
公告되어야 한다. 제명된 株主와 그의 前者에 대하여는 별도로 通知하여야
한다; 通知가 불가능한 때에는 通知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公告와 通知
는 늦어도 競賣의 2주전에 행하여야 한다.

第66條 [株主의 給與義務의 免除禁止] ① 株主와 그의 前者는 第54條와 第65
條에 의한 自己의 給與義務를 면할 수 없다. 第54條와 第65條에 의한 會社
의 債權에 대하여는 相計를 할 수 없다.

② 第1項은 이 法の 規定에 違反하여 수령한 給與의 返還義務, 除名된 株
主의 損失責任 및 現物出資의 부당한 給與로 인한 株主의 損害賠償義務에
대하여 준용된다.

③ 통상의 資本減少 또는 株式의 消却에 의한 資本減少에 의하여 株主는
出資의 給與義務를 免除받을 수 있으나, 통상의 資本減少에 의한 경우에는
최고로 資本이 감소된 金額의 범위에서 면제될 수 있다.

第67條 [株主名簿에의 記載] ① 記名株式은 所持人의 姓名, 住所 및 職業을
표시하여 會社의 株主名簿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會社에 대한 關係에 있어서는 株主名簿에 株主로 記載된 者만을 株主
로 본다.

③ 어떤 者가 不法으로 株主名簿에 株主로서 기재되었다고 會社가 생각하
는 경우에는, 會社는 미리 關係人에게 抹消意圖를 通知하고 그에게 異議의
주장을 위한 상당한 期間을 준 때에 한하여, 그 記載를 말소할 수 있다.
關係人이 期間내에 異議를 한 때에는 抹消는 중지되어야 한다.

④ 이 規定은 假株券에 대하여 준용된다.

⑤ 모든 株主에 대하여는 請求에 의하여 株主名簿의 閱覽이 허용되어야
한다.

第68條 [記名株式의 讓渡, 株主名簿의 名義改書] ① 記名株式은 背書에 의하여 讓渡될 수 있다. 背書의 方式, 所持人의 權利證明 및 그의 引渡義務에 관하여는 어음法 第12條, 第13條 및 第16條가 준용된다.

② 定款으로 株式의 讓渡에 會社의 同意를 요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理事會가 同意를 부여한다. 그러나 定款으로 監事會나 株主總會에서 同意의 부여에 관하여 결의할 것을 정할 수 있다. 定款에 同意를 거절할 수 있는 事由를 정할 수 있다.

③ 記名株式을 他人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會社에 申請하여야 한다. 株券이 제시되어야 하고 讓渡가 증명되어야 한다. 會社는 株主名簿에 그 讓渡를 기재한다.

④ 會社는 背書의 連續 및 讓渡의 表示에 관한 적정성을 檢査할 義務를 부담하나, 署名을 檢査할 義務는 지지 않는다.

⑤ 이 規定은 假株券에 준용된다.

第69條 [株式에 대한 權利의 共有] ① 하나의 株式이 數人의 權利者에 속하는 때에는 株式의 權利는 1人의 共同代理人에 의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② 株式에 대한 給與에 관하여는 數人의 權利者가 連帶債務者로서 責任을 진다.

③ 會社가 株主에 대하여 意思表示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權利者에게 共同代理人을 지명하지 않은 때에는 그 表示를 權利者의 1人에 대하여 하면 충분하다. 한 株主에게 數人의 相續人이 있는 경우에는 이 規定은 相續財産의 귀속시로부터 1월의 經過후에 하는 意思表示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

第70條 [株式占有期間의 計算] 株式의 權利의 行使를 株主가 일정한 기간동안 株式의 所持人이었을 것을 요하는 때에는 金融機關에 대한 所有權移轉의 請求權을 所有權과 동일시한다. 株主가 株式을 無償으로, 그의 受託者로부터, 包括承繼人으로서, 共同體의 清算時에 또는 保險監督法 第14條나

272條 第4項에 규정된 自己株式에 대한 準備金を 적립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第1項 第1號, 第2號와 第7號의 경우에 自己株式의 取得은 株式에 대한 券面額 또는 超過發行價額이 完納된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③ 第1項 第1號의 경우에 理事會는 次期 株主總會에 取得의 事由와 目的, 취득된 株式의 數와 券面額, 資本에 대한 取得株式의 比率 및 株式의 對價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第1項 第2號의 경우에는 株式의 취득후 1년 이내에 그 株式이 從業員에게 교부되어야 한다.

④ 第1項 또는 第2項에 대한 違反은 自己株式의 取得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取得이 第1項 또는 第2項에 위반된 한, 自己株式의 取得에 관한 債權의 行爲는 무효이다

第71a條【回避行爲】 ① 會社の 株式을 취득하기 위하여 他人에게 會社를 통한 先給金이나 貸出金 또는 擔保의 提供을 목적으로 하는 法律行爲는 무효이다. 金融機關의 일상적인 業務의 범위에서 하는 法律行爲 또는 會社나 그 結合企業의 從業員을 통한 株式의 취득을 위하여 先給金이나 貸出金 또는 擔保의 提供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會社를 통한 自己株式의 取得에 있어서 會社가 資本 또는 法律이나 定款에 의하여 적립되고 株主에 대한 支給에 사용할 수 없는 準備金を 감소시키는 것이 없이, 商法 第272條 第4項에 규정된 自己株式에 대한 準備金を 적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② 그 밖에 會社와 他人간의 法律行爲는 이에 의하여 그 他人이 會社 또는 從屬企業이나 過半數占有된 企業의 計算으로 會社の 自己株式을 取得할 權利를 가지거나 義務를 지는 경우에, 會社에 의한 株式의 取得이 第71條 第1項 또는 第2項에 違反되는 한, 無效이다.

第71b條【回避行爲】 會社は 自己株式으로부터 權利를 가지지 못한다.

第71c條 [自己株式의 讓渡와 消却] ① 會社가 第71條 第1項 또는 第2項에 違反하여 自己株式을 취득한 경우에 株式은 그 取得後 1년 이내에 양도되어야 한다.

② 會社가 第71條 第1項에 의하여 허용된 방법으로 取得하였고 아직 占有하고 있는 株式의 額面總額이 資本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比率을 초과한 部分의 株式은 그 取得後 3년 이내에 양도되어야 한다. 한다.

③ 自己株式이 第1項 또는 第2項에 규정된 期間 이내에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株式은 第237條에 의하여 消却되어야 한다.

第71d條 [第3者에 의한 自己株式의 取得] 自己의 名義로 그러나 會社의 計算으로 행위를 한 第3者는 第71條 第1項 第1號 내지 第5號와 第2項에 의하여 會社에 허용되는 한도내에서만 會社의 株式을 취득하거나 점유할 수 있다. 從屬企業이나 過半數占有된 企業에 의한 會社株式의 取得 또는 占有에 대하여 또는 자기의 名義로 그러나 從屬企業이나 過半數占有된 企業의 計算으로 第3者에 의한 取得 또는 占有에 대하여도 같다. 第71條 第2項 第1文과 第71c條 第2項에 의한 額面總額의 計算에서 이 株式들은 會社의 株式으로 본다. 그밖에 第71條 第3項과 第4項 및 第71a條 내지 第71c條가 이에 준용된다.

第71e條 [自己株式의 質取] ① 自己株式을 質物로서 취득한 경우에도 第71條 第1項과 第2項 및 第71d條에 의하여 自己株式 自己株式을 取得한 것과 같다. 그러나 金融機關은 일상적 業務의 範圍에서 第71條 第2項 第1文에 규정된 總額까지 自己株式을 質物로서 취득할 수 있다. 第71a條는 이에 준용된다.

② 株式에 대한 券面額 또는 額面超過發行價額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第1

項에 대한 違反은 自己株式의 質取를 무효로 한다. 自己株式의 質取에 관한 債權의 行爲는 그 取得이 第1項에 위반된 한 無效이다.

第72條 [公示催告節次에 의한 株式의 實效宣言] ① 株式 또는 假株券이 紛失 또는 滅失된 경우에는 그 證券은 民事訴訟法에 의한 公示催告節次에 의하여 그 失效를 선언될 수 있다. 民法 第799條 第2項 및 第800條는 이에 준용된다.

② 無記名利益配當證券(Gewinnanteilscheine auf den Inhaber)이 발행된 때에는 아직 辨濟期에 달하지 아니한 利益配當證券에 의한 請求權도 株式 또는 假株券의 失效宣言과 동시에 消滅한다.

③ 第73條 또는 第226條에 의한 株式의 失效宣言은 第1項에 의한 證券의 失效宣言과 상반되지 아니한다.

第73條 [會社에 의한 株式의 實效宣言] ① 株券의 內容이 法律關係의 변동으로 인하여 부정확하게 된 경우에 會社가 催告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訂正 또는 交換을 위하여 會社에 提出하지 아니한 株式에 대하여는 法院의 認可를 얻어 그 失效를 선언할 수 있다. 그 부정확이 株式의 券面額의 變更에 기인한 경우에는 會社는 그 券面額이 資本減少를 위하여 감소된 때에 한하여 失效를 宣言할 수 있다. 記名株式은 株主의 記載가 부정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失效를 선언할 수 없다. 法院의 決定에 대하여는 即時抗告가 허용된다. 認可를 부여하는 決定의 取消는 배제된다.

② 株式을 提出하도록 하는 催告는 失效宣言을 예고하고 法院의 認可를 인용하여야 한다. 失效宣言은 猶豫期間에 관한 第64條 第2項에 규정된 방법으로 催告를 公告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失效宣言은 會社公告紙에 公告함으로써 이루어진다. 公告에는 어떤 株式이 失效되는가를 公告만으로도 알 수 있도록 失效宣言된 株式이 記載되어야 한다.

③ 失效宣言된 株式에 갈음하여 新株式을 發行하여 權利者에게 교부하거

獨逸株式法

나, 供託權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交付 또는 供託은 法院에 通知되어야 한다.

④ 資本減少를 위하여 株式을 併合하는 경우에 한하여 第226條가 적용된다.

第74條 [汚損 또는 毀損된 株式 또는 假株券에 갈음한 新證券] 株式 또는 假株券이 汚損 또는 毀損으로 인하여 流通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그 證券의 중요한 內容과 區別標示가 아직 확실히 인식할 수 있을 때에는 權利者는 會社에 대하여 舊證券을 交付하고 新證券의 發行을 請求할 수 있다. 이 費用은 權利者가 負擔하여야 하고 先納하여야 한다.

第75條 [新利益配當證券] 株式 또는 假株券의 占有者가 그 發行에 異議를 提起한 경우에 新利益配當證券은 更新券(Erneuerungsschein)의 所持人에게 發行되어서는 아니된다. 株式 또는 假株券의 占有者가 本證券을 제시한 때에는 그에게 新利益配當證券이 교부되어야 한다.

第4章 株式會社の 組織(Verfassung des Aktiengesellschaft)

第1節 理事會(Vorstand)

第76條 [株式會社の 指揮] ① 理事會는 自己의 責任下에 會社를 指揮하여야 한다.

② 理事會는 1人 또는 數人으로 構成될 수 있다. 3백만 독일 마르크 이상의 資本을 가진 會社에 있어서는 理事會를 1人으로 구성한다는 定款의 規定이 없는 한, 理事會는 2人 이상으로 構成하여야 한다. 1人的 勞務理事(Arbeitsdirektor)의 選任에 관한 規定은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自然人이며 完全한 行爲能力者만이 理事가 될 수 있다. 자기의 財産事務의 처리에 있어서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同意를 받아야 하는 被後見人(民法 第1903條)은 理事가 될 수 없다. 刑法 第283條 내지 第283d條에 의한 犯罪로 인하여 刑을 선고받은 者는 判決의 效力發生時로부터 5년동안 理事가 될 수 없다; 그 行爲者가 官廳의 명령으로 矯導所에 수감되었던 기간은 이 期間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法院의 判決 또는 行政廳의 強制執行決定에 의하여 職業, 職業部門, 營業, 營業部門의 從事가 금지된 者에 대하여는 그 禁止가 유효한 기간동안 企業의 目的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된 對象과 일치하는 會社에 있어서 理事가 될 수 없다.

第77條【業務執行】① 理事會가 數人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理事 全員이 공동으로만 業務執行을 할 權限을 가진다. 定款 또는 理事會의 業務規程은 이와 상이한 것을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1人 또는 數人의 理事가 理事會에서 理事 過半數의 意見에 반하여 결정한다는 것을 규정할 수는 없다.

② 定款에서 業務規程의 制定을 監事會에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監事會가 理事會를 위한 業務規程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理事會 스스로 業務規程을 제정할 수 있다. 定款은 業務規程의 개별적인 問題를 구속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 業務規程에 관한 理事會의 決議는 全員一致로 하여야 한다.

第78條【代表】① 理事會는 裁判上 및 裁判外에서 會社를 대표한다.

② 理事會가 數人으로 구성된 경우에 定款이 다른 規定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理事 全員이 공동으로만 會社를 대표할 權限을 가진다. 會社에 대하여 意思表示를 하여야 할 때에는 理事 1人에 대하여 하면 충분하다.

③ 定款은 各 理事가 단독으로 또는 支配人과 공동으로 會社를 대표할 權限을 가지도록 규정할 수도 있다. 定款이 監事會에 이와 같은 決定을 할 權限을 부여한 때에는 監事會가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第2項

獨逸株式法

第2文이 준용된다.

④ 共同代表權을 가진 理事들은 그중 1인에게 특정한 業務 또는 특정 種類の 業務를 행할 수 있는 權限을 부여할 수 있다. 各 理事가 支配人과 공동으로 會社를 대표할 權限을 가진 때에도 이 規定이 준용된다.

第79條 [理事에 의한 署名] 理事는 會社의 商號 또는 理事會라는 名稱에 그의 署名을 부기함으로써 會社를 위하여 署名한다.

第80條 [業務書信의 記載事項] ① 특정한 受領人에게 송달되는 모든 業務書信에는 會社의 法的 形態와 住所, 會社所在地의 登記法院과 商業登記簿上에 기재된 會社의 登記番號 및 理事 全員과 監事會議長의 姓과 생략되지 아니한 이름이 기재되어야 한다. 理事會議長은 議長으로서 표시되어야 한다. 會社의 資本에 관한 기재가 된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資本 및 株式에 대한 額面 또는 額面超過 發行價額이 완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되지 아니한 總額이 기재되어야 한다.

② 既存의 營業關係의 範圍에서 생기고 오직 개별적인 경우에 요구되는 특별한 記載만을 삽입할 필요가 있는 통상적인 印刷書式이 사용되는 通知書 또는 報告書에는 第1項 第1文과 第2文의 記載가 요구되지 않는다.

③ 注文書는 第1項의 의미에서 業務書信으로 본다. 第2項은 注文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外國에 住所를 두고 있는 株式會社의 支店에 의하여 사용되는 모든 業務書信과 注文書에는 支店이 등기된 登記簿와 그 登記番號가 기재되어야 한다; 그 밖에 당해 外國法이 상이한 規定을 두고 있지 않는 한,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이 적용된다. 外國會社가 清算中에 있는 경우에는 그 事實 및 모든 清算人도 기재되어야 한다.

第81條 [理事會 및 理事의 代表權限의 變更] ① 理事會는 理事會의 모든 變

更 또는 理事의 代表權限의 모든 變更을 商業登記簿上에 登記하기 위하여 申請하여야 한다.

② 申請書에는 그 變更에 관한 書類의 原本 또는 公證된 謄本을 會社의 住所地의 法院을 위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③ 新任理事는 第76條 第3項 第3, 4文에 의한 그들의 選任에 위반되는 어떤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과 그들이 法院에 대한 무제한의 說明義務에 관하여 교육받았다는 것을 그 申請書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第37條 第2項 第2文은 이에 적용된다.

④ 新任理事는 法院에 보존하기 위하여 그의 署名을 하여야 한다.

第82條 [代表權 및 業務執行權의 制限] ① 理事會의 代表權限은 制限될 수 없다.

② 理事의 會社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理事는 株式會社에 관한 法規定의 範圍內에서 定款, 監事會, 株主總會 및 理事會와 監事會의 業務規程이 業務執行權限에 대하여 가한 制限을 준수할 義務를 진다.

第83條 [株主總會決議의 準備와 執行] ① 理事會는 株主總會의 要求에 따라 總會의 權限에 속하는 措置를 준비할 義務를 진다. 株主總會의 同意를 얻어야만 效力이 발생되는 契約의 準備와 締結에 관하여도 같다. 株主總會의 決議는 同措置 또는 契約에 대한 同意를 위하여 필요한 多數를 요한다.

② 理事會는 株主總會가 그 權限의 範圍內에서 결의한 措置를 실행할 義務를 진다.

第84條 [理事會의 選任 및 解任] ① 監事會는 理事를 最長 5년의 任期로 선임한다. 再選任 또는 任期의 延長은 각각 最長 5년간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것은 팔라도 從來 任期의 滿了 1년전에 행하여질 수 있는 새로운 監事會의 決議를 요한다. 다만 5년 이하의 任期로 選任된 경우에 任期의 延長

은 그로 인하여 全任期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監事會의 새로운 決議없이 정하여질 수 있다. 이 規定은 任用契約에 준용된다; 다만 同契約은 任期를 연장하는 경우에 그 滿了時까지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數人이 理事로 選任된 경우에 監事會는 1人의 理事를 理事會議長에 지명할 수 있다.

③ 重大한 事由가 있는 경우에 監事會는 理事의 選任과 理事會議長의 指名을 撤回할 수 있다. 특히 중대한 義務違反, 정상적인 業務執行能力의 缺如, 또는 명백히 불합리한 事由로 인하여 信任이 박탈되지 않는 한 株主總會에 의한 不信任은 이러한 重大한 事由에 해당한다. 이 規定은 최초의 監事會가 選任한 理事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撤回는 그 無效가 確定判決에 의하여 확정될 때까지 效力을 가진다. 任用契約에 의한 請求權에 관하여는 一般規定이 적용된다.

④ 勞務理事의 選任 또는 그 選任의 撤回에 관한 監事會決議의 特別多數決에 관한 1951년 5월 21일의 '鑛山企業과 鐵鋼生産企業의 理事會와 監事會에 있어서 勤勞者의 共同決定에 관한 法律'(聯邦官報 I 347면) - 몬탄(Montan)共同決定法 - 의 規定은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第85條 [法院에 의한 選任] ① 필요한 理事가 부족한 때에 급박한 경우에는 法院이 利害關係人의 申請에 따라 理事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決定에 대하여는 即時抗告가 허용된다.

② 法院에 의하여 選任된 理事의 職務는 어느 경우에도 缺員이 充員되는 대로 소멸한다.

③ 法院에 의하여 選任된 理事는 適정한 現金支出의 補償 및 그의 활동에 대한 報酬의 請求權을 가진다. 法院에 의하여 選任된 理事와 會社가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法院이 支出額과 報酬를 확정한다. 이 決定에 대하여는 即時抗告가 허용된다. 그 외의 抗告는 배제된다. 確定力있는 決定에

따라 民事訴訟法에 의한 強制執行이 행하여진다.

第86條 [理事의 利益參加] ① 理事에게는 그의 活動에 대하여 利益의 參加가 허용될 수 있다. 利益參加는 원칙으로 會社의 年度利益의 配當이어야 한다.

② 理事에게 會社의 年度利益의 配當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配當은 前年度의 損失移越金 및 法律 또는 定款에 의하여 年度剩餘金중에서 利益準備金으로 적립하여야 할 金額을 공제한 年度剩餘金에 의하여 算定한다. 이에 반하는 정함은 無效이다.

第87條 [理事의 給與에 관한 原則] ① 監事會는 各 理事의 總給與(俸給・利益參加・費用補償・保險料・手數料 및 各종의 附隨的 給與)의 確定時에 그 總給與가 理事의 職務와 會社의 狀況에 相當한가에 관하여 배려하여야 한다. 이 規定은 退職金, 遺族給與와 이와 유사한 給與에 관하여 준용된다.

② 總給與의 確定後에 會社의 事情이 본질적으로 惡化되어 第1項 第1文에 제시된 給與의 繼續附與가 會社에 대하여 중대한 不公正이 될 때에는 監事會가, 第85條 第3項의 경우에는 監事會의 申請에 따라 法院이 상당한 減額을 할 權限을 가진다. 그 밖의 任用契約에 관한 사항은 減額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理事는 다음 4분의 1 曆年の 終期에 6주간의 告知期間으로써 그의 任用契約을 해지할 수 있다.

③ 會社財産에 관하여 破産節次가 개시되고 破産管財人이 理事의 任用契約을 解止한 경우에 理事는 雇傭關係의 終了로 인하여 그에게 발생한 損害에 대하여 雇傭關係의 終了時로부터 2년내에만 그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規定은 會社에 관하여 法院에 의한 和解節次가 개시되고 會社가 任用契約의 해지한 때에도 적용된다.

第88條 [競業禁止] ① 理事는 監事會의 同意없이 商業을 영위하거나 自己 또

는 他人의 計算으로 會社의 營業部類에 속하는 去來를 하지 못한다. 또한 理事는 監事會의 同意없이 다른 會社의 理事나 業務執行者 또는 無限責任社員이 되지 못한다. 監事會의 同意는 특정한 商業이나 商事會社 또는 특정한 種類의 去來에 한하여 부여될 수 있다.

② 理事가 이 條의 禁止에 違反한 때에는 會社는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會社는 이에 대신하여 理事가 自己의 計算으로 한 去來를 會社의 計算으로 한 것으로 보거나 他人의 計算으로 한 去來로 인하여 얻은 報酬를 引渡하거나 그의 報酬請求權을 讓渡하도록 請求할 수 있다.

③ 會社의 請求權은 그 밖의 理事와 監事가 損害賠償義務를 발생시킨 행위를 안 때로부터 3월을 經過함으로써 消滅時效에 걸린다. 同請求權은 理事와 監事が 알거나 알지 못한 것을 불문하고 請求權의 成立時로부터 5년을 經過함으로써 消滅時效에 걸린다.

第89條 [理事에 대한 信用附與] ① 會社는 理事에 대하여 오직 監事會의 決議에 의거하여서만 信用을 부여할 수 있다. 決議는 특정한 信用行爲 또는 특정한 種類의 信用行爲에 관하여서만 그리고 3월 이하의 期間에 대하여 事前에 채택될 수 있다. 同決議로써 信用의 利子 및 返還을 규율하여야 한다. 理事에게 귀속될 給與를 초과하는 引出의 許諾, 특히 給與의 先給(Vorschüssen)에 의한 引出의 許諾도 信用의 附與와 동일하다. 이 規定은 1個月의 俸給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信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會社는 그 支配人과 모든 營業에 관하여 授權된 商事代理人(Handlungsbevollmächtigten)에게 監事會의 同意를 얻은 때에만 信用을 부여할 수 있다. 支配會社는 從屬企業의 法定代表者, 支配人 또는 모든 營業에 관하여 授權된 商事代理人에게 監事會의 同意를 얻은 때에만 信用을 부여할 수 있으며, 從屬會社는 支配企業의 法定代表者, 支配人 또는 모든 營業에 관하여 授權된 商事代理人에게 支配企業의 監事會의 同意를 얻은 때에만 信用을 부여할 수 있다. 第1項 第2文 내지 第5文은 이에 준용된다.

③ 第2項은 理事, 기타의 法定代表者, 支配人 또는 全營業에 관하여 授權된 商事代理人의 配偶者 또는 未成年子女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第2項은 前記한 者의 計算으로 또는 理事, 기타의 法定代表者, 支配人 또는 全營業에 관하여 授權된 商事代理人의 計算으로 行爲를 한 第3者에 대한 信用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④ 理事, 支配人 또는 全營業에 관하여 授權된 商事代理人이 동시에 다른 法人의 法定代表者 또는 監事이거나 人的會社의 社員인 경우에 會社는 그 法人 또는 人的會社에 대하여 監事會의 同意를 얻은 때에만 信用을 부여할 수 있다; 第1項 第2文 및 第3文은 이에 준용된다. 이 規定은 法人 또는 人的會社가 그 株式會社와 結合되어 있는 경우 또는 會社가 法人 또는 人的會社에 공급한 商品에 대한 辨濟를 위하여 信用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第1項 내지 第4項에 違反하여 信用이 부여된 경우에 監事會가 이를 追認하지 아니한 때에는 反對의 合意 與否에 관계없이 즉시 그 信用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會社가 金融機關인 때에는 第1項 내지 第5項 대신에 信用制度에 관한 法の 規定이 적용된다.

第90條 [監事會에 대한 報告] ① 理事會는 監事會에 다음 각호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장래의 業務執行에 관하여 예정된 營業政策과 기타의 基本的인 問題;
2. 會社의 收益性, 특히 自己資本의 收益性;
3. 營業의 經過, 특히 賣上高(Umsatz)와, 會社의 狀況;
4. 會社의 收益性 또는 流動性(Liquidität)에 관하여 중대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業務.

그 밖에 監事會議長에게 기타의 重大한 事由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理事會가 알고 있는 結合企業의 營業經過로서 會社의 狀況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事由로 보아야 한다.

② 第1項 第1文 第1號 내지 第4號에 의한 報告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第1號에 의한 報告는 狀況의 變更 또는 새로운 問題 때문에 지체없는 報告가 필요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소한 年1回;

2. 第2號에 의한 報告는 年度決算에 관하여 심의할 監事會의 會議中에;

3. 第3號에 의한 報告는 규칙적으로 최소한 4분의 1曆年 마다;

4. 第4號에 의한 報告는 가능한 한 監事會가 業務開始 前에 意見을 표명할 機會를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③ 監事會는 理事會에 대하여 언제나 會社의 業務(Angelegenheit), 結合企業에 대한 會社의 法的 및 營業的 關係와 會社의 狀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結合企業의 營業經過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각 監事도 報告를 요구할 수 있으나, 監事會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理事會가 報告를 거절한 때에는 다른 監事が 그 요구를 지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報告가 요구될 수 있다.

④ 報告는 양심적이고 성실한 說明의 原則에 상응하여야 한다.

⑤ 各 監事는 報告에 관하여 알 權利를 가진다. 報告가 書面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監事會가 다른 결의를 하지 아니하는 한, 要求에 따라 各 監事에게 교부되어야 한다. 監事會議長은 第1項 第2文에 의한 報告에 관하여 늦어도 次期 監事會의 會議에서 監事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91條 [簿記] 理事會는 필요한 商業帳簿의 記載에 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第92條 [損失, 債務超過 또는 支給不能時の 理事의 義務] ① 年度貸借對照表 또는 中間貸借對照表의 作成에서 資本의 半額에 달하는 損失이 발생하였음이 밝혀지거나 義務에 따른 判斷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할 때에는 理事會는 遲滯없이 株主總會를 召集하여 이를 總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會社가 支給不能이 된 때에는 有責의인 지체없이 늦어도 支給不能이 발생한 후 3주내에 破産節次 또는 裁判上 和議節次の 開始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規定은 會社財産이 債務를 完濟할 수 없게된 경우에 준용된다. 理事會가 통상적이고 성실한 營業指揮者의 注意로써 裁判上의 和議節次の 開始를 추진한 경우에는 그 申請은 有責의인 遲滯가 아니다.

③ 會社가 支給不能에 빠지거나 債務超過가 된 후에는 理事會는 支給을 하지 못한다. 이 規定은 역시 이 時期 後에도 통상적이고 성실한 營業指揮者의 注意에 合意되는 支給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93條 [理事의 注意義務와 責任] ① 理事는 그의 業務執行에 있어서 통상적이고 성실한 營業指揮者의 注意를 하여야 한다. 理事는 理事會에서의 그의 活動을 통하여 知得한 會社의 機密事項과 秘密, 특히 營業秘密이나 業務秘密에 관하여 默秘를 하여야 한다.

② 그 義務를 違反한 理事는 會社에 대하여 連帶債務者로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損害를 賠償할 義務를 진다. 理事가 통상적이고 성실한 注意를 다 하였는가의 與否에 관하여 疑問이 있는 때에는 理事가 立證責任을 진다.

③ 理事가 특히 이 法에 違反하여 다음의 事項을 행한 때에는 賠償의 義務를 진다.

1. 株主에게 出資가 還給된 때,
2. 株主에게 利子 또는 利益配當이 지급된 때,
3. 당해 會社 또는 他會社의 自己株式이 引受되거나 取得되거나, 質物로 취득되거나 또는 消却된 때,
4. 株式이 額面 또는 額面超過發行價額의 全額納入 前에 發行된 때,
5. 會社財産이 分配된 때,
6. 會社가 支給不能에 빠지거나 債務超過가 된 후에, 支給이 이행된 때,
7. 監事에게 報酬가 支給된 때,
8. 信用이 附與된 때,

9. 條件附 資本増加의 경우에 確定된 目的 이외에 또는 對價의 全額納入 前에 引受株(Bezugsaktien)가 發行된 때.

④ 그 行爲가 株主總會의 적법한 決議에 의한 경우에는 會社에 대하여 賠償義務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監事會가 行爲를 승인한 것으로 인하여 賠償義務가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會社는 請求權의 成立時로부터 3년 후에 그 리고 株主總會가 同意하고 그 持分이 합하여 資本의 10분의 1에 달하는 少數株主가 議事錄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賠償請求權을 拋棄하거나 이에 관하여 和解할 수 있다. 賠償義務者가 支給不能인 경우 및 破産節次의 예방 또는 회피하기 위하여 그의 債權者와 和解하는 경우에는 期間的인 制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會社의 賠償請求權은 會社債權者가 會社로부터 辨濟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그 會社債權者에 의하여서도 행사될 수 있다. 다만 第3項의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理事가 통상적이고 성실한 營業指揮者의 注意를 현저하게 위반한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第2項 第2文은 이에 준용된다. 債權者에 대하여는 會社의 拋棄나 和解로 인하여 또는 그 行爲가 株主總會의 決議에 의거하였다는 것으로 인하여 賠償義務가 소멸되지 아니한다. 會社의 財産에 관하여 破産節次가 개시된 경우에 이 期間 동안에는 破産管財人이 理事에 대하여 債權者의 權利를 行使한다.

⑥ 이 規定에 의한 請求權은 5년이 經過함으로써 時效에 의하여 소멸한다.

第94條 [理事의 代理人] 理事에 대한 規定은 그의 代理人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第2節 監事會(Aufsichtsrat)

第95條 [監事の 數] 監事會는 3人の 監事로 구성한다. 定款으로 이보다 많은 일정한 數를 정할 수 있다. 그 數는 3의 배수이어야 한다. 監事の 數는 會

社의 資本에 따라 다음의 數를 그 最高限度로 한다.

3,000,000 독일 마르크까지는 9인

3,000,000 독일 마르크 이상은 15인

20,000,000 독일 마르크 이상은 21인

1976년 5월 4일의 勤勞者의 共同決定에 관한 法律(聯邦官報 I 1153면), 몬탄共同決定法(Montan-Mitbestimmungsgesetz)과 1956년 8월 7일의 鑛山企業과 鐵鋼生産企業의 理事會와 監事會에 있어서 勤勞者의 共同決定에 관한 法律을 보충하기 위한 法(聯邦官報 I 707면) - 共同決定法補充法(Mitbestimmungsergänzungsgesetz) -의 상이한 規定은 앞의 規定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第96條 [監事會의 構成] ① 監事會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共同決定法이 적용되는 會社에 있어서는 株主 및 勞働者인 監事로 구성되고,

몬탄共同決定法이 적용되는 會社에 있어서는 株主와 勞働者인 監事 및 그 밖의 數人의 監事로 구성되며,

共同決定法補充法 第5條 내지 第13條가 적용되는 會社에 있어서는 株主 및 勞働者인 監事와 그 밖의 1人의 監事로 구성되고,

1952년의 經營組織法(Betriebsverfassungsgesetz) 第76條 第1項이 적용되는 會社에 있어서는 株主 및 勞働者인 監事로 구성되며,

그 밖의 會社에 있어서는 株主인 監事만으로 구성된다.

② 第97條 또는 第98條에 의하여 理事會의 公告 또는 法院에 의한 決定에 기재된 法規定이 적용되어야 할 경우에 한하여 직전에 적용된 法規定 이외의 規定에 의하여 監事會가 구성될 수 있다.

第97條 [監事會의 構成에 관한 公告] ① 理事會는 監事會가 적용되어야 할 法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성되었다고 생각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會

獨逸株式法

社公告紙에 公告하여야 하며, 동시에 會社 및 큰企業의 全營業所에 揭示함으로써 公告하여야 한다. 그 公告에는 理事會의 견해에 따르면 적용되어야 할 法規定이 記載되어야 한다. 申請權者가 第98條 第2項에 의하여, 聯邦官報에 公告한 후 1월 이내에 第98條 第1項에 의한 管轄法院에 訴訟을 提起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재된 法規定에 따라 監事會가 구성된다는 것을 지적하여야 한다.

② 聯邦官報에 公告한 후 1월 이내에 第98條 第1項에 의한 管轄法院에 訴訟이 提起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理事會의 公告에 계기된 法規定에 따라서 새로운 監事會가 구성되어야 한다. 監事會의 構成, 監事の 數 및 監事の 選任・解任 및 派遣(Entsendung)에 관한 定款의 規定은 提訴期間의 滿了後 소집된 최초의 株主總會의 滿了와 동시에 늦어도 이 期間의 滿了로부터 6월 후에는, 今後 적용하여야 할 法規定에 반하는 한도에서, 그 效力을 잃는다. 이와 동시에 從來 監事の 職務는 소멸한다. 6월의 期間 이내에 개최된 株主總會는 效力을 잃게 된 定款規定 대신에 單純多數決로써 새로운 定款規定을 결의할 수 있다.

③ 第98條와 第99條에 의한 裁判上の 節次가 係屬중인 때에는 監事會의 構成에 관한 公告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98條 [監事會의 構成에 관한 法院의 決定] ① 어떤 法規定에 의하여 監事會가 구성될 것인가에 관하여 紛爭이 있거나 불확실한 때에는 申請에 따라 會社의 住所地를 管轄하는 州法院(民事部)이 專屬의로 결정한다. 州政府는 통일적인 判決의 確保에 필요한 경우에는 法規命令으로 다수의 州法院의 管轄區域을 위하여 1개의 州法院에 그 決定을 위탁할 수 있다. 州政府는 그 權限을 州司法廳에 위탁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申請權者는 다음과 같다.

1. 理事會,
2. 各 監事,

3. 各 株主,
 4. 會社の 總經營協議會 또는 會社에 하나의 經營協議會만 있는 경우에는 그 經營協議會(Betriebsrat),
 5. 그 適用에 관하여 紛爭이 있거나 불확실한 法規定에 의하여 소속된 勞動者が 그 自身 또는 選舉人을 통하여 會社の 監事の 選任에 참여한 다른 企業의 總經營協議會 또는 다른 企業에 하나의 經營協議會만 있는 경우에는 그 經營協議會,
 6. 그 適用에 관하여 紛爭이 있거나 불확실한 法規定에 의하여 自身 또는 選舉人을 통하여 會社の 監事の 選任에 관여한 勞動者の 10분의 1 또는 100인 이상,
 7. 그 適用에 관하여 紛爭이 있거나 불확실한 法規定에 의하여 推薦權을 갖게 될 勞動組合(Gewerkschaft)의 最高組織(Spitzenorganisation),
 8. 그 適用에 관하여 紛爭이 있거나 불확실한 法規定에 의하여 推薦權을 갖게 될 勞動組合.
- 共同決定法の 適用 또는 共同決定法規定의 適用에 다툼이 있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第1文에 의한 申請權者 이외에 각 選舉權을 가진 勞動者の 10분의 1, 共同決定法 第3條 第3項 第1號에 개기된 選舉權을 가진 職員の 10분의 1 또는 共同決定法上の 의미에서 選舉權을 가진 管理職員の 10분의 1도 역시 申請權이 있다.
- ③ 第1項과 第2項은 決算檢查人이 共同決定法補充法 第3條 또는 第16條에 의하여 기준으로 하여야 할 去來關係를 정확히 조사하였는가의 與否에 관하여 紛爭이 있는 경우에 준용된다.
- ④ 監事會의 構成이 法院의 決定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決定에 기재된 法規定에 의하여 새로운 監事會가 구성되어야 한다. 第97條 第2項은 6월의 期間이 確定力の 발생과 동시에 개시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준용된다.

第99條【節次】 ① 節次에 관하여는, 第2項 내지 第5項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非訟事件에 관한 法律이 적용된다.

② 州法院은 이 申請을 會社公告紙에 公告하여야 한다. 理事會와 各 監事 및 第98條 第2項에 의하여 申請權을 가진 經營協議會, 最高組織과 勞動組合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州法院은 이유를 명시한 決定으로 재판한다. 그 決定에 대하여는 即時抗告가 허용된다. 即時抗告는 法律의 違反만을 근거로 할 수 있다; 民事訴訟法 第550條·第551條·第561條 및 第563條는 이에 준용된다. 抗告는 辯護士에 의하여 서명된 抗告書의 提出을 통하여서만 할 수 있다. 抗告에 관하여는 州高等法院(Oberlandesgericht)이 결정한다. 非訟事件에 관한 法律 第28條 第2項과 第3項은 이에 준용된다. 再抗告는 배제된다. 州政府는 동일한 判決의 확보에 필요한 경우에 法規命令으로 다수의 州高等法院의 管轄區域을 위하여 1개의 州高等法院 또는 州最高法院(das Oberste Landesgericht)에 抗告에 대한 決定을 위탁할 수 있다. 州政府는 이 權限을 州司法廳에 위탁할 수 있다.

④ 法院은 法院의 決定을 申請者 및 會社에 송달하여야 한다. 또한 法院은 그 決定을 이유의 명시없이 會社公告紙에 公告하여야 한다. 抗告는 第98條 第2項에 의한 모든 申請權者가 할 수 있다. 抗告期間은 聯邦官報에 決定을 公告함과 동시에 進行을 개시하지만, 申請者와 會社에 대하여 송달하기 전에는 進行되지 아니한다.

⑤ 決定은 確定力에 의하여 비로소 效力을 발생한다. 이 決定은 모든 者에 대하여 效力을 가진다. 理事會는 確定力을 가진 決定을 지체없이 商業登記를 위하여 提出하여야 한다.

⑥ 節次の 費用에 관하여는 訴訟費用法(Kostenordnung)이 적용된다. 第1審의 節次에 관하여는 全手數料의 4배가 징수된다. 第2審에 관하여는 동일한 手數料가 징수된다. 抗告가 그 成果를 거둔 경우에도 같다. 法院의 決定이 있기 전에 申請 또는 抗告가 撤回된 경우에 手數料는 半額으로 감액된다.

事件의 價額(Geschäftswert)은 職權으로 確定되어야 한다. 그 價額은 10만 독일 마르크를 單位로 하여 규칙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訴訟費用法 第30條 第2項에 의하여 결정된다. 訴訟費用의 債務者는 會社이다. 다만 그것이 公평에 합치된 때에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申請者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關係人의 費用은 補償하지 아니한다.

第100條 [監事에 관한 人的要件] ① 監事는 自然人이며 無制限의 行爲能力을 가진 者만이 될 수 있다. 자기의 財産事務의 처리에 있어서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同意를 받아야 하는 被後見人(民法 第1903條)은 監事가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監事가 될 수 없다.

1. 이미 法律上 監事會를 구성하여야 할 10개의 商事會社 또는 鑛業法上の 産業體의 監事인 者,

2. 그 會社에 從屬된 企業의 法定代表者인 者,

3. 그 監事會에 당해 會社의 理事가 속하여 있는 다른 資本會社 또는 鑛業法上の 産業體의 法定代表者인 者.

콘체른의 支配企業의 法定代表者(個人商人인 경우에는 營業主)가 콘체른에 속하는 商事會社 또는 鑛業法上の 鑛山會社로서 法律上 監事會를 구성하여야 할 會社에서 차지하는 5개까지의 監事地位는 第1文 第1號에 의한 最高數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勞働者인 監事 및 그 밖의 監事에 대한 다른 人的 要件은 共同決定法, 문단共同決定法, 共同決定法補充法 및 1952년의 經營組織法에 의하여 정한다.

④ 株主總會에서 候補者推薦(Wahlvorschläge)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選出되거나 定款에 의거하여 監事會에 파견된 監事에 대하여서만은 定款으로 人的 要件을 요구할 수 있다.

獨逸株式法

第101條 [監事の選任] ① 監事は 그가 監事會에 파견되어야 하거나, 共同決定法, 共同決定法補充法 또는 1952년의 經營組織法에 의하여 勞働者인 監事로서 선임되지 아니하는 한, 株主總會에서 선임된다. 株主總會는 다만 單行共同決定法 第6條와 第8條에 의하여만 候補者推薦에 구속된다.

② 監事會에 監事を 파견할 權利는 그것이 共同決定法補充法에 의하여 勞働組合의 最高組織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한 오직 定款으로 그리고 일정한 株主 또는 일정한 株式의 所持人에 대하여서만 설정될 수 있다. 일정한 株式의 所持人에 대하여는 株式이 記名式이고 그 讓渡에 會社의 同意를 얻어야 하는 때에 한하여 派遣權이 부여될 수 있다. 派遣權者의 株式은 특별한 種類로 보지 아니한다. 派遣權은 전체적으로 法律 또는 定款에 정하여져 있는 株主인 監事の 數의 3분의 1까지 부여할 수 있다.

1960년 7월 21일의 폴크스바겐 有限會社의 民營化를 위한 持分權移轉에 관한 法 第4條 第1項(聯邦官報 I 585면)은, 최종적으로 1970년 7월 31일의 폴크스바겐 有限會社의 民營化를 위한 持分權移轉에 관한 第2次法(聯邦官報 I 1149면)을 통하여 개정되었는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監事の 代理人은 選任될 수 없다. 다만 單行共同決定法 또는 共同決定法補充法에 의거하여 다른 監事の 提案에 따라 선임된 기타의 監事を 除外한 모든 監事を 위하여 그가 任期滿了 前에 缺員될 경우에 監事が 될 補充監事(Ersatzmitglied)를 選任할 수 있다. 補充監事は 監事와 동시에만 選任될 수 있다. 補充監事の 選任과 選任의 無效 및 取消에 관하여는 監事に 대하여 적용할 規定이 적용된다.

第102條 [監事の任期] ① 監事の 任期開始 後 第4營業年度에 관한 責任免除(Entlastung)를 결의한 株主總會의 終結時까지 보다 長期로 選任될 수 없다. 任期가 개시된 營業年度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補充監事の 職務는 늦어도 缺員된 監事の 任期滿了와 동시에 소멸한다.

第103條 [監事の 解任] ① 總會에서 候補者推薦에 구속됨이 없이 선임된 監事は 總會에 의하여 任期滿了 前に 解任될 수 있다. 그 決議는 行使된 議決權의 4분의 3이상을 포함하는 다수를 요한다. 定款으로 이와 다른 多數決과 기타의 要件을 정할 수 있다.

② 定款에 의거하여 監事會에 파견된 監事は 派遣權者에 의하여 언제든지 解任되고 他人으로 보충될 수 있다. 定款에 규정된 派遣權의 要件이 상실된 경우에 株主總會는 單純多數決로써 파견된 監事を 解任할 수 있다.

③ 法院은 監事會의 申請에 따라 監事에게 一身上의 중대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그 監事を 解任하여야 한다. 監事會는 申請에 관하여 單純多數決로써 결의한다. 그 監事が 定款에 의거하여 監事會에 파견되었던 경우에는 그들의 持分이 합산하여 資本의 10분의 1 또는 200만 독일 마르크의 額面에 달하는 株主도 申請을 할 수 있다. 法院의 決定에 대하여는 即時抗告가 허용된다.

④ 株主總會에 의하여 候補者推薦에 구속됨이 없이 선임된 者도 아니고 定款에 의거하여 監事會에 파견된 者도 아닌 監事の 解任에 관하여는 第3項을 除外하고 共同決定法, 몬탄-共同決定法, 共同決定法補充法 및 1952년의 經營組織法을 적용한다.

⑤ 補充監事の 解任에 관하여는 그 대신에 補充監事を 선임하게 된 監事の 解任에 관한 規定이 적용된다.

第104條 [法院에 의한 選任] ① 決議能力에 필요한 數의 監事が 監事會에 속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 法院은 理事會, 監事 또는 株主의 申請에 따라 監事を 이 數까지 보충하여야 한다. 理事會는, 次期 監事會의 會議前に 適時的 보충이 기대될 수 없는 한, 지체없이 申請을 할 義務를 진다. 監事會에 勞働者인 監事로도 구성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者도 申請을 할 수 있다.

1. 會社の 總經營協議會, 또는 會社에 하나의 經營協議會만 있는 경우에

獨逸株式法

는 그 經營協議會 및 會社가 콘체른의 支配企業인 경우에는 콘체른經營協議會,

2. 소속된 勞働자가 그 自身 또는 選舉人을 통하여 選任에 참여한 다른 企業의 總經營協議會 또는 다른 企業에 하나의 經營協議會만 있는 경우에는 그 經營協議會,

3. 自身이 또는 選舉人을 통하여 選任에 관여한 勞働자의 10분의 1 또는 100인 이상,

4. 勞働자인 監事を 추천할 權利를 가진 勞働組合의 最高組織,

5. 勞働자인 監事を 추천할 權利를 가진 勞働組合.

監事會가 共同決定法에 의하여 勞働자인 監事로도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第3文에 의한 申請權者 이외에 選舉權을 가진 勞働자의 10분의 1, 共同決定法 第3條 第3項 第1號에 계기된 選舉權을 가진 職員의 10분의 1 또는 共同決定法上的 의미에서 選舉權을 가진 管理職員의 10분의 1도 역시 각각 申請權이 있다. 法院의 決定에 관하여는 即時抗告가 허용된다.

② 監事會에 3월 이상 法律 또는 定款으로 確定된 數보다 少數의 監事만이 속하여 있는 경우에 法院은 申請에 따라 監事を 이 數까지 보충하여야 한다. 급박한 경우에는 法院은 監事會의 申請에 따라 그 期間의 經過 前에도 監事會를 보충하여야 한다. 申請權은 第1項에 의하여 決定된다. 法院의 決定에 대하여는 即時抗告가 허용된다.

③ 第2項은 勞働자가 共同決定法, 몬단-共同決定法, 또는 共同決定法補充法에 의하여 共同決定權을 가진 監事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條件을 붙여서 적용된다.

1. 法院은 몬단-共同決定法 또는 共同決定法補充法에 의하여 다른 監事の 推薦에 따라 선임된 그 밖의 監事に 관하여 監事會를 보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第1號에 계기된 그 밖의 監事を 除外하고 法律 또는 定款에 의하여 監事會를 구성하여야 할 모든 監事が 監事會에 속하여 있지 아니한 때에

는 항상 급박한 경우에 해당한다.

④ 監事會가 勞働者인 監事로도 구성되어야 할 경우에 法院은 監事會를 그 구성에 基準이 되는 數的 比率이 되도록 보충하여야 한다. 監事會가 그 決議能力을 갖추기 위하여 보충되는 경우에는 이 規定은 決議能力에 필요한 監事の 數가 이러한 比率의 維持를 가능하게 하는 때에만 적용된다. 法律 또는 定款에 의하여 人的인 觀點에서 특별한 要件을 구비하여야 할 監事が 보충되어야 할 경우에는 法院에 의하여 選任된 監事も 이 要件을 구비하여야 한다. 그 選任時에 勞動組合의 最高組織, 勞動組合 또는 經營協議會가 推薦權을 가졌던 監事が 보충되어야 할 경우에 法院은 會社의 중요한 利益 또는 被推薦人의 選任의 普遍性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이 推薦機關의 推薦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規定은 監事が 選舉人에 의하여 선임되어야 할 경우에는 選舉人을 선임하여야 할 企業의 經營協議會의 共同推薦에 관하여 적용된다.

⑤ 法院에 의하여 選任된 監事の 職務는 缺員이 除去되는 대로 언제나 소멸한다.

⑥ 法院에 의하여 選任된 監事は 積정한 現金支出의 補償請求權을 가지며, 會社의 監事に 대하여 報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의 活動에 대한 報酬請求權을 가진다. 監事の 申請에 따라 法院은 支出額과 報酬를 確定한다. 法院의 決定에 대하여는 即時抗告가 허용된다. 再抗告는 배제된다. 確定力 있는 決定에 따라 民事訴訟法에 의한 強制執行이 행하여질 수 있다.

第105條 [理事와 監事の 兼任禁止] ① 監事は 동시에 당해 會社의 理事, 理事의 계속적인 代理人, 支配人 또는 全營業에 관하여 授權된 商事代理人이 될 수 없다.

② 監事會는 미리 한정된 期間에 대하여 最長 1년 이내로 監事를, 결원되거나 지장이 있는 理事의 代理人으로 選任할 수 있다. 再選 또는 任期延長은 이로 인하여 任期가 합산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용된

다. 理事의 代理人으로서의 任期中에 監事는 監事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다. 第88條의 競業禁止는 이 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06條 [監事會에 있어서 變更의 公告] 理事會는 監事の 개별적인 交替를 지체없이 會社公告紙에 公告하고 商業登記를 위하여 이 公告를 제출하여야 한다.

第107條 [監事會의 内部規律] ① 監事會는 定款의 상세한 規定에 따라서 監事중에서 1人의 議長과 최소한 1人의 代理人을 선임하여야 한다. 理事會는 피선된 者를 商業登記를 위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議長이 有故인 때에 한하여 代理人은 議長의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② 監事會의 會議에 관하여는 議事錄을 작성하고 議長이 이에 署名하여야 한다. 議事錄에는 會議의 場所와 日字, 參席者, 議事日程의 主題, 중요한 議事內容 및 監事會의 決議를 記載하여야 한다. 第1文 또는 第2文에 대한 違反은 決議를 無效로 하지는 아니한다. 請求에 따라 各 監事에게 會議錄의 謄本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監事會는 특히 監事會의 議事 및 決議를 준비하거나 監事會의 決議의 實行을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그 構成員중에서 1人 또는 數人의 委員을 選任할 수 있다. 第1項 第1文, 第59條 第3項, 第77條 第2項 第1文, 第84條 第1項 第1文과 第3文, 第2項과 第3項 第1文, 第111條 第3項, 第171條, 第314條 第2項과 第3項에 의한 諸職務 및 監事會의 同意를 얻은 때에 한하여 일정한 種類의 業務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決議는 委員會로 하여금 監事會에 대신하여 결의하도록 위임될 수 없다.

第108條 [監事會의 決議] ① 監事會는 決議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監事會의 決議能力은 法律에 規定이 없는 한 定款으로 정하여질 수 있다. 決議能力이 法律이나 定款에 규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監事會는 法律

또는 定款에 의하여 監事會가 구성되어야 하는 監事 全員の 최소한 2분의 1이 決議에 참가한 때에 決議能力을 가진다.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한 3人の 監事が 決議에 참가하여야 한다. 法律 또는 定款으로 확정된 數보다 監事會에 少數의 監事が 속하여 있다는 것은 비록 監事會의 構成에 관하여 基準이 되는 數的 比率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決議能力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③ 출석하지 않은 監事は 書面에 의한 投票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監事會와 委員會의 決議에 참가할 수 있다. 書面에 의한 投票는 다른 監事を 통하여 提出할 수 있다. 書面에 의한 投票는 監事會에 속하지 아니한 者가 第109條 第3項에 의하여 會議에 참가할 權利를 가지게 된 때에는 이 者를 통하여서도 提出할 수 있다.

④ 書面·電信 또는 電話에 의한 監事會 또는 同委員會의 決議는 이 節次에 어떤 監事도 반대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第109條 [監事會와 그 委員會의 會議參加] ① 監事會와 그 委員會의 會議에 는 監事會 또는 理事會에 속하지 아니한 者는 참가하지 못한다. 專門家와 報告者는 개별적 事項에 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② 委員會에 속하지 아니한 監事は 監事會 議長이 달리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委員會 會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監事が 監事會에 속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 書面으로 수권한 때에는 이 者가 有故인 監事に 대신하여 監事會 또는 그 委員會의 會議에 참가할 수 있도록 定款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④ 이와 상이한 法律의 規定은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第110條 [監事會의 召集] ① 各 監事 또는 理事會는 그 目的과 理由를 기재 하여 監事會議長이 지체없이 監事會를 소집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會議는 召集 後 2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 ② 적어도 2人の 監事 또는 理事會에 의하여 표명된 請求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申請人은 사정을 通知하여 스스로 監事會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監事會는 원칙적으로 4분의 1 曆年에 1회 소집되며, 2분의 1 曆年에 1회씩은 반드시 소집되어야 한다.

第111條 [監事會의 職務와 權利] ① 監事會는 業務執行을 감독하여야 한다.

- ② 監事會는 會社の 帳簿와 書類 및 財産, 특히 會社の 現金과 有價證券 및 商品의 現在高를 閱覽하고 檢査할 수 있다. 監事會는 이를 各 監事에게 또는 일정한 職務에 관하여는 특별한 專門家에게도 위임할 수 있다.
- ③ 監事會는 會社の 福祉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株主總會를 소집할 수 있다. 그 決議는 단순 多數決로써 충분하다.
- ④ 業務執行의 措置는 監事會에 위임될 수 없다. 다만, 定款 또는 監事會는 일정한 種類의 業務는 監事會의 同意를 얻어야만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을 정할 수 있다. 監事會가 同意를 거절한 때에는 理事會는 株主總會가 同意에 관하여 결의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株主總會가 同意하는 決議에는 최소한 投票된 議決權의 4분의 3에 달하는 多數決이 필요하다. 定款으로 이와 다른 多數決 또는 기타의 要件을 규정하지 못한다.
- ⑤ 監事는 他人으로 하여금 그의 職務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第112條 [理事에 대한 會社の 代表] 理事에 대하여는 監事會가 裁判上 또는 裁判外에서 會社를 대표한다.

第113條 [監事の 報酬] ① 監事에게는 그의 활동에 대하여 報酬가 지급될 수 있다. 報酬는 定款으로 규정하거나 株主總會에서 승인할 수 있다. 報酬는 監事の 職務와 會社の 狀況에 따라 적정하여야 한다. 定款으로 報酬가 확정된 경우에는 株主總會는 報酬를 감액하기 위한 定款變更을 單純多數決

로써 결의할 수 있다.

② 최초의 監事會 構成員의 활동에 대한 報酬는 株主總會만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決議는 최초의 監事會의 責任免除에 관하여 결의하는 株主總會에서만 할 수 있다.

③ 監事에 대하여 會社의 年度利益의 配當持分을 부여하는 때에는 그 配當持分은 株式의 額面에 대하여 납입한 出資의 최소한 100분의 4의 金額을 控除한 貸借對照表利益(Bilanzgewinn)에 따라 산정한다. 이에 반하는 確定은 無效이다.

第114條 [監事와의 契約] ① 監事が 監事會에서 그의 활동 이외에 勞務關係를 설정하지 아니하는 雇傭契約 또는 都給契約을 통하여 會社에 대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활동을 할 義務를 진 경우에 그 契約의 效力은 監事會의 同意에 따른다.

② 監事會가 그 契約에 同意함이 없이 會社가 그 契約에 의하여 監事에게 報酬를 부여한 때에는 監事會가 契約을 주인하지 아니한 한 監事は 그 報酬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공된 활동을 통하여 얻은 收益(Bereicherung)의 引渡를 요구하는 會社에 대한 監事の 請求權은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이 請求權은 返還請求權과 상계할 수 없다.

第115條 [監事に 대한 信用附與] ① 會社は 監事會의 承認을 받은 때에만 監事에게 信用을 부여할 수 있다. 支配會社は 從屬企業의 監事에게 支配會社의 監事會의 承認을 얻은 때에만 信用을 부여할 수 있고, 從屬會社は 支配企業의 監事に 대하여 支配企業의 監事會의 承認을 얻은 때에만 信用을 부여할 수 있다. 信用은 일정한 信用去來 또는 일정한 種類의 信用去來에 관하여서만 부여될 수 있으며 3월내에 한하여 미리 부여될 수 있다. 承認에 관한 決議는 信用의 利子和 返還에 관하여 규율하여야 한다. 監事が 個人商人으로서 商業을 영위하는 경우에 會社가 그 商去來로 공급한 상품에

獨逸株式法

대한 지급을 위하여 信用이 부여되는 때에는 承認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은 監事の 配偶者 또는 未成年의 子女에 대한 신용과 이러한 者 또는 監事の 計算으로 거래를 하는 第3者에 대한 신용에 관하여서도 적용된다.

③ 監事が 동시에 다른 法人의 法定代表者가거나 人的會社の 社員인 때에는 會社は 그 法人 또는 人的會社에 대하여 監事會의 승인을 얻은 때에 한하여 信用을 부여할 수 있다; 第1項 第3文과 第4文은 이에 준용된다. 이 規定은 그 法人 또는 人的會社가 당해 會社와 結合되어 있는 경우나 會社가 그 法人 또는 人的會社에 공급한 商品에 대한 지급을 위하여 信用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에 違反하여 신용이 부여된 경우에 監事會가 이를 追忍하지 아니한 때에는 反對의 合意에도 불구하고 즉시 信用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會社가 金融機關인 때에는 第1項 또는 第4項 대신에 信用制度에 관한 法の 規定이 적용된다.

第116條 [監事の 注意義務와 責任] 監事の 주의義務 및 責任에 관하여는 理事의 注意義務와 責任에 관한 第93條가 준용된다.

第3節 會社에 대한 影響力の 利用(Benutzung des Einflusses auf die Gesellschaft)

第117條 [損害賠償義務] ① 故意로 自己의 會社에 대한 影響力を 이용하여 理事・監事・支配人 또는 商事代理人으로 하여금 會社 또는 株主의 損害가 되도록 행위를 하게 한 者는 會社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會社에 발생한 損害를 賠償할 義務를 진다. 그는 또한 株主에 대하여도 會社의 損害를 통하여 株主에게 끼친 損害를 除外하고 損害를 입게 한 때에 한하여 이로

인하여 株主에게 발생한 損害를 賠償할 義務를 진다.

② 前項에 계기된 者외에 理事와 監事が 義務를 違反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는 連帶債務者로서 責任을 진다. 통상적이고 성실한 營業指揮者の 注意를 다하였는가의 與否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그들이 立證責任을 진다. 그 行爲가 適法한 株主總會의 決議에 기인한 경우에는 會社 및 株主에 대하여도 理事와 監事の 賠償義務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監事會가 그 행위를 承認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賠償義務가 배제되지는 아니한다.

③ 第1項에 계기된 者 외에 또한 損害를 가하는 행위를 통하여 利益을 얻은 者도 그가 故意로 影響力을 行使한 때에 한하여 連帶債務者로서 責任을 진다.

④ 會社에 대한 賠償義務의 消滅에 관하여는 第93條 第4項 第3文 및 第4文이 준용된다.

⑤ 會社の 賠償請求權은 會社로부터 辨濟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會社債權者에 의하여서도 행사될 수 있다. 會社債權者에 대하여는 賠償義務는 會社の 拋棄 또는 和解로 인하여 또는 그 行爲가 株主總會의 決議에 기인하였다는 것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會社財産에 관하여 破産節次가 개시된 경우에 그 期間중에는 破産管財人이 債權者の 權利를 行使한다.

⑥ 이 條의 規定에 의한 請求權은 5년을 經過함으로써 時效에 의하여 소멸한다.

⑦ 이 條의 規定은 理事·監事·支配人 또는 商事代理人이 다음 각호의 1의 權利를 行使함으로써 損害를 끼친 행위를 하게 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株主總會에서 議決權
2. 支配契約에 의한 指揮權
3. 會社가 主會社에 편입된 경우에 主會社の 指揮權(第319條)

第4節 株主總會(Hauptversammlung)

第1款 株主總會의 權利(Rechte des Hauptversammlung)

第118條 [總則] ① 株主는 이 法에 다른 規定이 없는 한 株主總會에서 會社의 業務에 關하여 그의 權利를 行使한다.

② 理事와 監事는 株主總會에 出席하여야 한다.

第119條 [株主總會의 權利] ① 株主總會는 이 法과 定款에 명시적으로 規定된 경우에, 특히 다음의 각호의 事項에 關하여 결의한다.

1. 監事會에 改選되는 監事 또는 勞働者인 監事로서 共同決定法, 共同決定法補充法 또는 1952년의 經營組織法에 의하여 선임되는 監事 이외의 監事の 選任;

2. 貸借對照表利益의 處分;

3. 理事와 監事の 責任免除;

4. 決算檢査人의 選任;

5. 定款變更;

6. 資本調達 및 資本減少의 措置;

7. 設立 또는 業務執行時의 經過를 檢査하기 위한 檢査人의 選任;

8. 會社의 解散.

② 業務執行의 問題에 關하여 株主總會는 理事會가 請求한 때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다.

第120條 [責任免除] ① 株主總會는 每營業年度의 시작으로부터 8월내에 理事와 監事の 責任免除에 關하여 결의한다. 株主總會가 이를 결의하거나 그 持分이 합산하여 會社資本의 10분의 1에 달하거나 200만 독일 마르크의 券面額에 달하는 少數株主가 請求한 때에는 理事나 監事 各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投票하여야 한다.

② 責任免除을 통하여 株主總會는 理事와 監事に 의한 會社の 經營을 承認한다. 責任免除는 賠償請求權의 拋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責任免除에 관한 議事は 貸借對照表利益의 處分에 관한 議事와 結合하여 행하여야 한다. 理事會는 年度決算書・狀況報告書 및 監事會의 報告書를 株主總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이들 議案의 備置 및 寫本の 交付에 관하여는 第175條 第2項이 준용된다.

第2款 株主總會의 召集(Einberufung der Hauptversammlung)

第121條【總則】① 株主總會는 法律 또는 定款에 규정된 경우 및 會社の 福祉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소집되어야 한다.

② 株主總會는 理事會에 의하여 소집되며, 理事會는 이에 관하여 單純多數決로써 결의한다. 商業登記簿에 理事로 登記된 者는 이 權限을 가진 것으로 본다. 法律 또는 定款에 기인하여 株主總會를 召集할 수 있는 다른 者의 權利는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召集은 이를 會社公告紙에 公告하여야 한다. 召集에는 會社の 商號·住所·株主總會의 時期와 場所 및 株主總會의 出席과 議決權의 行使에 관한 條件을 表示하여야 한다.

④ 會社가 株主를 특히 알고 있는 경우에 株主總會는 登記郵便에 의하여 소집될 수 있다; 發送日을 公告한 날로 본다. 第125條 내지 第127條가 이에 준용된다.

⑤ 定款에 다른 規定이 없는 경우에 株主總會는 會社の 所在地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會社の 株式이 公的인 去來를 위하여 獨逸 證券去來所에 上場된 경우에 定款에 다른 規定이 없으면 株主總會는 그 證券去來所의 所在地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⑥ 모든 株主가 出席하거나 대리된 경우에는, 어느 株主도 議決에 異議를

獨逸株式法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株主總會는 이 款의 規定을 준수하지 않고 결의할 수 있다.

第122條【少數株主의 請求에 따른 召集】① 持分이 합산하여 資本의 20분의 1에 달하는 株主가 召集의 目的과 事由를 기재하여 書面으로 召集을 請求한 때에는 株主總會가 소집되어야 한다. 請求는 理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定款으로 株主總會의 召集을 請求할 權利를 자본에 대한 보다 적은 持分の 占有에 결부시킬 수 있다.

② 前項과 동일한 方法으로 그 持分이 합산하여 資本의 20분의 1 또는 100만 독일 마르크의 券面額에 달하는 株主는 어떤 事項을 株主總會의 決議의 目的인 事項으로 公告하도록 請求할 수 있다.

③ 召集請求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法院은 請求를 한 株主에게 株主總會를 소집하거나 目的事項을 公告할 權限을 부여할 수 있다. 동시에 法院은 그 株主總會의 議長을 정할 수 있다. 召集 또는 公告에는 授權에 의하였음을 表示하여야 한다. 法院의 決定에 대하여는 即時抗告가 허용된다.

④ 會社는 株主總會의 費用과 第3項의 경우에 法院이 申請을 허락한 때에는 法院의 費用도 부담한다.

第123條【召集期間】① 株主總會는 적어도 總會日 1월 전에 소집되어야 한다.

② 定款은 株主總會에의 出席 또는 議決權의 行使에 總會前의 일정한 시기까지 株式을 공탁하거나 그 밖에 總會前에 株主가 申告하도록 할 수 있다. 定款이 이러한 規定을 둔 경우에는 召集期間의 計算에 있어서는 株式을 공탁하거나 總會 前에 株主가 申告하여야 할 마지막날이 總會日에 대신한다.

③ 定款에 의하여 株主總會에의 出席 또는 議決權의 行使를 株主가 總會전에 申告할 것을 필요하게 한 경우에는 總會前 3일까지 申告하면 충분하

다.

第124條 [議事日程의 公告] ① 株主總會의 議事日程은 召集時에 會社公告紙에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少數株主가 株主總會의 소집후에 株主總會의 決議를 위한 目的事項의 公告를 請求한 경우에는 이 目的事項을 株主總會의 召集後 10일 이내에 公告하면 충분하다. 第121條 第4項이 이에 준용된다.

② 監事の 選任이 議事日程인 때에는 어떤 法規定에 의거하여 監事會를 구성할 것인가와 株主總會가 候補者推薦에 구속되는가의 與否를 公告中表示하여야 한다. 株主總會가 定款變更에 관하여 또는 株主總會의 同意를 얻은 때에 한하여 效力을 발생할 契約에 관하여 결의하여야 할 때에는 提案된 定款變更의 原文 또는 契約의 중요한 內容도 公告하여야 한다.

③ 株主總會가 결의하여야 할 議事日程의 모든 또는 目的事項에 대하여는 理事會 및 監事會가, 監事 및 檢査人の 選任에 대하여는 監事會만이, 議事日程의 公告中에 決議案으로 提案하여야 한다. 이 規定은 株主總會가 監事の 選任에 있어서 單決共同決定法 第6條에 의하여 候補者推薦에 구속되는 때 또는 결의할 目的事項이 少數株主의 請求에 따라 議事日程에 포함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監事 또는 檢査人の 選任을 위한 推薦에는 候補者の 姓名·職業 및 住所를 表示하여야 한다. 監事會가 또한 勞働者인 監事로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監事選任을 위한 제안에 관하여 監事會의 決議는 오직 株主인 監事の 多數決을 요한다; 單決共同決定法 第8條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④ 적법하게 公告되지 아니한 議事日程의 目的事項에 관하여는 決議를 할 수 있다. 總會에서 提出된 株主總會의 召集提案에 관한 決議, 議事日程의 目的事項에 관하여 제출된 議案 및 決議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의사에 관하여는 公告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第125條 [株主 및 監事に 대한 通知] ① 理事會는 聯邦官報에 株主總會의 召

獨逸株式法

集公告를 한 후 12일 이내에 最近의 株主總會에서 株主를 위하여 議決權을 行使하거나 通知를 請求한 金融機關 및 株主團體(Vereinigungen von Aktionären)에 대하여 株主總會의 召集 및 議事日程의 公告를 通知하여야 하며 株主의 提案 및 候補者推薦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株主의 姓名·提案理由 및 行政官廳의 意見이 있으면 그 의견과 함께 通知하여야 한다.

② 理事會는 前項과 동일한 通知를 다음 각호의 株主에 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1. 株式을 會社에 공탁한 株主

2. 聯邦官報에 株主總會의 召集公告를 한 후에 自己에게 通知하도록 請求한 株主

3. 會社의 株主名簿에 株主로 記載되고 最近의 株主總會에서 그의 議決權을 金融機關에 의하여 行使하지 아니한 株主

③ 各 監事는 理事會가 自己에게 前項과 동일한 通知를 송달하도록 請求할 수 있다.

④ 1株를 會社에 공탁하거나 會社의 株主名簿에 株主로 記載된 모든 株主와 各 監事는 理事會가 自己에게 株主總會에서 통과된 決議를 書面으로 通知하도록 請求할 수 있다.

第126條【株主의 提案】 ① 株主의 提案에 관하여는 株主가 聯邦官報上の 株主總會의 召集公告 후 1주 이내에 會社에 대하여 反對提案을 그 사유와 함께 송달하고 동시에 自己는 總會에서 理事會 및 監事會의 提案에 반대할 것이며 다른 株主로 하여금 自己의 反對提案에 贊成投票를 하도록 하겠다는 通知를 한때에 한하여 第125條에 따라 通知할 필요가 있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反對提案 및 事由를 通知할 필요가 없다.

1. 理事會가 通知로 인하여 處罰을 받게 될 罣려가 있는 때

2. 反對提案이 株主總會의 法律 또는 定款違反의 決議를 유도할 罣려가 있는 때

3. 事由가 중요한 점에 있어서 명백히 虛偽인 또는 詐欺인 陳述이거나 侮辱的인 때

4. 동일한 事情에 근거한 株主의 反對提案이 이미 株主總會를 위하여 第125條에 따라 會社에 通知된 때

5. 이와 동일한 株主의 反對提案이 본질적으로 유사한 사유와 함께 最近 5년 이내에 최소한 2회의 株主總會를 위하여 第125條에 따라 會社에 通知되었고 株主總會에서 대표된 資本의 20분의 1 이하만이 이에 贊成投票하였던 때

6. 株主가 自身이 株主總會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대리하게 하지도 아니할 것을 암시한 때

7. 株主가 最近 2년 이내에 2회의 株主總會에서 自身이 通知한 反對提案을 提案하지 아니하거나 提案하게 하지 아니한 때
反對提案의 事由는 전체로서 100單語 이상에 달하는 때에는 通知할 필요가 없다.

③ 동일한 決議事項에 대하여 多數의 株主가 反對提案을 한 때에는 理事會는 反對提案 및 사유를 총괄할 수 있다.

第127條 [株主의 候補者推薦] 監事 또는 決算檢查人의 選任을 위한 株主의 推薦에 대하여는 第126條를 준용한다. 理事會는 그 推薦에 第124條 第3項 第3文에 의한 記載가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候補者推薦을 通知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第128條 [金融機關 및 株主團體에 의한 通知의 傳達] ① 金融機關이 株主를 위하여 會社의 株式을 보관하는 때에는 第125條 第1項에 의한 通知를 遲滯없이 株主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金融機關이 株主總會에서 株主를 위하여 議決權을 行使하거나 行使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株主에게 自身の 提案뿐만 아니라 議事日程의 各事

獨逸株式法

項에 대한 議決權의 行使에 관하여 通知하여야 한다. 提案을 함에 있어서는 金融機關은 株主의 利益에 입각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金融機關은 또한 株主에게 議決權의 行使에 관한 指示를 請求하여야 하며 株主가 적시에 다른 지시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第1文에 의하여 通知한 자신의 提案에 따라 議決權을 行使할 것이라고 언급하여야 한다. 金融機關은 指示의 附與에 관한 請求에 일정한 形式의 書面을 첨부하여 그것을 株主가 보충함으로써 議事日程에 있는 개개의 目的事項에 대하여 議決權의 行使를 위한 지시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金融機關의 1人の 理事가 會社의 監事이든지 會社의 1人の 理事가 金融機關의 監事인 때에는 金融機關은 이것도 通知하여야 한다.

③ 株主가 株主總會의 召集 後에 金融機關에게 議事日程의 各 事項에 대하여 議決權의 行使에 관한 書面指示를 한 한도내에서 金融機關은 第2項에 의한 自身の 提案을 通知할 필요가 없으며 株主에게 지시를 請求할 필요가 없다.

④ 第1項 또는 第2項의 違反으로 인하여 발생한 損害를 補償할 金融機關의 義務는 사전에 이를 排除하거나 制限할 수 없다.

⑤ 會社의 株主가 어떤 株主協會의 會員인 때에는 同協會는 이 會員의 請求에 따라 第125條 第1項에 의한 通知를 그에게 遲滯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그 밖의 事項에 대하여는 株主協會에 관한 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이 준용된다.

⑥ 聯邦法務長官은 聯邦經濟長官 및 聯邦財務長官과 협의하여 法規命令으로 다음의 事項을 규정할 權限을 가진다.

1. 金融機關 및 株主團體가 第2項 第3文에 의한 指示請求書에 첨부하여야 할 株主의 指示附與에 관한 일정한 形式의 書面

2. 會社가 金融機關 및 株主團體에 대하여 通知書複寫費用 및 株主 또는 회원에 대한 通知書 傳達費用을 補償하여야 한다는 것. 費用補償에 관하여는 第1項에 의한 各 文書에 관한 總額을 確定할 수 있다.

이 法規命令에 대하여는 聯邦上院의 同意를 얻을 필요가 없다.

第3款 議事錄·說明請求權(Verhandlungsniederschrift
Auskunftsrecht)

第129條 [出席者名簿] ① 株主總會에서는 출석한 株主 또는 대리된 株主와 株主의 代理人의 姓名 및 住所와 각자가 대표하는 株式의 金額 및 그 種類를 記載한 名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金融機關 또는 第135條 第9項에 계기된 者에게 議決權行使의 代理權이 부여되고 그 代理人이 本人의 名義로 議決權을 行使하는 때에는 代理權이 부여된 株式의 金額 및 種類는 名簿에 기재하기 위하여 구별하여 表示하여야 한다. 代理權을 부여한 株主의 姓名은 이를 表示할 필요가 없다.

③ 自己에게 속하지 아니한 株式에 관하여 自己의 名義로 議決權을 行할 權限을 株主로부터 받은 者는 名簿에 기재하기 위하여 株式의 金額 및 種類를 구별하여 表示하여야 한다. 이 規定은 授權者가 그 株主로 株主名簿에 記載된 記名株式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④ 名簿는 閱覽을 위하여 최초의 表決 前에 모든 出席者를 위하여 비치되어야 한다. 議長은 名簿에 署名하여야 한다.

第130條 [議事錄] ① 株主總會의 모든 決議는 그 議事に 관하여 公證人이 작성한 議事錄에 의하여 公證되어야 한다(beurkunden). 第120條 第1項 第2文, 第137條 및 第147條 第1項에 의한 少數株主의 모든 請求에 대하여도 같다. 會社의 株式이 證券市場에서 거래하도록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法이 資本의 4분의 3 또는 그 이상의 多數決로 정한 決議를 하지 아니한 한 議事錄은 監事會議長에 의하여 서명됨으로서 충분하다.

② 議事錄에는 議事の 場所 및 日字, 公證人의 姓名과 表決의 方法 및 結果와 그 議決에 관한 議長의 確定을 記載하여야 한다.

- ③ 總會出席者の名簿와 召集에 관한 證據書類는 議事錄에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召集에 관한 證據書類는 議事錄中에 그 內容을 表示하여 記載한 때에는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④ 議事錄은 公證人에 의하여 署名되어야 한다. 證人의 입회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 ⑤ 理事會는 總會後 遲滯없이 公적으로 인증된 議事錄, 第1項 第3文의 경우에는 監事會議長이 서명한 議事錄의 謄本과 그 附屬書類를 商業登記簿에 登記하도록 提出하여야 한다.

第131條【株主의 說明請求權】 ① 理事會는 株主總會에서의 請求에 따라 모든 株主에게 會社의 業務에 관한 說明이 議事日程의 目的事項을 適切히 判斷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 이를 提供하여야 한다. 說明義務는 結合企業에 대한 會社의 法律上 및 業務上의 關係에도 미친다. 會社가 商法 第266條 第1項 第3文, 第276條 또는 第288條에 의한 簡易記載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各 株主는 年度決算에 관한 總會에서 年度決算書가 위 규정의 적용이 없었을 경우의 형태로 제출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說明은 성실하고 충실한 說明의 原則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理事會는 다음 각호의 事項에 대하여는 說明을 거절할 수 있다.

1. 說明을 하는 것이 理性있는 商人의 判斷에 따라 會社 또는 結合企業에 대하여 重大한 損害를 끼치기에 적합한 한도내에서;

2. 說明이 租稅事情 또는 各 租稅의 稅額에 관한 한도내에서;

3. 株主總會가 年度決算書を 確定하지 아니하는 한 年度貸借對照表上의 目的物에 대하여 평가된 價格과 目的物の 보다 높은 價格과의 差額에 關於하여;

4. 商法 第264條 第2項의 의미에서 會社의 財産, 財務 및 收益狀況의 事實關係에 상응하는 표상을 전달하기 위하여 附屬明細書에 貸借對照表 計上方法과 評價方法의 기재가 충분한 경우에는 貸借對照表計上 및 評價의

方法에 관하여; 이 規定은 株主總會가 年度決算書를 確定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理事會가 說明을 함으로 인하여 處罰을 받게될 경우.

6. 金融機關에서는 年度決算書, 狀況報告書, 콘체른決算書 또는 콘체른狀況報告書에서 사용된 貸借對照表 計上方法과 評價方法 및 실행된 計算方法에 관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 밖의 事由에 의하여는 說明을 거절하지 못한다.

④ 어떤 株主에 대하여 株主로서의 그의 資格때문에 株主總會 밖에서 어떤 說明을 한 때에는 그 說明이 議事日程의 目的事項을 적절히 判斷하기 위하여 필요하지 아니한 때에도 모든 株主에 대하여 그들의 總會에서의 請求에 따라 그 說明을 하여야 한다. 理事會는 第3項 第1文 第1號 내지 第4號에 의하여 그 說明을 거절하지 못한다.

⑤ 어떤 株主에 대하여 說明을 거절한 때에는 그 株主는 그의 質問과 說明을 거절한 이유를 議事錄에 기재하도록 請求할 수 있다.

第132條 [說明請求權에 관한 法院의 決定] ① 理事會가 說明을 하여야 하는 與否는 申請에 따라 會社의 住所地를 管轄하는 州法院이 전속적으로 결정한다. 州法院에 商事部(Kammer für Handelssachen)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이 商事부가 民事部(Zivilkammer)에 대신하여 결정한다. 州政府는 통일적인 判決의 保障에 필요한 때에는 法規命令으로 다수의 州法院의 管轄區域을 위하여 1개의 州法院에 그 決定을 위탁할 수 있다.

② 請求한 說明을 거절당한 모든 株主에게 申請權이 있으며 說明과 관계된 議事日程의 目的事項에 관하여 決議가 채택된 때에는 株主總會에서 議事錄上 反對의 意思表示를 한 株主總會에 출석한 모든 株主에게 申請權이 있다. 申請은 說明이 거절되었던 株主總會後 2주 이내에 提出하여야 한다.

③ 第99條 第1項·第3項 第1文·第2文·第4文 내지 第9文·第5項 第1文 및 第3文은 이에 준용된다. 即時抗告는 州法院이 決定중에 이를 허용한다

獨逸株式法

고 선언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州法院은 即時抗告로 인하여 法律問題의 원칙적인 의미의 해명을 기대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④ 申請이 許可된 때에는 株主總會 밖에서도 說明을 하여야 한다. 決定에 의하여 民事訴訟法の 規定에 따라 強制執行을 할 수 있다.

⑤ 節次의 費用에 관하여는 訴訟費用法(Kostenordnung)을 적용한다. 第1審의 節次에 관하여는 全手數料의 2배를 징수한다. 第2審에 관하여는 동일한 手數料를 징수한다. 이 規定은 抗告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決定이 있기 전 또는 法院이 주선한 合意가 이루어지기 전에 申請 또는 抗告를 撤回한 때에는 手數料는 2분의 1로 감액된다. 事件의 價額은 職權으로 確定한다. 價額은 10만 독일 마르크를 單位로 하여 규칙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訴訟費用法 第30條 第2項에 의하여 결정한다. 節次의 費用을 어떤 當事者에게 부담시킬 것인가는 절차의 관계된 法院이 공정한 裁量에 따라 결정한다. 節次의 費用을 어떤 當事者에게 부담시킬 것인가는 節次와 관계된 法院이 공정한 裁量에 따라 결정한다.

第4款 議決權(Stimmrecht)

第133條 [單純多數決] ① 株主總會의 決議에는 法律 또는 定款으로 그 이상의 多數決 또는 기타의 要件을 정하지 아니한 한 行使한 議決權의 多數決이 필요하다(單純多數決).

② 選任에 관하여는 定款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第134條 [議決權] ① 議決權은 株式의 額面에 따라 行使한다. 1株主가 다수의 株式을 가진 때에는 定款으로 최고액을 確定하거나 등급을 정함으로써 議決權을 制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定款으로 그의 計算으로 他人이 가진 株式도 그가 가진 株式에 산입하도록 정할 수 있다. 株主가 어떤 企業인

때에는 또한 定款으로 그 企業에 從屬하거나 그 企業이 支配하거나 그 企業과 關係를 형성한 企業 또는 그 企業의 計算으로 第三者가 가진 株式도 그 企業이 가진 株式에 산입하도록 정할 수 있다. 同制限은 개별적인 株主에 대하여 규율할 수는 없다. 法律 또는 定款에 따라 필요한 資本額의 計算에 있어서는 同制限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② 議決權은 出資의 완전한 履行과 동시에 行使할 수 있게 된다. 定款으로 株式에 대하여 法定의 最低出資 또는 定款상의 이보다 多額인 最低出資가 이행된 때에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도록 부여한다. 보다 多額의 出資에 대하여는 履行에 대하여 1議決權을 부여한다. 보다 多額의 出資에 대하여는 이행한 出資의 金額에 따라 議決權의 比率을 정한다. 定款으로 出資의 履行 前에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게 되도록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出資를 완전히 이행한 株式이 아직도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議決權의 비율은 이행한 出資의 金額에 따라 정한다. 이때에는 最低出資의 履行에 대하여 1議決權을 부여한다. 이 경우에 議決權의 端數(Bruchteile)는 그것이 議決權者의 株主에 대하여 완전한 議決權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고려한다. 定款으로 개별적인 株主 또는 개별적인 株式의 種類에 관하여 이項에 따라 규정할 수 없다.

③ 議決權은 代理人을 통하여 行使할 수 있다. 代理權에 관하여는 書面에 의한 形式이 필요하며 이로써 충분하다. 委任狀(Vollmachtsurkunde)을 會社에 提出하여야 하며 會社가 이를 보관한다.

④ 議決權行使의 形式은 定款으로 정한다.

第135條 [金融機關 및 營業上の 行爲者를 통한 議決權의 行使] ① 金融機關은 書面으로 代理權이 부여된 때에 한하여 同機關이 소유하지 아니하는 無記名株式에 관한 議決權을 行使하거나 行使하게 할 수 있다. 金融機關 自身の 株主總會에서는 代理權을 가진 金融機關은 株主가 議事日程의 개개의 事項에 대하여 명시적인 지시를 한때에 한하여 代理權에 의거하여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다.

② 代理權은 일정한 金融機關에 대하여서만 그리고 最長 15월에 관하여서만 이를 부여할 수 있다. 代理權은 이를 언제나 撤回할 수 있다. 委任狀은 代理權의 부여시에 완전히 기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說明을 포함시키지 못한다. 委任狀에는 發行日字를 기재하여야 한다. 第1文의 期間은 늦어도 發行日로부터 進行을 개시한다.

③ 代理權을 가진 金融機關은 代理權이 명시적으로 復代理를 허용하고 代理權을 가진 金融機關이 株主總會의 場所에 支店을 갖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同金融機關의 雇傭人이 아닌 者에게 復代理權을 부여할 수 있다. 이 規定은 代理權을 가진 金融機關에 의한 代理權의 委任에 적용된다.

④ 代理權에 의거하여 金融機關은 株主의 名稱下에 自己의 名義로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다. 代理權에 규정된 때에는 金融機關은 本人의 名義로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다. 金融機關이 株主의 名稱下에 自己의 名義로 議決權을 行使하는 때에는 會社에 委任狀을 提出하여야 하며 會社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議決權을 本人의 名義로 行使하는 때에는 會社에 대하여 그의 議決權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定款에 議決權의 行使에 관하여 규정된 要件을 구비하면 충분하다. 定款에 이에 관하여 아무런 規定이 없는 때에는 株券 또는 公證人이나 有價證券收納銀行의 株式供託證券을 提出하면 충분하다.

⑤ 株主가 金融機關에 대하여 議決權의 行使에 관하여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金融機關은 株主가 事情을 인식한다면 이와 상이한 議決權의 行使에 同意할 것이라고 비교적 생각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第122條 第2項에 따라 株主에게 通知한 自身の 提案에 따라서 議決權을 行使하여야 한다.

⑥ 投票의 效力은 第1項 第2文, 第2項, 第3項 및 第5項의 違反으로 인하여 침해되지 아니한다.

⑦ 金融機關은 自己가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株主名簿에 株主로 記載된 記

名株式에 관하여는 書面委任狀만에 의거하여, 株主로 記載되지 아니한 때에는 株主의 名稱下에 自己의 名義로 書面代理權에 의거하여서만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다. 委任狀 또는 代理權에 관하여는 第1項 第2文·第2項·第3項 및 第5項을, 代理權에 관하여는 第4項 第3文을 除外하고 적용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第6項을 적용한다.

⑧ 金融機關이 議決權을 行使함에 있어서는 株主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또는 株主가 아무런 지시도 아니한 경우에 第128條 第2項에 따라 株主에게 通知한 自身の 提案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株主에게 通知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⑨ 第1項 내지 第8項은 다음 각호의 者를 통한 議決權의 行使에 준용된다.

1. 株主協會

2. 金融機關의 營業指揮者 또는 雇傭人이 가지지 아니한 株式이 金融機關에 保管을 위하여 위탁된 경우의 金融機關의 營業指揮者 및 雇傭人

3. 營業上の 株主에 대하여 株主總會에서 議決權을 行使하겠다고 申請한 者.

이 規定은 議決權을 行使하고자 하는 者가 株主의 法定代理人·配偶者 또는 4촌이내의 血族이나 姻戚인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金融機關이 株主를 위하여 會社의 株式을 보관하고 會社의 株主에 대하여 會社의 株主總會에서 議決權을 行使하겠다고 申請하였던 때에는 株主總會에서 議決權을 行使하기 위한 株主의 委任을 受任할 義務가 金融機關의 雇傭人이 아닌 者에 대한 代理權의 移轉 또는 復代理를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義務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⑪ 第1項 내지 第3項·第5項·第7項·第8項 또는 第10項의 違反으로 인하여 발생한 損害를 賠償할 金融機關의 義務는 사전에 이를 排除하거나 制限할 수 없다.

第136條 [議決權의 排除] ① 어떤 者의 責任을 면제하거나 義務를 免除할 與

獨逸株式法

否 또는 會社가 그 者에 대하여 請求權을 行使할 與否에 관하여 決議를 하는 때에는 그 者는 自身이나 他人을 위하여 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다. 第1文에 의하여 株主가 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는 株式에 관하여는 他人을 통하여서도 議決權을 행할 수 없다.

② 株主에게 會社·會社の 理事會나 監事會의 指示 또는 從屬企業의 지시에 따라 議決權을 行使할 義務를 지우는 契約은 無效이다. 또한 株主에게 會社の 理事會 또는 監事會의 어떠한 提案에도 同意할 義務를 지우는 契約도 無效이다.

第137條 [株主의 候補者推薦에 관한 表決] 株主가 第127條에 따라 監事의 選任을 위한 候補者推薦을 하고 株主總會에서 그가 推薦한 者의 選任을 申請한 경우에 持分이 합산하여 대표된 資本의 10분의 1에 달하는 少數株主의 請求에 있는 때에는 監事會의 提案에 앞서 그 申請에 관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第5款 特別決議(Sonderbeschluss)

第138條 [別途總會·別途表決] 이 法 또는 定款에 규정된 일정한 種類의 特別決議는 法律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한 한 이를 株主의 別途總會 또는 別途表決에서 행하여야 한다. 別途總會의 召集 및 그 出席과 說明請求權에 관하여는 株主總會의 決議에 관한 規定을, 特別決議에 관하여는 株主總會의 決議에 관한 規定을 준용한다. 特別決議에 대한 表決에 참가할 수 있는 株主가 別途總會의 召集 또는 別途表決을 위한 目的事項의 公告를 請求한 경우에는 特別決議에 대한 表決에 참가할 수 있는 그들의 持分이 합산하여 特別決議에 대한 表決時에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는 持分の 10분의 1에 달하면 충분하다.

第6款 議決權없는 優先株(Vorzugsaktien ohne Stimmrecht)

第139條【本質】 ① 利益配當時에 追加支拂의 優先權이 부여된 株式에 관하여는 議決權을 排除할 수 있다(議決權없는 株式).

② 議決權없는 優先株는 기타의 株式의 總券面額과 동일한 額의 總券面額까지 이를 發行할 수 있다.

第140條【優先株主의 權利】 ① 議決權없는 優先株에 대하여는 議決權을 除外하고 株式으로 인하여 各 株主에게 귀속되는 權利가 부여된다.

② 어떤 年度에 優先配當額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고 다음 年度에 이 年度의 優先配當額의 전부외에 未支給額이 追加支給되지 아니한 때에는 優先株主는 未支給額의 追加支給時까지 議決權을 가진다. 이 경우에 優先株는 法律 또는 定款에 따라 필요한 資本多數決의 計算時에 고려되어야 한다.

③ 定款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한 한 어떤 年度에 優先配當額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利益配當에 관한 事後의 決議를 전제로 한 미지급된 優先配當額에 대한 請求權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第141條【優先權의 廢止 또는 制限】 ① 優先權을 廢止 또는 制限하는 決議는 그것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優先株主의 同意가 필요하다.

② 利益 또는 會社財産의 配當에 있어서 議決權없는 優先株에 우선하거나 이와 동등한 優先株의 發行에 관한 決議에도 역시 優先株主의 同意가 필요하다. 優先權의 附與時에 또는 후에 議決權을 排除하였던 경우에는 그 排除시에 그 發行을 명시적으로 유보하였고 優先株主의 新株引受權을 排除하지 아니할 때에는 同意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 同意에 관하여는 優先株主는 別途總會에서 特別決議를 하여야 한다. 이 特別決議에는 行使한 投票의 4분의 3 이상의 다수가 필요하다. 定款으로

이와 다른多數決 또는 그 이상의要件을 규정하지 못한다. 利益 또는 會社財産의 配當에 있어서 議決權없는 優先株에 우선하거나 이와 동등한 優先株의 發行에 관한 決議에서 이 株式의 引受에 관한 優先株主의 新株引受權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排除된 때에는 特別決議에 관하여 第186條 第3項 내지 第5項을 준용한다.

④ 優先權이 廢止된 때에는 그 株式은 議決權을 가진다.

第7款 特別檢査・損害賠償請求權의 行使(Sonderprüfung Geltendmachung von Ersatzansprüchen)

第142條【特別檢査의 選任】① 設立 및 業務執行上の事項 특히 資本調達 및 資本減少의 절차상의事項을 檢査하기 위하여 株主總會는 單純多數決로써 檢査人(特別檢査人)을 選任할 수 있다. 檢査가 理事나 監事の 責任免除 또는 會社와 理事 또는 監事간의 訴訟의 開始에 관련된事項에 미쳐야 할 때에는 理事 또는 監事は 前項의 決議時에 自己 또는 他人을 위하여 表決에 참가할 수 없다. 第2文에 의하여 表決에 참가할 수 없는 理事 또는 監事を 위하여는 他人을 통하여서도 그 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다.

② 株主總會가 設立上の事項 또는 5년 이상 소급하는 業務執行上の事項을 檢査하기 위한 特別檢査人의 選任의 同意를 거부한 경우에 法院은 그事項에 있어서 不正 또는 法律이나 定款의 중대한 違反이 있었다는 의심을 正當化시키는 사실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들의 持分이 합산하여 資本의 10분의 1 또는 200만 독일 마르크의 券面額에 달하는 少數株主의 申請에 따라 特別檢査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申請人은 그 申請에 관한 決定이 있기까지 株式을 公탁하고 株主總會日의 적어도 3월 이전부터 그 株式의 所持人이었음을 疎明하여야 한다. 疎明은 公證人의 면전에서 선서에 대신한 保證을 하면 충분하다.

③ 第1項 및 第2項은 第258條에 의한 特別檢査의 對象이 될 수 없는事項

에 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株主總會가 特別檢査人을 選任한 경우에 法院이 特別檢査人에 選任된 者에게 존재하는 사유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때 특히 選任된 特別檢査人이 特別檢査의 目的事項에 관하여 필요한 知識을 갖지 아니한 때 또는 不公正의 憂慮 또는 그의 誠實性에 대한 의심이 있는 때에는 그들의 持分이 합산하여 資本의 10분의 1 또는 200만 독일 마르크의 券面額에 달하는 株主의 申請에 따라 다른 特別檢査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⑤ 法院은 關係者 이외에 監事會의 意見도 들어야 하며 第4項의 경우에는 株主總會에서 選任된 特別檢査人의 意見도 들어야 한다. 法院의 決定에 대하여는 即時抗告가 허용된다.

⑥ 法院이 選任한 特別檢査人은 상당한 現金支出의 補償 및 그의 活動의 報酬에 대한 請求權을 가진다. 支出費 및 報酬에 관하여는 法院이 確定한다. 法院의 決定에 대하여는 即時抗告가 허용된다.

第143條 [特別檢査人の 選定] ① 特別檢査의 目的事項에 다른 지식이 필요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者만을 特別檢査人으로 選任하여야 한다.

1. 簿記에 관하여 충분한 學識 및 經驗을 가진 者;

2. 檢査會社로서 그 法定代表者중의 적어도 1人이 부기에 관하여 충분한 學識 및 經驗을 가진 會社.

② 商法 第319條 第2項에 의하여 決算檢査人이 될 수 없는 者 또는 檢査받아야 할 경과가 생긴 기간동안에 決算檢査人이 될 수 없었을 者는 特別檢査人이 될 수 없다. 檢査會社는 商法 第319條 第3項에 의하여 決算檢査人이 될 수 없는 者 또는 檢査받아야 할 경과가 생긴 기간동안에 決算檢査人이 될 수 없었을 者인 경우에는 特別檢査人이 될 수 없다.

③ (削除)

第144條 [特別檢査人の 責任] 決算檢査人의 責任에 관한 商法 第323條는 이

에 준용된다.

第145條 [特別檢查人の 權利・ 檢查報告書] ① 理事會는 特別檢查人에 대하여 會社の 帳簿 및 書類와 특히 會社の 現金在庫 및 有價證券 및 商品の 現在庫를 檢查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② 特別檢查人은 理事 및 監事に 대하여 事件의 면밀한 檢查에 필요한 일체의 說明 및 證明을 請求할 수 있다.

③ 特別檢查人은 큰체른企業에 대하여서와 從屬企業 또는 支配企業에 대하여서도 第2項에 의한 權利를 가진다.

④ 特別檢查人은 檢查의 結果에 관하여 書面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公告하는 것이 會社 또는 結合企業에 대하여 중대한 損害를 끼치기에 적합한 事項도 이를 인식하는 것이 株主總會가 檢查할 事項을 判斷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檢查報告書에 記載하여야 한다. 特別檢查人은 報告書에 署名하여야 하며 이를 遲滯없이 理事會와 會社の 住所地의 商業登記簿에 登記하기 위하여 提出하여야 한다. 理事會는 申請에 따라 各 株主에게 檢查報告書의 謄本을 교부하여야 한다. 理事會는 報告書를 監事會에 提出하여야 하며 次期 株主總會의 召集時에 議事日程의 目的事項으로 公告하여야 한다.

第146條 [費用] 法院이 特別檢查人을 選任한 때에는 民法上の 規定에 의하여 會社에 귀속된 賠償請求權과 관계없이 會社가 法院의 費用 및 檢查費用을 부담한다.

第147條 [賠償請求權의 行使] ① 第46條 내지 第48條 및 第53條에 의하여 義務를 진 者에 대하여 設立으로 인하여, 또는 理事 및 監事に 대하여 業務執行으로 인하여 또는 第117條에 의하여 발생한 會社の 賠償請求權은 株主總會가 單純多數決로써 결의하거나 그들의 持分이 합산하여 資本의 10

분의 1에 달하는 少數株主가 請求한 때에는 이를 行使하여야 한다. 少數株主의 請求는 少數株主를 형성하는 株主가 株主總會日의 적어도 3월 이전부터 그 株式의 所持人이었음을 疏明한 때에 한하여 이를 적어도 고려하여야 한다. 疏明은 公證人의 면전에서 선서에 대신한 보증을 하면 충분하다.

② 賠償請求權은 株主總會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를 行使하여야 한다.

③ 賠償請求權의 行使를 위하여 株主總會는 특별한 代表者를 選任할 수 있다. 株主總會가 賠償請求權의 行使를 결의하거나 少數株主가 이를 請求한 경우에 法院(第14條)는 적절한 行使를 위하여 合目的적이라고 생각하는 때에는 그들의 持分이 합산하여 資本의 10분의 1 또는 200만 독일 마르크에 달하는 株主의 申請에 따라서 第78條·第112條 또는 第1文에 의하여 會社를 대표하기 위하여 임명된 者 이외의 者를 賠償請求權의 行使를 위한 會社의 代表者로 選任하여야 한다. 法院이 申請을 허가하는 경우에 會社가 訴訟費用을 부담한다. 法院의 이 決定에 대하여는 即時抗告가 허용된다. 法院이 選任한 代表者는 會社에 대하여 상당한 現金支出의 賠償 및 그의 활동에 대한 報酬를 請求할 수 있다. 支出額 및 報酬는 法院이 이를 確定한다. 法院의 이 決定에 대하여는 即時抗告가 허용된다. 그 이외의 抗告는 할 수 없다. 確定力있는 決定에 따라 民事訴訟法에 의한 強制執行을 할 수 있다.

④ 少數株主가 賠償請求權의 行使를 請求하고 會社가 訴訟에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敗訴하였기 때문에 訴訟費用을 부담하여야 할 때에는 당해 少數株主는 會社에 대하여 이 費用을 賠償할 義務를 진다. 會社가 전부 敗訴한 때에는 당해 少數株主는 會社에 대하여 第3項 第2文 및 第4文에 의한 특별한 代表者의 選任으로 인하여 會社에 발생한 法院의 費用과 그 특별한 代表者의 現金支出 및 報酬도 賠償할 義務를 진다. 少數株主는 會社에 대하여 이 費用을 賠償할 義務를 진다. 會社가 전부 敗訴한 때에는 당해 少數株主는 會社에 대하여 第3項 第2文 및 第4文에 의한 특별한 代表者의

獨逸株式法

選任으로 인하여 會社에 발생한 法院의 費用과 그 특별한 代表者의 現金支出 및 報酬도 賠償할 義務를 진다.

第5章 計算・利益處分(Rechnungslegung, Gewinnverwendung)

第1節 年度決算書와 狀況報告書(Jahresabschlusses und des Geschäftsberichts)

第148條, 第149條 (削除)

第150條 [法定準備金, 資本準備金] ① 商法 第242條와 第264條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할 年度決算書의 貸借對照表에는 法定準備金이 설정되어야 한다.

② 法定準備金에는 商法 第272條 第2項 第1號 내지 第3號에 의한 法定準備金과 資本準備金の 合計가 資本의 10분의 1 또는 定款에 규정된 그 이상의 부분에 달할 때까지 前年度의 損失移越額을 공제한 年度剩餘金の 20분의 1이 적립되어야 한다.

③ 法定準備金과 資本準備金이 資本의 10분의 1 또는 定款에 규정된 그 이상의 부분을 초과한 때에는 그 準備金들은 다음 각호의 目的을 위하여 서만 사용될 수 있다.

1. 年度缺損額이 前年度의 利益移越額에 의하여 填補되지 아니하고 기타의 準備金の 處分에 의하여 償却될 수 없는 限度 내에서 年度缺損額의 償却을 위하여;

2. 前年度의 損失移越額이 年度剩餘金에 의하여 填補되지 아니하고 기타의 準備金の 處分에 의하여 償却될 수 없는 한도 내에서 前年度의 損失移越額의 償却을 위하여.

④ 商法 第272條 第2項 第1號 내지 第3號에 의한 法定準備金과 資本準備金の 合計가 資本의 10분의 1 또는 定款에 규정된 그 이상의 부분을 초과

하는 때에는 그 超過金額은 다음 각호의 目的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1. 年度缺損額이 前年度의 利益移越額에 의하여 填補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年度缺損額의 償却을 위하여;
2. 前年度의 損失移越額이 年度剩餘金으로써 填補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 前年度의 損失移越額의 償却을 위하여;
3. 第207條 내지 第220條에 의한 會社資産에 의한 資本增加를 위하여. 第1號와 第2號에 의한 使用은, 동시에 利益準備金이 利益配當을 위하여 처분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第151a條, 第151條 (削除)

第152條【貸借對照表에 관한 規定】① 資本은 貸借對照表에서 引受資本으로서 표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各 種類의 株式의 總券面額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條件附의 資本은 그 券面額과 함께 기재되어야 한다. 複數 議決權株式이 있는 때에는 引受資本에 있어서 複數議決權株式의 總議決權數와 기타의 株式의 總議決權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貸借對照表 또는 附屬明細書에서 “資本準備金” 項目에 다음 각호의 事項은 구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 營業年度 동안에 적립된 金額;
2. 당해 營業年度에 인출된 金額.

③ 貸借對照表 또는 附屬明細書에서는 利益準備金の 項目에는 다음 각호의 事項이 구별하여 기재되어야 한다.

1. 株主總會가 前年度의 貸借對照表상의 利益에서 적립한 金額;
2. 당해 營業年度의 年度剩餘金에서 적립된 金額;
3. 당해 營業年度에 인출된 金額.

第153條 - 第157條 (削除)

獨逸株式法

第158條 [損益計算書에 관한 規定] ① 損益計算書는 “年度剩餘金/年度缺損金” 項目下에 다음의 項目에 관한 番號를 계속 붙여서 보충되어야 한다.

1. 前年度の 利益移越金/損失移越金
2. 資本準備金の 引出
3. 利益準備金の 引出
 - a) 法定準備金으로부터
 - b) 自己株式에 대한 準備金으로부터
 - c) 定款에 의한 準備金으로부터
 - d) 기타의 利益準備金으로부터
4. 利益準備金の 積立
 - a) 法定準備金으로
 - b) 自己株式에 대한 準備金으로
 - c) 定款에 의한 準備金으로
 - d) 기타의 利益準備金으로
5. 貸借對照表利益/貸借對照表損失

第1文에 의한 記載는 附屬明細書에도 하여야 한다.

② 利益支給契約 또는 部分利益支給契約에 의한 收益에서 外部社員에 대하여 契約上 給與하여야 할 補償이 公제되어야 한다; 당해 補償額이 收益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超過額이 損失引受에 의한 費用에 표시되어야 한다. 그 밖의 金額은 公제되어서는 아니된다.

第159條 (削除)

第160條 [附屬明細書에 관한 規定] 各 附屬明細書에는 다음 각호의 事項을 기재하여야 한다.

1. 株主가 會社 또는 從屬企業이나 過半數占有된 企業의 計算으로 또는

從屬企業이나 過半數占有된 企業이 發起人 또는 引受人으로서 또는 條件附 資本增加에 있어서 부여된 轉換權이나 引受權을 행사하여 인수한 株式의 現在高와 增加; 당해 株式이 그 營業年度에 換價된 때에는 그 換價에 관하여 賣却金額을 기재하고 賣却金額의 使用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會社, 從屬企業 또는 過半數占有된 企業이나 기타의 者가 會社 또는 從屬企業이나 過半數占有된 企業의 計算으로 취득하거나 質物로 취득한 會社의 自己株式에 대한 現在高; 이 경우에는 당해 株式의 數와 額面價 및 資本에 대한 比率, 그 밖에 취득한 株式에 대한 取得時期 및 取得理由가 기재되어야 한다. 당해 株式이 그 營業年度에 취득되었거나 양도된 경우에는 그 取得 또는 讓渡에 관하여도 당해 株式의 數와 額面價, 資本에 대한 比率과 取得 또는 讓渡價額 및 賣却金額의 使用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이러한 記載가 貸借對照表에 밝혀져 있지 않는 한 各 種類의 株式의 數와 額面價; 이 가운데 條件附 資本增加 또는 認可資本에 있어서 그 營業年度에 인수된 株式은 개별적으로 구별하여 기재되어야 한다.

4. 認可資本;

5. 轉換社債 및 이와 유사한 有價證券의 數와 그 證券에 化體된 權利의 記載;

6. 享益權, 改善證券에 관한 權利와 유사한 權利 그리고 이들 各 權利 및 그 營業年度에 새로 생긴 權利의 種類와 數의 記載;

7. 相互參加의 存在와 그 企業의 記載;

8. 第20條 第1項 또는 第4項에 의하여 통지된 會社에 대한 資本參加의 存在; 이 경우에는 그 資本參加가 누구에게 귀속되며 그 參加가 會社의 總株式의 4분의 1을 초과하는가 또는 過半數參加(第16條 第1項)인가의 與否를 記載하여야 한다.

② 獨逸 聯邦共和國 또는 獨逸聯邦州의 福祉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報告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61條 (削除)

第2節 年度決算書の 検査(Prüfung des Jahresabschlusses)

第1款 決算検査人에 의한 検査(Prüfung durch Abschlussprüfer)

第162條 - 第169條 (削除)

第2款 監事會의 検査(Prüfung durch Aufsichtsrat)

第170條 [監事會에 대한 提出] ① 理事會는 年度決算書와 狀況報告書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이를 監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年度決算書가 決算検査人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 書類는 決算検査人의 検査報告書와 함께 그 報告書의 受領後 지체없이 監事會에 제출되어야 한다.

② 동시에 理事會는 貸借對照表上的 利益(Bilanzgewinn)의 사용에 관하여 株主總會에 제안하고자 하는 議案을 監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이 議案은 상이한 項目分類가 필요하지 아니한 한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야 한다.

1. 株主에 대한 配當
2. 利益準備金에의 積立
3. 利益移越金
4. 貸借對照表上的 利益

③ 各 監事는 提出書類(Vorlagen)에 대하여 알 權利를 가진다. 監事會가 달리 결의하지 아니한 한 請求에 의하여 各 監事에게도 提出書類를 교부하여야 한다.

第171條 [監事會에 의한 検査] ① 監事會는 年度決算書, 狀況報告書 및 貸借

對照表上の 利益의 使用에 관한 議案을 檢査하여야 한다. 年度決算書가 決算檢査人에 의하여 檢査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監事會의 請求에 따라 決算檢査人은 이 議案에 관한 監事會의 審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② 監事會는 檢査의 結果에 관하여 書面으로 株主總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監事會는 報告書內에 監事會가 당해 營業年度중에 會社의 營業指揮를 檢査한 方法 및 範圍도 通知하여야 한다. 또한 年度決算書가 決算檢査人에 의하여 檢査되어야 하는 경우에 監事會는 決算檢査人에 의한 年度決算書의 檢査의 結果에 대하여도 說明하여야 한다. 監事會는 報告書의 말미에 監事會의 檢査의 總括적 結果에 의하여 異議를 提起하여야 할 것인가의 與否와 監事會는 理事會에 의하여 작성된 年度決算書を 승인하는가의 與否를 表示하여야 한다.

③ 監事會는 議案이 監事會에 提出된 후 1월 이내에 監事會의 報告書を 理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報告書가 기한 내에 理事會에 提出되지 아니한 때에는 理事會는 監事會에 대하여 遲滯없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차의 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報告書가 재차의 기한의 만료 전에 理事會에 提出되지 아니한 때에는 年度決算書는 監事會에 의하여 승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第3節 年度決算書の 確定, 利益의 使用(Feststellung des Jahres- abschlusses, Gewinnverwendung)

第1款 年度決算書の 確定(Feststellung des Jahresabschlusses)

第172條 [理事會와 監事會에 의한 確定] 監事會가 年度決算書を 승인한 때에는 理事會와 監事會가 年度決算書の 確定을 株主總會에 위임하도록 결의하지 아니한 한 年度決算書는 確定된다. 理事會와 監事會의 決議는 株主總會에 대한 監事會의 報告書중에 記載하여야 한다.

第173條 [株主總會에 의한 確定] ① 理事會와 監事會가 年度決算書의 確定을 株主總會에 위임하도록 결의하거나 監事會가 年度決算書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株主總會가 年度決算書를 確定한다.

② 이 年度決算書에 관하여는 確定에 있어서 그 作成에 적용된 規定이 적용되어야 한다. 株主總會는 年度決算書를 확정함에 있어서 法律 또는 定款에 의하여 적립할 수 있는 金額만을 利益準備金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株主總會가 法律上 義務에 기하여 決算檢查人에 의하여 검사된 年度決算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商法 第316條 第3項에 의하여 새로운 檢查를 받기전에 株主總會가 행한 年度決算書의 確定 및 利益處分에 관한 決議는 새로 행하여진 檢查를 根據로 變更에 관하여 無制限의 確認의 附記가 부여된 경우에 비로소 效力을 발생한다. 그 決議는 決議後 2週間 이내에 변경에 관하여 無制限의 確認의 附記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는 無效로 된다.

第2款 利益의 使用(Gewinnverwendung)

第174條 ① 株主總會는 貸借對照表上の 利益의 사용에 관하여 결의한다. 株主總會는 이 경우에 確定된 年度決算書에 구속된다.

② 決議에서는 貸借對照表上の 利益의 使用을 개별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貸借對照表上の 利益;
2. 株主에게 배당되어야 할 金額;
3. 利益準備金으로 적립되어야 할 金額;
4. 利益移越金;
5. 決議에 의거한 부수적 費用.

③ 確定된 年度決算書의 變更을 위한 決議는 할 수 없다.

第3款 定期株主總會(Ordentlich Hauptversammlung)

第175條【召集】① 監事會의 報告書를 받은 후 遲滯없이 理事會는 確定된 年度決算書와 狀況報告書의 採擇(Entgegennahme)과 貸借對照表上의 利益의 處分에 관한 決議를 위하여 株主總會를 소집하여야 한다. 株主總會는 당해 營業年度의 開始後 8월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② 年度決算書·狀況報告書·監事會의 報告書와 貸借對照表의 利益의 處分에 관한 理事會의 議案은 召集時로부터 會社의 營業所內에 株主들이 閱覽하도록 備置하여야 한다. 請求에 따라 各 株主에게 遲滯없이 議案의 謄本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株主總會가 年度決算書를 確定하여야 할 때에는 年度決算書의 確定을 위한 株主總會의 召集에 관하여서와 提出書類의 備置와 謄本의 交付에 관하여는 第1項 및 第2項이 준용된다. 年度決算書의 確定 및 貸借對照表上의 利益의 사용에 관한 審議는 이를 結合하여야 한다.

④ 確定된 年度決算書의 採擇을 위한 株主總會의 召集과 동시에, 또는 株主總會가 年度決算書를 確定하여야 할 경우에는 年度決算書의 確定을 위한 株主總會의 召集과 동시에 理事會와 監事會는 監事會의 報告書에 포함된 年度決算書에 관한 說明(第172條와 第173條 第1項)에 구속된다.

第176條【提出書類, 決算檢査人의 出席】① 理事會는 第175條 第2項에 규정된 書類를 株主總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審議의 開始를 위하여 理事會는 그 書類를, 監事會의 議長은 監事會의 報告書를 說明하여야 한다. 理事會는 이 경우에 年度缺損金 또는 年度利益을 現저하게 감소시킨 損失에 대하여도 意見을 진술하여야 한다. 第3文은 金融機關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年度決算書가 決算檢査人에 의하여 檢査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決算檢

査人は 年度決算書の 確定에 관한 審議에 출석하여야 한다. 決算検査人は 株主에게 説明을 할 義務는 지지 아니한다.

第4節 年度決算書の 公告(Bekanntmachung des Jahresabschlusses)

第177條 - 第178條 (削除)

第6章 定款의 變更·資本調達과 資本減少의 節次(Satzungsänderung, Maßnahmen der Kapitalbeschaffung und Kapitalherabsetzung)

第1節 定款의 變更

第179條 [株主總會의 決議] ① 定款의 變更은 모두 株主總會의 決議에 의하여 한다. 株主總會는 용어만에 관한 變更의 權利를 監事會에 위임할 수 있다.

② 株主總會의 決議에는 그 決議時에 대표된 資本의 4분의 3이상을 포함하는 多數決이 필요하다. 定款으로 이와 다른 資本多數決을 규정할 수 있으나, 企業의 目的의 變更에 관하여는 보다 큰 資本多數決에 한하여 규정할 수 있다. 定款으로 그 이상의 要件을 규정할 수 있다.

③ 數種의 株式에 관한 종전의 關係를 어떤 種類의 株式에 불리하게 變更하여야 할 때에는 株主總會의 決議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損害를 받은 株主의 同意가 필요하다. 그 同意에 관하여 損害를 받은 株主는 特別決議를 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는 第2項이 적용된다.

第179a條 [會社의 全財産의 讓渡에 관한 義務] ① 會社의 財産讓渡가 組織變更法의 規定을 적용받지 않고 株式會社가 모든 會社財産을 양도할 의무를 지기로 하는 契約도 그와 동시에 企業目的의 變更이 없는 경우에는 역

시 第179條에 의한 株主總會의 決議를 요한다. 定款은 그 이상의 資本多數決을 정할 수 있다.

② 그 契約書는 同意의 決議를 하여야 할 株主總會의 召集時로부터 會社の 事務所에 株主의 閱覽을 위하여 비치되어야 한다. 각 株主의 請求에 따라 각 株主에게 지체없이 寫本을 교부하여야 한다. 株主總會에서는 契約書가 비치되어야 한다. 理事會는 審議初에 그 契約를 설명하여야 한다. 契約書는 附屬書類로서 議事錄에 첨부되어야 한다.

③ 會社가 會社財産의 讓渡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에는 解散申告에 契約의 正本 또는 공증된 寫本이 첨부되어야 한다.

第180條 [關係株主의 同意] ① 株主에게 從된 義務(Nebenverpflichtung)를 부과하는 決議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모든 關係株主의 同意가 필요하다.

② 前項의 規定은 記名株式 또는 假株券의 讓渡에 會社の 同意를 얻도록 하는 決議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第181條 [定款變更의 登記] ① 理事會는 定款의 變更을 商業登記簿에 登記하기 위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그 申告에는 定款의 全文이 첨부되어야 한다. 定款의 全文은 定款變更에 관한 決議로 변경된 定款規定과 변경되지 않은 定款規定이 최종적으로 商業登記를 위하여 제출된 定款의 全文과 일치한다는 公證人의 證明을 받아야 한다. 定款의 變更에 國家의 認可가 필요한 때에는 申告書에 그 認可證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變更이 第39條에 계기된 事項에 관계되지 아니한 한에서 登記는 法院에 提出된 書類의 인용으로 충분하다. 變更이 그 內容을 公告하여야 할 規定에 관계된 때에는 그 變更의 內容도 公告하여야 한다.

③ 變更은 그것이 會社の 住所地の 商業登記簿에 登記된 때에 비로소 效力을 발생한다.

第2節 資本調達의 措置(Maßnahmen der Kapitalbeschaffung)

第1款 出資에 의한 資本增加(Kapitalerhöhung gegen Einlagen)

- 第182條 [要件] ① 出資에 의한 資本의 증가는 그 決議時에 대표된 資本의 4분의 3 이상을 포함하는 多數決로써만 결의할 수 있다. 定款으로 이와 다른 資本多數決을 규정할 수 있으나 議決權없는 優先株의 發行에 관하여는 보다 큰 資本多數決에 한하여 규정할 수 있다. 定款으로 그 이상의 要件을 규정할 수 있다. 資本增加는 新株의 發行에 의하여서만 실시할 수 있다.
- ② 數種의 議決權株式이 존재하는 경우에 株主總會의 決議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各 種類株主의 同意가 필요하다. 그 同意에 관하여 各 種類株主는 特別決議를 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는 第1項이 적용된다.
- ③ 新株는 그 額面超過의 價額으로 發行하여야 할 때에는 그 이하의 價額으로 發行할 수 없는 最低價額은 資本의 增加에 관한 決議에서 確定하여야 한다.
- ④ 종전의 資本에 대한 未納入의 出資를 아직 받을 수 있는 동안에는 資本을 증가하지 못한다. 保險會社에 관하여는 定款으로 달리 규정할 수 있다. 出資가 비교적 輕微한 範圍內에서 미납된 때에는 이 미납은 資本의 增加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 第183條 [現物出資에 의한 資本增加] ① 現物出資(第27條 第1項, 第2項)가 있는 경우에는 資本增加에 관한 決議에서 그 目的物, 會社가 目的物을 取得할 相對方과 現物出資에 대하여 부여할 株式의 券面額을 確定하여야 한다. 이 決議는 現物出資의 引渡와 第1文에 의한 確定을 명시적으로 또 合法的으로(第124條 第1項) 公告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② 前項의 確定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現物出資에 관한 契約 및 그 履行을 위한 法律行爲는 會社에 대하여 效力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資本增加의

실행이登記된 때에는 資本增加의 效力은 이 無效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株主는 株式의 額面 또는 額面超過의 發行價額을 納入할 義務를 진다. 資本增加의 실행을 商業登記簿에 登記한 後에는 이 無效는 定款變更으로 治癒될 수 없다.

③ 現物出資에 의한 資本增加에 있어서 檢査는 1인 또는 수인의 檢査人에 의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第33條 第3項 내지 第5項, 第34條 第2項과 第3項, 第35條는 이에 준용된다. 現物出資의 價値가 그에 대하여 부여한 株式의 券面額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 法院은 登記를 거절할 수 있다.

第184條 [決議의 申告] ① 理事會와 監事會議長은 資本增加에 관한 決議를 商業登記簿에 登記하기 위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現物出資의 檢査에 관한 報告書(第183條 第3項)는 그 申告書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申告書에는 증전의 資本에 대한 出資중 아직 給與되지 아니한 것 및 이를 取得할 수 없는 理由를 記載하여야 한다.

③ (削除)

第185條 [新株의 請約] ① 新株의 請約은 書面에 의한 表示로써 하며, 이에 의하여 참가할 株式의 數, 券面額 및 數種의 株式을 發行한 때에는 그 株式의 種類를 명시하여야 한다. 株式請約書는 2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株式請約書에는 다음 각호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資本增加를 결의한 날
 2. 株式의 發行價額, 確定된 納入金額 및 중된 義務의 範圍
 3. 現物出資가 있는 資本增加의 경우에 규정된 確定事項 및 數種의 株式을 發行한 때에는 各 種類의 株式의 總券面額
 4. 그때까지 資本增加의 실행을 登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株式請約이 拘束力을 상실하게 될 시점
- ② 前項의 事項을 완전히 記載하지 아니하거나 第1項 第4號의 留保 이외

獨逸株式法

에 株式請約人의 義務의 制限을 記載한 株式請約書는 無效이다.

③ 資本增加의 실행을 登記한 경우에 株式請約人이 株式請約書에 의거하여 株主로서 權利를 行使하거나 義務를 이행한 때에는 그 株式請約人은 株式請約書의 無效 또는 拘束力 없음을 주장할 수 없다.

④ 株式請約書에 記載되지 아니한 制限은 모두 會社에 대하여 效力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第186條 [新株引受權] ① 모든 株主에게는 그 請求에 따라 종전의 資本에 대한 그의 持分에 상응한 比率의 新株를 配定하여야 한다. 新株引受權의 行使를 위하여는 2週 이상의 期間을 定하여야 한다.

② 理事會는 發行價額과 이와 동시에 第1項에 의하여 定하여진 期間을 會社公告紙에 公告하여야 한다.

③ 新株引受權은 資本增加에 관한 決議중에서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排除할 수 있다. 이 경우의 決議에는 法律 또는 定款으로 資本增加에 관하여 규정한 要件외에 그 決議時에 代表된 資本의 4분의 3 이상을 포함하는 多數決이 필요하다. 定款으로 보다 큰 資本多數決 및 그 이상의 要件을 규정할 수 있다.

④ 新株引受權의 전부 또는 일부를 排除하는 決議는 이 排除를 명시적으로 또 合法的으로(第124條 第1項) 公告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理事會는 株主總會에 新株引受權의 부분적 또는 전면적 配제에 관한 報告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報告書에는 제안된 發行價額에 대한 이유가 기술되어야 한다.

⑤ 決議에 의하여 株主에게 引受하도록 提供할 義務의 부담하에 金融機關이 新株를 引受하여야 할 경우에는 新株引受權의 排除로 보지 아니한다. 理事會는 株式에 대하여 지급할 對價와 新株引受提供의 승낙에 관하여 確定된 期間을 表示하여 金融機關의 新株引受提供을 會社公告紙에 公告하여야 한다. 金融機關이외의 다른 者가 株主에게 引受하도록 提供할 義務의

부담하에 新株를 引受하여야 할 경우에도 같다.

第187條 [新株의 引受를 구하는 權利의 確約] ① 新株의 引受를 구하는 權利는 株主의 引受權의 留保下에서만 確約할 수 있다.
② 資本增加에 관한 決議 前의 確約은 會社에 대하여 效力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第188條 [實行의 申告와 登記] ① 理事會와 監事會議長은 資本增加의 실행을 商業登記簿에 登記하기 위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② 申告에 관하여는 第36條 第2項, 第36a條 및 第37條 第1項이 준용된다. 納入은 理事會의 計定에 貸邊記入을 통하여 이행될 수 없다.
③ 申告書에는 會社의 住所地의 法院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1. 株式請約書의 複本과 各 株主가 받은 株式 및 이에 대하여 給與한 納入金額을 記載하고 理事會가 署名한 株式請約人의 일람표
2. 現物出資가 있는 資本增加의 경우에는 第183條에 의한 確定을 기초로 한 또는 그 실행을 위하여 해결한 契約書와 檢査人의 報告書를 商工會議所에 提出하였다는 證書
3. 新株의 發行으로 인하여 會社에 발생한 費用의 計算書
4. 資本의 增加에 國家의 認可가 필요한 때에는 그 認可證
- ④ 資本增加의 실행의 申告와 登記는 증가에 관한 決議의 申告 및 登記와 結合할 수 있다.
- ⑤ 提出된 書類는 原本·正本 또는 公證된 謄本으로 法院에 보존한다.

第189條 [資本增加의 效力發生] 資本增加의 실행의 登記와 동시에 資本은 증가한다.

第190條 [公告] 登記(第188條)의 公告에는 登記의 內容외에 株式의 發行價額, 現物出資에 의한 資本增加에서 정하여진 決定 및 現物出資(第183條 第3項)의 檢査에 관한 報告書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決定의 公告에 있어서는 法院에 提出한 書類의 인용으로 충분하다.

第191條 [株式 및 假株券의 發行禁止] 資本增加의 실행의 登記前에는 新持分權을 讓渡할 수 없으며 新株와 新假株券을 發行할 수 없다. 登記前에 發行한 新株와 新假株券은 無效이다. 發行으로 인한 損害에 관하여는 發行者가 占有者에 대하여 連帶債務者로서 責任을 진다.

第2款 條件附 資本增加(Bedingte Kapitalerhöhung)

第192條 [要件] ① 株主總會는 會社가 부여한 新株(引受株)에의 轉換權(Umtauschrecht) 또는 新株引受權을 行使한 한도 내에서만 실행하여야 할 資本의 增加를 결의할 수 있다(條件附資本增加).

② 條件附資本增加는 다음 각호의 目的을 위하여서만 결의하여야 한다.

1. 轉換社債의 債權者에 대하여 轉換權 또는 新株引受權을 부여하기 위하여;

2. 多數企業의 結合을 준비하기 위하여;

3. 會社가 勞働者에게 부여한 利益參加로 인하여 勞働者에게 귀속된 金錢債權의 出資에 대하여 新株를 引受하도록 會社의 勞働者에게 新株引受權을 부여하기 위하여.

③ 條件附資本增加의 券面額은 條件附資本增加에 관한 決議時에 존재하는 資本의 半額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條件附資本增加에 관한 決議에 반하는 株主總會의 決議는 無效이다.

⑤ 新株引受權에 관한 이 條 이하의 規定이 轉換權에 관하여 준용된다.

第193條 [決議의 要件] ① 條件附資本增加에 관한 決議에는 그 決議時에 대표된 資本의 4분의 3 이상을 포함하는 多數決이 필요하다. 定款은 강화된 資本多數決 및 그 이상의 要件을 규정할 수 있다. 第182條 第2項과 第187條 第2項은 이에 준용된다.

② 決議중에서 다음 각호의 事項도 確定하여야 한다.

1. 條件附 資本增加의 目的
2. 新株引受權者の 範圍
3. 發行價額 또는 그 金額이 計算된 기초

第194條 [現物出資에 의한 條件附資本增加] ① 現物出資가 있는 때에는 條件附資本增加에 관한 決議중에서 現物出資의 目的物, 會社가 그 者로부터 目的物을 取得할 者와 現物出資에 대하여 부여할 株式의 券面額을 確定하여야 한다. 新株引受株에의 轉換을 위하여 한 社債券의 交付는 現物出資로 보지 아니한다. 決議는 現物出資의 引渡가 명시적으로 또 合法的으로(第124條 第1項) 公告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前項의 確定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現物出資에 관한 契約 및 그 이행을 위한 法律行爲는 會社에 대하여 效力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新株引受株을 發行한 때에는 條件附資本增加의 效力은 이 無效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株主는 新株引受株의 額面 또는 額面超過의 發行價額을 納入할 義務를 진다. 新株引受株을 發行한 후에는 이 無效를 定款變更에 의하여 治癒할 수 없다.

③ 第1項 및 第2項은 會社가 勞動者에게 부여한 利益參加로 인하여 會社의 勞動者에게 귀속된 金錢債權의 出資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現物出資에 의한 資本增加에서 檢査는 1인 또는 수인의 檢査人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第33條 第3項 내지 第5項, 第34條 第2項 및 第3項, 第35條가 이에 준용된다. 現物出資의 價値가 이에 대하여 부여되어야 할 株式의 券面額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에 法院은 登記를 거절할 수 있다.

第195條 [決議의 申告] ① 理事會와 監事會議長은 條件附資本增加에 관한 決議를 商業登記簿에 登記하기 위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② 申告에는 會社의 所在地의 法院을 위하여 다음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1. 現物出資에 의한 條件附資本增加의 경우에는 第194條에 의한 確定의 기초가 되거나 그 실행을 위하여 체결한 契約書와 現物出資의 檢査에 관한 報告書(第94條 第4項);

2. 新株引受株의 發行으로 인하여 會社에 발생한 費用의 計算書;

3. 資本增加에 國家의 認可가 필요한 때에는 그 認可證.

③ 提出된 書類는 原本·正本 또는 公증된 謄本으로 法院에 보존한다.

第196條 [登記의 公告] 條件附資本增加에 관한 決議의 登記의 公告에는 그 內容외에 第193條 第2項에 의한 決定 및 第194條에 의한 現物出資의 引渡에 있어서 정한 決定 및 現物出資의 檢査에 관한 報告書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야 한다. 第194條에 의한 決定에 관하여는 法院에 提出한 書類의 인용으로 충분하다.

第197條 [株式發行의 禁止] 條件附資本增加에 관한 決議의 登記前에는 新株引受株을 發行할 수 없다. 引受權者의 請求權은 이 時點 이전에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 이전에 發行된 新株引受株는 無效이다. 發行으로 인하여 발생한 損害에 관하여는 發行者가 占有者에 대하여 連帶債務者로서 責任을 진다.

第198條 [新株引受의 表示] ① 新株引受權은 書面에 의한 表示로써 行使한다. 이 表示(新株引受證)는 2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新株引受證에는 참가할 株式의 數, 券面額 및 數種의 株式을 發行한 때에는 그 株式의 種類, 第

193條 第2項에 의한 確定事項, 第194條에 의하여 現物出資의 引渡의 경우에 규정된 確定事項과 條件附資本增加에 관한 決議를 한 날을 記載하여야 한다.

② 新株引受證은 株式請約의 表示와 동일한 效力을 가진다. 第1項에 적합하지 아니한 內容을 가지거나 表示者의 義務의 制限을 記載한 新株引受證은 無效이다.

③ 新株引受證의 無效에도 불구하고 新株引受株가 發行된 경우에 表示者가 新株引受證에 의거하여 株主로서 權利를 行使하거나 義務를 이행한 때 에는 그 表示者는 無效를 주장할 수 없다.

④ 新株引受證에 記載되지 아니한 制限은 모두 會社에 대하여 效力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第199條 [新株引受株의 發行] ① 理事會는 條件附資本增加에 관한 決議중 에서 確定된 목적의 이행을 위하여서만 新株引受株를 發行할 수 있으며 決議에 의하여 정하여진 對價의 全額給與 전에는 이를 發行하지 못한다.

② 理事會는 轉換을 위하여 提出한 社債券의 發行價額과 이 社債券에 대하여 부여될 新株引受株의 높은 券面額과의 差額이 기타의 利益準備金이 이 目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 그 利益準備金에 의하여 또는 轉換權者의 追加支給에 의하여 충당된 경우에만 轉換社債券과 상환으로 新株引受株를 發行할 수 있다. 社債券 發行의 總額이 新株引受株의 總券面額에 달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00條 [條件附資本增加의 效力發生] 新株引受株의 發行과 동시에 資本은 증가한다.

第201條 [新株引受株의 發行의 申告] ① 理事會는 營業年度의 經過 後 1월 이내에 前營業年度內에 發行한 新株引受株의 範圍를 商業登記簿에 登記하

기 위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② 申告書에는 新株引受證 2통과 理事會가 署名한 新株引受權 行使者の 일람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一覽表에는 各 株主가 받을 株式 및 그 株式에 대하여 한 出資額을 記載하여야 한다.

③ 理事會는 申告書중에 條件附資本增加에 관한 決議중에서 確定된 目的의 이행을 위하여서만 新株引受株를 發行하였으며 決議에 의하여 정하여진 대가의 全額給與 前に 發行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을 表示하여야 한다.

④ 提出된 書類는 原本·正本 또는 公증된 謄本으로 法院에 보존한다.

第3款 認可資本(Genehmigtes Kapital)

第202條 [要件] ① 定款으로 理事會에 대하여 會社의 登記後 最長 5년을 기한으로 出資에 의한 新株의 發行을 통하여 일정한 券面額(認可資本)까지 資本을 증가할 權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이 授權은 定款變更에 의하여 定款變更의 登記後 最長 5년을 기한으로 부여할 수 있다. 株主總會의 決議에는 그 決議時에 대표된 資本의 4분의 3 이상을 포함하는 多數決이 필요하다. 定款으로 보다 큰 資本多數決 및 그 이상의 要件을 규정할 수 있다. 第182條 第2項은 이에 적용된다.

③ 認可資本의 券面額은 授權時에 현존하는 資本의 半額을 초과하지 못한다. 新株는 監事會의 同意를 얻은 때에 한하여 發行하여야 한다.

④ 定款으로 新株를 會社의 勞動者에 대하여 發行할 것도 규정할 수 있다.

第203條 [新株의 發行] ① 新株의 發行에 관하여는 다음 項 이하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結果가 發行하지 아니하는 한 出資에 의한 資本增加에 관한 第185條 내지 第191條가 준용된다. 新株의 發行을 위한 定款의 授權이 資本增加에 관한 決議에 대신한다.

② 이 授權으로 理事會가 新株引受權의 排除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예정할

수 있다. 이것을 예정한 授權을 定款變更에 의하여 부여한 때에는 第186條 第4項이 준용된다.

③ 新株는 종전의 資本에 대한 未納入의 出資를 받을 수 있는 동안에는 發行하지 못한다. 保險會社에 관하여는 定款으로 달리 규정할 수 있다. 出資가 비교적 경미한 範圍內에서 미납된 때에는 新株의 發行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資本增加의 실행의 第1回の 申告書중에 종전의 資本에 대하여 給與하지 아니한 出資의 範圍와 받을 수 없는 이유를 記載하여야 한다.

④ 株式을 會社의 勞動者에 대하여 發行한 때에는 第3項 第1文 및 第4文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204條 [株式發行의 條件] ① 株主權의 內容 및 株式發行의 條件에 관하여는 授權중에 아무런 規定이 없는 한 理事會가 결정한다. 理事會의 決定에 는 監事會의 同意가 필요하다. 新株引受權의 排除에 관한 第203條 第2項에 의한 理事會의 決定에 대하여도 같다.

② 議決權없는 優先株가 있는 때에는 利益 또는 會社財産의 配當時에 이에 우선하거나 동등한 優先株는 授權중에 이를 예정한 때에 한하여 發行할 수 있다.

③ 無制限적인 確認의 附記를 한 年度決算에 의하여 年度剩餘金이 표시된 때에는 會社에 대하여 이행할 出資가 第58條 第2項에 의하여 理事會와 監事會가 기타의 利益準備金으로 적립할 수 있는 年度剩餘金의 일부에서 충당되는 方法으로도 株式을 會社의 勞動者에 대하여 株式을 發行할 수 있다. 新株의 發行에 관하여는 第188條 第2項을 제외하고 現金出資에 의한 資本增加에 관한 諸規定을 적용한다. 資本增加의 실행의 申告書에는 確認의 附記가 있는 確定된 年度決算書を 첨부하여야 한다. 申告者는 또한 第210條 第1項 第1文에 의한 表示를 記載하여야 한다.

第205條 [現物出資에 의한 發行] ① 現物出資에 의하여는 授權중에 이를 예

獨逸株式法

정한 때에 한하여 株式을 發行할 수 있다.

② 現物出資의 目的物, 會社가 그 者로부터 目的物을 取得할 者와 現物出資의 경우에 부여할 株式의 券面額은 授權중에서 이를 確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理事會가 이를 確定하고, 株式請約書에 記載하여야 한다. 理事會는 監事會의 同意를 얻어서만 이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③ 現物出資에 의한 株式의 발행시에 檢査는 1인 또는 수인의 檢査人에 의하여 施行되어야 한다. 第33條 第3項 내지 第5項, 第34條 第2項 및 第3項, 第35條는 이에 준용된다. 現物出資의 價値가 이에 대하여 부여될 株式의 券面額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에는 法院은 登記를 거절할 수 있다.

④ 前項의 確定이 없는 때에는 現物出資에 관한 契約 및 그 履行을 위한 法律行爲는 會社에 대하여 效力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理事會의 確定事項이 株式請約書에 記載되지 아니한 때에도 같다. 資本增加의 施行이 登記된 때에는 資本增加의 效力은 이 無效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株主는 株式의 額面 또는 額面超過의 發行價額을 納入할 義務를 진다. 商業登記簿에 資本增加의 施行을 登記한 후에는 이 無效를 定款變更에 의하여 治癒할 수 없다.

⑤ 第2項 및 第3項은 會社가 勞働者에게 부여한 利益參加로 인하여 會社의 勞働者에게 귀속된 金錢債權의 出資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206條 [會社의 登記前의 現物出資에 관한 契約] 會社의 登記 前에 認可資本에 대하여 現物出資를 給與할 契約을 체결한 때에는 現物出資에 의한 株式發行에 관하여 예정한 確定事項을 定款중에 記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會社의 設立에 관한 第27條 第3項, 第5項, 第32條 내지 第35條, 第37條 第4項 第2號, 第4號와 第5號, 第38條 第2項 및 第49條가 준용된다. 理事會가 發起人에 대신하며 資本增加의 施行의 申告와 登記가 會社의 申告와 登記에 대신한다.

第4款 會社資産에 의한 資本增加(Kapitalerhöhung aus Gesellschaftsmitteln)

第207條 [要件] ① 株主總會는 資本準備金과 利益準備金の 轉換에 의한 資本增加를 결의할 수 있다.

② 이 決議 및 決議의 申告에 관하여는 第182條 第1項 第1文, 第2文 및 第4文과 第184條 第1項이 준용된다.

③ 이 資本增加는 資本增加에 관한 決議의 직전에 經過한 營業年度(前營業年度)에 관한 年度決算書가 確定된 후에 비로소 결의할 수 있다.

④ 決議는 貸借對照表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第208條 [資本準備金과 利益準備金の 轉入可能性] ① 資本으로 전입되어야 할 資本準備金과 利益準備金は 前年度貸借對照表중에, 그리고 決議가 다른 貸借對照表를 기초로 한 때에는 그 다른 貸借對照表중에도 “資本準備金”과 “利益準備金” 또는 年度剩餘金이나 貸借對照表利益의 處分에 관한 최종의 결의에서 이 積立金에의 이월로서 記載되어 있어야 한다. 第2項의 유보하에 기타의 任意準備金과 그 全額의 移越, 資本準備金, 法定準備金 및 그의 移越額이 합하여 종전의 資本의 10분의 1 또는 定款에 규정된 것 이상의 額을 초과한 資本으로 전입할 수 있다.

② 기초가 된 貸借對照表중에 損失移越額을 포함한 損失額이 記載되어 있는 한 資本準備金, 利益準備金 및 그 移越金은 전환될 수 없다. 일정한 目的에 사용하도록 정하여진 利益準備金과 그 移越額은 그 目的規定에 합치되는 때에 한하여 전입할 수 있다.

第209條 [基礎가 된 貸借對照表] ① 年度貸借對照表는 檢査를 받고 確定된 年度貸借對照表에 決算檢査人의 無制限적인 確認의 附記가 있는 때와 貸借對照表의 基準日이 商業登記簿에 登記하기 위하여 決議를 申告하기 전

獨逸株式法

최장 8월 이내인 때에 최종의 貸借對照表는 決議의 기초로 될 수 있다.

② 최종의 年度貸借對照表가 決議의 기초로 되지 아니한 때에 그 貸借對照表는 이 法 第150條와 第152條, 商法 第242條 내지 第256條, 第264條 내지 第274條, 第279條 내지 第283條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貸借對照表의 基準日은 商業登記簿에 登記를 위하여 決議의 申告를 하기 전 최장 8월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이 貸借對照表는 1人の 決算檢查人에 의하여 그것이 이 法 第150條, 第152條, 商法 第242條 내지 第256條, 第264條 내지 第274條, 第279條 내지 第283條에 적합한가를 檢查받아야 한다. 이 貸借對照表에는 無制限적인 確認의 附記가 있어야 한다.

④ 株主總會가 다른 檢查人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종의 年度決算書의 檢查를 위하여 株主總會가 선임하거나 法院이 選任한 檢查人을 선임된 檢查人으로 본다. 檢查委任(Prüfungsauftrag)의 특수성에서 다른 점이 없는 한, 檢查에 관하여는 商法 第318條 第1項 第3文, 第319條 第1項 내지 第3項, 第320條 第1項 및 第2項, 第321條, 第322條 第4項, 第323條가 준용된다.

⑤ 保險會社에서는 監事會가 檢查人을 선정한다; 第4項 第1文은 이에 준용된다. 檢查委任의 特殊性에서 다른 점이 없는 한 檢查에 관하여는 商法 第341k條가 적용된다.

⑥ 第2項 내지 第5項의 경우에는 貸借對照表의 備置와 謄本の 交付에 관하여 第175條 第2項이 준용된다.

第210條 [決議의 申告와 登記] ① 商業登記簿에 登記하기 위한 決議의 申告書에는 會社의 住所地의 法院을 위하여 資本增加의 기초가 된 貸借對照表와 確認의 附記를, 第209條 第2項 내지 第6項의 경우에는 前年度貸借對照表를, 아직 提出하지 아니한 한 이것도 또한 첨부하여야 한다. 申告人은 法院에 대하여 그가 아는 바에 의하면 기초가 된 貸借對照表의 決算日로부터 申告日까지에, 申告日에 결의하였을 경우에는 資本增加에 모순되었을

財産減少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法院은 資本增加의 기초가 된 貸借對照表가 申告前 8월 이내의 決算日에 작성되고 第1項 第2文에 의한 表示가 있는 때에 한하여 決議를 登記할 수 있다.

③ 法院은 貸借對照表가 法規定에 적합한가의 與否는 檢査할 필요가 없다.

④ 決議의 登記에 있어서는 그 決議가 會社資産에 의한 資本增加에 관한 것임을 記載하여야 한다.

⑤ 提出된 書類는 法院에 原本·正本 또는 공증된 謄本으로 보존한다.

第211條 [資本增加의 效力發生] ① 資本은 資本增加에 관한 決議를 登記함으로써 증가된다.

② (削除)

第212條 [資本增加로 인한 權利者] 新株는 증전의 資本에 대한 株主의 持分에 비례하여 株主에게 할당된다. 이와 상반된 株主總會의 決議는 無效이다.

第213條 [部分權] ① 資本增加의 結果, 증전의 資本에 대한 어떤 持分에 대하여 株式의 일부분만이 할당된 때에는 이 部分權은 독립하여 讓渡와 相續할 수 있다.

② 株券交付請求權을 포함한 新株에 의한 權利는 結合하여 1개의 완전한 株式을 형성하는 諸部分權이 1人의 수중에 集合되거나 結合하여 1개의 완전한 株式을 형성하는 諸部分權의 다수의 權利者가 權利行使를 위하여 結合한 때에 한하여 行使할 수 있다.

第214條 [株主에 대한 催告] ① 資本增加에 관한 決議의 登記 後에 理事會는 遲滯없이 株主에게 新株를 引受하도록 催告하여야 한다. 이 催告는 會社公

獨逸株式法

告紙에 公告하여야 한다. 公告에는 다음 각호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資本이 增加된 金額
2. 新株가 할당될 舊株의 比率

또한 公告에는 催告의 公告後 1년 이내에 引受하지 아니한 株式은 3회의 경고 후에 關係인의 計算에서 會社가 이를 賣却할 權利를 가진다는 뜻을 언급하여야 한다.

② 催告의 公告 후 1년이 經過한 후에 會社는 引受하지 아니한 株式의 賣却을 경고하여야 한다. 이 警告는 3회, 1월 이상의 간격으로 會社公告紙에 公告하여야 한다. 최후의 公告는 催告의 公告 후 8월이 經過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③ 警告의 最後公告 후 1년이 經過한 후에 會社는 引受하지 아니한 株式을 關係인의 計算에서 株式仲介人の 斡旋에 의한 公的인 去來所價格으로 賣却하여야 하며, 去來所價格이 없는 때에는 公的인 競賣를 통하여 賣却하여야 한다. 第226條 第3項 第2文 내지 第6文은 이에 준용된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은 株券을 發行하지 아니한 會社에 관하여 준용된다. 理事會는 株主에게 新株를 할당하도록 催告하여야 한다.

第215條【自己株式, 一部納入株式】① 自己株式은 資本增加에 참가한다.

② 一部納入된 株式은 그 券面額에 따라 資本增加에 참가한다. 이 株式에 관하여는 株式의 券面額의 증액에 의하여서만 資本增加를 할 수 있다. 일부 納入된 株式과 함께 全額納入된 株式이 있는 때에는 이 株式에 관하여는 株式의 券面額의 증액에 의하여서와 新株의 發行에 의하여서 資本增加를 할 수 있다. 資本增加에 관한 決議에서 增加의 方法을 정하여야 한다. 株式의 券面額의 증액에 의하여 資本增加를 하는 한, 이 資本增加에 의하여 어떠한 株式에 대하여도 株式의 券面額의 증액에 의하여 充當될 수 없는 金額을 할당하지 아니하도록 資本增加를 측정하여야 한다.

第216條 [株主와 第3者の 權利保護] ① 株式과 結合된 諸權利의 相互間의 關係는 資本增加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新複數議決權株式의 發行 및 第1文에 의거한 複數議決權株式의 議決權數의 增加는 第12條 第2項 第2文에 의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② 一部納入된 株式의 개개의 權利, 특히 利益 또는 議決權에 대한 참가가 株式에 대하여 給與된 出資에 따라서 정하여진 한에서 이 權利는 아직 미납된 出資를 給與할 때까지는 資本의 券面額에 대하여 計算된 資本增加의 백분율에 따라 增額 給與된 出資額에 의하여서만 株主에게 귀속된다. 그 이상의 納入을 한 때에는 이 權利는 이에 따라 신장된다. 第271條 第3項의 경우에는 增加額이 全額納入된 것으로 본다.

③ 會社의 利益分配, 會社의 株式 또는 資本의 券面額 또는 價值, 그렇지 않으면 종전의 資本比率 또는 利益配當比率에 의존한 會社의 第3者에 대한 契約上의 關係의 經濟的 內容은 資本增加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株主의 부수적 義務에 관하여도 같다.

第217條 [利益配當의 開始] ① 新株는 달리 규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資本增加를 결의한 全體營業年度의 利益配當에 참가한다.

② 資本增加에 관한 決議로써 新株가 資本增加에 관한 決議 전에 經過한 最近의 營業年度의 利益配當에 미리 참가한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決議 전에 經過한 最近의 營業年度의 貸借對照表上의 利益의 사용에 관하여 결의하기 전에 資本의 增加를 결의하여야 한다. 資本增加에 관한 決議 전에 經過한 最近의 營業年度의 貸借對照表上의 利益의 사용에 관한 決議는 資本이 증가된 때에 비로소 效力을 발생한다. 資本增加에 관한 決議 및 資本增加에 관한 決議전에 經過한 最近의 營業年度의 貸借對照表上의 利益의 사용에 관한 決議는 資本增加에 관한 決議가 決議後 3월 이내에 商業登記簿에 登記되지 아니한 때에는 無效이다. 이 期間의 經過는 取消의 訴 또는 無效의 訴가 계속중이거나 資本增加를 위하여 申請한 國

獨逸株式法

家の認可를 얻지 못한 동안에는 정지한다.

第218條 [條件附 資本] 條件附 資本은 資本과 동일한 비율로 증가된다. 轉換社債의 債權者에게 轉換權을 부여하기 위하여 條件附 資本을 결의한 때에는 轉換權者의 追加支給이 合意되지 아니한 한 社債券의 發行價額과 社債券에 대하여 부여할 新株引受株의 그 이상의 總券面額과의 差額을 填補하기 위하여 特別準備金을 설정하여야 한다.

第219條 [株式 및 假株券의 發行禁止] 資本增加에 관한 決議를 商業登記簿에 登記하기 전에는 新株와 假株券을 發行하지 못한다.

第220條 [價值評價] 資本增加 前에 取得한 株式의 取得價格이 이 株式 및 이 株式에 대하여 분배한 新株에 대하여 그 券面額에 비례하여 할당된 때에는 개개의 株式에 관하여 나타난 金額을 資本增加 前에 取得한 株式 및 이 株式에 대하여 분배한 新株의 取得價格으로 본다. 株式의 증대는 증가로 表示할 수 없다.

第5款 轉換社債·利益配當附社債(Wandelschuldverschreibungen, Gewinnschuldverschreibungen)

第221條 ① 債權者에게 株式으로 轉換權 또는 引受權을 부여하는 社債(轉換社債)와 債權者의 權利에 株主의 利益持分을 수반하게 하는 社債(利益配當附社債)는 株主總會의 決議에 의하여서만 發行할 수 있다. 이 決議에는 決議時에 대표된 資本의 4분의 3 이상을 포함하는 多數決이 필요하다. 定款으로 다른 資本多數決 및 그 이상의 要件을 규정할 수 있다. 第182條 第2項을 이에 적용한다.

- ② 轉換社債 發行에 관한 理事會의 授權은 최대한 5년동안 부여될 수 있다. 理事會와 監事會議長은 轉換社債의 發行에 관한 決議書와 그 發行에 관한 通知書를 商業登記簿에 첨부하여야 한다. 決議와 通知에 관한 事項은 會社公告紙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第1項은 享益權(Genussrechten)의 부여에 관하여 준용된다.
- ④ 株主는 轉換社債·利益配當附社債와 享益權에 관한 引受權을 가진다. 第186條는 이에 준용된다.

第3節 資本減少의 節次(Maßnahmen der Kapitalherabsetzung)

第1款 正規의 資本減少(Ordentliche Kapitalherabsetzung)

- 第222條【要件】 ① 資本의 減少는 決議時에 대표된 資本의 4분의 3 이상을 포함하는 多數決로써만 결의할 수 있다. 定款으로 보다 큰 資本多數決 및 그 이상의 要件을 규정할 수 있다.
- ② 數種의 議決權株式이 있는 때에는 株主總會의 決議가 유효하기 위하여 各 種類의 株主의 同意가 필요하다. 이 同意에 관하여는 各 種類의 株主가 特別決議를 하여야 한다. 이 特別決議에 관하여는 第1項이 적용된다.
- ③ 決議에서 資本減少의 目的, 특히 資本의 일부를 환급하여야 하는가의 與否를 確定하여야 한다.
- ④ 資本은 다음 각호의 方法에 의하여 감소할 수 있다.
1. 株式의 券面額의 減少
 2. 株式의 併合: 이 方法은 株式의 最低券面額을 유지할 수 없는 한도에 서만 허용된다.
- 決議에서는 資本減少의 方法을 정하여야 한다.

第223條【決議의 申告】理事會와 監事會議長은 資本減少에 관한 決議를 商業登記簿에 登記하기 위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第224條【資本減少의 效力發生】資本減少에 관한 決議의 登記와 동시에 資本은 감소된다.

第225條【債權者保護】① 決議의 登記의 公告 前에 발생한 債權을 가진 債權者가 公告後 6월 이내에 申告한 때에는 그가 辨濟를 請求할 수 없는 한 擔保를 提供하여야 한다. 登記의 公告 중에 債權者에게 이 請求權이 있음을 지적하여야 한다. 破産의 경우에 法規定에 의하여 債權者保護를 위하여 설치되고 國家의 監督을 받는 填補財團(Deckungsmasse)으로부터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를 가진 債權者는 擔保提供을 請求할 權利를 가지지 아니한다.

② 株主에 대한 지급은 資本減少에 의거하여 登記의 公告時로부터 6월이 經過한 후에 그리고 적시에 申告한 債權者에게 辨濟 또는 擔保提供을 한 후에 비로소 할 수 있다. 또한 株主의 出資給與義務의 免除는 이 시기 이전에는 그리고 적시에 申告한 債權者에게 辨濟 또는 擔保提供을 하기 전에는 그 效力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資本의 減少에 의거하여 株主에게 지급을 한 與否는 債權者의 擔保提供의 請求權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226條【株式의 失効宣言】① 資本減少의 실행을 위하여 交換·押印 또는 이와 유사한 方法으로 株式을 合併하여야 할 때에는 會社는 催告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會社에 提出하지 아니한 株式의 失効를 선언할 수 있다. 提出한 株式으로서 新株式으로 補償하기에 필요한 數에 달하지 못하고 當事者의 計算에서 환가하기 위하여 會社의 處分에 맡겨지지 아니한 株式에 관하여도 같다.

② 株式提出의 催告중에서 失效宣言을 경고하여야 한다. 失效宣言은 猶豫期間에 관한 第64條 第2項중에 규정된 方法으로 催告를 公告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失效宣言은 會社公告紙에 公告함으로써 행한다. 이 公告중에 어떤 株式이 失效宣言되었는가의 與否가 公告만으로서 분명해지도록 失效宣言된 株式을 記載하여야 한다.

③ 失效宣言된 株式에 대신하여 發行된 新株는 會社가 遲滯없이 이를 當事者의 計算에서 仲介人의 斡旋에 의한 公的 證券去來所價格으로 그리고 去來所價格이 없는 때에는 公的競賣에 의하여 賣却하여야 한다. 會社의 所在地에서의 競賣에 의하여 적당한 結果를 기대할 수 없는 때에는 適當場所에서 株式을 賣却하여야 한다. 競賣의 時期·場所 및 目的物을 公적으로 公告하여야 한다. 當事者에 대하여는 특별히 通知하여야 한다. 이 通知는 실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公告와 通知는 競賣日 2주 전에 하여야 한다. 賣却金額은 當事者에게 지급하거나 供託權이 있는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第227條【實行的 申告】 ① 理事會는 資本減少의 실행을 商業登記簿에 登記하기 위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② 資本減少의 실행의 申告와 登記는 減少에 관한 決議의 申告 및 登記와 함께 할 수 있다.

第228條【最低券面額 이하로의 減少】 ① 資本減少와 동시에 결의하고 現物出資가 確定되지 아니한 資本增加에 의하여 資本이 재차 最低券面額에 달할 때에는 資本은 第7條에 규정된 最低券面額 이하로 감소될 수 있다.

② 決議 후 6월 이내에 決議와 增資의 실행을 商業登記簿에 登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決議는 無效이다. 期間의 經過는 取消의 訴 또는 無效의 訴가 계속중이거나 資本減少 또는 資本增加를 위하여 申請한 國家의 認可를 얻지 못한 동안에는 停止한다. 이 決議와 資本增加의 실행은 合併하여

서만 商業登記簿에 登記하여야 한다.

第2款 簡易的 資本減少(Vereinfachte Kapitalherabsetzung)

第229條 [要件] ① 價值減少를 償却하거나 기타의 損失을 填補하거나 또는 法定準備金을 적립하기 위하여 行하여야 할 資本의 減少는 簡易한 形式으로 할 수 있다. 決議에서 이 目的을 위하여 資本減少가 行하여진다는 것을 確定하여야 한다.

② 簡易的 資本減少는 法定準備金과 資本準備金중에서 減少後에 잔존하는 資本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部分 및 利益準備金을 미리 處分한 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利益移越額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이 資本減少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正規的 資本減少에 관한 第222條 第1項, 第2項 및 第4項, 第223條, 第224條, 第226條 내지 第228條는 이에 준용된다.

第230條 [株主에 대한 支給의 禁止] 資本準備金 또는 利益準備金の 處分 및 資本減少로 인하여 얻은 金額은 株主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또는 株主의 出資履行義務를 免除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못한다. 이 金額은 價值減少를 償却하고, 기타의 損失을 填補하며 資本準備金 또는 法定準備金을 적립하기 위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目的을 위한 사용도 決議에서 이를 資本減少의 目的으로 기재한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第231條 [資本準備金과 法定準備金の 積立의 制限] 기타의 利益準備金の 處分으로 인하여 얻은 金額을 法定準備金으로 적립하는 것과 資本減少로 인하여 얻은 金額을 資本準備金으로 적립하는 것은 資本準備金과 法定準備金이 합하여 資本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 이 경우에 資本減少에 의하여 생긴 그러나 第7條에 규정된 最低券面

額 이상인, 券面額을 資本으로 본다. 허용된 수준의 金額의 算定에 있어서는 資本減少에 관한 決議 후의 시기에 資本準備金으로 적립하여야 할 金額은 그 지급이 資本減少에 관한 決議와 동시에 행하여진 決議에 기인한 경우에도 고려되지 아니한다.

第232條 [損失過大計上時の 資本準備金の 積立] 資本減少에 관한 決議가 행하여진 營業年度 또는 그 다음의 2년중의 한 營業年度에 대한 年度貸借對照表의 작성시에 價值減少와 기타의 損失이 決議時에 제상한 金額까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償却되었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그 차액을 資本準備金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第233條 [利益配當, 債權者保護] ① 法定準備金과 資本準備金이 합하여 資本의 100분의 10에 달하기 전에는 利益은 배당되지 못한다. 이때 資本減少에 의하여 생긴 券面額, 그러나 第7條에 규정된 最低券面額 이상인 券面額을 資本으로 본다.

② 100분의 4 이상의 利益持分の 支給은 資本減少에 관한 決議의 2년 이후에 개시되는 營業年度에 관하여 비로소 할 수 있다. 決議의 登記의 公告 전에 발생한 債權을 가진 債權者가 利益配當決議의 기초가 된 年度決算書의 公告時로부터 6월 이내에 申告를 한 한도 내에서 辨濟 또는 擔保提供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破産의 경우에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그 保護를 위하여 설치되고 國家의 監督을 받는 填補財團으로부터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를 가진 債權者에 대하여는 擔保를 提供할 필요가 없다. 商法 第325條 第1項 第2文 또는 第2項 第1文에 의한 公告에서 債權者에 대하여 辨濟 또는 擔保提供의 뜻을 表示하여야 한다.

③ 資本準備金과 利益準備金の 處分 및 資本減少로 인하여 얻은 金額은 本條의 規定에 의하여서도 利益으로서 배당하지 못한다.

第234條 [資本減少의 遡及效] ① 資本減少에 관한 決議前에 經過한 최종의 營業年度에 관한 年度決算書에는 資本減少後에 존재하여야 할 金額의 認可資本 및 資本準備金과 利益準備金을 記載할 수 있다.

② 이 경우에는 株主總會가 年度決算書의 確定에 관하여 결의한다. 이 決議는 資本減少에 관한 決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이 決議는 決議 후 3월 이내에 資本減少에 관한 決議를 商業登記簿에 登記하지 아니한 때에는 無效이다. 이 期間의 經過는 取消의 訴 또는 無效의 訴가 계속중이거나 資本減少를 위하여 申請한 國家의 認可를 얻지 못한 동안에는 정지한다.

第235條 [同時의 資本增加의 遡及效] ① 第234條의 경우에 資本減少와 동시에 資本增加를 결의한 때에는 年度決算書上에서는 資本增加도 완료된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 決議는 新株가 引受되고 現物出資가 確定되지 아니하고 各 株式에 관하여 第188條 第2項에 따라 資本增加의 실행의 申告時까지 하여야 할 納入을 給與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引受와 納入은 資本增加에 관한 決議를 認證한 公證人에게 증명하여야 한다.

② 資本減少 및 資本增加에 관한 決議와 資本增加의 실행을 決議 후 2월 이내에 商業登記簿에 登記하지 아니한 때에는 모든 決議는 無效이다. 期間의 經過는 取消의 訴 또는 無效의 訴가 계속중이거나 資本減少 또는 資本增加를 위하여 申請한 國家의 認可를 아직 얻지 못한 동안에는 정지한다. 決議와 資本增加의 실행은 合併하여서만 商業登記簿에 登記하여야 한다.

第236條 [公示] 商法 第325條에 의한 年度決算書의 公示는 第234條의 경우에는 資本減少에 관한 決議의 登記 후에, 第235條의 경우에는 資本減少 및 資本增加에 관한 決議와 資本增加의 실행을 登記한 후에 비로소 할 수 있다.

第3款 株式의 消却에 의한 資本減少(Kapitalherabsetzung durch
Einziehung von Aktien)

第237條 [要件] ① 株式은 强制的으로 또는 會社가 取得한 후에 消却할 수 있다. 强制消却은 原始定款(ursprünglichen Satzung)으로 또는 株式의 引受 전의 定款變更으로 명령하거나 허용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消却에 있어서는 正規的 資本減少에 관한 規定에 따라야 한다. 定款이나 株主總會의 決議에서 强制消却과 그 실행의 개별적 사항이 確定되어야 한다. 强制消却時 또는 消却의 目的을 위한 株式의 取得時에 株主에게 부여하는 대가의 지급 및 이 株主의 出資給與義務의 免除에 관하여는 第225條 第2項이 준용된다.

③ 額面 또는 額面超過의 發行價額을 全額納入한 株式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정이 존재하는 때에는 正規的 資本減少에 관한 規定에 따를 필요가 없다.

1. 無償으로 會社의 處分に 맡겨진 때.

2. 貸借對照表上의 利益 또는 기타의 利益準備金을 이 目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에서 그 利益이나 準備金의 부담에서 消却하는 때.

④ 第3項의 경우에도 消却에 의한 資本減少는 株主總會만이 결의할 수 있다. 決議는 單純多數決로써 충분하다. 定款으로 보다 큰 多數決 및 그 이상의 要件을 규정할 수 있다. 決議에서 資本減少의 目的을 確定하여야 한다. 理事會와 監事會議長은 商業登記簿에 登記하기 위하여 決議를 申告하여야 한다.

⑤ 第3項의 경우에는 消却한 株式의 總券面額과 同額의 金額을 資本準備金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⑥ 定款으로 명령한 强制消却의 경우에는 株主總會의 決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정규적 資本減少에 관한 規定의 적용에 관하여는 理事會의 消却에 관한 決定이 株主總會의 決議에 대신한다.

獨逸株式法

第238條 [資本減少의 效力발생] 決議의 登記와 동시에 또는 消却이 이보다 지체된 때에는 消却과 동시에 資本은 消却된 株式의 總券面額만큼 감소된다. 定款으로 명령한 強制消却의 경우에 株主總會가 資本減少에 관하여 결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資本은 強制消却과 동시에 감소된다. 消却을 위하여는 일정한 株式으로부터 발생하는 權利의 소멸을 目的으로 하는 會社의 행위가 필요하다.

第239條 [實行的 申告] ① 理事會는 資本減少의 실행을 商業登記簿에 登記하기 위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定款으로 명령한 強制消却의 경우에도 같다.
② 資本減少의 實行的 申告와 登記는 資本減少에 관한 決議의 申告 및 登記와 함께 할 수 있다.

第4款 資本減少의 表示(Ausweis der Kapitalherabsetzung)

第240條 資本減少로 인하여 얻은 金額은 損益計算書에 “資本減少로 인한 收益”으로 구분하여 특히 “利益準備金の引出”의 項目뒤에 記載하여야 한다. 第229條 第1項 및 第232條에 의한 資本準備金の 積立은 “簡易的 資本減少에 관한 規定에 의한 資本準備金の 積立”으로 구분하여 記載하여야 한다. 附屬明細書에는 資本減少와 利益準備金の 處分으로 인하여 얻은 金額을 다음 각호의 目的을 위하여 사용하였는가의 與否와 어느 정도의 金額이 사용되었는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1. 價値減少의 償却.
2. 기타의 損失의 填補.
3. 資本準備金の 積立.

第7章 株主總會의 決議와 確定된 年度決算書의 無效, 不法한 過小評價로 인한 特別檢査(Nichtigkeit von Hauptversammlungsbeschlüssen und des festgestellten Jahresabschlusses. Sonderprüfung wegen unzulässiger Unterbewertung)

第1節 株主總會決議의 無效(Nichtigkeit von Hauptversammlungsbeschlüssen)

第1款 總 則(Allgemeines)

第241條 [無效事由] 株主總會의 決議는 第192條 第4項, 第212條, 第217條 第2項, 第228條 第2項, 第234條 第3項 및 第235條 第2項의 경우외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無效이다.

1. 株主 全員이 出席하거나 대표되지 아니한 한 第121條 第2項 및 第3項에 의하여 召集되지 아니한 株主總會에서 결의한 때;
2. 第130條 第1項, 第2項 및 第4項에 의하여 認證되지 아니한 때;
3. 株式會社의 本質과 합치될 수 없거나, 그 內容이 오로지 또는 주로 會社債權者의 保護 또는 기타의 公益을 위하여 설정된 規定에 위배된 때;
4. 그 內容이 선량한 風俗에 반한 때;
5. 取消의 訴에 대한 判決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無效宣言된 때;
6. 非訟事件節次法 第144條 第2項에 따라 既判力있는 決定에 의거하여 無效로서 抹消된 때;

第242條 [無效의 治癒] ① 第130條 第1項, 第2項 및 第4項에 違反하여 書證되지 아니하거나 正當하게 書證되지 아니한 株主總會의 決議의 無效는 그

獨逸株式法

決議가 商業登記簿에 登記되어 있는 때에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② 株主總會의 決議가 第241條 第1號, 第3號 또는 第4號에 의하여 無效인 경우에 그 決議가 商業登記簿에 登記되어 있고, 登記時로부터 3년을 經過한 때에는 그 無效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期間의 만료시에 株主總會 決議의 無效確認의 訴가 계속중인 때에는 이 期間은 訴에 대하여 確定判決이 있기까지 또는 訴訟이 다른 方法으로 종국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연장된다. 非訟事件節次法 第144條 第2項에 따른 職權에 의한 決議의 말소는 期間의 滿了로 인하여 배제되지 아니한다. 第241條 第1號에 의하여 第121條 第4項에 대한 위반으로 인한 株主總會決議가 無效인 경우에는 召集通知를 받지 못한 株主가 決議를 승인한 경우에도 더 이상 無效로 주장되어질 수 없다.

③ 第217條 第2項, 第228條 第2項, 第234條 第3項 및 第235條 第2項의 경우에 필요한 登記를 期間內에 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2項이 준용된다.

第243條 [取消事由] ① 株主總會의 決議는 法律 또는 定款의 違反으로 인한 訴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取消는 株主가 議決權行使에 의하여 自己 또는 第3者를 위하여 會社 또는 다른 株主의 損害가 되도록 特別利益을 취득하고자 하고 決議가 이 목적에 이용하기에 적합하다는 것도 그 이유로 할 수 있다. 決議로써 다른 株主에 대하여 損害에 관한 적당한 補償을 지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第128條의 違反을 取消의 理由로 할 수는 없다.

④ 說明의 拒絕을 이유로 한 取消에 관하여는 株主總會 또는 株主가 說明의 拒絕이 그들의 決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선언을 하였거나 하는 것은 문제시하지 아니한다.

第244條 [取消할 수 있는 株主總會決議의 確認] 株主總會가 취소할 수 있는

決議를 새로운 決議에 의하여 確認하고 이 決議를 取消期間內에 취소하지 아니하거나 取消가 확정적으로 却下된 때에는 더 이상 取消을 주장할 수 없다. 確認의 決議가 있기까지의 時期에 관하여 취소할 수 있는 決議를 無效로 선언하는 것이 原告에게 法的 利害關係가 있는 때에는 原告는 취소할 수 있는 決議를 이 時期에 관하여 無效로 선언할 것도 取消와 함께 주장할 수 있다.

第245條 [取消權] ① 다음 각호의 者は 取消할 權限을 가진다.

1. 株主總會에 출석한 各 株主로서, 그가 議事錄에 그 決議에 대한 異議를 表示한 때;
2. 株主總會에 출석하지 아니한 各 株主로서, 그가 株主總會에 대한 출석을 부당하게 거절당하거나 株主總會가 정당하게 소집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決議의 目的事項이 정당하게 公告되지 아니한 때;
3. 第243條 第2項의 경우에는 各 株主;
4. 理事會;
5. 各 理事와 監事로서, 그 決議의 실행으로 인하여 理事 또는 監사가 刑罰에 처할 행위 또는 秩序違反을 범할 가능성이 있거나 賠償義務을 질 가능성이 있는 때.

第246條 [取消의 訴] ① 訴는 決議後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② 訴는 會社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會社는 理事會와 監事會가 대표한다. 理事會 또는 1人の 理事가 訴를 제기한 때에는 監事會가 會社를 대표하며, 1人の 監事が 訴를 제기한 때에는 理事會가 會社를 대표한다.
- ③ 訴는 會社의 住所地를 管轄하는 州法院의 管轄權에 진속한다. 口述審理는 第1項의 1월의 期間의 經過 前에는 하지 아니한다. 數個의 取消訴訟은 동시의 審理와 判決을 위하여 併合하여야 한다.
- ④ 理事會는 訴의 提起와 口述審理의 期日을 遲滯없이 會社公告紙에 公告

하여야 한다.

第247條【訴訟價額】① 受訴法院은 각 경우에 존재하는 일체의 事情, 특히 當事者에 관한 事件의 重要性을 고려하여 公정한 裁量에 따라 訴訟價額을 정한다. 다만, 訴訟價額은 原告에 관한 事件의 重要性이 보다 크게 평가되는 때에 한하여 資本의 10분의 1 또는 이 10분의 1이 100만 독일 마르크 이상인 때에는 100만 독일 마르크를 초과할 수 있다.

② 當事者가 第1項에 따라 정하여진 訴訟價額에 의한 訴訟費用의 負擔이 그의 경제적 상태를 중대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疎明한 때에는 受訴法院은 申請에 따라 그의 經濟狀態에 적합한 訴訟價額의 부분에 따라서 그의 法院費用 支給義務를 減輕할 것을 命令할 수 있다. 이 命令에 따라서 受惠當事者는 그의 辯護士의 手數料도 역시 訴訟價額의 이 부분에 따라서만 지급하여야 한다. 受惠當事者에게 訴訟의 費用이 부과되거나 그가 이를 부담한 때에 한하여 受惠當事者는 相對方이 지급한 法院手數料과 상대방의 辯護士手數料을 訴訟價額의 이 부분에 따라서만 補償하여야 한다. 裁判外의 費用이 상대방에게 부과되거나 상대방이 이를 부담한 때에 한하여 受惠當事者의 辯護士는 그의 手數料를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에게 적용할 訴訟價額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의한 申請은 受訴法院의 事務局에서 調書에 기입하도록 表示할 수 있다. 申請은 本案의 審理 前에 하여야 한다. 그 후에는 채택하거나 確定한 訴訟價額을 受訴法院이 인상시킨 때에 한하여 申請을 할 수 있다. 申請에 관한 決定 前에 相對方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第248條【判決의 效力】① 既判力있는 判決에 의하여 決議의 無效를 선언한 때에는 判決은 當事者에 한하지 아니하고 모든 株主와 理事와 監事に 대하여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그 效力을 발생한다. 理事會는 遲滯없이 商業登記簿를 위하여 判決을 제출하여야 한다. 決議가 商業登記簿에 登記되어

있는 때에는 判決도 登記하여야 한다. 判決의 登記는 決議의 登記와 동일한 方法으로 公告하여야 한다.

② 決議가 定款變更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判決文과 함께 그 判決과 모든 종래의 定款變更을 고려하여 決議가 이루어진 定款의 全文을 이 사실에 관한 公證人의 證明을 붙여서 登記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第249條 [無效의 訴] ① 株主·理事會 또는 理事나 監事가 會社를 상대로 株主總會決議의 無效確認의 訴를 제기한 때에는 第246條 第2項, 第3項 第1文, 第4項, 第247條 및 第248條가 준용된다. 訴의 提起 이외의 方法으로 無效를 주장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數個의 無效訴訟은 동시의 審理와 判決을 위하여 併合하여야 한다. 無效訴訟과 取消訴訟을 併合할 수 있다.

第2款 特定한 株主總會決議의 無效(Nichtigkeit bestimmter
Hauptversammlungsbeschlüsse)

第250條 [監事選任의 無效] ① 株主總會에 의한 監事の 選任은 第241條 第1號, 第2號 및 第5號의 경우 외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無效이다.

1. 監事會가 第96條 第2項, 第97條 第2項 第1文 또는 第98條 第4項에 違反하여 구성된 때;

2. 株主總會가 候補者推薦에 구속됨에도 불구하고(몬탄共同決定法 第6條와 第8條) 추천되지 아니한 者를 선임한 때;

3. 選任으로 인하여 監事の 最大數를 초과한 때(第95條);

4. 選任된 者가 第100條 第1項 및 第2項에 의하여 그의 任期의 개시시에 監事가 될 수 없는 때.

② 監事の 選任이 無效임을 確認하기 위한 訴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者가 當事者能力이 있다.

1. 會社の 總經營協議會, 또는 會社에 오직 하나의 經營協議會가 존재하거나 會社가 支配企業인 경우에는, 支配企業經營協議會,
 2. 다른 기업의 勞働者 스스로 또는 代表者를 통하여 會社の 監事選任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기업의 總經營協議會, 또는 그 다른 기업에 오직 하나의 經營協議會만 존재하면, 그 經營協議會,
 3. 會社에 있어서 또는 한 기업의 勞働者 스스로 또는 代表者를 통하여 監事の 選任에 참여하는 경우에 그 기업에 있어서 각각 대표되는 勞動組合 및 그의 最高組織.
- ③ 株主, 理事會, 理事 또는 監事, 第2項에 개기한 勞働者の 組織과 代表가 會社를 상대로 監事の 選任이 無效임을 確認하기 위한 訴를 提起한 때에는 第246條 第2項, 第3項 第1文, 第4項, 第247條, 第248條 第1項 第2文 및 第249條 第2項이 준용된다. 訴의 제기 이외의 方法으로 無效를 주장하는 것은 배제되지 아니한다.

第251條 [監事の 選任의 取消] ① 株主總會에 의한 監事の 選任은 法律 또는 定款의 違反을 이유로 訴에 의하여 取消될 수 있다. 株主總會가 候補者推薦에 구속된 경우에는 候補者推薦이 不法하게 행하여졌다는 것도 취소의 이유가 될 수 있다. 第243條 第4項 및 第244條를 이에 적용한다.

② 取消權에 관하여는 第245條 第1號, 第2號 및 第4號를 적용한다. 單行共同決定法에 의하여 經營協議會의 推薦에 따라 선출된 監事の 選任은 會社の 營業所의 各 經營協議會, 會社の 營業所를 대표하는 各 勞動組合 또는 그 最高組織에 의하여도 취소될 수 있다. 單行共同決定法 또는 共同決定法에 의하여 그 밖의 監事の 추천에 따라 선임된 다른 1인의 監事の 選任은 各 監事に 의하여도 취소할 수 있다.

③ 取消節次에 관하여는 第246條, 第247條 및 第248條 第1項과 第2項이 적용된다.

第252條【判決의 效力】① 株主, 理事會, 理事 또는 監事, 會社の 營業所の 經營協議會, 第250條 第2項에 계기된 勞動者の 組織 또는 代表가 會社를 상대로 株主總會에 의한 監事の 選任이 무효임을 確認하기 위한 訴를 제기한 경우에 選任의 無效를 확정적으로 確認하는 判決은 會社の 모든 株主와 勞動者, 다른 기업의 勞動者가 스스로 또는 代表者를 통하여 監事の 選任에 참여하는 경우에 그 다른 기업의 모든 勞動者, 理事와 監事 및 第250條 第2項에 계기된 全 勞動者の 조직과 대표에 대하여, 그들이 當事者가 아닌 경우에도, 그 效力이 있다.

② 株主總會에 의한 어떤 監事の 選任이 既判力있는 判決에 의하여 無效임이 선언된 때에는 이 判決은 當事者에 한하지 아니하고 모든 株主와 理事와 監事に 대하여 그 效力이 있다. 第251條 第2項 第2文의 경우에는 判決은 當事者에 한하지 아니하고 同條의 規定에 의하여 取消權을 가진 經營協議會, 勞動組合 및 最高組織에 대하여 그 效力이 있다.

第253條【貸借對照表上 利益의 處分에 관한 決議의 無效】① 貸借對照表上 利益의 處分에 관한 決議는 第173條 第3項, 第217條 第2項 및 第241條의 경우 이외에는 그 기초가 되는 年度決算書의 確定이 無效인 때에 한하여 無效이다. 이 사유로 인한 決議의 無效는 年度決算書의 確定의 無效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때에는 더이상 주장할 수 없다.

② 會社를 상대로 한 無效確認의 訴에 관하여는 第249條를 적용한다.

第254條【貸借對照表上 利益의 處分에 관한 決議의 取消】① 第243條에 의한 경우 외에 理性있는 商人의 判斷에 따르면 경제적 및 재정적 必要性和 관련하여 조망할 수 있는 기간동안에 會社の 生存能力 및 抵抗能力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아직 納入催告되지 아니한 出資를 제외하면 적어도 資本의 100분의 4 이상의 金額으로 株主에게 利益을 配當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株主總會가 貸借對照表上의 利益으로

獨逸株式法

부터 法律 또는 定款에 의하여 株主에 대한 配當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金額을 利益準備金으로 적립하거나 利益으로서 이월한 경우에 貸借對照表上의 利益의 處分에 관한 決議는 취소될 수 있다.

② 取消에 관하여는 第244條 내지 第248條를 적용한다. 取消期間은 商法 第316條 第3項에 의하여 年度決算書を 세로이 檢査하여야 할 때에도 決議와 동시에 進行을 개시한다. 第1項에 의한 取消에 대하여는 株主의 持分을 합산하여 資本의 20분의 1 또는 100만 독일 마르크의 券面額에 달하는 경우에 株主만이 그 權限을 가진다.

第255條 [出資에 의한 資本增加의 取消] ① 出資에 의한 資本增加에 관한 決議는 第243條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이 取消은 株主의 新株引受權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되었던 때에는 資本增加決議로 인하여 나타난 發行價額 또는 그 이하로 新株를 發行할 수 없는 最低券面額이 부당하게 低額이라는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第3者가 新株를 株主에게 引受하도록 제공할 義務의 부담 하에 引受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第244條 내지 第248條의 規定은 이 取消에 관하여 준용한다.

第2節 確定된 年度決算書の 無效(Nichtigkeit des festgestellten Jahresabschlusses)

第256條 [無效] ① 確定된 年度決算書는 第173條 第3項, 第234條 第3項 및 第235條 第2項의 경우 외에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無效이다.

1. 年度決算書가 그 內容을 통하여 오로지 또는 주로 會社債權者의 保護를 위하여 정해진 規定에 違反한 때,
2. 年度決算書가 법적인 檢査義務가 있는 경우에 商法 第316條 第1項 및

第3項에 의하지 않고 檢査된 때,

3. 年度決算書가 決算檢査人으로 選任되지 아니하거나, 商法 第319條 第1항 또는 商法施行法 第25條에 의하여 決算檢査人이 될 수 없는 者에 의하여 檢査된 때,

4. 年度決算書의 確定時에 資本準備金 또는 利益準備金의 積立이나 資本準備金 또는 利益準備金의 引出에 관한 法律 또는 定款의 規定에 違反한 때.

② 理事會와 監事會에 의하여 確定된 年度決算書는 第1項에 의한 外에는 理事會 또는 監事會가 年度決算書의 確定時에 正規的으로 협력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無效이다.

③ 株主總會에 의하여 確定된 年度決算書는 第1項에 의한 外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無效이다.

1. 株主全員이 出席하거나 代表되지 아니한 한 第121條 第2項 및 第3項에 위반하여 소집된 株主總會에서 그 確定이 결의된 때,

2. 第130條 第1項, 第2項 및 第4項에 의하여 그 確定이 書證되지 아니한 때,

3. 取消의 訴에 대한 判決에 의하여 그 確定이 확정적으로 無效로 선언된 때,

④ 年度決算書의 項目分類에 관한 規定에 대한 違反 및 年度決算書의 項目分類時에 따라야 할 形式書面의 無視를 이유로 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年度決算書의 明瞭性 및 包括性이 重大하게 침해된 때에 한하여 年度決算書는 無效이다.

⑤ 評價規定에 대한 違反을 이유로 인하여 年度決算書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無效이다.

1. 項目을 過大評價한 경우,

2. 項目을 過小評價하고 이로 인하여 會社의 財産狀態와 收益狀態를 故意로 부정확하게 表示하거나 은폐한 경우.

獨逸株式法

積極項目은 商法 第279條 내지 第283條와 관련하여 第253條 내지 第256條에 의하여 허용된 것보다 더 높은 가치로 평가한 때, 消極項目은 허용된 것보다 더 낮은 金額으로 평가한 때에 過大評價한 것이다. 積極項目은 商法 第279條 내지 第283條와 관련하여 第253條 내지 第256條에 의하여 허용된 것보다 낮은 가치로 평가한 때, 消極項目은 허용된 것보다 더 높은 金額으로 평가한 때에 過小評價한 것이다. 金融機關과 保險企業에 있어서 그 차이가 金融機關과 保險企業에 대하여 적용되는 規定, 특히 金融機關에 대한 商法 第340e條 내지 第340g條와 保險企業에 대한 商法 第341b條 내지 第341h條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에서는 評價規定에 대한 違反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⑥ 第1項 第1號 第3號 및 第4號, 第2項, 第3項 第1號 및 第2號, 第4項 및 第5項에 의한 無效는 聯邦官報에 商法 第325條 第1項 第2文 또는 第2項 第1文에 의한 年度決算書의 公告를 한 후, 第1項 第3號와 第4號, 第2項, 第3項 第1號 및 第2號의 경우에는 6월, 기타의 경우에는 3년이 經過한 때에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이 期間의 만료시에 年度決算書無效確認의 訴가 계속중인 때에는 期間은 訴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判決되거나 訴가 다른 方法으로 종국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연장된다.

⑦ 會社를 상대로 한 無效確認의 訴에 관하여는 第249條가 준용된다.

第257條 [株主總會에 의한 年度決算書의 確定의 取消] ① 株主總會에 의한 年度決算書의 確定은 第243條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 取消는 年度決算書의 內容이 法律 또는 定款에 違反하였음을 그 이유로 할 수 없다.

② 第244條 내지 第248條의 規定은 이 取消에 관하여 적용한다. 取消期間은 商法 第316條 第3項에 의하여 年度決算書를 새로이 檢査하여야 할 때에도 決議와 동시에 進行을 개시한다.

第3節 不法한 過小評價로 인한 特別檢査(Sonderprüfung wegen unzulässiger Unterbewertung)

第258條 [特別檢査人の 選任] ① 다음 각호를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法院은 申請에 따라 特別檢査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1. 確定된 年度決算書內에 규정된 項目이 重大하게 過小評價되었다는 것 (第256條 第5項 第3文)

2. 附屬明細書에 규정된 記載事項이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불완전하게 포함되어 있고, 理事會가 株主總會에서 省略된 記載事項에 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記載를 하지 아니하고 議事錄에 質問의 收容이 요구되었다는 것.

特別檢査人은 省略된 項目이 현저히 過小評價되었는가에 관하여 이를 檢査하여야 한다. 特別檢査人은 규정된 記載事項이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불완전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理事會가 株主總會에서 省略된 記載事項에 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記載를 하지 아니하고 議事錄에 그 質問의 收容이 요구되었는지에 관하여 附屬明細書를 檢査하여야 한다.

①a 金融機關에서는 附屬明細書에 過小評價 또는 省略된 記載事項이 商法 第340f條의 적용을 기초로 한 한도내에서는 第1項에 의한 特別檢査人은 선임될 수 없다.

② 申請은 年度決算書에 관한 株主總會 後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商法 第316條 第3項에 의하여 年度決算書를 새로이 檢査하여야 할 때에도 같다. 申請은 그들의 持分이 합산하여 資本의 20분의 1 또는 100만 독일 마르크의 券面額에 달하는 株主만이 할 수 있다. 申請人은 申請에 관한 判決이 있기까지 株式을 公託하여야 하며, 그들이 적어도 株主總會日 3월 이전부터 株式의 所持人이었음을 疎明하여야 한다. 疎明은 法院 또는 公證人の

獨逸株式法

면전에서 선서에 대신한 保證을 함으로써 충분하다.

③ 特別檢査人の 選任前에 法院은 理事會·監事會와 決算檢査人の 意見을 들어야 한다. 法院의 決定에 대하여는 即時抗告가 허용된다.

④ 經濟檢査人 및 經濟檢査會社만이 第1項에 의한 特別檢査人이 될 수 있다. 선정에 관하여는 商法 第319條 第2項 및 第3項이 준용된다. 會社의 決算檢査人 및 特別檢査人の 選任前 최근 3년내에 會社의 決算檢査人이었던 者는 第1項에 의한 特別檢査人이 될 수 없다.

⑤ 法院이 選任한 特別檢査人の 상당한 現金支出의 補償 및 報酬에 관한 第142條 第6項, 特別檢査人の 權利에 관한 第145條 第1項 내지 第3項, 特別檢査의 費用에 관한 第146條 및 決算檢査人の 責任에 관한 商法 第323條는 이에 준용된다. 第1項에 의한 特別檢査人은 會社의 決算檢査人에 대하여도 第145條 第2項에 의한 權利를 가진다.

第259條【檢査報告書·終局的 確認事項】 ① 特別檢査人은 檢査의 結果에 관하여 書面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特別檢査人이 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項目이 過大評價된 사실(第256條 第5項 第2文) 또는 年度決算書의 項目分類에 관한 規定에 違反하였거나 形式書面을 고려하지 아니한 사실을 確認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도 보고하여야 한다. 報告書에 관하여는 第145條 第4項이 준용된다.

② 檢査의 結果, 잘못이 지적된 項目이 중대하게 過小評價되어 있는 때에는(第256條 第5項 第3文) 特別檢査人은 檢査報告書의 말미에 總括적 確認事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表示하여야 한다.

1. 各 積極項目을 最低限度로 평가하여야 할 價値와 各 消極項目을 最高限度로 평가하여야 할 價額;

2. 이 價値 또는 價額의 평가에서 年度剩餘金이 증가될 價額 또는 年度缺損金이 경감될 價額.

特別檢査人은 年度決算書의 基準日에 있어서의 諸狀況을 그의 判斷의 기

초로 하여야 한다. 特別檢查人은 第1號에 의한 價値와 價額의 평가에 관하여 會社가 평가하여야 할 目的物 또는 이와 비교할 수 있는 目的物을 最近에 허용된 方法으로 평가한 것과 동일한 評價方法 및 減價償却方法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③ 檢查의 結果, 잘못이 지적된 項目이 過小評價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경미하게 過小評價되어 있는 때에는(第256條 第5項 第3文) 特別檢查人은 報告書의 말미에 중국적 確認事項으로서 그의 義務에 따른 檢查와 判斷에 의하면 잘못이 지적된 項目은 不法하게 過小評價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表示하여야 한다.

④ 附屬明細書의 檢查結果에 의하면 규정된 記載事項이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불완전하게 포함되어 있고 理事會가 株主總會에서 homolog된 記載事項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事項을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며 議事錄에 그 質問의 수용이 요구되었던 때에는 特別檢查人은 그의 報告書의 말미에 중국적 確認事項으로서 포함되지 아니한 記載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評價方法 또는 減價償却方法의 變更에 대한 記載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記載를 하지 아니한 變更이 없었더라면 年度剩餘金 또는 年度缺損金이 보다 高額이 되거나 低額이 되었을 價額도 중국적 確認事項으로 記載하여야 한다. 檢查의 結果에 의하면 第1文에 의한 記載事項의 어떤 것도 빠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特別檢查人은 그의 義務에 따른 檢查와 判斷에 의하면 附屬明細書에 규정된 記載事項의 어떤 것도 homolog되지 아니하였음을 중국적 確認事項으로 表示하여야 한다.

⑤ 理事會는 第2項 내지 第4項에 의한 特別檢查人의 중국적 確認事項을 遲滯없이 會社公告紙에 公告하여야 한다.

第260條 [特別檢查人의 終局的 確認事項에 관한 法院의 決定] ① 第259條 第2項 및 第3項에 의한 特別檢查人의 중국적 確認事項에 대하여는 會社 또는 그들의 持分이 합산하여 資本의 20분의 1 또는 100만 독일 마르크의

券面額에 달하는 株主는 聯邦官報에 公告된 후 1월 이내에 第132條 第1項에 의하여 管轄權을 가진 法院의 決定을 請求하는 申請을 할 수 있다. 第258條 第2項 第4文 및 第5文은 이에 준용된다. 申請은 申請書중에 제기될 積極項目을 最小限度로, 申請書중에 제기될 消極項目을 最高限度로 평가하여야 할 金額의 確認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會社의 申請은 年度決算書에 特別檢査人의 중국적 確認事項으로 確認된 過小評價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確認하기 위하여서도 할 수 있다.

② 申請에 관하여는 法院이 모든 事情을 참작하여 自由心證에 따라 결정한다. 第259條 第2項 第2文 및 第3文을 이에 적용하여야 한다. 모든 결정적인 사정의 완전한 說明이 중대한 秘密과 결부되어 있는 때에는 法院은 평가하여야 할 價値 또는 價額을 어림잡아 평가하여야 한다.

③ 第99條 第1項·第2項 第1文·第3項 및 第5項은 이에 준용된다. 法院은 法院의 決定을 會社에 송부하여야 하며 株主가 第1項에 의하여 申請을 한 때에는 이 株主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法院은 또한 이유를 첨부하지 아니한 決定을 會社公告紙에 公告하여야 한다. 會社와 그들의 지분이 합산하여 資本의 20분의 1 또는 100만 독일 마르크의 券面額에 달하는 株主는 抗告가 허용된다. 第258條 第2項 第4文 및 第5文은 이에 준용된다. 抗告期間은 聯邦官報上의 決定의 公告와 동시에 진행을 개시하지만 會社와 株主가 第1項에 의하여 申請을 한 때에는 이 株主에 관하여는 決定의 送達 前에는 개시하지 아니한다.

④ 節次의 費用에 관하여는 訴訟費用法을 적용한다. 第1審의 절차에 관하여는 全手數料의 2배를 징수한다. 第2審에 관하여는 同額의 手數料를 징수한다; 抗告를 한 때에도 같다. 決定이 있기 전에 申請 또는 抗告를 撤回한 때에는 手數料는 2분의 1로 감액된다. 사건의 가치는 職權으로 確定하여야 한다. 費用은 會社가 申請을 한 때에는 會社, 그 밖에는 申請人이 부담하여야 한다. 第247條는 이에 준용된다.

第261條 [過大評價에 의한 收益에 관한 決定] ① 特別檢査人이 項目이 過小評價되어 있음을 그의 總局적 確認事項으로 表示하고, 이 確認에 대하여 第260條 第1項에 規定된 期間내에 法院의 決定을 구하는 申請이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 期間의 滿了 後에 작성되는 최초의 年度決算書內의 項目은 特別檢査人이 確認한 價値와 價額으로 記載하여야 한다. 變更된 事實에 따라서, 특히 消耗에 의하여 없어질 目的物의 경우에 消耗에 따라서, 商法 第279條 내지 第283條와 관련하여 商法 第253條 내지 第256條에 의하여 또는 正規의 簿記의 原則에 의하여 積極項目에 관하여 보다 낮은 價値, 또는 消極項目에 관하여 보다 높은 價額을 記載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附屬明細書에 그 事由를 記載하여야 하며 特別計算書에 特別檢査人에 의하여 확인된 價値 또는 價額이 第2文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價値 또는 價額으로 變更되었음을 說明하여야 한다. 目的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관하여서와 目的物의 損失로 인한 收益의 처분에 관하여 附屬明細書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貸借對照表의 各 項目에 관하여는 第1文 및 第2文에 의거하여 積極項目을 보다 높은 價値로, 또는 消極項目을 보다 낮은 價額으로 記載하였던 差額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差額의 總額은 貸借對照表上 消極의 部 그리고 損益計算書에 “特別檢査의 結果에 따른 過大評價에 의한 收益”으로 수익으로서 별도로 記載되어야 한다.

② 項目이 過小評價되었다는 것을 第260條에 의하여 申請을 받은 法院이 確認한 때에는 法院의 決定의 確定力에 의하여 작성된 최초의 年度決算書 中の 項目의 評價에 관하여는 第1項이 준용된다. 差額의 總額은 “法院의 決定에 따른 過大評價에 의한 收益”으로서 별도로 記載되어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의한 過大評價로 인한 收益은 第58條와 第86條 第2項을 적용함에 관하여는 年度剩餘金으로 計算하지 아니한다. 納入하여야 할 租稅를 제외한 이 收益의 처분에 관하여는 年度決算書에 資本準備金 또는 利益準備金에 의하여 充當되지 아니한 貸借對照表上의 損失이 記載

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株主總會가 결정한다.

第8章 會社の解散 및 無效宣言(Auflösung und Nichtigerklärung der Gesellschaft)

第1節 解 散(Auflösung)

第1款 解散事由와 申告(Auflösungsgründe und Anmeldung)

第262條 [解散事由] ① 株式會社は 다음 각호의 사유로 解散한다.

1. 定款에 규정된 期間의 滿了;
 2. 株主總會의 決議; 이 決議에는 決議時에 대표된 資本의 4분의 3 이상을 포함하는 多數決이 필요하다. 定款으로 보다 큰 資本多數決 및 그 이상의 要件을 규정할 수 있다;
 3. 會社財産에 관한 破産節次의 開始;
 4. 破産財團이 破産節次의 費用을 상환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破産節次의 開始를 거부하는 決定의 既判力;
 5. 非訟事件節次法 第144a條에 따라 定款의 欠缺이 登記法院에 의해서 확정된 경우에 그 登記法院의 處分의 既判力.
- ② 이 節은 株式會社가 기타의 사유로 解散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第263條 [解散의 申告와 登記] 理事會는 會社の 解散을 商業登記簿에 登記하기 위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破産節次의 開始와 그 거부의 경우(第262條 第1項 第3號와 第4號) 및 定款의 欠缺을 法院이 確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이 경우에는 法院이 職權으로 解散 및 그 事由를 登記하여야 한다.

第2款 清算(Abwicklung)

第264條【清算의 必要性】① 會社の 財産에 관하여 破産節次가 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會社の 解散 後에 清算을 한다.

② 이 款 또는 清算의 目的으로부터 다른 結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清算의 종료시까지의 會社에 관하여는 解散되지 아니한 會社에 관하여 적용하는 規定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第265條【清算人】① 理事가 清算人으로서 清算을 담당한다.

② 定款 또는 株主總會의 決議로 다른 者를 清算人으로 選任할 수 있다. 清算人의 選任에 관하여는 第76條 第3項條 第3文과 第4文이 준용된다. 法人도 清算人이 될 수 있다.

③ 監事會 또는 그들의 持分이 합산하여 資本의 20분의 1 또는 100만 「독일 마르크」의 券面額에 달하는 少數株主의 申請에 따라서 法院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清算人을 選任하고 解任하여야 한다. 株主는 3월 이상 이전부터 株式의 所持人이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疎明에는 法院 또는 公證人의 面전에서 하는 宣誓에 대신한 保證으로써 충분하다. 法院의 決定에 대하여는 即時抗告가 허용된다.

④ 法院이 選任한 清算人은 상당한 現金支出의 補償 및 그의 活動에 대한 報酬에 관하여 請求權을 가진다. 法院이 選任한 清算人과 會社가 合意에 도달하지 못한 때에는 法院이 그 支出額과 報酬를 確定한다. 이 決定에 대하여는 即時抗告가 허용된다. 再抗告는 배제된다. 既判力있는 決定에 따라서 民事訴訟法에 의한 強制執行을 할 수 있다.

⑤ 法院이 選任하지 아니한 清算人은 수시로 株主總會가 解任할 수 있다. 任用契約에 의거한 請求權에 관하여는 一般規定을 적용한다.

⑥ 勞務理事의 選任 및 解任은 稟議共同決定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경우에

第2項 내지 第5項은 그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第265條【清算人の 申告】 ① 理事會는 최초의 清算人和 그의 代表權을, 清算人は 清算人の 變更과 그 代表權의 變更을 商業登記簿에 登記하기 위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② 申告書에는 選任 또는 解任과 代表權限에 관한 書類의 原本 또는 公證된 謄本을 會社의 住所地の 法院을 위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③ 申請書에는 清算人이 그들의 選任에 第265條 第2項 第2文에 위반되는 어떤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과 清算人は 法院에 대하여 無制限의 說明義務를 진다는 것에 관하여 교육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第37條 第2項 第2文은 이에 준용된다.

④ 法院에 의한 清算人の 選任 및 解任은 職權으로 登記한다.

⑤ 清算人は 이미 理事로서 署名을 하여 法院에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法院에 보존하기 위하여 署名을 하여야 한다.

第267條【債權者에 대한 催告】 清算人は 會社의 債權者에 대하여 會社解散의 뜻을 表示하여 그들의 請求權을 申告하도록 催告하여야 한다. 催告는 會社 公告紙에 3회 公告하여야 한다.

第268條【清算人の 義務】 ① 清算人は 현재의 업무를 종료하고, 債權을 推尋하고 기타의 財産을 金錢으로 換가하고 또 債權者에게 變제하여야 한다. 清算에 필요한 한에서 새로운 업무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清算人は 그의 업무의 範圍內에서 理事會의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清算人は 理事會와 동일하게 監事會의 監督을 받는다.

③ 第88條의 競業禁止는 清算人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특정한 受領人에게 송달되는 모든 業務書信에는 會社의 법적형태와 주소, 회사가 청산중에 있다는 사실, 회사주소지의 登記법원, 商登登記부상에

기재된 등기번호 및 清算人 全員과 監事會議長의 姓과 생략되지 않은 이
름이 기재되어야 한다. 會社의 資本에 관한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경
우에도 資本 및, 株式에 대하여 券面額 또는 그 이상의 發行價額이 완납되
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된 出資總額이 기재되어야 한다. 기존의 去來關係
에서 생기고 개별적인 경우에 요구되는 특별한 사항만을 첨가하여도 되는
통상적인 印刷書式이 사용되는 通知書 또는 報告書에는 第1文에 의한 記
載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注文書는 第1文의 의미에서 業務書信으로 본다;
第3文은 注文書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第269條 [清算인에 의한 代表] ① 清算人은 裁判上 또는 裁判外에서 會社를
대표한다.

② 數人의 清算人을 選任한 경우에 定款 또는 그 밖의 權限있는 機關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清算人 全員이 공동으로만 會社를 대표할
權限을 가진다. 會社에 대하여 意思表示를 하여야 할 때에는 1人의 清算人
에 대하여 하면 충분하다.

③ 定款으로 또는 그 밖의 權限있는 機關은 各 理事가 단독으로 또는 支
配人和 공동으로 會社를 대표할 權限을 가지도록 규정할 수 있다. 定款 또
는 株主總會의 決議로 監事會에 이와 같은 決定을 할 權限을 부여한 때에
는 監事會가 이를 결정할 수 있다. 第2項 第2文은 이 경우에 준용된다.

④ 共同代表權을 가진 清算人은 各各 단독으로 일정한 業務 또는 일정한
種類的 業務에 착수할 權限을 가진다. 各 清算人이 支配人和 공동으로 會
社를 대표할 權限을 가진 때에도 이 規定이 준용된다.

⑤ 清算人의 代表權限은 제한될 수 없다.

⑥ 清算人은 商號에 清算을 의미하는 附加文句와 自己의 署名을 부기함으
로써 會社를 대신하여 署名한다.

第270條 [清算開始貸借對照表·年度決算書와 狀況報告書] ① 清算人은 清算開

獨逸株式法

始時に 貸借對照表(清算開始貸借對照表)와 清算開始貸借對照表를 說明하는 報告書 및 毎年度の 終了時に 年度決算書와 狀況報告書を 작성하여야 한다.

② 株主總會는 清算開始貸借對照表와 年度決算書の 確定과 清算人 및 監事の 責任解除에 關하여 결의한다. 清算開始貸借對照表와 說明報告書에 대하여는 年度決算書에 關한 規定이 준용된다. 다만 固定資産의 財産目的物은 그 財産의 讓渡가 가까운 기간동안에 意圖되어 있거나 이 財産의 目的物이 더이상 營業에 기여하지 못하는 한 流動資産처럼 評價될 수 있다; 이것은 年度決算書에 대하여도 같다.

③ 會社の 狀況이 잘 조망될 수 있기 때문에 年度決算書の 檢査가 會社債權者와 株主의 利益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보이는 경우에 法院은 決算檢査人에 의한 年度決算書와 狀況報告書の 檢査를 免除시킬 수 있다. 이 決定에 대하여는 即時抗告가 허용된다.

第271條 [財産의 分配] ① 債務辨濟 後에 잔존하는 會社の 財産은 株主에게 分배한다.

② 財産은 會社財産의 分配에 關하여 상이한 權利를 가진 株式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株式券面額에 따라서 分배하여야 한다.

③ 資本에 대한 出資를 모든 株式에 關하여 동일한 비율로 給與하지 아니하여야 할 때에는 給與한 出資를 상환하고 殘額을 株式券面額에 따라 分배한다. 財産이 出資를 상환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株主가 株式券面額에 따라 그 損失을 부담하여야 한다. 아직 未納入된 出資는 필요한 限度에서 수령하여야 한다.

第272條 [債權者保護] ① 財産은 債權者에 대한 催告를 3회 公告한 날로부터 1年을 經過한 때에 한하여 分배할 수 있다.

② 알고 있는 債權者가 申告하지 아니한 경우에 供託權이 있는 때에는 그

債權者를 위하여 債務額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당시에 債務를 변제할 수 없거나 債務에 관하여 紛爭이 있는 경우에는 債權者에게 擔保를 제공한 때에 한하여 財産을 분배할 수 있다.

第273條【清算의 終結】① 清算이 종료되고 終結計算書를 작성한 때에는 清算人은 清算의 終結을 商業登記簿에 登記하기 위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會社의 登記는 抹消하여야 한다.

② 會社의 帳簿와 書類는 10년간 보존하기 위하여 法院의 정하여진 안전한 場所에 기탁하여야 한다.

③ 法院은 株主와 債權者에 대하여 帳簿와 書類의 閱覽을 허용할 수 있다.

④ 후에 이르러 다시 清算節次가 필요하다고 판명된 때에는 法院은 利害關係人의 申請에 따라 종전의 清算人을 새로이 選任하거나 다른 清算人을 임명하여야 한다. 第265條 第4項을 이에 적용한다.

⑤ 第2項·第3項 및 第4項 第1文에 의한 決定에 대하여는 即時抗告가 허용된다.

第274條【解散된 會社의 繼續】① 株式會社가 期間의 滿了 또는 株主總會의 決議에 의하여 解散된 경우에 株主에 대한 財産의 分配가 아직 개시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株主總會가 會社의 계속을 결의할 수 있다. 이 決議에는 決議時에 대표된 資本의 4분의 3 이상을 포함하는 多數決이 필요하다. 定款으로 보다 큰 資本多數決 및 기타의 要件을 규정할 수 있다.

② 會社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1. 破産節次의 開始를 통하여 解散된 경우, 破産節次가 會社의 申請에 의하여 중지되거나 強制和議의 既判力있는 確認에 의하여 중지된 경우;

2. 第262條 第1項 第5號에 의한 定款의 省略에 관한 法院의 확정에 의하여 解散되었으나 그 欠缺을 제거하는 定款變更이 늦어도 會社의 繼續과 함께 결의된 경우.

獨逸株式法

③ 清算人は 會社の 계속을 商業登記簿에 登記하기 위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清算人は 申告時에 株主에 대한 會社財産의 分配가 아직 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繼續의 決議는 會社の 住所地의 商業登記簿에 登記한 때에 비로소 그 效力을 발생한다. 第2項 第2號의 경우에는 繼續決議와 定款變更에 관한 決議가 會社所在地의 商業登記簿에 등기되지 않는 한 繼續決議는 아무런 效力이 없다; 이 두가지의 決議는 함께 商業登記簿에 登記되어야 한다.

第2節 會社の 無效宣言(Nichtigerklärung der Gesellschaft)

第275條 [無效宣言의 訴] ① 定款에 資本의 額이나 企業의 目的에 관하여 規定을 두지 아니하였거나 企業의 目的에 관한 定款의 規定이 無效인 때에는 各 株主, 各 理事 및 監事는 會社の 無效宣言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訴는 다른 事由를 근거로 할 수는 없다.

② 瑕疵가 第276條에 의하여 治癒될 수 있는 때에는 이 訴를 제기할 수 있는 者가 會社에 대하여 그 瑕疵를 제거할 것을 催告하고 會社가 3월 이내에 이 催告에 따르지 아니한 후에야 비로소 이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이 訴는 會社の 登記後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非訟事件節次法 第144條 第1項에 따른 職權에 의한 會社の 登記抹消는 期間의 經過에 의하여 배제되지 아니한다.

④ 이 訴에 관하여는 第246條 第2項 내지 第4項, 第247條, 第248條 第1項 第1文, 第249條 第2項이 준용된다. 理事會는 訴狀의 인증된 謄本 및 既判力있는 判決文을 商業登記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既判力있는 判決에 의한 會社の 無效는 登記하여야 한다.

第276條 [瑕疵의 治癒] 企業의 目的에 관한 規定에 관계된 瑕疵는 定款變更에 관한 法律 및 定款의 規定을 고려하여 治癒될 수 있다.

- 第277條 [無效의 登記의 效力] ① 既判力있는 判決 또는 登記法院의 決定에 의거한 會社의 無效를 商業登記簿에 登記한 때에는 解散의 경우의 清算에 관한 規定에 따라서 清算을 한다.
- ② 會社의 이름으로 행한 法律行爲의 效力은 이 無效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③ 社員은 既存債務의 履行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出資를 給與하여야 한다.

第2編 株式合資會社(Kommanditgesellschaft auf Aktien)

- 第278條 [株式合資會社의 本質] ① 株式合資會社는 고유한 法人格을 가진 會社로서 1人 이상의 社員이 會社債權者에 대하여 무제한적으로 責任을 지고(無限責任社員) 그 밖의 社員은 株式으로 분할된 資本에 出資로써 참가하고 會社의 債務에 대하여 人的으로 責任을 지지 아니하는(株主) 會社이다.
- ② 無限責任社員 相互間의 法律關係와 無限責任社員의 株主全體에 대한 法律關係 및 第3者에 대한 法律關係, 특히 無限責任社員의 業務執行 및 會社代表의 權限은 合資會社에 관한 商法の 規定에 따라 정한다.
- ③ 그 밖에 株式合資會社에 관하여는 이하의 規定 또는 理事會가 없음으로 인하여 다른 結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株式會社에 관한 第1編의 規定이 준용된다.

- 第279條 [商號] ① 株式合資會社의 商號는 원칙적으로 企業의 目的에서 채택

獨逸株式法

하여야 한다. 그 商號에는 “株式合資會社”라는 表示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株式合資會社가 그 會社에 이전된 商業의 商號를 續用할 때(商法 第22條)에는 商號중에 “株式合資會社”라는 表示를 포함하여야 한다.

第280條 [定款의 確定, 發起人] ① 定款은 적어도 5인에 의하여 公證人의 書證으로써 確定하여야 한다. 이 證書에는 各 參加者가 引受한 株式의 券面額, 發行價額 및, 數種의 株式이 있는 때에는 各 참가자가 引受하는 株式의 종류를 記載하여야 한다. 代理人에게는 法院 또는 公證人이 認證한 代理權이 필요하다.

② 모든 無限責任社員은 定款의 確定에 참가하여야 한다. 無限責任社員의 에 株主로서 出資에 의하여 株式을 引受한 者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定款을 確定한 社員은 會社의 發起人이다.

第281條 [定款의 內容] ① 定款에는 第23條 第3項과 第4項에 의한 確定事項 외에 各 無限責任社員의 姓名·職業 및 住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無限責任社員의 財産出資는 財産이 資本으로 給與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正관에서 그 額 및 種類에 대하여 確定하여야 한다.

③ (削除)

第282條 [無限責任社員의 登記] 商業登記簿에 會社의 登記를 하는 때에는 理事에 대신하여 無限責任社員을 記載하여야 한다. 定款에 無限責任社員은 어떠한 會社代表權限을 가지고 있는가를 登記하여야 한다.

第283條 [無限責任社員] 無限責任社員에 관하여는 株式會社의 理事會에 관하여 적용할 다음 각호에 관한 規定이 準용된다.

1. 商業登記를 위한 申告·提出·說明 및 證明과 公告
2. 設立檢査

3. 注意義務와 責任
4. 監事會에 대한 義務
5. 信用附與의 許容
6. 株主總會의 召集
7. 特別檢査
8. 業務執行으로 인한 賠償請求權의 行使
9. 年度決算書·狀況報告書 및 貸借對照表利益의 處分에 관한 議案의 作成 및 提出
10. 年度決算書의 檢査
11. 「콘체른」에 있어서의 計算
12. 條件附 資本增加, 認可資本 및 會社資産에 의한 資本增加의 경우의 株式의 發行
13. 株主總會決議의 無效와 取消
14. 破産節次 또는 裁判上 和議節次開始의 申請

第284條【競業禁止】① 無限責任社員은 다른 無限責任社員 및 監事會의 명시적인 同意없이는 自己 또는 他人의 計算에서 會社의 營業部類에 속하는 去來를 하거나 다른 같은 種類의 會社의 理事·營業指揮者 또는 無限責任社員이 되지 못한다. 同意는 일정한 種類의 去來 또는 일정한 會社에 관하여서만 부여할 수 있다.

② 無限責任社員이 前項의 禁止에 違反한 때에는 會社는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會社는 이 대신에 그 社員이 自己의 計算에서 한 去來를 會社의 計算에서 한 것으로 보거나 他人의 計算에서 한 去來에 의하여 얻은 報酬를 引渡하거나 그의 報酬請求權을 讓渡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③ 會社의 請求權은 다른 無限責任社員 및 監事會가 損害賠償의 義務를 발생시킨 행위를 안 때부터 3월로써 消滅時效에 걸린다. 認知與否에 관계없이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써 消滅時效에 걸린다.

第285條【株主總會】① 株主總會에서 無限責任社員은 그의 株式에 관하여 1개의 議決權만을 가진다. 無限責任社員은 다음 각호의 事項에 관한 決議時에는 自己 또는 他人을 위하여 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다.

1. 監事會의 選任과 解任
2. 無限責任社員 및 監事の 責任免除
3. 特別檢査人の 選任
4. 賠償請求權의 行使
5. 賠償請求權의 拋棄
6. 決算檢査人の 選任

이 決議時에는 그들의 議決權을 他人을 통하여서도 行使할 수 없다.

② 株主總會의 決議에는 이 決議가 合資會社의 경우에 無限責任社員과 有限責任社員의 同意를 요하는 事項에 관한 것인 한 無限責任社員의 同意가 필요하다. 株主總會 또는 少數株主가 檢査人の 選任時에 가지는 權限 및 設立 또는 業務執行으로 인한 會社의 請求權의 行使時에 가지는 權限을 行使함에는 無限責任社員의 同意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 無限責任社員의 同意가 필요한 株主總會의 決議는 그 同意가 있는 때에 비로소 商業登記簿를 위하여 提出하여야 한다. 商業登記簿에 登記된 決議의 경우에는 이 同意는 議事錄 또는 議事錄의 附屬중에서 書證하여야 한다.

第286條【年度決算書·狀況報告書】① 株主總會는 年度決算書의 確定에 관하여 결의한다. 이 決議에는 無限責任社員의 同意가 필요하다.

② 年度貸借對照表에는 無限責任社員의 資本持分을 “引受資本”의 項目 다음에 별도로 記載하여야 한다. 당해 年度에 無限責任社員의 資本持分에 대하여 할당된 損失은 그 資本持分에서 償却하여야 한다. 損失이 資本持分을 초과하는 限度에서 出資義務가 있는 때에는 그 損失을 積極의 部に “無限

責任社員의 納入債務”로 표시하여 債權欄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出資義務가 없는 때에는 그 金額을 “財産出資에 의하여 填補되지 아니한 無限責任社員의 損失持分”으로 표시하고 商法 第268條에 따라 記載하여야 한다. 會社가 無限責任社員, 그 配偶者 또는 未成年의 子女 또는 이들의 計算으로 행위하는 第3者에게 부여한 第89條에 해당하는 信用은 積極의 部の 상응하는 項目에 “그 중에서 無限責任社員 및 그의 家族에 대한 것”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損益計算書에는 無限責任社員의 資本持分에 대하여 할당할 利益 또는 損失은 별도로 記載할 필요가 없다.

④ 商法 第285條 第9號 a와 b는 無限責任社員에 대하여 그의 資本持分에 할당할 利益은 별도로 記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조건으로 적용한다.

第287條【監事會】① 株主의 決議는 定款으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監事會가 실행한다.

② 株主 全員이 無限責任社員에 대하여 또는 無限責任社員이 株主 全員에 대하여 한 訴訟에 있어서 株主總會가 特別代理人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監事會가 株主를 대표한다. 株主에게 부담될 訴訟費用에 관하여는 株主에 대한 求償權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會社가 責任을 진다.

③ 無限責任社員은 監사가 될 수 없다.

第288條【無限責任社員의 引出. 信用附與】① 無限責任社員에게 그의 資本持分을 초과하는 損失額이 할당된 때에는 無限責任社員은 그의 資本持分에 대한 利益을 인출하지 못한다. 또한 無限責任社員은 貸借對照表上의 損失額, 義務納入額, 無限責任社員의 損失持分 및 無限責任社員 및 그의 家族에 대한 信用附與로 인한 債權의 總額이 利益移越金, 資本準備金과 利益準備金 및 無限責任社員의 資本持分の 總額을 초과하는 동안에는 전술한 利益持分과 그의 資本持分에 따른 金전을 인출하지 못한다.

獨逸株式法

- ② 第1項 第2文의 要件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會社는 第286條 第2項 第4文에 해당하는 信用을 부여하지 못한다. 이에 불구하고 부여한 信用은 이와 상반된 合意에 관계없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③ 利益과 무관한 活動의 報酬에 대한 無限責任社員의 請求權은 이 規定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報酬의 減額에 관하여는 第87條 第2項 第1文이 준용된다.

第289條【解散】 ① 株式合資會社의 解散事由와 數人의 無限責任社員중 1人의 退社는 第2項 내지 第6項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한 한 合資會社에 관한 商法の 規定에 따른다.

② 株式合資會社는 다음의 경우에 解散한다.

1. 破産節次의 費用에 상응하는 破産財團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破産節次의 開始를 거절하는 決定의 既判力;

2. 非訟事件節次法 第144a條에 따라 定款의 欠缺을 확정한 登記法院의 處分の 既判力에 의하여.

③ 株主의 財産에 관한 破産節次의 開始에 의하여 會社는 解散하지 아니한다. 株主의 債權者는 會社의 解散告知를 할 權利를 가지지 아니한다.

④ 株主에 의한 會社의 解散告知와 株主의 會社解散에 대한 同意에는 株主總會의 決議가 필요하다. 法院의 判決에 의한 會社解散의 申請에 관하여도 같다. 決議에는 決議時에 대표된 資本의 4분의3 이상을 포함하는 多數決이 요구된다. 定款은 강화된 資本多數決 및 그 밖의 要件을 규정할 수 있다.

⑤ 無限責任社員은 除名으로 인한 경우 외에 定款으로 退社를 허용하도록 선언한 때에 한하여 退社할 수 있다.

⑥ 會社의 解散 및 無限責任社員 1人의 退社는 無限責任社員 全員이 商業登記簿에 登記하기 위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商法 第143條 第3項은 이에 준용된다.

- 第290條【清算】** ① 清算은 定款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無限責任社員 全員 및 株主總會에서 選出된 1人 또는 數人이 清算人으로서 처리한다.
- ② 各 無限責任社員은 法院에 의한 清算人의 選任 또는 解任을 申請할 수 있다.

第3編 結合企業(Verbundene Unternehmen)

第1章 企業契約(Unternehmensverträge)

第1節 企業契約의 種類(Arten von Unternehmensverträgen)

- 第291條【支配契約, 利益支給契約】** ① 企業契約이란 株式會社 또는 株式合資會社가 그 會社의 指揮를 다른 企業에 從屬시키는 契約(支配契約) 또는 그 會社의 全利益을 다른 企業에게 지급할 義務를 지는 契約(利益支給契約)을 말한다. 株式會社 또는 株式合資會社가 그 企業을 다른 企業의 計算에서 經營하도록 위임하는 契約도 全利益의 支給에 관한 契約으로 본다.
- ② 相互間에 從屬되지 아니한 諸企業이 契約에 의하여 그 중 한 企業이 契約者인 다른 한 企業에 從屬됨이 없이 통일적인 指揮下에 있는 때에는 이 契約은 支配契約이 아니다.
- ③ 支配契約 또는 利益支給契約에 의거한 會社의 給與는 第57條·第58條 및 第60條에 대한 違反으로 보지 아니한다.

- 第292條【기타의 企業契約】** ① 株式會社 또는 株式合資會社가 다음 각호의 約定을 하는 契約도 企業契約이다.

1. 그의 利益 또는 그의 個別 營業所의 利益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企業 또는 다른 企業의 個別 營業所의 利益과 共同利益分配을 위하여 併

獨逸株式法

合할 義務를 지는 契約(利益共同體),

2. 그의 利益의 일부 또는 그의 個別 營業所의 利益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企業에게 지급할 義務를 지는 契約(部分利益支給契約)

3. 그의 企業의 經營을 다른 企業에게 賃貸하거나 다른 方法으로 위임하는 契約(經營賃貸借契約, 經營委任契約).

② 理事 및 監事 또는 會社의 各 勞動者의 利益參加에 관한 契約과 계속적인 거래에 관한 契約 또는 特許契約(Lizenzvertrag)의 範圍內의 利益參加에 관한 協約(Abrede)은 一部利益支給契約이 아니다.

③ 經營賃貸契約 또는 經營委任契約 및 株主總會가 그 契約에 同意한 決議는 그 契約이 第57條·第58條 및 第60條에 違反하였다는 이유로 無效가 되지 아니한다. 第1文은 이 違反으로 인한 決議의 取消을 排除하지 아니한다.

第2節 企業契約의 締結, 變更과 終了(Abschluss, Änderung und Beendigung von Unternehmensverträgen)

第293條 [株主總會의 同意] ① 企業契約은 株主總會의 同意를 얻어서만 效力을 발생한다. 株主總會의 決議에는 決議時에 대표된 資本의 4분의 3이상을 포함하는 多數決이 필요하다. 定款으로 보다 큰 資本多數決 및 그 밖의 要件을 규정할 수 있다. 이 決議에 대하여는 定款變更에 관한 法律 및 定款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支配契約 또는 利益支給契約은 다른 契約當事者가 株式會社 또는 株式合資會社인 때에는 이 會社의 株主總會도 同意한 때에 한하여 效力을 발생한다. 그 決議에 관하여는 第1項 第2文 내지 第4文을 준용한다.

③ 契約은 書面形式에 따라야 한다.

④ (削除)

第294條 [登記·效力發生] ① 會社の 理事會는 企業契約의 存在 및 그 種類와 他方契約當事者의 名稱, 一部利益支給契約의 경우에는 그 밖에 지급할 利益의 額을 商業登記簿에 登記하기 위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書에는 契約書와 他方契約當事者의 株主總會의 同意를 얻어서만 契約書가 效力을 발생할 때에는 이 決議의 議事錄 및 그 別첨의 原本·正本 또는 公證된 謄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契約書는 그 존재가 會社の 住所地の 商業登記簿에 登記된 때에 비로소 效力을 발생한다.

第295條 [變更] ① 企業契約은 株主總會의 同意를 얻어서만 變更할 수 있다. 第293條와 第294條는 이에 준용된다.

② 會社の 外部株主(außenstehenden Aktionäre)에게 補償을 하거나 그들의 株式을 取得할 義務를 지우는 契約의 規定을 變更하기 위한 會社の 株主總會의 同意에는 그 效力을 발생하기 위하여 外部株主의 特別決議가 필요하다. 이 特別決議에 관하여는 第293條 第1項 第2文 및 第3文을 적용한다. 同意에 관하여 결의하는 株主總會에서의 請求에 따라 各 外部株主에게 變更에 관하여 본질적인 他方契約當事者의 일체의 업무에 관하여서도 說明하여야 한다.

第296條 [契約解止] ① 企業契約은 營業年度의 終了時 또는 그밖에 契約으로 정한 決算期間의 滿了時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다. 遡及效를 가진 解止는 할 수 없다. 解止는 書面形式에 따라야 한다.

② 外部株主에게 補償을 給與하거나 그들의 株式을 取得할 義務를 지우는 契約은 그 外部株主가 特別決議를 통하여 同意한 때에 한하여 解止할 수 있다. 이 特別決議에 관하여는 第293條 第1項 第2文 및 第3文, 第293條 第2項 第3文을 준용한다.

獨逸株式法

第297條【解約告知】 ① 企業契約은 중대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告知期間을 엄수하지 아니하고도 그 解止를 할 수 있다. 중대한 事由는 특히 他方契約 當事者가 契約上의 義務를 이행할 狀態에 있지 아니하다고 예측할 수 있는 때에 존재한다.

② 會社의 理事會는 會社의 外部株主에게 補償을 給與하거나 그들의 株式을 取得할 義務를 지우는 契約에 관하여는 중대한 事由없이 外部株主가 特別決議를 통하여 同意한 때에 한하여 그 解止를 할 수 있다. 이 特別決議에 관하여는 第293條 第1項 第2文 및 第3文, 第295條 第2項 第3文을 준용한다.

③ 解約告知는 書面形式에 따라야 한다.

第298條【申告 및 登記】 會社의 理事會는 企業契約의 終了·終了事由 및 終了時期를 商業登記簿에 登記하기 위하여 遲滯없이 申告하여야 한다.

第299條【指示의 排除】 企業契約을 근거로 會社에게 契約을 變更·維持 또는 終了하도록 지시는 행하여질 수 없다.

第3節 會社 및 債權者의 保護(Sicherung der Gesellschaft und der Gläubiger)

第300條【法定準備金】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第150條 第2項 第1號에 규정된 金額 대신에 法定準備金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利益支給契約이 존재하는 때에는, 利益支給을 하지 아니한다면 발생할, 前年度의 損失移越額을 공제한 年度剩餘金중에서 契約의 存續期間 동안에 또는 資本增加의 실시 후에 개시된 최초의 5 營業年度 이내에 資本의 10분의 1 또는 定款으로 規정한 그 이상의 부분에 이르기까지 均등하게 法定準備金에 充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金額, 그러나 적어도 第2號에 規

정된 金額;

2. 一部利益支給契約이 존재하는 때에는, 第150條 第2項 第1號에 의하여 利益支給을 하지 아니한다면 발생할, 前年度の 損失移越額을 控除한 年度 剩餘金중에서 法定準備金으로 적립하여야 할 金額;

3. 會社가 그의 全利益을 지급할 義務도 없이 支配契約이 존재하는 때에는 第1號에 의한 法定準備金の 充當을 위하여 필요한 金額, 그러나 적어도 第150條 第2項에 규정된 金額 또는 會社가 그의 利益의 一部를 지급할 義務를 진 때에는 第2號에 규정된 金額.

第301條 [利益支給의 最高額] 會社는 지급할 利益의 計算에 관한 合意가 성립되었는가에 관계없이, 前年度の 損失移越額 및 第300條에 의하여 法定準備金으로 적립하여야 할 金額을 控除한 金額을 最高限度로 하여 그의 利益으로서 지급할 수 있다. 契約期間 동안에 기타의 利益準備金으로 적립한 金額이 있는 때에는 이 金額은 기타의 利益準備金에서 引出할 수 있고 利益으로서 지급할 수 있다.

第302條 [損失引受] ① 支配契約 또는 利益支給契約이 존재하는 때에는 契約期間중에 利益準備金으로 적립한 金額을 기타의 利益準備金에서 인출함으로써 그외에 생긴 年度缺損額이 상각되지 못한 限度에서 他方契約當事者는 契約期間중에 이를 補償하여야 한다.

② 從屬會社가 그 企業의 經營을 支配企業에 賃貸하거나 다른 方法으로 委任한 때에는 合意된 反對給與가 正當한 對價에 달하지 못한 한도에서 支配企業은 契約期間중에 통상 발생하는 年度損失額을 補償하여야 한다.

③ 會社는 商法 第10條에 의하여 商業登記簿上の 契約終了登記를 公告된 것으로 볼 날로부터 최초의 3년 후에 補償請求權을 拋棄하거나 이에 관하여 和解할 수 있다. 補償義務者가 支給不能이 되고 清算 또는 破産節次의 中止를 위하여 그의 債權者와 和解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拋棄

獨逸株式法

또는 和解는 外部株主가 特別決議를 통하여 同意하고 그들의 持分이 합산하여 決議時에 대표된 資本의 10분의 1에 달하는 少數株主가 議事錄에 기록하도록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效力을 발생한다.

第303條【債權者保護】 ① 支配契約 또는 利益支給契約이 終了된 때에는 他方契約當事者は 商法 第10條에 의하여 商業登記簿上의 契約終了登記를 公告된 것으로 보기전에 설정된 債權을 가진 會社의 債權者에 대하여 그들이 登記公告後 6월이내에 이 目的을 위하여 他方契約當事者에게 申告한 때에는 擔保를 提供하여야 한다. 登記의 公告中에서 債權者들에게 이 權利가 있음을 表示하여야 한다.

② 破産의 경우에 法規定에 의하여 설치되고 國家의 監督을 받는 填補財團(Deckungsmasse)에서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를 가진 債權者는 擔保提供을 請求할 權利를 가지지 아니한다.

③ 擔保提供 대신에 他方契約當事者는 債權을 보증할 수있다. 先訴의 抗辯權(Einrede der Vorausklage)의 排除에 관한 商法 第349條는 이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4節 支配契約 및 利益支給契約에 있어서의 外部株主의 保護

(Sicherung der außenstehenden Aktionäre bei

Beherrschungs- und Gewinnabführungsverträgen)

第304條【適當한 調整補償】 ① 利益支給契約중에서는 株式券面額에 따른 계속적인 金錢給與를 통한 外部株主에 대한 適當한 調整補償(調整補償金支給)을 예정하여야 한다. 會社가 그의 全利益을 지급할 義務도 지는 때에는 支配契約중에서 外部株主에 대하여 適當한 調整補償으로서 調整補償金支給에 관하여 규정된 額에 따라 일정한 年度別 利益配當을 보증하여야 한다. 會社가 契約에 관한 株主總會의 決議時에 外部株主를 갖지 아니한 때

에 한하여 적당한 調整補償에 관한 規定을 도의시킬 수 있다.

② 會社の 종래의 收益狀態 및 將來의 收益展望에 따라서 적당한 減價償却費와 價値修正費를 고려하여 그러나 기타의 利益準備金을 설정하지 아니하고서 적어도 平均利益配當으로 各 株主에게 분배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는 金額의 每年支給額이 補償支給額으로서 확보하여야 한다. 他方契約當事者が 株式會社 또는 株式合資會社인 때에는 그 他方會社の 적합한 券面額의 株式에 대하여 그 때 그 때 利益配當으로 할당하는 金額의 支給額도 調整補償金支給額으로 보증할 수 있다. 적합한 券面額은 合併의 경우에 會社の 株式에 대하여 他方會社の 株式을 지급할 비율에 따라서 정한다.

③ 第1項에 반하여 전연 調整補償을 예정하지 아니한 契約은 無效이다. 이 契約 또는 第295條 第2項에 해당하는 契約의 變更에 同意한 會社の 株主總會의 決議의 取消은 第432條 第3項 또는 契約으로 정할 調整補償額이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그 根據로 할 수 없다. 契約으로 정한 調整補償額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306條에 규정된 法院은 契約으로 第2項 第2文에 따라 計算한 調整補償額이 예정된 경우에 同 規定에 따라 調整補償額을 정하여야 할 때에 申請에 따라 契約에 의하여 부담한 調整補償額을 정하여야 한다.

第305條 [取得補償] ① 第304條에 의한 調整補償義務의에 支配契約 또는 利益支給契約중에서 外部株主의 請求에 따라 契約으로 정한 적당한 取得補償(Abfindung)을 對價로 하여 그들의 株式을 取得할 他方當事者の 義務를 규정하여야 한다.

② 取得補償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契約에 정하여야 한다.

1. 他方契約當事者が 國內에 住所를 둔 從屬되지 아니하고 過半數占有되지 아니한 株式會社 또는 株式合資會社인 때에는 이 會社の 自己株式의 附與

2. 他方契約當事者が 從屬되거나 過半數占有된 株式會社 또는 株式合資

獨逸株式法

會社이고 그 支配企業이 國內에 住所를 둔 株式會社 또는 株式合資會社인 때에는 支配會社 또는 過半數占有된 會社の 株式의 附與 또는 現金補償

3. 다른 모든 경우에는 現金補償.

③ 取得補償으로서 다른 會社の 株式을 부여한 경우에 合併時에 會社の 株式에 대하여 다른 會社の 株式을 부여할 비율에 따라서 株式을 부여하고 現金의 追加支給에 의하여 最高價額을 補償할 수 있는 때에는 그 取得補償은 적당한 것으로 본다. 적당한 現金補償에 있어서는 契約에 관한 株主總會의 決議時의 會社の 狀態가 고려되어야 한다. 現金補償은 支配契約 또는 利益支給契約이 유효하게 된 날이 경과한 후에는 獨逸聯邦銀行의 各 할인율에다 100분의 2의 높은 율로 利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밖의 損害에 대한 權利主張은 배제되지 아니한다.

④ 株式을 取得할 義務에는 期限을 부칠 수 있다. 이 期限은 商法 第10條에 의하여 契約存在의 登記를 公告된 것으로 볼 날로부터 빨라도 2월 후 만료한다. 第306條에 규정된 法院에 의한 調整補償額(Ausgleich) 또는 取得補償(Abfindung)의 決定에 대한 申請이 있는 때에는 이 期限은 최후에 決定된 申請에 관한 判決을 聯邦官報에 公告한 날로부터 빨라도 2월후에 만료한다.

⑤ 契約 또는 第295條 第2項에 해당하는 契約變更에 同意한 會社の 株主總會의 決議의 取消는 契約으로 적당한 取得補償을 예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그 根據로 할 수 없다. 契約으로 取得補償을 전연 예정하지 아니하거나 第1項 내지 第3項에 적합하지 아니한 取得補償을 예정한 때에는 第306條에 규정된 法院은 申請에 따라 契約에 의하여 부여할 取得補償을 정하여야 한다. 동시에 法院은 第2項 第2號의 경우에 있어서 契約으로 支配會社 또는 過半數參加한 會社の 株式의 附與를 예정한 때에는 이 株式을 부여할 비율을, 契約으로 支配會社 또는 過半數 參加한 會社の 株式의 附與를 예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적당한 現金補償額을 정하여야 한다. 第304條 第4項 및 第5項은 이에 준용된다.

- 第306條【節次】** ① 그 外部株主가 申請權을 가진 會社의 住所地를 管轄하는 州法院이 管轄權을 가진다. 第132條 第1項 第2文 내지 第4文 및 組織變更法 第306條 第2項 第2文과 第3文은 이에 적용된다.
- ② 第99條 第1項, 第3項 第1文·第2文·第4文 내지 第9文, 第5項은 이에 준용된다.
- ③ 州法院은 申請을 그 外部社員이 申請權을 가진 會社의 會社公告紙에 公告하여야 한다. 外部株主는 이 公告後 2월의 期間內에는 아직도 자발적인 申請을 할 수 있다. 이 權利가 있음을 公告中에 表示하여야 한다.
- ④ 州法院은 企業契約의 契約當事者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州法院은 第304條 第4項 또는 第305條 第5項에 의한 申請人이 아니거나 第3項 第2文에 의하여 자발적인 申請을 한 外部株主에 대하여 그들의 權利를 保護하기 위하여 法定代理人의 資格을 가진 1人의 共同代理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適當한 調整補償額의 確定 및 適當한 取得補償의 確定을 申請한 때에는 法院은 各 申請에 관하여 1人의 共同代理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이 選任은 이들 外部株主의 權利保護가 다른 方法으로 보증된 때에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州法院은 共同代理人의 選任을 會社公告紙에 公告하여야 한다. 代理人은 會社에 대하여 適當한 現金支出의 補償 및 그의 활동에 대한 報酬를 請求할 수 있다. 支出額과 報酬는 州法院이 確定한다. 法院은 代理人의 請求에 따라 會社에게 先金支給을 명할 수 있다. 이 確定에 의하여 民事訴訟法에 의한 強制執行을 할 수 있다. 組織變更法 第308條 第3項은 이에 적용된다.
- ⑤ 州法院은 法院의 決定을 企業契約의 契約當事者와 第304條 第4項 및 第305條 第5項에 의한 申請人, 第3項 第2文에 의하여 독자적인 申請을 한 外部株主 및 共同代理人을 選任한 때에는 이 代理人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⑥ 會社의 理事會는 確定力있는 決定을 그 이유를 부치지 아니하고 會社公告紙에 公告하여야 한다.

⑦ 節次の費用에 관하여는 訴訟費用法을 적용한다. 第1審의 절차에 관하여는 全手數料의 2배를 징수한다. 第2審에 관하여는 동일한 手數料를 징수한다. 抗告를 한 때에도 같다. 決定이 있기전에 申請 또는 抗告를 撤回한 때에는 手數料는 2분의 1로 감액한다. 事件價額은 職權으로 確定하여야 한다. 事件價額은 訴訟費用法 第30條 第1項에 의하여 결정한다. 訴訟費用의 債務者는 企業契約의 契約當事者이다. 다만, 公평에 合당한 때에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關係人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第307條 [外部株主를 保護하기 위한 契約終了] 會社가 支配契約 또는 利益支給契約에 관한 株主總會의 決議時에 外部社員을 갖지 아니한 때에는 契約은 늦어도 外部株主가 參與한 營業年度의 終了時에 종료한다.

第2章 企業從屬時の 指揮權 및 責任(Leitungsmacht und Verantwortlichkeit bei Abhängigkeit von Unternehmen)

第1節 支配契約存在時の 指揮權 및 責任(Leistungsmacht und Verantwortlichkeit bei Bestehen eines Beherrschungsvertrags)

第308條 [指揮權] ① 支配契約이 존재하는 때에는 支配企業은 會社의 指揮를 포함하여 會社의 理事에게 指示를 내릴 權利를 가진다. 契約으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支配企業 또는 支配企業 및 會社와 کن체른으로 結合된 企業의 利益에 도움이 되는 때에는 會社에 대하여 損害가 되는 指示도 내릴 수 있다.

② 理事會는 支配企業의 指示를 준수할 義務를 진다. 理事會는 指示가 명백히 支配企業 또는 支配企業 및 會社와 کن체른으로 結合된 企業의 利益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때를 제외하고 理事會가 이와 같은 利益에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指示의 遵守를 거절할 權利는 가

지지 아니한다.

③ 會社の監事會의 同意를 얻어서만 실행할 수 있는 業務를 실행하도록 지시받고 이 同意를 상당한 기간내에 얻지 못한 때에는 理事會는 이를 支配企業에 通知하여야 한다. 支配企業이 이 通知 後에 指示를 반복한 때에는 監事會의 同意는 그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 支配企業에 監事會가 있는 때에는 그 監事會의 同意를 얻어서만 指示를 반복할 수 있다.

第309條 [支配企業의 法定代表者의 責任] ① 支配契約이 존재하는 때에는 支配企業의 法定代表者(單一商人의 경우에는 所有者)은 會社에 指示를 내림에 있어서 會社에 대하여 정상적이고 양심적인 營業指揮者의 注意를 다하여야 한다.

② 그 法定代表者가 그의 義務에 違反한 때에는 會社에 대하여 連帶債務者로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損害를 賠償할 義務를 진다. 정상적이고 양심적인 營業指揮者의 注意를 다하였는가 與否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그 法定代表者가 立證責任을 진다.

③ 會社は 請求人이 발생한 때로부터 최초의 3년 후에 그리고 外部株主가 特別決議를 통하여 同意하고 그들의 持分이 合算하여 決議時에 대표된 資本의 10분의 1에 달하는 少數株主가 議事錄에 記錄하도록 異議를提起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賠償請求權을 拋棄하거나 이에 관하여 和解할 수 있다. 賠償義務者가 支給不能이 되거나 清算을 위하여 또는 破産節次의 中止를 위하여 그의 債務者와 和解를 한 때에는 期間의 制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會社の 賠償請求權은 各 株主도 行使할 수 있다. 다만, 株主는 會社에 대한 給與만을 請求할 수 있다. 賠償請求權은 또한 會社の 債權者가 會社로부터 辨濟를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會社の 債權者도 行使할 수 있다. 이 債權者에 대하여는 會社の 拋棄 또는 和解로 인하여 그 賠償義務가 排除되지 아니한다. 會社の 財産에 대하여 破産節次가 開始된 때에는 破産節

獨逸株式法

次の 期間 동안에 破産管財人은 會社の 賠償請求權을 行使할 株主 및 債權者の 權利를 行使한다.

⑤ 이 條의 規定에 의한 請求權은 5년으로써 消滅時效에 걸린다.

第310條 [會社の 經營者の 責任] ① 會社の 理事 및 監事는 그들의 義務에 違反하여 행위한 때에는 第309條에 의한 賠償義務者와 함께 連帶債務者로서 責任을 진다. 그들이 정상적이고 양심적인 營業指揮者の 注意를 다하였는가의 與否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그들이 立證責任을 진다.

② 監事が 그 行爲를 승인하였다는 事實에 의하여 賠償義務는 排除되지 아니한다.

③ 損害를 발생시킨 行爲가 第308條 第2項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指示에 기인한 때에는 會社の 經營者の 賠償責任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④ 第309條 第3項 내지 第5項을 이에 적용한다.

第2節 支配契約不在時の 責任(Verantwortlichkeit bei Fehlen eines Beherrschungsvertrags)

第311條 [影響力の 制限] ① 支配契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支配企業은 從屬된 株式會社 또는 株式合資會社로 하여금 그 會社에 損害가 되는 法律行爲를 하거나 損害가 되도록 措置를 취하거나 취하지 아니하도록 그의 影響力을 行使하지 못한다. 損害가 補償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해 營業年度중에 實際로 補償이 실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늦어도 從屬會社에 損害가 발생한 營業年度の 終了時까지에는 損害가 補償되어야 할 시기 및 損害를 補償할 利益을 정하여야 한다. 補償을 위하여 정하여진 利益에 대하여는 從屬會社에게 法的 請求權을 부여하여야 한다.

第312條 [結合企業과의 關係에 관한 理事會의 報告] ① 支配契約이 존재하는 때에는 從屬會社의 理事會는 營業年度의 최초의 3월 이내에 結合企業에 대한 會社의 關係에 관한 報告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報告書에는 會社가 지난 營業年度중에 支配企業 또는 支配企業과 結合된 企業과 함께 행하거나 이들 企業의 勸誘에 따라서 또는 그 利益을 위하여 행한 일체의 法律行爲와 이들 企業의 勸誘에 따라서 또는 그 利益을 위하여 지난 營業年度중에 취하거나 취하지 아니한 일체의 措置를 記載하여야 한다. 法律行爲의 경우에는 그 給與 및 反對給與를, 措置의 경우에는 措置의 사유 및 會社에 대한 措置의 利益 및 損害를 記載하여야 한다. 損害의 補償의 경우에는 당해 營業年度중에 實際로 補償을 한 方法 또는 會社가 그에 대하여 法的 請求權을 부여받은 利益을 各各 記載하여야 한다.

② 報告書는 양심적이고 성실한 說明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理事會는 報告書의 말미에 法律行爲를 한 時期 또는 措置를 취하거나 취하지 아니한 시기에 理事會가 알았던 사정에 의하면 法律行爲의 경우에 會社가 적당한 反對給與를 받았는가의 與否와 措置를 취하거나 취하지 아니함으로 會社가 損害를 받지 아니하였는가의 與否를 說明하여야 한다. 會社가 損害를 받은 때에는 理事會는 그 밖에 그 損害가 補償되었는가의 與否도 說明하여야 한다. 이 說明은 狀況報告書중에도 記載하여야 한다.

第313條 [決算檢查人에 의한 檢查] ① 年度決算書가 決算檢查人에 의하여 검사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結合企業과의 關係에 관한 報告書는 年度決算書 및 狀況報告書와 함께 會社의 決算檢查人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決算檢查人은 다음 각호의 事項을 檢查하여야 한다.

1. 報告書의 사실적인 記載가 정당한가의 與否.

2. 報告書에 記載된 法律行爲에 있어서 法律行爲를 한 時期에 알려진 사정에 의하면 會社의 給與가 부당하게 高額이 아닌가의 與否; 高額인 때에는 그 損害가 補償되었는가의 與否.

3. 報告書에記載된措置에 있어서 理事會가說明한 것과 본질적으로 상이한 判斷을 내릴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가의 與否.

商法 第320條 第1項 第2文 및 第2項 第1文과 第2文은 이에 준용된다. 決算檢査人은 이 規定에 의한 權利를 關係企業 및 從屬企業 또는 支配企業에 대하여서도 가진다.

② 決算檢査人은 檢査의 結果에 관하여 書面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決算檢査人이 年度決算書, 狀況報告書 및 結合企業과의 관계에 관한 報告書の 檢査에서 그 報告書가 불완전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그는 이에 관하여서도 역시 보고하여야 한다. 決算檢査人은 그의 報告書에 署名하여 理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③ 檢査의 最終적 結果에 의하여 異議를 提起하여야 할 점이 없는 때에는 決算檢査人은 結合企業과의 관계에 관한 報告書에 다음과 같은 附記를 함으로써 이를 確認하여야 한다.

本人이(우리들이) 義務에 따른 檢査 및 判斷을 한 結果 本人은(우리들은) 다른 각호의 사실을 確認한다.

1. 報告書の 사실적인 記載는 정당하다.

2. 報告書에記載된 法律行爲에 있어서 會社の 給與는 부당하게 高額이 아니거나 損害가 補償되었다.

3. 報告書에記載된措置에 있어서 理事會가說明한 것과 본질적으로 상이한 判斷을 내릴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報告書에 法律行爲를 記載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2號의 附記를, 報告書에 措置를 記載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3號의 附記를 생략하여야 한다. 決算檢査人이 報告書에 記載하지 아니한 法律行爲에 관하여 會社の 給與가 부당하게 高額임을 確認한 때에는 第2號의 附記는 이 確認에 한정되어야 한다.

④ 異議를 提起하여야 할 때 또는 決算檢査人이 結合企業과의 관계에 관한 報告書가 불충분하다는 事實을 確認한 때에는 決算檢査人은 確認을 한정하거나 거절하여야 한다. 理事會가 스스로 會社는 일정한 法律行爲 또는

措置로 인하여 損害를 받았으며 그 損害가 補償되지 아니하였음을 說明한 때에는 이를 附記중에 記載하여야 하며 附記는 그 밖의 法律行爲 또는 措置에 한정되어야 한다.

⑤ 決算檢査人은 確認의 附記에 場所 및 日字를 記載하고 署名하여야 한다. 確認의 附記는 檢査報告書중에도 하여야 한다.

第314條【監事會에 의한 檢査】 ① 理事會는 結合企業과의 관계에 관한 報告書와 年度決算書가 檢査人에 의하여 檢査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決算檢査人의 檢査報告書를 第170條에 揭記된 書類와 함께 監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各 監事는 報告書에 대하여 알 權利를 가진다. 監事會가 달리 결의하지 아니한 한 請求에 따라 各 監事에게도 報告書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監事會는 結合企業과의 관계에 관한 報告書를 檢査하여야 하며 株主總會에 대한 監事會의 報告書중에서(第171條 第2項) 檢査의 結果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年度決算書가 檢査人에 의하여 檢査되어야 하는 경우에 監事會는 또한 이 報告書중에서 決算檢査人에 의한 結合企業과의 관계에 관한 報告書의 檢査結果에 대하여도 意見을 표명하여야 한다. 決算檢査人에 의하여 부여된 確認의 附記를 報告書중에 記載하여야 하며 確認의 附記의 拒絶은 명시적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③ 監事會는 報告書의 말미에 監事會의 檢査의 終局적 結果에 의하여 結合企業과의 관계에 관한 報告書의 말미에 理事會가 행한 說明에 대하여 異議를 提起하여야 할 것인가의 與否를 說明하여야 한다.

④ 年度決算書가 檢査人에 의하여 檢査되어야 하는 경우에 監事會의 請求에 따라 決算檢査人은 結合企業과의 관계에 관한 報告書에 관한 監事會의 審議에 참가하여야 한다.

第315條【特別檢査】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法院은 株主의 申請에 따라 支配企業 또는 支配企業과 結合企業에 대한 會社의 營業上의 關係를 檢査하기

獨逸株式法

위하여 特別檢査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1. 決算檢査人이 結合企業과의 관계에 관한 報告書에 대하여 確認의 附記를 限定하거나 拒絶한 경우,

2. 監事會가 結合企業과의 관계에 관한 報告書의 말미에 행한 理事會의 說明에 대하여 異議를 提起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說明한 경우,

3. 理事會가 스스로 會社는 일정한 法律行爲 또는 措置로 인하여 損害를 받았으며 그 損害가 補償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說明한 경우.

法院의 決定에 대하여는 即時抗告가 허용된다. 株主總會가 그 經過를 檢査하기 위하여 特別檢査人을 選任한 때에는 各 株主는 第142條 第4項에 의하여 申請을 할 수 있다.

第316條 [利益支給契約에 있어서의 結合企業과의 關係에 관한 報告書의 不要] 第312條 내지 第315條는 從屬會社와 支配會社 사이에 利益支給契約이 존재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第317條 [支配企業 및 그 法定代表者の 責任] ① 支配企業이 그와 支配契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從屬會社로 하여금 從屬會社에 損害가 되는 法律行爲를 하게 하거나 損害가 되도록 措置를 취하거나 취하지 아니하게 하고 당해 營業年度의 終了時까지 實際로 損害를 補償하거나 從屬會社에 대하여 補償을 위하여 정하여진 利益에 대한 法的 請求權을 부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支配企業은 會社에 대하여 그로 인하여 會社에 발생한 損害를 賠償할 義務를 진다. 支配企業은 會社의 損害로 인하여 株主에게 끼친 損害를 除外하고 株主가 損害를 받은 한도에서 株主에 대하여도 그로 인하여 株主에게 발생한 損害를 賠償할 義務를 진다

② 從屬會社의 정상적이고 양심적인 營業指揮者도 그 法律行爲를 행하거나 또는 그 措置를 취하거나 취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때에는 賠償義務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會社로 하여금 그 法律行爲 또는 措置를 하게 한 支配企業의 法定代表者는 支配企業과 함께 連帶債務者로서 責任을 진다.

④ 第309條 第3項 내지 第5項을 이에 준용한다.

第318條 [會社の經營者の責任] ① 會社の 理事는 그의 義務에 違反하여 損害가 되는 法律行爲 또는 損害가 되는 措置를 結合企業에 대한 會社の 관계에 관한 報告書중에 記載하지 아니하거나 會社가 그 法律行爲 또는 措置로 인하여 損害를 받았고 그 損害가 補償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記載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314條에 의한 賠償義務者와 함께 連帶債務者로서 責任을 진다. 정상적이고 양심적인 營業指揮者の 注意를 다하였는가의 與否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理事가 立證責任을 진다.

② 會社の 監事는 損害가 되는 法律行爲 또는 損害가 되는 措置에 관하여 結合企業과의 관계에 관한 報告書を 檢査하고 檢査結果에 관하여 株主總會에 보고할 그의 義務(第314條)에 違反한 때에는 第317條에 의한 賠償義務者와 함께 連帶債務者로서 責任을 진다. 第1項 第2文을 이에 준용한다.

③ 行爲가 株主總會의 適法한 決議에 의거한 때에는 會社 및 株主에 대하여도 賠償義務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第309條 第3項 내지 第5項은 이에 준용된다.

第3章 編入會社(Eingegliederte Gesellschaften)

第319條 [編入] ① 株式會社の 株主總會는 그 會社の 全株式을 장래의 主會社(Hauptgesellschaft)가 소유하는 때에는 國內에 住所를 둔 다른 株式會社(主會社)내의 會社の 編入을 결의할 수 있다. 이 決議에 대하여는 定款變更에 관한 法律 및 定款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編入에 관한 決議는 장래의 主會社の 株主總會가 同意한 때에 한하여 效力을 발생한다. 同意에 관한 決議에는 決議時에 대표된 資本의 4분의 3

이상을 포함하는 多數決이 필요하다. 第1項 第2文을 이에 적용한다. 同意에 관하여 결의하는 株主總會에서의 請求에 따라 各 株主에게 編入과 관련하여 중요한 編入이 될 會社의 일체의 業務에 관하여도 說明하여야 한다.

③ 編入에 대한 承認에 관하여 결의할 장래의 主會社의 株主總會 召集時부터 會社의 事務所에는 株主의 閱覽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書類를 비치하여야 한다.

1. 編入決議의 草案;
2. 최근 3년간 참가된 會社의 年度決算書와 狀況報告書;
3. 編入에 관하여 法的·經濟的으로 설명하고 이유를 밝힌, 장래의 主會社의 理事會가 작성한 자세한 書面報告書(編入報告書).

請求에 의하여 장래의 主會社의 各 株主에게 지체없이 무료로 第1文에 게기된 書類의 謄本을 제공하여야 한다. 株主總會에는 이 書類를 비치하여야 한다. 株主總會에서는 請求에 의하여 各 株主에게 편입될 會社의 編入과 관계된 모든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설명되어야 한다.

④ 編入될 會社의 理事會는 編入 및 主會社의 商號를 商業登記簿에 登記하기 위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書에는 株主總會決議의 議事錄 및 그 별첨의 正本 또는 공적으로 인증된 謄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第4項에 의한 申告에서 理事會는 株主總會決議의 效力에 대한 訴訟이 제기되지 않았거나 期限內에 제기되지 않았거나 또는 그러한 訴訟이 확정적으로 각하되었거나 또는 취하되었다는 것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理事會는 登記法院에 신고한 후 통지하여야 한다. 說明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訴權이 있는 株主가 공증된 拋棄覺書를 통하여 株主總會決議의 效力에 대하여 訴訟을 포기하지 않는 한, 編入은 등기될 수 없다.

⑥ 株主總會決議의 效力에 대한 訴訟提起後에 이 訴訟에 대한 管轄權이 있는 地方法院이 會社의 請求에 의하여, 訴訟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株主總會決議에 대하여 訴訟提起는 등기와 상치되지 않는다는 確定力있는 決

定을 한 경우에는, 第5項 第1文에 의한 설명과 같다. 株主總會決議의 效力에 대한 訴訟이 허용되지 않거나, 명백히 이유가 없거나 또는 法院의 자유로운 確證에 따라 編入의 즉각적인 效力發生이 會社와 그 株主를 위하여 申請人에 의하여 설명된 본질적인 損害를 방어할 목적으로 訴訟으로써 주장된 法律違反의 重要性을 고려하여 우선적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만 第1文에 의한 決定이 내려질 수 있다. 급박한 경우에 決定은 口頭辯論없이 행하여 질 수 있다. 第2項에 의한 決議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제출된 사실은 疏明되어야 한다. 이 決定에 대하여는 即時抗告가 허용된다. 訴訟이 이유있는 것을 증명된 경우에 결정을 받은 會社는 그 決定을 근거로 한 編入의 登記로 인하여 申請相對方에게 생긴 損害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⑦ 會社의 住所地の 商業登記簿에 編入을 登記함과 동시에 會社는 主會社로 편입된다.

第320條 [多數決에 의한 編入] ① 株式會社의 株主總會는 그 會社의 資本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總券面額의 株式을 장래의 主會社가 소유하는 때에도 國內에 住所를 둔 다른 株式會社內의 會社의 編入을 결의할 수 있다. 自己株式 및 會社의 計算에서 他人이 소유하는 株式은 資本에서 控除하여야 한다. 이 編入에 관하여는 第319條 第1項 第2文 내지 第4項외에 이 條 第2項 내지 第7項을 적용한다.

② 議事日程의 目的事項으로서의 編入의 公告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다.

1. 公告中에 장래의 主會社의 商號 및 住所를 記載한 때
 2. 公告에 장래의 主會社가 퇴사한 株主에게 그 株式에 대한 取得補償으로서 自己株式을 提供하거나 第320b條 第1項 第3文의 경우에는 그밖에 現金補償을 提供한다는 장래의 主會社의 說明을 첨부한 때
- 第1文 第2號는 장래의 主會社의 公告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③ 編入은 전문적인 檢査人(編入檢査人)에 의하여 檢査되어야 한다. 編入

獨逸株式法

檢査人은 장래의 主會社의 理事會에 의하여 선임된다.

④ 第319條 第3項 第1文에 계기된 書類 및 이 條 第3項에 의한 檢査報告書는 編入을 위한 동의에 관하여 결의하여야 할 株主總會의 召集時로부터 편입될 會社와 主會社의 事務所에 株主의 閱覽을 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編入報告書에는 第320b條에 의한 補償의 種類와 金額도 法的·經濟的으로 설명하여야 하고, 그 理由도 기재하여야 한다; 참가된 會社의 評價에서 특별한 어려움 및 株主의 參加에 대한 結果에 관하여도 표시되어야 한다. 第319條 第3項 第2文 내지 第4文은 2 會社의 株主에 대하여 준용된다.

⑤ - ⑦ (削除)

第320a條 [編入의 效果] 商業登記簿에 編入을 登記함과 동시에 主會社가 소유하지 아니한 일체의 株式은 主會社에 이전된다. 이들 株式에 관하여 株券이 發行된 때에는 株券은 主會社에 引渡할 때까지 補償請求權만을 표창한다.

第320b條 [退社한 株主에 대한 補償] ① 編入會社의 退社株主는 적당한 取得補償에 대한 請求權을 가진다. 補償으로서는 退社株主에게 主會社의 自己株式을 부여할 수 있다. 主會社가 從屬會社인 때에는 退社株主에 대하여 그의 선택에 따라 主會社의 自己株式 또는 적당한 現金補償을 부여할 수 있다. 取得補償으로서 主會社의 株式을 부여한 경우에 合併時에 있어서 會社의 株式에 대하여 主會社의 株式을 부여하여야 할 比率에 따라 부여한 때에는 그 補償은 적당한 것으로 본다. 이때 端株額은 현금으로 보상될 수 있다. 現金補償에서는 編入에 관한 株主總會決議時的 會社의 狀態를 고려하여야 한다. 現金補償額과 現金追加支給額에 대하여는 編入의 登記의 公告時로부터 연 獨逸聯邦銀行의 각 割引率에 100분의 2의 利子を 붙여야 한다; 그 이상의 損害의 主張을 배제되지 아니한다.

② 編入會社의 株主總會가 會社의 編入을 결의한 決議의 取消는 第243條

第2項을 그 根據로 하거나 第320條 第2項 第2號에 의하여 主會社로부터 提供된 取得補償이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할 수 없다. 提供된 取得補償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306條에 규정된 法院이 申請에 따라 적당한 取得補償을 정하여야 한다. 主會社가 取得補償을 提供하지 아니하거나 적법하게 提供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것을 이유로 한 取消의 訴가 取消期間內에 提起되지 않거나 撤回되거나 확정적으로 却下된 때에도 같다.

③ 申請權者는 各 退社株主이다. 申請은 商法 第10條에 의하여 商業登記簿에 한 編入의 登記를 公告된 것으로 보고 그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한하여 할 수 있다. 節次에 관하여는 第306條가 준용된다.

第321條 [債權者 保護] ① 商業登記簿上の 編入의 登記가 公告되기 前에 설정된 債權을 가진 編入會社의 債權者에 대하여는 그들이 公告後 6월 이내에 이 目的을 위하여 申告한 때에는 그들이 辨濟를 請求할 수 없는 限度에서 擔保를 提供하여야 한다. 登記의 公告중에서 債權者에게 이 權利가 있음을 表示하여야 한다.

② 破産의 경우에 法規定에 의하여 설치되고 國家의 監督을 받는 填補財團에서 우선 辨濟를 받을 權利를 가진 債權者는 擔保提供을 請求할 權利를 가지지 아니한다.

第322條 [主會社의 責任] ① 編入이 된 때로부터 主會社는 이 時期 前에 설정된 編入會社의 債務에 관하여 編入會社의 債務者에게 連帶債務者로서 責任을 진다. 主會社는 編入 後에 설정된 編入會社의 일체의 債務에 관하여도 동일한 責任을 진다. 이와 상반된 合意는 第3者에 대하여 效力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主會社가 編入會社의 債務로 인하여 請求를 받은 때에는 主會社는 編入會社가 異議를 提起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主會社自身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異議를 주장할 수 있다.

③ 主會社는 編入會社가 그 債務의 기초가 되는 法律行爲를 취소할 權利를 가진 동안에는 債權者에 대한 辨濟를 거절할 수 있다. 主會社는 債權者가 編入會社의 滿期가 된 債權과의 相計에 의하여 辨濟받을 수 있는 동안에도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第323條 [主會社의 指揮權 및 理事의 責任] ① 主會社는 編入會社의 理事會에 대하여 會社의 指揮에 관하여 지시를 내릴 權利를 가진다. 第308條 第2項 第1文, 第3項, 第309條, 第310條를 이에 준용한다. 第311條 내지 第318條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主會社에 대한 編入會社의 給與는 第57條, 第58條 및 第60條에 대한 違反으로 보지 아니한다.

第324條 [法定準備金, 利益支給, 損失引受] ① 法定準備金の 設定·法定準備金の 處分 및 法定準備金에의 金額의 積립에 관한 法律의 規定은 編入會社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編入會社와 主會社사이의 利益支給契約·利益共同制度 또는 一部利益支給契約에 대하여는 第293條 내지 第296條, 第298條 내지 第303條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契約·契約變更 및 契約解除에는 書面形式이 필요하다. 利益으로서는 利益支給을 하지 아니한다면 발생할 貸借對照表上의 利益 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契約은 늦어도 編入이 종료된 營業年度の 終了時까지에 종료된다.

③ 主會社는 編入會社에 있어서 그 밖의 모든 貸借對照表上의 損失이 資本準備金과 利益準備金の 額을 초과하는 限度에서 그 損失을 補償할 義務를 진다.

第325條 (削除)

第326條 [主會社の 株主의 說明請求權] 主會社の 各 株主에 대하여는 編入會社の 業務에 관하여 主會社の 業務에 관하여서와 같이 說明을 하여야 한다.

第327條 [編入의 終了] ① 編入은 다음 각호의 事項에 의하여 종료된다.

1. 編入會社の 株主總會의 決議에 의하여
2. 主會社가 더 이상 國內에 住所를 둔 株式會社가 아니게 된 때
3. 編入會社の 全 株式을 더이상 主會社가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主會社の 解散에 의하여

② 編入會社の 全株式을 더이상 主會社가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事由 및 時期를 遲滯없이 會社の 住所地の 商業登記簿에 登記하기 위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③ 從前의 編入會社の 債務로 인한 以前의 主會社에 대한 請求權은 從前의 編入會社에 대한 請求權이 보다 短期의 消滅時效에 의하여 消滅되지 아니한 한 商法 第10條에 의하여 商業登記簿上의 編入의 終了의 登記를 公告된 것으로 볼 날로부터 5년으로써 消滅時效에 걸린다. 債權者의 請求權이 商業登記簿上의 編入의 終了의 登記를 公告된 것으로 볼 날 이후에 비로소 滿期가 된 때에는 消滅時效는 滿期時期와 동시에 進行을 개시한다.

第4章 相互參加企業(Wechselseitig beteiligte Unternehmen)

第328條 [權利의 制限] ① 株式會社 또는 株式合資會社와 다른 企業이 相互參加企業인 때에는 그 企業에게 相互參加의 存在가 알려지거나 다른 企業이 그 企業에게 第20條 第3項 또는 第21條 第1項에 의하여 通知를 한 즉시 그 企業이 소유한 다른 企業의 持分에 의한 權利는 다른 企業의 總持分の 4분의 1을 最高限度로 하여 行使할 수 있다. 會社財産에 의한 資本增

獨逸株式法

加時の新株에 대한 權利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6條 第4項을 이에 적용한다.

② 第1項의 制限은 그 企業이 다른 企業에 의하여 第20條 第3項 또는 第21條 第1項에 의한 通知를 받기 전 및 그 企業에게 相互參加의 存在가 알려지기 전에 그 企業이 다른 企業에게 第20條 第3項 또는 第21條 第1項에 의한 通知를 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株式會社 또는 株式合資會社와 다른 企業이 相互參加企業인 때에는 이 企業들은 相互間에 遲滯없이 그들의 出資의 額 및 모든 變更을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第5章 콘체른에 있어서의 計算(Rechnungslegung im Konzern)

第329條 - 第336條 (削除)

第337條 [콘체른決算書 및 콘체른狀況報告書の 提出] ① 母企業의 理事會는 決算檢查人의 檢查報告書を 받은 후 遲滯없이 콘체른決算書·콘체른狀況報告書 및 檢查報告書を 母企業의 監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各 監事は 提出書類에 대하여 알 權利를 가진다. 監事會가 다른 決議를 하지 아니한 한도에서는 請求에 의하여 各 監事에게도 提出書類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콘체른決算書가 母企業의 年度決算書의 基準日에 작성된 때에는 이 年度決算書を 채택하거나 確定하여야 할 株主總會에 콘체른決算書 및 콘체른狀況報告書を 提出하여야 한다. 콘체른決算書의 基準日이 母企業의 年度決算書의 基準日과 상이한 때에는 콘체른決算書의 基準日後 최초의 年度決算書を 채택하거나 確定하여야 할 株主總會에 콘체른決算書 및 콘체른狀況報告書を 提出하여야 한다.

③ 콘체른決算書 및 콘체른狀況報告書の 備置 및 謄本의 交付에 관하여서는 第175條 第2項을, 株主總會에 대한 提出 및 理事會의 報告에 관하여는

第176條 第1項이 준용된다.

④ 콘체른決算書와 콘체른狀況報告書가 提出된 株主總會에서 母企業의 理事會의 說明義務는 콘체른 및 콘체른決算書內에 편입된 企業의 狀況에 대하여도 미친다.

第338條 (削除)

第339條 - 第393條 (削除)

第4編 特別規定, 罰則 및 終結規定(Sonder-, Straf- und Schlußvorschriften)

第1章 地域團體의 參加時의 特別規定(Sondervorschriften bei
Beteiligung von Gebietskörperschaften)

第394條 [監事の 報告] 地域團體의 勸告(Veranlassung)에 따라 監事會에 選任되거나 派遣된 監事は 그 地域團體에 대하여 하여야 할 報告에 관하여 默秘의 義務를 지지 아니한다. 會社의 機密事項 및 秘密, 특히 營業秘密이나 業務秘密에 관하여 그들의 認知가 報告의 目的을 위하여 중요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95條 [默秘의 義務] ① 地域團體의 出資를 管理하거나 地域團體를 위하여 會社, 株主로서 地域團體의 活動 또는 地域團體의 勸告에 따라 選任되거나 派遣된 監事の 活動을 檢査하도록 委託받은 者は 第394條에 의한 보고로 인하여 그들에게 알려진 會社의 機密事項 및 秘密, 특히 營業秘密이나 業務秘密에 관하여 默秘를 유지하여야 한다; 職務上 連絡에 의한 通知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檢査報告書を 公示하는 경우에 會社의 機密事項 및 秘密, 특히 營業秘

獨逸株式法

密이나 業務秘密은 공시하지 못한다.

第2章 法院에 의한 解散(Gerichtliche Auflösung)

第396條 [要件] ①株式會社 또는 株式合資會社가 그의 任員(Verwaltungs-träger)의 違法行爲로 인하여 公共福祉를 위태롭게 하고 監事會 및 株主總會가 任員의 解任을 배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會社의 住所가 있는 州의 管轄權을 가진 最上級州官廳의 申請에 따라 判決에 의하여 會社를 解散할 수 있다. 이 訴에 관하여는 會社의 住所地를 管轄하는 州法院이 전속적인 管轄權을 가진다.

② 解散된 후에는 第264條 내지 第273條에 의하여 清算을 한다. 중대한 사유로 인한 清算人의 解任 또는 選任에 대한 申請도 第1項 第1文에 규정된 官廳이 행한다.

第397條 [解散時의 命令] 解散의 訴가 提起된 때에는 法院은 第396條 第1項 第1文에 규정된 官廳의 申請에 따라 假處分(einstweilige Verfügung)으로써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第398條 [登記] 法院의 決定은 登記法院에 通知되어야 한다. 登記法院은 이 決定이 登記義務를 수반하는 法律關係에 관한 한도에서 이를 商業登記簿에 登記한다.

第3章 罰則 및 罰金規定, 終結規定(Straf- und Bußgeldvorschriften. Schlußvorschriften)

第399條 [虛偽의 記載] ① 다음 각호의 者는 3년 이하의 自由刑 또는 罰金刑에 처한다.

1. 發起人 또는 理事나 監事로서 會社の 登記를 할 目的으로 株式의 引受, 株式에 대한 納入, 納入金の 使用, 株式의 發行價額, 特別利益, 設立費用, 現物出資, 財産引受 및 완납되지 않은 金錢出資에 대한 保證에 관하여 虛偽의 記載를 하거나 중대한 事情을 默秘한 者,

2. 發起人 또는 理事나 監事로서 設立報告書, 事後設立報告書 또는 檢查報告書에 虛偽의 記載를 하거나 중대한 事情을 默秘한 者,

3. 第47條 第3號에 의한 公告에 虛偽의 記載를 하거나 중대한 事정을 默秘한 者,

4. 理事 또는 監事로서 資本增加의 登記를 할 目的으로(第180條 내지 第206條) 종전의 資本의 納入, 新資本의 引受 또는 納入, 株式의 發行價額, 新株引受株式의 發行 또는 現物出資에 관하여 虛偽의 記載를 하거나 중대한 事情을 默秘한 者,

5. 清算人으로서 會社繼續의 登記를 할 目的으로 第274條 第3項에 의하여 하여야 할 證明에 있어서 虛偽의 記載를 하거나 중대한 事情을 默秘한 者

6. 理事로서 第37條 第2項 第1文 또는 第81條 第3項 第1文에 의하여 제출된 確言書 또는 清算人으로서 第266條 第3項 第1文에 의하여 제출한 確言書에 虛偽의 記載를 하거나 중대한 事情을 默秘한 者.

② 理事 또는 監事로서 資本增加의 登記를 할 目的으로 第210條 第1項 第2文에 규정된 說明을 眞實에 違反되게 한 者도 동일한 刑에 처한다.

第400條 [不正確한 陳述] 理事나 監事 또는 檢查人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년 이하의 自由刑 또는 罰金刑에 처한다.

1. 財産狀態에 관한 陳述 또는 概觀에서, 株主總會에서의 報告나 說明에서 結合企業에 대한 關係를 포함하여 會社の 事情을 부정확하게 묘사하거나 은폐한 者로서 그 行爲가 商法 第331條 第1號에서 刑罰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獨逸株式法

2.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會社 또는 結合企業의 決算檢査人에게 提供하여야 할 說明이나 證明에서 虛僞의 陳述을 하거나 會社의 狀況을 부정확하게 재현하거나 은폐한 者로서 그 行爲가 商法 第331條 第4號에서 刑罰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發起人 또는 株主로서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檢査人 또는 기타의 檢査人에게 제공하여야 할 說明이나 證明에서 虛僞의 記載를 하거나 중대한 사정을 은폐한 者도 동일한 刑罰에 처해진다.

第401條 [損失, 債務超過 또는 支給不能時의 義務違反]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년 이하의 自由刑 또는 罰金刑에 처한다.

1. 理事로서 第92條 第1項에 違反하여 資本의 半額에 달하는 損失이 발생한 경우에 株主總會의 召集 또는 株主總會에 이를 보고하는 것을 게을리한 者.

2. 理事로서 第92條 第2項에 違反하여 또는 清算人으로서 第268條 第2項 第1文에 違反하여 支給不能 또는 債務超過가 된 경우에 破産節次 또는 裁判上의 和議節次 開始의 申請을 게을리한 者.

② 行爲者가 過失로 행위한 때에는 그 刑罰은 1년 이하의 自由刑 또는 罰金刑이다.

第402條 [供託證明書の 虛僞發行 또는 變造] ① 株主總會 또는 分離總會에서의 議決權의 證明에 이용하게 될 株式 또는 假株券의 供託에 관한 證明書を 虛僞로 발행하거나 變造한 者는 그 행위가 證書에 대한 범행에 관한 다른 規定에 보다 중한 刑으로 處罰하도록 규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自由刑 또는 罰金刑에 처한다.

② 第1項에 게기된 種類의 虛僞로 발행되거나 變造된 證明書を 議決權의 行使를 위하여 사용한 者도 동일한 刑에 처한다.

③ 未遂도 處罰한다.

第403條【報告義務의 違反】① 檢査人 또는 檢査人의 補助者로서 檢査의 結果에 關하여 虛偽의 報告를 하거나 重大한 事情을 은폐한 者는 3년 이하의 自由刑 또는 罰金刑에 처한다.

② 行爲者가 對價를 받고 또는 自己 또는 他人에게 利益이 되거나 他人에게 損害가 되게 할 의도로 행위한 때에는 그 刑罰은 5년 이하의 自由刑이나 罰金刑이다.

第404條【默秘義務의 違反】① 다음 각호의 資格으로 알게 된 會社의 秘密, 특히 營業秘密 또는 業務秘密을 權限없이 공개한 者는 1년 이하의 自由刑 또는 罰金刑에 처한다. 다만 第2號의 경우에는 그 行爲가 商法 第333條에서 刑罰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만 그러하다.

1. 理事나 監事 또는 清算人

2. 檢査人 또는 檢査人의 補助者

② 行爲者가 對價를 받고 또는 自己 또는 他人에게 利益이 되거나 他人에게 損害가 되게 할 意圖로 행위한 때에는 그 刑罰은 2년 이하의 自由刑 또는 罰金刑이다. 第1項에 게기된 種類의 秘密, 특히 第1項의 要件下에 알게 된 營業秘密 또는 業務秘密을 權限없이 이용한 者도 동일한 刑에 처한다.

③ 犯行은 會社의 申請이 있는 때에 한하여 소추된다. 理事 또는 清算人이 犯行을 한 때에는 監事會가, 監事가 犯行을 한 때에는 理事會 또는 清算人이 申請權을 가진다.

第405條【秩序違反】① 理事나 監事 또는 清算人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秩序違反을 한 것이다.

1. 額面 또는 額面超過의 發行價額을 全額納入하기 전에 一部納入의 金額을 記載하지 아니한 記名株式을 發行하거나 無記名株式을 發行한 者.

2. 會社の登記前に 또는 資本増加의 경우에는 資本増加의 실행의 登記前に 또는 條件附資本増加의 경우 또는 會社の 資産에 의한 資本増加의 경우에는 條件附資本増加 또는 會社の 資産에 의한 資本増加에 관한 決議의 登記前に 株式 또는 假株券을 發行한 者.

3. 第8條에 의하여 허용되는 最低券面額 이하의 金額을 表示한 株式 또는 假株券을 發行한 者.

4. a) 第71條 第1項 第1號 내지第4號 또는 第2項에 반하여 會社の 自己株式을 취득하거나 第71c條 第1項과 관련하여 質物로서 취득한 者,

b) 양도하여야 할 自己株式(第71c條 第1, 2項)을 제공하지 아니한 者,

c) 自己株式의 消却(第71c條 第3項)에 관한 決意를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취하지 아니한 者.

② 株主 또는 株主의 代理人으로서 第129條에 의하여 名簿에 記載하여야 할 事項을 記載하지 아니하거나 正當하게 記載하지 아니한 者는 秩序違反을 한 것이다.

③ 그 밖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秩序違反을 한 것이다.

1. 自己가 代理權을 가지지 아니한 他人의 株式을 그 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고 株主總會 또는 分離總會에서의 權利의 行使를 위하여 이용한 者,

2. 株主總會 또는 分離總會에서의 權利의 行使의 目的으로 特別한 利益의 附與 또는 約束에 의하여 얻은 他人의 株式을 이 目的을 위하여 이용한 者,

3. 第2號에 계기된 目的을 위하여 特別한 利益의 附與 또는 約束을 통하여 株式을 他人에게 移轉한 者,

4. 第135條에 의하여 自己 또는 自己의 代理人이 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는 他人의 株式을 議決權의 行使를 위하여 이용한 者,

5. 第20條 第7項, 第21條 第4項, 第71b條, 第71d條 第4文, 第134條 第1項, 第135條, 第136條, 第142條 第1項 第2文, 第285條 第1項에 의하여 自己 또는 自己의 代理人이 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는 株式을 議決權의 行使의 目

的으로 他人에게 提供한 者 또는 提供받은 이 株式을 議決權의 行使를 위 하여 이용한 者,

6. 自己가 株主總會 또는 分離總會에서의 表決時에 表決을 하지 아니하거나 일정한 의미의 表決을 하는데 대한 反對給與로서 특별한 利益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게 하거나 받은 者,

7. 누군가가 株主總會 또는 分離總會에서의 表決時에 表決을 하지 아니하거나 일정한 意味의 投票를 하는데 대한 反對給與로서 特別한 利益을 提供하거나 約束하거나 附與한 者.

④ 秩序違反은 5만 독일 마르크 이하의 過料(Geldbusse)에 처하여 질 수 있다.

第406條 (削除)

第407條 [強制金] ① 理事 또는 清算人이 第52條 第2項 第2文과 第3文, 第71c條, 第73條 第3項 第2文, 第80條, 第90條, 第104條 第1項, 第111條 第2項, 第145條, 第170條, 第171條 第3項, 第175條, 第179a條 第2項 第1文과 第2文, 第214條 第1項, 第246條 第4項, 第259條 第5項, 第268條 第4項, 第270條 第1項, 第273條 第2項, 第293f條, 第293g條, 第306條 第6項, 第312條 第1項, 第313條 第1項, 第314條 第1項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登記法院이 強制金の 確定에 의하여 그 履行을 강제할 수 있다; 商法 第14條는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개별적 強制金은 1만 독일 마르크의 金額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第36條, 第45條, 第52條, 第181條 第1項, 第184條, 第188條, 第195條, 第210條, 第223條, 第237條 第4項, 第274條, 第294條 第1項, 第319條 第3項에 의한 商業登記의 申請은 強制金の 確定에 의하여 強制될 수 있다. 支店の 數에 상응하는 申請書類의 數의 提出에 관하여는 商法 第14條가 적용된다.

獨逸株式法

第408條 [株式合資會社の 無限責任社員의 處罰] 第399條 내지 第407條는 株式合資會社에 관하여 준용된다. 이 規定들 중에서 理事에 관한 것은 株式合資會社の 無限責任社員에 대하여 적용된다.

第409條 [베를린에서의 適用] (削除)

第410條 [施行] 이 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第4部 有限會社】 4)

第1節 會社의 設立

第1條【目的】有限會社は 이 法의 規定에 따라 모든 合法的 目的을 위하여 1人 또는 數人에 의하여 設立될 수 있다.

第2條【定款의 作成】① 定款은 公正證書의 形式을 필요로 한다. 定款은 모든 社員에 의하여 署名되어야 한다.

② 代理人에 의한 署名은 오직 公正證書로 작성되거나 認證된 書證에 의한 代理權에 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第3條【定款의 記載事項】① 定款에는 다음의 事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會社의 商號 및 住所,
2. 企業의 目的,
3. 基本資本의 額,
4. 각 社員이 基本資本에 대하여 移行하여야 할 出資(基本出資)의 額.

② 企業이 存立期間을 한정하거나 社員이 會社에 대하여 資本出資의 給付 외에 다른 義務를 부담할 경우에는 그 규정도 定款에 포함하여야 한다.

第4條【會社의 商號】① 會社의 商號는 企業의 目的을 표현하는 것으로 정하거나 社員들의 姓名 또는 會社關係의 存立을 표시하는 附加文字와 함께 적어도 社員중의 1人의 姓名을 포함하여야 한다. 社員 이외의 者의 姓名은 商

4) 有限會社에 관하여는 獨逸 有限會社法(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에 규정되어 있다. 現行 有限會社法은 1892년에 제정되었으며 1980년에 대폭적인 개정을 하였다. 獨逸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有限會社의 數가 株式會社의 數보다 월등히 많다. 獨逸의 有限會社는 1인에 의하여 設立될 수 있다.

獨逸有限會社法

號중에 사용할 수 없다. 會社가 양수한 營業의 商號를 續用하는 것은(商法 第22條) 이에 의하여 배제되지 아니한다.

② 會社의 商號는 모든 경우에 “有限(mit beschränkter Haftung)”이라는 附加的 表示를 포함하여야 한다.

第5條 [基本資本; 基本出資] ① 會社의 基本資本은 적어도 5만 독일 마르크, 각 社員의 基本出資는 적어도 5백 독일 마르크 이상이어야 한다.

② 어떠한 社員도 會社의 設立時에 數個의 基本出資를 인수할 수 없다.

③ 基本出資의 額은 각 社員에 대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 金額은 100 독일 마르크로 整除될 수 있어야 한다. 基本出資의 總額은 基本資本과 일치하여야 한다.

④ 現物出資가 이행될 경우에는 現物出資의 目的物과 現物出資에 관계되는 基本出資의 額은 定款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社員은 現物設立報告書에서 現物出資 履行의 適正性에 관하여 중요한 事情을 설명하여야 하며, 會社에 대하여 企業을 移轉하는 때에는 직전 2營業年度의 年度收益을 기재하여야 한다.

第6條 [業務執行者] ① 會社에는 1人 또는 數人의 業務執行者가 있어야 한다.

② 業務執行者는 오직 自然人으로서 完全能力者이어야 한다. 그 財産社務의 處理에 있어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同意를 받아야 하는 後見人(民法 第1903條) 業務執行者가 될 수 없다. 刑法 第283條에서 第283條d까지의 規定에 의한 犯行으로 인하여 有罪를 선고받은 者는 判決의 確定日로부터 5년 동안 業務執行者가 될 수 없다; 有罪宣告를 받은 者가 執行官廳의 命令에 의하여 矯導所에 수용되었던 기간은 이 期間에 산입하지 않는다. 法院의 判決 또는 行政廳의 執行力있는 決定을 통하여 일정한 職業, 그 職業의 一部門, 일정한 營業 또는 그 營業의 일부분의 從事가 금지되어 있는 者는, 그

禁止의 效力이 있는 기간동안, 그 事業目的의 전부 또는 일부가 禁止의 對象과 일치하는 會社의 業務執行者가 될 수 없다.

③ 業務執行者는 社員 또는 社員 이외의 者 중에서 선임될 수 있다. 選任은 定款 또는 第3節의 規定에 따라 이루어진다.

④ 定款으로 社員 全員이 業務執行權을 가질 것을 정한 경우에는 이 規定의 確定時에 社員이었던 者만이 業務執行者에 선임된 것으로 본다.

第7條【登記申請】 ① 會社は 그 住所를 관할하는 法院에서 商業登記簿에 등기하기 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登記申請은, 現物出資에 관한 合意가 없는 한, 각 基本出資의 4분의 1이 납입된 경우에 비로소 행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적어도 납입된 金錢出資의 總額과 現物出資로 납입되어야 할 基本出資의 總額을 합하여 25,000 독일 마르크에 달하는 액이 基本出資로 납입되어야 한다. 會社가 오직 1인에 의하여 설립되는 경우에, 登記申請은 적어도 本項 第1文 및 第2文에 규정된 納入이 이행되고 社員이 金錢出資의 殘餘部分에 관하여 擔保를 제공한 경우에 비로소 행할 수 있다.

③ 現物出資는 商業登記簿에 등기하기 위한 會社의 登記申請前에, 중국적으로 業務執行者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도록, 會社에 급부되어야 한다.

第8條【申請書의 內容】 ① 申請書에는 다음의 書類가 첨부되어야 한다:

1. 定款과 第2條 第2項의 경우에는 定款에 署名한 代理人의 代理權을 증명하는 證書 또는 認證을 받은 이 證書의 謄本,
2. 業務執行者가 定款으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業務執行者의 資格을 증명하는 書面,
3. 各 社員의 姓名, 身分과 住所 및 各 社員에 의하여 인수된 基本出資를 기재하고 申請者가 서명한 社員名簿,
4. 第5條 第4項의 경우에는 確定의 基礎가 되고 그 實行을 위하여 締結된

契約書와 現物設立報告書,

5. 現物出資가 合意된 경우에는, 現物出資의 價値가 이에 대하여 인수한 基本出資의 額에 달한다는 것에 관한 證據書類,

6. 事業目的이 國家의 認可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認可證.

② 申請書에서는 第7條 第2項 및 第3項에 계기된 基本出資의 給付된 것 및 그 給付의 目的物이 總국적으로 業務執行者의 자유로운 처분하에 있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會社가 1인에 의하여 설립되고 金錢出資가 완전히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第7條 第2項 第3文에 의하여 필요한 擔保가 提供되어 있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③ 申請書에서 業務執行者는 第6條 第2項 第2文 및 第3文에 따른 그의 選任에 지장을 초래하는 事情이 없다는 것과 그가 法院에 대한 무제한의 說明義務에 관하여 敎示되어 있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敎示는 1976년 7월 22일에 공포된 中央登錄簿와 教育登錄簿에 관한 法 第51條 第2項(聯邦官報 제1부 2,005면)에 의하여 公正證書人에 의하여도 행하여 질 수 있다.

④ 그 밖에 申請書에는 業務執行者가 가진 代表權限에 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⑤ 業務執行者는 法院에 보존을 위하여 그 署名을 하여야 한다.

第9條 [現物出資에 갈음하는 金錢出資] ① 商業登記簿에 登記하기 위한 會

社의 登記申請時에 現物出資의 價値가 이에 대하여 인수한 基本出資의 額에 달하지 않은 경우에 社員은 그 不足額을 金錢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 會社의 請求權은 商業登記簿에 會社를 등기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時效에 의하여 소멸한다.

第9a條 [會社의 賠償請求權] ① 會社를 설립할 目的으로 虛偽의 記載가 행

하여진 경우에 社員 및 業務執行者는 連帶債務者로서 會社에 대하여 未納額을 給付하고, 設立費用으로서 기재되어 있지 않은 報酬를 반환하여야 하

며, 그 이외에 발생한 損害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社員이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出資 또는 設立費用으로 인하여 會社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모든 社員은 連帶債務者로서 會社에 賠償할 義務를 진다.

③ 社員 또는 業務執行者가 賠償義務가 발생하는 事實을 알지 못하고 또한 정상적인 商人이 注意를 다하여도 그것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社員 또는 業務執行者는 이 義務를 지지 않는다.

④ 社員이 他人의 計算으로 出資를 인수한 경우에는 社員과 함께 그 他人도 동일한 責任을 부담한다. 그 他人은 그의 計算으로 행위를 한 社員이 알았거나 또는 정상적인 商人이 注意를 다하였으면 알 수 있었던 事情에 관하여 자기의 不知를 주장할 수는 없다.

第9b條 [賠償請求權의 拋棄] ① 第9a條에 의한 賠償請求權에 대한 會社の 拋棄 또는 이 請求權에 관한 會社の 和解는, 그 賠償이 會社債權者에 대한 辨濟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效力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賠償義務者가 支給不能의 상태에 있고 破産節次의 豫防 또는 除去를 위하여 그 債權者와 和解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 第9a條에 의한 會社の 賠償請求權은 5년이 경과하면 時效에 의하여 소멸한다. 時效는 商業登記簿에 會社를 登記한 때로부터, 賠償할 義務를지는 行爲가 그 보다 후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行爲時부터 진행된다.

第9c條 [登記의 拒否] 會社の 設立 및 登記申請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法院은 登記를 거부하여야 한다. 現物出資가 過大評價된 경우에도 같다.

第10條 [商業登記簿上的 登記] ① 商業登記簿上的 登記에는 會社の 商號와 住所, 事業의 目的, 基本資本의 額, 定款作成日 및 業務執行者의 姓名을 기

제하여야 한다. 그 밖에 業務執行者가 가진 代表權限도 등기되어야 한다.

② 定款에 會社의 存立期間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 規定도 등기되어야 한다.

③ 登記를 공시하는 公告에는 登記의 內容 외에 第5條 第4項 第1文에 의하여 確定된 事項과 定款으로 會社가 公告하는 方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이 規定도 기재하여야 한다.

第11條 [登記前의 法的狀態] ① 有限會社は 會社住所地の 商業登記簿에 등기하기 전에는 有限會社로서 성립되지 아니한다.

② 登記前에 會社의 名義로 行爲를 한 경우에 그 行爲者는 人的連帶責任을 진다.

第12條 [支店] ① 支店設置의 登記申請에 관하여는 第8條 第1項 및 第2項이 적용되지 않는다. 申請書에는 定款과 社員名簿의 謄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會社住所地를 관할하는 法院은 申請書의 移送前에 제출된 定款 및 社員名簿의 謄本을 인증하여야 한다.

② 登記는 第10條 第1項 및 第2項에 계기된 事項을 포함하여야 한다. 登記를 공시하는 公告에는 第10條 第3項에 계기된 事項도 기재되어야 한다. 다만 第5條 第4項 第1文에 의하여 確定된 事項은 會社住所地の 商業登記簿에 등기한 후 2년 이내에 登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기재되어야 한다.

第2節 會社와 社員의 法律關係

第13條 [法人格; 商事會社] ① 有限會社は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權利를 가지고 義務를 부담한다; 有限會社は 土地에 대한 所有權과 기타의 物權을 취득하고 法院에 提訴하거나 被訴될 수 있다.

② 會社の債務에 관하여는 會社財産만이 會社債權者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③ 有限會社は 商法上の 의미에서 商事會社로 본다.

第14條【持分】 各 社員의 持分은 그에 의하여 인수된 基本出資의 金額에 따라 정한다.

第15條【持分の讓渡】 ① 持分은 讓渡 또는 相續될 수 있다.

② 社員이 그 원래의 持分 외에 다시 持分을 취득한 때에는 그 持分은 獨立性을 가진다.

③ 社員이 持分을 讓渡할 때에는 公正證書의 形式으로 체결된 契約이 필요하다.

④ 社員에게 持分을 讓渡할 義務를 발생하게 하는 合意도 역시 公正證書의 形式이 필요하다. 다만 이 形式에 의하지 않은 合意는 前項의 規定에 따라 체결된 讓渡契約을 통하여 유효하게 된다.

⑤ 定款으로 持分の 讓渡에 기타의 要件을 부가하는 것, 특히 會社の 承認을 얻도록 할 수 있다.

第16條【讓渡人 및 取得者の 法的 地位】 ① 持分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會社에 그 移轉을 증명하여 取得을 신고한 者만이 會社에 대하여 取得者로 본다.

② 申告前에 會社가 讓渡人에 대하여 또는 讓渡人이 會社에 대하여 會社關係에 관하여 행한 法律行爲는 取得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

③ 申告 당시에 持分에 관하여 이행되지 않은 給付가 있는 경우에 取得者는 讓渡人과 함께 책임을 진다.

第17條【持分の 一部讓渡】 ① 持分の 一部讓渡는 會社の 承認이 있는 경우

에만 행하여질 수 있다.

② 承認은 書面의 形式을 요한다; 承認은 取得者의 姓名과 分割前 持分の 基本出資중에서 分割에 의하여 생긴 各 持分の 金額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定款으로 다른 社員에 대한 持分の 一部讓渡 및 사망한 社員의 持分을 그 相續人 사이에 분할하는 것에 관하여는 會社의 承認을 요하지 않는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④ 基本出資의 金額에 관한 第5條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은 持分の 分割時에 준용된다.

⑤ 한 社員이 가지는 數個 持分の 複數部分을 동일한 取得者에게 동시에 讓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⑥ 讓渡와 相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持分の 分割을 할 수 없다. 이 경우에 관하여도 역시 定款으로 持分の 分割을 배제할 수 있다.

第18條【持分の 共有】 ① 持분이 분할되지 아니하고 數人의 共有者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共有者는 持분에 의한 權利를 共同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② 持분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할 給付에 관하여는 共有者가 會社에 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③ 會社가 持分所持人에 대하여 하여야 할 法律行爲는, 共有者의 共同代理人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共有者의 1인에 대하여 하는 때에도, 유효하다. 한 社員에게 數人의 相續人이 있는 경우에 그 相續人들에 대하여 이 規定은 相續財産歸屬時로부터 1월의 經過 후에 하는 法律行爲에 관하여만 적용된다.

第19條【基本出資의 納入】 ① 基本出資의 納入은 金錢出資의 比率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② 出資의 履行義務를 社員이 면제받을 수는 없다. 會社의 請求權에 대하여 相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現物出資의 目的物에 관하여 그 目的物과

관계없는 債權에 기하여 留置權을 주장할 수 없다.

③ 資本減少를 통하여 社員은 감소된 基本資本의 金額을 한도로 出資의 履行義務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④ 商業登記簿에 會社를 登記한 후 3년 이내에 1人의 社員 또는 1人의 社員과 會社가 持分 全部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 그 社員은 그 때로부터 3월 이내에 金錢出資 全額의 納入을 완료하고 이행하지 않은 金額의 支給을 위하여 會社에 擔保를 제공하거나 또는 持分 一部를 第三者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⑤ 基本出資의 履行이 金錢에 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財産의 引渡에 대하여 부여하여야 할 對價와의 相計에 의한 경우에는 그 履行이 第5條 第4項 第1文에 의한 正當의 실행으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社員은 그 義務를 면한다.

第20條 [遲延利子] 基本出資에 대하여 催告받은 金額을 指定한 時期에 납입하지 아니한 社員은 당연히 遲延利子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

第21條 [失權] ① 納入이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하고 있는 社員에 대하여 납입하여야 할 持分에 관한 權利를 상실한다는 뜻의 豫告와 함께 일정한 猶豫期間내에 납입하도록 새로운 催告를 할 수 있다. 이 催告는 登記郵便으로 한다. 猶豫期間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납입없이 이 期間을 경과한 후에 지체하고 있는 社員에게 그 持分과 일부 이행된 納入額에 관한 權利를 會社를 위하여 상실한다는 뜻을 선언하여야 한다. 이 宣言은 登記郵便으로 한다.

③ 滯納金額 또는 후에 持分에 관하여 催告받은 基本出資의 金額으로 인하여 會社가 입은 損失에 관하여 失權社員은 會社에 責任을 진다.

第22條 [前權利者の 責任] ① 失權社員이 納入을 하지 아니한 基本出資의

金額에 관하여 會社에 신청된 失權社員의 직전 權利者和 그 이전의 각 權利者는 會社에 책임을 진다.

② 종전의 權利者는 그 權利承繼人이 納入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權利承繼人에게 納入의 催告가 행하여지고, 그로부터 前權利者에게 통지가 이루어진 후 1월을 경과할 때까지 權利承繼人이 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反對의 證明이 없는 한, 納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③ 前權利者의 責任은 5년의 期間內에 基本出資에 관하여 催告받은 納入金額에 한한다. 이 期間은 權利承繼人에 대한 持分の 讓渡에 관하여 合法的 申請이 있는 날로부터 진행한다.

④ 前權利者은 滯納金額의 支給으로 인하여 失權社員의 持分을 취득한다.

第23條【持分の 競賣】 前權利者로부터 滯納金額의 納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會社는 公的 競賣의 方法으로 그 持分을 매각할 수 있다. 다른 方法에 의한 賣却은 失權社員이 同意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第24條【不足額의 釀出】 基本出資가 納入義務者에 의하여 납입될 수 없고 持分の 賣却에 의하여도 보전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社員은 그 持分の 比率에 따라 不足額을 釀出하여야 한다. 각 社員으로부터 納入을 받을 수 없는 金額에 관하여는 前記의 比率에 따라 이를 다른 社員에게 분담된다.

第25條【強行規定】 社員은 第21條 내지 第24條에 규정된 法律效果를 면할 수 없다.

第26條【追加出資義務】 ① 定款으로 社員은 基本出資의 金額을 초과하여 추가적인 納入金(追加出資)의 徵收를 결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追加出資의 納入은 持分の 比率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③ 追加出資義務는 定款으로 持分の 比率에 따라 확정되어지는 일정한 金

額으로 제한할 수 있다.

- 第27條【無限追加出資義務】** ① 追加出資義務가 일정한 金額으로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 基本出資의 納入을 완료한 각 社員은 納入이 催告된 후 1월 내에 持分에 의한 辨濟를 위하여 會社에 그 持分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持分에 대하여 청구된 追加出資의 納入을 면할 權利를 가진다. 會社는 社員이 상기의 期間중에 納入을 면하는 權利를 행사하지 않고 納入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會社는 그 持分을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登記郵便으로 그 社員에게 표명할 수 있다.
- ② 會社는 社員 또는 會社의 意思表示가 있는 후 1월 내에 그 持分을 公的 競賣方法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다른 방법에 의한 賣却은 社員이 同意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賣却費用 및 滯納된 追加出資의 전보 후에 남은 剩餘金은 社員에게 귀속한다.
- ③ 賣却으로 會社가 만족을 얻을 수 없을 경우에 持分은 會社에 귀속된다. 會社는 그 持分을 자기의 計算으로 양도할 權限을 가진다.
- ④ 定款으로 위의 規定의 適用을 持分에 관하여 청구된 追加出資가 일정한 金額을 초과하는 경우로 제한할 수 있다.

- 第28條【有限追加出資義務】** ① 追加出資義務가 일정한 金額으로 제한된 경우에는, 定款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基本出資의 納入에 관한 第21條 내지 第23條의 規定은 追加出資의 納入이 지체되는 경우에 준용된다. 無限追加出資義務에 관하여도 第27條 第4項의 경우에는 追加出資가 定款으로 정한 金額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하다.
- ② 定款으로 納入에 관하여 第21條 내지 第23條의 規定이 적용되는 追加出資의 請求는 基本出資의 請求가 완료되기 전에도 허용된다는 것을 정할 수 있다.

第29條【利益配當】 ① 移越利益金を 가산하고 移越缺損金を 공제한 年度剩餘金이 法律 또는 定款으로, 第2項의 決議에 의하거나 또는 利益處분에 관한 決議에 근거한 附加的 費用으로서 社員에 대한 配當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社員은 그 金額에 대한 請求權을 가진다. 部分的 利益處분을 고려하여 貸借對照表가 작성된 경우 또는 準備金이 처분된 경우에는 第1文에 관계없이 社員은 貸借對照表利益에 대한 請求權이 있다.

② 定款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利益處분에 관한 決議로써 社員은 一定金額을 利益準備金으로 적립하거나 또는 利益으로 이월할 수 있다.

③ 配當은 持分の 比率에 따라 행한다. 定款으로 다른 配當基準을 정할 수 있다.

④ 第1項과 第2項의 규정 및 第3項 第2文에 의한 다른 利益配當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業務執行者는 監事會 또는 社員의 同意를 받아 固定資産과 流動資産의 價値回復에 의한 自己資本持分 및 稅法上の 利益算定에 의하여 적립된 消極項目에서 準備金を 구성하는 特別項目에 기재할 수 없는 自己資本持分을 別途의 利益準備金에 적립할 수 있다. 이 準備金の 金額은 이를 貸借對照表上에 별도로 명시되거나 또는 附屬明細書에 기재되어야 한다.

第30條【還給】 ① 基本資本의 維持를 위하여 필요한 會社財産은 社員에게 반환될 수 없다.

② 납입된 追加出資는, 基本資本의 缺損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지 아니한 한, 社員에게 환급될 수 있다. 還給은 定款으로 會社의 公告紙로 정한 公報에 의하여 또는 이것이 없는 경우에 商業登記의 公告紙로 지정된 公報에 의하여 還給의 決議를 公告한 후 3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행하여질 수 없다. 第28條 第2項의 경우에 基本資本의 全額納入 전에는 追加出資의 還給은 허용될 수 없다. 환급된 追加出資는 徵收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第31條【禁止된 還給의 返還】 ① 第30條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행된 支給額

은 會社에 반환되어야 한다.

② 受領인이 善意이었을 경우에 會社債權者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만 返還請求를 할 수 있다.

③ 受領인에 의하여 返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會社債權者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다른 社員은 그 持分の 比率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金額에 관하여 責任을 진다. 數人の 社員으로부터 返還을 받을 수 없는 金額에 관하여는 상기의 比率에 따라 다른 社員이 분담한다.

④ 위의 規定에 기하여 행하여져야 할 支給은 그 義務者에 대하여 면제할 수 없다.

⑤ 會社の 請求權은 5년의 時效에 의하여 소멸한다; 時效는 返還請求의 對象이 된 支給이 행하여진 날이 경과함과 동시에 진행한다. 이 規定은 義務者에게 惡意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⑥ 第3項의 경우에 支給金の 返還에 대하여 支給履行에 관련하여 過失이 있는 業務執行者는 社員에게 連帶하여 賠償할 責任을 진다.

第32條【利益의 還給】 第31條 第1項에 계기된 要件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에 社員은 어떠한 경우에도 善意로 利益配當分으로서 받은 金額을 반환할 義務를 지지 아니한다.

第32a條【貸出金の 還給】 ① 社員이 보통의 商人이라면 會社에 自己資本을 제공하였을 時期에, 그에 갈음하여 會社에 金錢을 대출한 경우에는, 그 社員은 會社財産의 破産 또는 破産防止를 위한 和議節次에서 貸出金の 返還請求權을 주장할 수 없다. 強制和議 또는 和議節次로 이루어진 和議는 그 社員의 債權에 대하여 유리 또는 불리하게 그 效力을 가진다.

② 社員이 보통의 商人이라면 會社에 自己資本을 제공하였을 時期에, 第3者가 會社에 金錢을 대출하고 또한 社員이 그 第3者에게 貸出金の 返還에 관하여 擔保를 제공하거나 또는 保證을 한 경우에는, 그 第3者는 擔保의 實行

또는 保證人에 대한 請求에 의하여 받지 못한 金額에 대하여만 會社財産에 대한 破産節次 또는 破産防止를 위한 和議節次에서 比率에 따른 辨濟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이 規定은, 社員 또는 第3者에 의한 다른 法律行爲가 第1項 또는 第2項에 의한 金錢貸出에 경제적으로 상응하는 경우에, 그 法律行爲에 대하여 준용된다.

第32b條[還給된 貸出金에 대한 責任] 會社가 第32a條 第2項 및 第3項의 경우에 破産節次開始前 1년동안 貸出金債務를 반환한 때에는 擔保를 제공하였거나 또는 保證人으로서 責任을 부담하였던 社員은 會社에 대하여 반환된 金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義務는 그 社員이 保證人으로서 責任을 부담한 金額 또는 貸出金の 返還時期에 있어서, 그에 의하여 제공된 擔保의 價値에 상당하는 金額을 한도로 한다. 社員이 債權者에게 擔保로서 제공한 目的物을 會社에 辨濟를 위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한 때에는, 그 義務를 면한다. 이 規定은, 다른 法律行爲가 경제적으로 金錢貸出에 상응하는 경우에, 그 法律行爲에 대하여 준용된다.

第33條 [自己持分の 取得] ① 會社は 出資의 履行이 완료되지 않은 自己持分을 취득하거나 質物로서 취득할 수 없다.

② 基本資本의 額을 초과하여 현존하는 財産으로 그 取得이 이루어지고, 基本資本 또는 定款으로 적립하여야 할 準備金으로서 社員에 대한 支給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을 減少시킴이 없이, 會社가 商法 第272條 第4項에 규정된 自己持分準備金を 적립할 수 있는 경우에만, 會社は 出資의 履行이 완료된 自己持分을 취득할 수 있다. 會社は 自己持分の 質權設定으로 담보되는 債權의 總額 또는, 質物로서 취득된 自己持分の 價値가 그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價額이 基本資本의 額을 초과하여 현존하는 財産價額보다 낮은 한 自己持分을 質物로서 취득할 수 있다. 第1文 및 第2文에 위반된 持分の 取

得 또는 質權設定은 無效로 되지 않는다. 다만 禁止에 위반된 取得 또는 質權設定에 관한 債權行爲는 無效이다.

第34條【消却】 ① 持分の 消却은 定款으로 허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

② 持分權利者が 그 持分을 취득한 時點前에 消却의 要件이 定款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持分權利者の 同意없이 消却이 행하여질 수 있다.

③ 第30條 第1項의 規定은 本條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第3節 代表 및 業務執行

第35條【業務執行者에 의한 代表】 ① 業務執行者는 裁判上 및 裁判外에서 會社를 대표한다.

② 業務執行者는 定款에 정하여진 形式으로 意思表示를 하고 또 會社를 위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다른 規定이 없는 경우에 그 意思表示와 署名은 業務執行者 全員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會社에 대하여 意思表示를 할 경우에는 業務執行者 1人에 대하여 하면 충분하다.

③ 署名은 會社の 商號에 署名者가 그 署名을 부기하는 形式으로 한다.

④ 會社の 모든 持分을 1人의 社員 또는 1人의 社員과 會社만이 가지고 또한 그 1人의 社員이 동시에 會社の 유일한 業務執行者인 경우에는 民法 第181條의 規定은 그와 會社間의 法律行爲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와 그에 의하여 대표되는 會社間의 法律行爲는, 그가 유일한 業務執行者가 아닌 경우에도, 그 行爲의 實行 後에 지체없이 議事錄에 기재되어야 한다.

第35a條【業務書信에 대한 記載事項】 ① 특정한 受領人에게 송달하는 모든 業務書信에는 會社の 法的 形態와 住所, 會社住所地の 登記法院, 商業登記簿上에 기재된 會社の 登記番號 및 모든 業務執行者와 會社에 監事會가 있

고 또한 監事會의 會長이 있는 경우에는 監事會會長の 姓과 적어도 생략되지 않은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會社資本에 관한 記載가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基本資本 및 金錢出資의 全額이 납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되지 않은 出資의 總額이 기재되어야 한다.

② 현존하는 去來關係의 範圍內에서 생기고, 개별적인 경우에 필요한 事項만을 기재하여도 되는 보통의 印刷書式이 사용되는 通知 또는 報告書에는 第1項 第1文에 의한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注文書는 第1項의 의미에서 業務書信으로 본다. 第2項은 注文書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④ 外國에 住所를 두고 있는 有限會社의 支店에 의하여 사용되는 모든 業務書信과 注文書에는 支店이 등기된 登記簿와 그 登記番號가 기재되어야 한다; 그 밖에 당해 外國法이 상이한 規定을 두고 있지 않는 한, 第1項 내지 第3項의 규정이 적용된다. 外國會社가 清算을 하는 경우에는 그 事實 및 모든 清算人도 기재되어야 한다.

第36條 [代表의 效果] 會社는 業務執行者에 의하여 會社의 名義로 행하여진 法律行爲를 통하여 權利를 취득하고 義務를 부담한다; 그 行爲가 명시적으로 會社의 名義로 행하여진 것인지, 또는 그 行爲가 當事者의 意思에 따르면 會社를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事情이 존재하는지를 불문한다.

第37條 [代表權의 制限] ① 業務執行者는 會社에 대하여 會社를 대표할 權限의 範圍에 관하여 定款 또는, 定款에 다른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社員의 決議에 따라 정하여진 制限을 준수할 義務를 부담한다.

② 業務執行者의 會社를 대표할 권한에 관한 制限은 第3者에 대하여 법적 效力을 가지지 않는다. 이 規定은 특히 代表權이 일정한 行爲 또는 일정한 種類의 行爲에만 미치는 경우 또는 代表權이 일정한 狀況이나 一定期間 또

는 개별적인 場所에서만 행사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특정한 行爲에 관하여 社員 또는 한 會社機關의 同意가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第38條【選任의 撤回】 ① 業務執行者의 選任은, 기존의 契約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撤回될 수 있다.

② 定款으로 撤回을 요하는 중대한 事由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撤回가 허용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특히 현저한 義務違反 또는 정상적인 業務執行能力의 欠缺은 중대한 事由로 본다.

第39條【業務執行者의 登記申請】 ① 業務執行者에 관한 모든 變更 및 業務執行者의 代表權의 終了는 商業登記簿에 등기하기 위하여 신청되어야 한다.

② 登記申請書에는 業務執行者의 選任이나 代表權의 終了에 관한 書類의 原本 또는 會社住所地를 관할하는 法院을 위하여 公的 認證을 받은 謄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業務執行者는 申請書에서 第6條 第2項 第2文과 第3文의 규정에 의한 그의 選任을 방해하는 事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가 법원에 대한 무제한의 報告義務에 관하여 敎示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第8條 第3項 第2文의 規定은 이 경우에 준용된다.

第40條【社員名簿】 業務執行者는 매년 年度決算書를 商業登記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동일한 時點에서 社員의 姓名, 身分과 住所 및 社員의 基本出資가 기재되어 있는 社員名簿에 署名하여 商業登記簿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의 名簿提出 후에 社員인 者과 그 持分の 範圍에 관하여 變更이 없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說明書를 제출하면 충분하다.

② 모든 持분이 1人의 社員에게 또는 1人의 社員과 會社에 귀속된 경우에, 業務執行者는 지체없이 商業登記를 위하여 第1項 第1文에 규정된 내용을 포함한 名簿를 제출하여야 한다.

第41條【帳簿의 作成】 ① 業務執行者는 정확하게 會社의 帳簿를 작성할 義務를 진다.

② - ④ (削除)

第42條【貸借對照表】 ① 商法 第242條 및 第264條의 規定에 따라 작성되는 年度決算書의 貸借對照表에는 基本資本이 引受資本으로서 계상되어야 한다.

② 社員의 追加出資를 징수할 수 있는 會社의 權利는 그 徵收가 이미 결의되어 있고 또한 持分의 委任으로 追加出資의 납입을 면할 權利가 社員에게 없는 경우에 한하여 貸借對照表의 積極의 部に 계상할 수 있다. 追加出資할 금액은 그 納入이 예상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催告된 追加出資」라는 標題下에 積極의 部の 債權項目에서 구분하여 계상할 수 있다. 그 積極項目에 상응하는 金額은 消極의 部에서 資本準備金의 項目으로 구분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③ 社員에 대한 貸出金, 債權 그리고 債務는 원칙적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상하거나 또는 附屬明細書에 기재되어야 한다. 그 事項이 다른 項目下에 계상되는 경우에는 그 性質이 기재되어야 한다.

第42a條【年度決算書와 狀況報告書의 提出】 ① 業務執行者는 年度決算書 및 狀況報告書를 作成한 후 지체없이 年度決算書의 確定을 위하여 社員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年度決算書가 決算監査人의 監査를 받아야 할 경우에 業務執行者는 決算監査人의 監査報告書를 受領한 후 지체없이 狀況報告書 및 監査報告書와 함께 年度決算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會社에 監事會가 있는 경우에는 그 監査結果에 관한 報告書도 역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社員은 늦어도 營業年度 終了 후 8월 이내 또는, 小會社(商法 第267條 第1項)인 경우에는, 營業年度 종료후 11월 이내에 年度決算書의 確定과 利

益處分에 관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定款으로 그 期間을 연장할 수는 없다.
年度決算書의 確定時에는 그 作成에 관한 規定이 적용되어야 한다.

③ 決算監査人이 年度決算書를 감사한 경우에 그 決算監査人은 社員의 請求로 年度決算書의 確定에 관한 審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④ 會社가 콘체른年度決算書와 콘체른狀況報告書를 작성할 義務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第1項이 준용되며, 콘체른年度決算書의 確定은 필요하지 않다.

第43條 [業務執行者の 責任] ① 業務執行者は 會社の 社務에 관하여 보통의 營業者로서의 注意를 다하여야 한다.

② 그의 任務를 해태한 業務執行者は 會社에 대하여 連帶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損害에 관하여 責任을 진다.

③ 특히 業務執行者は 第3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基本資本의 維持에 필요한 會社財産에서 支給을 하였거나 또는 第3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會社の 自己持分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賠償할 義務를 진다. 이 賠償請求權에 관하여는 第9b條 第1項의 規定이 준용된다. 賠償이 會社債權者에게 辨濟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 業務執行者の 義務는 社員의 決議에 따라 행한 것을 이유로 면제되지 아니한다.

④ 위의 規定에 기한 請求權은 5년의 경과로 時效에 의하여 消滅한다.

第43a條 [會社財産에 의한 信用提供] 業務執行者, 기타 法律上の 代表者, 支配人 또는 營業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授權받은 商業使用人에 대하여 基本資本의 維持에 필요한 會社財産으로써 信用이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第1文의 規定에 반하여 제공된 信用은 반대의 合意에 관계없이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

第44條 [業務執行者の 代理人] 業務執行者에 관한 規定은 業務執行者の 代理人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第45條 [社員の 一般的 權利] ① 會社の 事務, 특히 業務執行에 관하여 社員에게 귀속되는 權利와 그 行使는, 法律의 規定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定款으로 정한다.

② 定款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第46條 내지 第51條의 規定이 적용된다.

第46條 [社員の 任務] 다음 事項은 社員의 決定에 따른다:

1. 年度決算書의 確定 및 利益의 處分;
2. 基本出資에 관한 納入의 催告;
3. 追加出資의 還給;
4. 持分の 分割 및 消却;
5. 業務執行者の 選任과 解任 및 業務執行者の 免責;
6. 業務執行의 監査 및 監督을 위한 方針;
7. 支配人 및 營業에 관하여 包括的 授權을 받은 商業使用人の 選任;
8. 設立 또는 業務執行에 기하여 會社가 業務執行者 또는 社員에 대하여 가지는 損害賠償請求權의 行使 및 會社가 業務執行者에 대하여 수행할 訴訟에 있어서 會社の 代表.

第47條 [決議] ① 會社の 事務에 관하여 社員이 할 決定은 행사된 議決權의 過半數 決議로 한다.

② 1개의 持분에 관하여 100 독일 마르크 마다 1개의 議決權을 부여한다.

③ 代理權은 그것이 有效하려면 書面에 의한 形式을 요한다.

④ 決議에 의하여 責任을 면제받거나 義務를 면제받게 될 社員은 당해 決議時에 議決權을 가지지 못하고 또한 他人을 위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없다. 社員과 法律行爲를 하거나 또는 社員에 대한 訴訟의 開始 또는 終了에 관한 決議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第48條【社員總會】① 社員의 決議는 總會에서 한다.

② 總社員이 書面으로 決議案에 찬성하거나 또는 書面에 의한 議決權行使에 찬성한다는 뜻을 표명한 경우에는 總會의 開催를 요하지 않는다.

③ 會社의 모든 持分을 1人의 社員 또는 1人의 社員과 會社만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社員은 決議 후 지체없이 議事錄을 작성하고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第49條【總會의 召集】① 社員總會는 業務執行者에 의하여 소집된다.

② 社員總會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 이외에 會社의 利益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되어야 한다.

③ 특히 年度貸借對照表 또는 營業年度의 期間중에 작성된 貸借對照表에 의하여 基本資本의 半額이 결손되었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總會가 소집되어야 한다.

第50條【少數社員權】① 그 持分을 합하여 基本資本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持分을 가진 社員은 그 目的과 事由를 기재하여 總會의 召集을 청구할 수 있다.

② 前項과 같은 方法으로 社員은 일정한 事項을 總會決議의 目的으로 통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그 請求가 인용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請求를 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第1項에 규정된 社員은 그 事情을 표시한 후에 스스로 召集 또는 通知를 할 수 있다. 總會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費用을 會社가 부담할지의 여부에 관하여 결의한다.

第51條【召集의 方法】① 總會의 召集은 登記郵便으로 社員에 대한 通知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召集은 적어도 1週間の 期間을 두고 하여야 한다.

- ② 總會의 目的은 召集時에 항상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總會가 適法하게 소집되지 아니한 때에는, 社員 全員이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 ④ 總會의 적어도 3일전까지 召集에 관하여 규정된 方法에 의하여 통지가 없는 사항에 관한 決議에 대하여도 前項과 동일하다.

第51a條【說明請求權과 閱覽權】 ① 業務執行者는 각 社員에 대하여 請求에 기하여 지체없이 會社의 事務에 관하여 說明을 하고 帳簿와 書類의 閱覽을 허락하여야 한다.

- ② 社員이 說明과 閱覽을 會社 이외의 目的에 이용하거나 이를 통하여 會社 또는 結合企業이 현저한 不利益을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業務執行者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拒絶은 社員의 決議를 요한다.
- ③ 定款으로 이 規定과 다르게 정할 수 없다.

第51b條【說明請求權과 閱覽權에 관한 判決】 說明請求權과 閱覽權에 대한 判決에 관하여는 株式法 第132條 第1項과 第3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이 준용된다. 訴의 申請權者는 說明 또는 閱覽을 거절당한 각 社員이다.

第52條【監事會】 ① 定款에 의하여 監事會가 선임되어야 할 경우에는, 다른 정함이 없는 한, 株式法 第90條 第3項, 第4項, 第5項 第1文과 第2文, 第95條 第1文, 第100條 第1項과 第2項 第2號, 第101條 第1項 第1文, 第103條 第1項 第1文과 第2文, 第105條, 第110條 내지 第114條 및 第93條 第1項과 第2項에 관련된 第116條, 第170條, 第171條, 第337條의 規定이 준용된다.

- ② 監事가 商業登記簿에 會社를 등기하기 전에 선임된 경우에는 株式法 第37條 第4項 第3號과 第40條 第1項 第4號의 規定이 준용된다. 그 후에 각 監事의 選任 및 變更에 관하여 業務執行者는 지체없이 聯邦官報와 定款에 會社의 公告를 위하여 규정한 다른 公告紙에 이를 공고하고 이를 商業登記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監事の 任務違反으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은 5년의 경과로 時效에 의하여 소멸한다.

第4節 定款의 變更

第53條 [定款變更의 形式] ① 定款의 變更은 社員의 決議에 의하여서만 행하여질 수 있다.

② 그 決議는 公正證書로 작성되어야 한다. 決議는 행사된 議決權의 4분의 3 이상을 요한다. 定款은 다른 要件을 정할 수 있다.

③ 定款에 의하여 社員에게 부과된 給與의 增加는 關係社員 全員の 同意로써만 결의될 수 있다.

第54條 [申請과 登記] ① 定款의 變更은 商業登記簿에 登記하기 위하여 신청되어야 한다. 申請書에는 定款의 完전한 文言을 기재한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書面에는 변경된 定款의 規定이 定款의 變更에 관한 決議와 일치하고 또한 변경되지 않은 定款의 規定이 종전에 商業登記를 위하여 제출된 定款의 文言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는 뜻의 公證人의 證明을 받아야 한다.

② 登記時에는 變更이 第10條 第1項과 第2項에 規定된 事項에 관한 것이 아닌 한 法院에 제출한 變更에 관한 書類의 番號를 인용함으로써 충분하다. 公告는 商法 第10條 第3項과 第12b條 第4項에 規定된 모든 公示事項에 관하여 한다.

③ 變更은 會社住所地の 商業登記簿에 登記하기 전에는 法律上の 效力을 가지지 아니한다.

第55條 [基本資本의 增加] ① 基本資本의 增加가 결의된 경우에는 그 증가

된 資本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할 각 基本出資를 인수하기 위하여 公正證書의 形式으로 작성되거나 인증받은 引受人의 意思表示가 있어야 한다.

② 會社は 기존의 社員 또는 引受에 의하여 會社에 가입하는 뜻을 표시한 자로 하여금 基本出資의 引受를 하게 할 수 있다. 後者の 경우에는 基本出資의 金額 이외에 定款에 의하여 加入者가 부담하여야 할 기타의 給付義務도 第1項에 규정된 書面에 기재되어야 한다.

③ 이미 會社の 持分을 가진 社員이 증가된 資本에 대한 基本出資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社員은 다시 1개의 持分을 취득한다.

④ 基本出資의 金額에 관한 第5條 第1項과 第3項의 規定 및 數個의 基本出資의 引受禁止에 관한 第5條 第2項의 規定은 증가된 資本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할 基本出資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第56條 [現物出資에 의한 資本增加] ① 現物出資가 이행되어야 할 경우에는 그 目的物과 現物出資에 관계된 基本出資의 金額이 基本資本의 增加에 관한 決議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이 確定은 第55條 第1項에 규정된 引受人의 表示중에 기재되어야 한다.

② 第9條 및 第19條 第5項의 規定은 이에 준용된다.

第56a條 [새로운 基本資本에 대한 出資履行] 새로운 基本資本에 대한 出資의 履行 및 擔保設定에 관하여는 第7條 第2項 第1文과 第3文 및 第3項의 規定이 준용된다.

第57條 [資本增加의 登記申請] ① 결의된 基本資本의 增加는, 增加資本이 基本出資 全額의 引受를 통하여 납입되어진 후에, 商業登記簿에 등기하기 위하여 신청되어야 한다.

② 申請書에는 第7條 第2項 第1文과 第3文 및 第3項의 規定에 따른 새로운 基本資本에 대한 出資가 행하여졌다는 것과 給付의 目的物이 종국적으로

業務執行者の 자유로운 處分下에 있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申請에 관하여는 그 밖에 第8條 第2項 第2文의 規定이 준용된다.

③ 申請書에는 다음 書類가 첨부되어야 한다:

1. 第55條 第1項에 規定된 表示 또는 그 認證을 받은 謄本;
2. 申請人이 서명한 새로운 基本出資를 인수한 자의 名簿; 이 名簿에는 각자에 의하여 인수된 基本出資의 金額이 기재되어야 한다;
3. 現物出資에 의한 資本增加에 관하여는 第56條에 의한 確定의 基礎가 되는 契約書 또는 당해 增資의 實行을 위하여 체결된 契約書.
- ④ 資本增加를 商業登記簿에 등기하기 위하여 신청한 業務執行者の 責任에 관하여는 第9a條 第1項과 第3項 및 第9b條가 준용된다.

第57a條 [登記의 拒絶] 法院에 의한 登記의 拒絶에 관하여는 第9c條 規定이 준용된다.

第57b條 [資本增加에 관한 登記의 公告] 資本增加에 관한 登記의 公告에는 그 內容 이외에 現物出資에 의한 資本增加에 있어서 행하여진 決定도 포함하여야 한다. 이 決定의 公告에는 法院에 제출된 書類番號의 인용으로 충분한다.

第58條 [基本資本의 減少] ① 基本資本의 減少는 이하의 規定에 따른 경우에만 행하여질 수 있다.

1. 基本資本의 減少에 관한 決議는 業務執行者에 의하여 때를 3회에 걸쳐서, 第30條 第2項에 規定된 公告紙를 통하여 공고되어야 한다; 이 公告에서는 동시에 會社債權者에 대하여 會社에 신고할 것을 催告하여야 한다; 會社の 商業帳簿에 의하여 또는 기타의 方法으로 알려진 債權者에 대하여는 특별한 通知를 통하여 申告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2. 會社에 債權을 신고하고 또한 資本減少에 동의하지 아니한 債權者에

게는 異議를 제기한 請求權에 기하여 辨濟를 하거나 擔保를 제공하여야 한다;

3. 商業登記簿에 資本減少決議를 登記하기 위한 申請은 債權者에 대한 3회의 催告를 公報에 公고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기 전에는 行하여질 수 없다;

4. 申請書와 함께 資本減少決議의 公告가 제출되어야 한다; 동시에 業務執行者는 會社에 申請을 하고 資本減少에 동의하지 않은 債權者에 대하여 辨濟를 하거나 擔保의 提供을 하였다는 뜻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基本資本의 最低額에 관한 第5條 第1項의 規定은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基本出資의 還給 또는 基本資本에 대하여 부담하는 納入義務의 免除를 위하여 基本資本의 減少가 이루어진 경우에 基本出資의 殘餘金額은 第5條 第1項과 第3項에 규정된 金額 이하로 감소되어서는 아니된다.

第59條【支店】第57條 第2項에 의한 保證은 會社住所地の 法院에 대하여서만 하여야 한다. 第57條 第3項 第1號와 第58條 第1項 第4號에 의한 書類는 會社住所地の 法院에 대하여만 제출하여야 한다.

第5節 會社의 解散과 無效

第60條【解散事由】① 有限會社は 다음의 事由로 인하여 해산된다:

1. 定款에 정한 存立期間의 滿了;
2. 社員의 決議; 이 決議는 定款에 다른 規定이 없는 한, 행사된 議決權의 4분의 3 이상으로 한다;
3. 第61條와 第62條의 경우에 있어서 法院의 判決이나 行政法院 또는 行政官廳의 決定;
4. 破産節次의 開始; 破産節次가 強制和議의 締結로 인하여 종결되거나 破産者의 申請으로 中止된 경우에 社員은 會社의 계속을 결의할 수 있다;

5. 非訟事件節次法 第144a條와 第144b條에 의하여 定款의 瑕疵 또는 이 法 第19條 第4項에 의한 義務不履行을 확인하는 登記法院의 확정력있는 處分.

② 定款으로 기타의 解散事由가 정하여질 수 있다.

第61條【判決에 의한 解散】 ① 會社目的의 達成이 불능하게 된 경우, 또는 기타 會社의 事情으로 解散을 할 중대한 事由가 있는 경우에, 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會社는 해산될 수 있다.

② 解散의 訴는 會社에 대하여 제기되어야 한다. 解散의 訴는 오직 그 持分을 합하여 基本資本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持分을 가진 社員에 의하여 제기될 수 있다.

③ 解散의 訴는 會社住所地를 관할하는 州法院에 전속한다.

第62條【行政官廳에 의한 解散】 ① 社員이 위법한 決議를 하거나 業務執行者의 위법한 行爲를 알고 묵인함으로써 인하여 會社가 公益을 해치는 경우에 會社는 해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報償請求權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行政官廳의 節次와 權限은 行政訴訟事件에 대하여 州法上 적용되는 規定에 따른다.

第63條【破産節次】 ① 會社財産에 관하여는 支給不能의 경우 이외에 債務超過의 경우에도 破産節次가 행하여진다.

② 株式會社의 財産에 대한 破産節次에 관한 破産法 第207條 第2項과 第208條의 規定은 有限會社에 대하여 준용된다.

第64條【破産申請義務】 ① 會社가 支給不能으로 된 때에는 清算人은 지체없이 늦어도 支給不能의 발생후 3주간내에 破産節次 또는 裁判上의 和議節次 開始의 申請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會社의 財産이 債務를 完済함에 부족하게 된 경우에 준용된다. 業務執行者가 보통 營業者의 注意로 裁判上 和議節

次の開始에 진력한 경우에는 책임져야 할 申請의 遲滯는 없다.

② 業務執行者は 會社에 대하여 會社의 支給不能이 발생한 후 또는 債務超過가 確定된 후에 이행된 支給에 관하여 賠償할 義務를 진다. 이 時期 이후의 支給이라도 보통 營業者の 注意로 한 支給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賠償請求權에 관하여는 第43條 第3項과 第4項의 規定이 준용된다.

第65條【解散의 登記申請】 ① 會社의 解散은 商業登記簿에 登記하기 위하여 申請되어야 한다. 破産節次와 定款의 瑕疵에 관한 裁判上 確定의 경우 또는 第19條 第4項에 의한 義務不履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法院은 職權으로 解散과 그 原因을 登記하여야 한다.

② 清算人は 清算을 3회에 걸쳐서, 第30條 第2項에 規定된 公報를 통하여 公告하여야 한다. 이 公告를 통하여 동시에 會社債權者에 대하여 會社에 申告할 것을 催告하여야 한다.

第66條【清算人】 ① 破産節次의 경우 이외의 解散의 경우에 清算은 定款 또는 社員의 決議로 다른 자에게 委任되지 않은 때에는 業務執行者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② 중대한 事由가 있을 경우에 清算人의 選任은 持分을 합하여 基本定款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持分을 가진 社員의 申請으로 法院(第7條 第1項)에 의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

③ 清算人의 解任은 選任과 동일한 要件下에서 法院에 의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 法院에 의하여 選任되지 않은 清算人は 任期滿了前에 社員의 決議로도 해임될 수 있다.

④ 清算人의 選任에 관하여는 第6條 第2項 第3文과 第4文의 規定이 준용된다.

第67條【清算人의 登記申請】 ① 최초의 清算人과 그 代表權限은 業務執行者

에 의하여, 각 清算人의 交替 및 그 代表權限에 관한 모든 變更은 清算人에 의하여 商業登記簿에 등기하기 위하여 신청되어야 한다.

② 申請書에는 清算人의 選任 또는 清算人에 대한 變更에 관한 書類의 原本 또는 公的 認證을 받은 謄本을 會社住所지를 관할하는 法院에 대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③ 申請書에서 清算人은 第66條 第4項에 규정된 그의 選任을 방해하는 事情이 없다는 것과 그가 法院에 대한 無制限의 說明義務에 관하여 敎示받았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④ 法院에 의한 清算人의 選任 또는 解任登記는 職權으로 행하여진다.

⑤ 清算人은 法院에 保存하기 위하여 그 署名을 하여야 한다.

第68條 [清算人의 署名] ① 清算人은 그 選任時에 정하여진 形式으로 意思表示를 하고 會社를 위하여 署名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다른 規定이 없는 경우에 意思表示와 署名은 清算人 全員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② 署名은 이제는 清算商號로서 표시되어야 할 종래의 商號에 清算人이 그 署名을 부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第69條 [會社와 社員間의 法律關係] ① 清算의 終結에 이르기까지 會社와 社員간의 法律關係에 관하여는 會社의 解散에 관계없이, 本節의 規定과 清算의 本質에 따라 다른 結果가 발생하지 않는 한, 第2節과 第3節의 規定이 준용된다.

② 會社가 그 解散 當時에 가졌던 裁判籍은 財産分配의 完了에 이르기까지 존속한다.

第70條 [清算人의 任務] 清算人은 현재의 業務를 終結하고, 解散會社의 債務를 이행하며, 그 債權을 추심하고 또한 會社財産을 金錢으로 換價하여야 한다; 清算人은 裁判上 및 裁判外에서 會社를 대표하여야 한다. 清算人은 미

결된 去來를 종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去來도 할 수 있다.

第71條 [貸借對照表; 權利와 義務] ① 清算人は 清算의 開始時에 貸借對照表(開始貸借對照表)와 開始貸借對照表를 설명하는 報告書 및 每年度末의 年度決算書와 狀況報告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社員은 開始貸借對照表와 年度決算書의 確定 및 清算人の 責任免除에 관하여 決議를 한다. 開始貸借對照表와 그것을 설명하는 報告書에는 年度決算書에 관한 規定이 준용된다. 다만 固定資産은 그 讓渡가 상당한 期間內에 예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그 目的物이 이미 營業用으로 제공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流動資産과 같이 評價되어야 한다; 年度決算書에 관하여도 동일하다.

③ 法院은 債權者와 社員을 위하여 監査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로 會社狀況이 분명한 경우에는 決算監査人에 의한 年度決算書와 狀況報告書의 監査를 면제할 수 있다. 이 決定에 대하여는 即時抗告가 허용된다.

④ 그 밖에 清算人은 第36條, 第37條, 第41條 第1項, 第43條 第1項, 第2項과 第4項, 第49條 第1項과 第2項 및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執行者의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⑤ 特정한 受領人에 송달되는 모든 業務書信에는 會社의 法的 形態와 住所, 會社가 清算중에 있는 事實, 會社住所地の 登記法院과 商業登記簿上の 登記番號 및 모든 清算人과, 會社가 監事會를 두고 또한 監事會의 會長이 있는 경우에는, 그 會長의 姓名과 적어도 생각하지 않은 이름이 기재되어야 한다. 會社의 資本에 관한 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基本資本 및 金錢으로 이행되어야 할 出資 全額의 納入이 완료되지 않은 때에는 이행되지 않은 出資總額이 기재되어야 한다. 현존하는 去來關係의 範圍內에서 발생하고 또한 개별적인 경우에 필요한 특별한 事項만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한 보통의 印刷書式이 사용되는 通知 및 報告書에 관하여는 第1文에 의한 記載를 요하지 아니한다. 注文書는 第1文의 의미에 있어서 業務書信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第3文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第72條 [財産의 分配] 會社の 財産은 그 持分の 比率에 따라 社員에게 分배된다. 會社の 定款으로 分配에 관하여 이와 다른 比率이 정하여질 수 있다.

第73條 [分配禁止期間] ① 分配는 會社債務에 대한 辨濟를 하거나 擔保提供을 하기 전에 또한 債權者에 대하여 3회의 催告(第65條 第2項)을 公報에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기 전에는 행하여질 수 없다.

② 알려진 債權者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供託의 權限이 있을 때에는, 그 債權者를 위하여 債務額이 供託되어야 한다. 債務의 辨濟期가 도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債務에 관하여 分爭이 있을 때에는 債權者에게 擔保가 제공된 때에 한하여 財産의 分配가 행하여질 수 있다.

③ 이 規定에 위반한 清算人은 分배한 金額에 관하여 連帶하여 賠償할 義務를 부담한다. 이 賠償請求權에 관하여는 第43條 第3項과 第4項의 規定이 준용된다.

第74條 [帳簿와 書類] ① 清算이 終結되고 決算書가 作成된 경우에 清算人은 清算의 終結을 商業登記簿에 등기하기 위하여 申請하여야 한다. 그 會社は 消滅되어야 한다.

② 清算이 終結된 후 會社の 帳簿와 書類는 10년간 社員의 1人 또는 第3者로 하여금 이를 保管하게 하여야 한다. 그 社員 또는 第3者는 定款의 規定이나 社員의 決議가 없는 경우에는 法院(第7條 第1項)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③ 社員과 그 權利承繼人은 帳簿와 書類를 閲覽할 權利를 가진다. 會社債權者는 法院(第7條 第1項)에 의하여 閱覽權을 附與받을 수 있다.

第75條 [無效의 訴] ① 定款에 基本資本의 金額이나 企業의 目的에 관한 規

獨逸有限會社法

定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企業의 目的에 관한 定款의 規定이 無效인 경우에는 각 社員, 각 業務執行者 그리고, 監事會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監事は 訴의 方法으로 會社의 無效가 宣告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商法 第272條 및 第273條의 規定은 이에 준용된다.

第76條【社員決議에 의한 瑕疵治癒】 企業의 目的에 관한 規定에 관한 瑕疵는 社員의 일치된 決議에 의하여 치유될 수 있다.

第77條【無效의 效力】 ① 會社의 無效가 商業登記簿에 등기된 경우에는 그 關係를 清算하기 위하여 解散의 경우에 적용되는 規定이 준용된다.

② 會社의 名義로 第三者와 한 法律行爲의 效力은 無效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社員은, 會社가 부담한 債務의 履行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약정한 納入을 하여야 한다.

第6節 終結規定

第78條【登記申請義務者】 이 法에 규정된 商業登記의 申請은 業務執行者 또는 清算人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며, 第7條 第1項, 第57條 第1項 및 第58條 第1項 第3號에 규정된 申請은 業務執行者 全員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第79條【強制金】 ① 第35a條와 第71條 第5項을 준수하지 않은 業務執行者 또는 清算人에게 登記法院에 의한 強制金の 賦課를 통하여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 商法 第14條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개별적인 強制金은

10,000 독일 마르크를 넘을 수 없다.

② 第7條, 第54條, 第57條 第1項 및 第58條 第1項 第3號에 규정된 商業登記의 申請에 관하여는, 會社住所地の 商業登記申請에 관한 한, 商法 第14條에 의한 强制金은 부과되지 않는다.

第80條 - 第81a條 (削除)

第82條 [虛偽의 記載] ① 다음에 열거된 자는 3년 이하의 自由刑 또는 罰金에 처해한다.

1. 社員 또는 業務執行者로서 會社의 登記를 할 목적으로 基本資本의 引受, 出資의 履行, 納入金의 使用에 관하여, 特別利益, 設立費用, 現物出資, 全部의 納入이 이루어지지 않은 金錢出資를 위한 擔保에 관하여 虛偽의 記載를 한 자,
 2. 社員으로서 現物出資設立報告書에 虛偽의 記載를 한 자,
 3. 業務執行者로서 基本資本增加의 登記를 할 목적으로 新資本 또는 現物出資의 引受와 納入에 관하여 虛偽의 記載를 한 자,
 4. 業務執行者로서 第8條 第3項 第1文 또는 第39條 第3項 第1文에 따라 하여야 할 保證에서 또는 清算人으로서 第69條 第3項 第1文에 따라 하여야 할 保證에서 虛偽의 記載를 한 자.
- ② 다음에 열거된 자도 같은 刑에 처해진다.
1. 業務執行者로서 基本資本을 減少시킬 목적으로 債權者에 대한 辨濟 또는 擔保의 提供에 관하여 不實한 保證을 한 자
 2. 業務執行者, 清算人, 監事 또는 類似的한 機關의 構成員으로서 公的인 通知에서 會社의 財産狀況에 관하여 不實한 記述을 하거나 이를 은폐한 자. 다만 그 行爲가 商法 第331條 第1號에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83條 (削除)

第84條 [損失, 支給不能 또는 債務超過時의 義務違反] ① 다음에 열거된 자는 3년 이하의 自由刑 또는 罰金에 처해진다.

1. 業務執行者로서 基本資本 2분의 1에 해당하는 金額의 損失을 社員에게 통지하는 것을 懈怠한 자,
2. 業務執行者로서 第64條 第1項에 위반하거나 또는 清算人으로서 第71條 第2項에 위반하여 支給不能 또는 債務超過時에 破産節次나 裁判上の 和議節次開始의 申請을 懈怠한 자.

② 위의 行爲者가 過失로 行爲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自由刑 또는 罰金에 처해진다.

第85條 [默秘義務違反] ① 業務執行者, 監事 또는 清算人으로서의 地位에 기하여 알게 된 會社의 機密, 특히 經營上 또는 營業上の 機密을 權限없이 公表한 자는 1년 이하의 自由刑 또는 罰金에 처해진다.

② 그 行爲者가 對價를 받거나 자기나 第3者의 利益을 위하거나 또는 他人을 해하기 위하여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自由刑 또는 罰金刑에 처해진다. 第1項의 要件下에서 알게 된 第1項 규정된 종류의 機密, 특히 經營上 또는 營業上の 機密을 權限없이 이용한 자는 같은 刑에 처해진다.

③ 위의 行爲는 會社의 申請으로만 訴追된다. 業務執行者 또는 清算人이 이 行爲를 한 경우에는 監事會가, 監事會가 없는 경우에는, 社員에 의하여 선임된 特別代表者가 申請權을 가진다. 監事가 그 行爲를 한 경우에는 業務執行者 또는 清算人이 申請權을 가진다.

【第5部 資本會社(株式會社, 株式合資會社 및 有限會社)에 관한 補充規定】 5)

第3編 商業帳簿

第2章 資本會社(株式會社, 株式合資會社 및 有限會社)에 관한 補充規定

第1節 資本會社의 年度決算書 및 狀況報告書

第1款 總 則

第264條【作成義務】 ① 資本會社의 法定代表者는 貸借對照表 및 損益計算書와 일체를 이루는 附屬明細書를 추가함으로써 年度決算書(第242條)를 확장하고 狀況報告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前營業年度에 관한 年度決算書과 狀況報告書는 當營業年度의 최초의 3개월 이내에 法定代表者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小規模의 資本會社(第267條 第1項)는, 통상의 營業活動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年度決算書 및 狀況報告書를 作成할 수도 있다; 다만 당해 書類는 當營業年度의 開始後 6個月 이내에 작성되어야 한다.

② 資本會社의 年度決算書는 正規의 簿記의 原則을 준수하여 資本會社의 財産狀態, 財務狀態 및 收益狀態의 實質的 關係에 합치하는 狀況을 전달하여야 한다. 특별한 事情으로 年度決算書가 第1文에서 의미하는 實質的 關係에 합치하는 狀況을 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附屬明細書에 추가적 記載를 하여야 한다.

5) 이 規定은 1985년 12월 19일에 공포된 貸借對照表指針法(BilanzrichtlinienGesetz)에 의하여 獨逸 商法(Handelsgesetzbuch) 第3編에 새로 도입된 것이다. 會計補充規定은 商法에 규정되어 있으나 株式會社와 有限會社 등을 위한 規定을 포함하고 있다.

第265條 [項目分類에 관한 一般原則] ① 連續되는 貸借對照表 및 損益計算書

의 作成形式, 특히 項目分類는 特別한 事情에 의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變更이 필요하지 않은 한 維持되어야 한다. 이 變更은 附屬明細書에 기재하고 理由를 붙여야 한다.

② 貸借對照表 및 損益計算書에는 各 項目에 관하여 그에 대응하는 前營業年度의 金額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 金額이 比較不可能한 경우에는 그 뜻을 附屬明細書에 기재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前年度金額을 적합하게 修正하는 경우에는 그 뜻도 附屬明細書에 기재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資産 또는 負債가 貸借對照表의 複數의 項目에 속하는 경우에, 명료하고 일목요연한 年度決算書의 作成을 위하여 필요하면, 表示가 행하여진 項目에 관하여 그것이 동시에 다른 項目에도 속하는 뜻을 기재하거나 附屬明細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自己持分은 그 取得目的에 관계없이 이에 대하여 규정된 流動資産項目에만 표시될 수 있다.

④ 複數의 營業部門이 있고 그것이 다른 項目分類規定에 의한 年度決算書의 項目分類를 요하는 경우에 年度決算書는 하나의 營業部門을 위하여 규정된 項目分類에 따라 작성되고 기타 營業部門을 위하여 규정된 項目分類에 따라 補充되어야 한다. 이 補充은 附屬明細書에 기재하고 理由를 붙여야 한다.

⑤ 項目을 다시 細目으로 분류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 규정된 項目分類가 준수되어야 한다. 그 內容이 규정된 項目에 포함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項目이 附加될 수 있다.

⑥ 貸借對照表와 損益計算書에 아라비아숫자가 붙여진 項目의 分類 및 名稱은, 資本會社의 特殊性에 의하여 명료하고 일목요연한 年度決算書의 作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變更될 수 있다.

⑦ 貸借對照表와 損益計算書에 아라비아숫자가 붙여진 項目은 特別한 樣式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통합하여 表示할 수 있다.

1. 그 項目이 第264條 第2項에서 의미하는 實質的 關係에 합치하는 狀況의 전달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金額을 內容으로 하는 경우 또는
 2. 項目의 통합으로 表示의 明瞭性이 개선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 통합된 項目은 附屬明細書에 구분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 ⑧ 金額을 표시하지 않은 貸借對照表 또는 損益計算書의 項目은, 前營業年度에 당해 項目에 金額이 表示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第2款 貸借對照表

第266條【貸借對照表의 項目分類】① 貸借對照表는 計定式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大·中規模의 資本會社(第267條 第3項, 第2項)는 第2項에 열거된 項目을 借邊(Aktivseite)에 또 第3項에 열거된 項目을 貸邊(Passivseite)으로 구분하여 규정된 順序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小規模의 資本會社(第267條 第1項)는 第2項 및 第3項에서 알파벳트 및 로마숫자를 붙인 項目만을 구분하여 규정된 順序대로 기재하는 略式의 貸借對照表를 작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② 借邊(Aktivseite)

A. 固定資産:

I. 無形資産:

1. 認許, 營業上의 保護權 및 이와 유사한 權利와 價値 및 당해 權利와 價値에 대한 라이선스;
2. 營業價値 또는 商號價値;
3. 先給金;

II. 有形固定資産:

1. 土地, 土地와 유사한 權利 및 他人의 土地의 建物を 포함한 建物;
2. 技術的 設備 및 機械;

獨逸商法

3. 기타 設備, 工場用 및 營業用備品;

4. 先給金 및 建設中の 設備;

III. 財務固定資産:

1. 結合企業에 대한 持分;

2. 結合企業에 대한 貸出金;

3. 資本參加;

4. 資本參加關係를 가진 企業에 대한 貸出金;

5. 固定資産인 有價證券;

6. 기타 貸出金.

B. 流動資産:

I. 在庫資産:

1. 原材料, 補助材料 및 工場消耗品;

2. 未完製品, 未完給與;

3. 製品 및 商品;

4. 先給金;

II. 債權 및 기타 資産:

1. 外上賣出債權;

2. 結合企業에 대한 債權;

3. 資本參加關係를 가진 企業에 대한 債權;

4. 기타 資産;

III. 有價證券:

1. 結合企業에 대한 持分;

2. 自己持分;

3. 기타 有價證券;

IV. 手票, 現金在庫, 聯邦銀行預金, 郵便預金, 金融機關에 대한 預金.

C. 計算限界項目.

③ 貸邊(Passivseite)

A. 自己資本:

- I. 引受資本金;
- II. 資本準備金;
- III. 利益準備金:
 - 1. 法定準備金;
 - 2. 自己持分準備金;
 - 3. 定款에 의한 準備金;
 - 4. 기타 利益準備金;
- IV. 移越利益金/移越缺損金;
- V. 年度剩餘金/年度缺損金.

B. 充當金:

- 1. 年金 및 이와 유사한 債務에 대한 充當金;
- 2. 租稅充當金;
- 3. 기타 充當金.

C. 債務:

- 1. 社債, 그중에서 轉換社債;
- 2. 金融機關에 대한 債務;
- 3. 受注先受金;
- 4. 外上買入債務;
- 5. 換어음의 引受 및 約束어음의 發行에 의한 債務;
- 6. 結合企業에 대한 債務;
- 7. 資本參加關係를 가진 企業에 대한 債務;
- 8. 기타 債務,
 - 그중에서 租稅에 관한 債務,
 - 그중에서 社會保障에 관한 債務.

D. 計算限界項目.

第267條【規模의 劃定】① 小規模의 資本會社란 다음의 세가지 基準値중에서

적어도 두가지를 초과하지 않는 會社를 말한다.

1. 借邊(Aktivseite)에 表示된 缺損額(第268條 第3項)을 공제한 後の 貸借 對照表合計額이 390만 독일 마르크

2. 決算日前 12個月間의 賣出額이 800만 독일 마르크

3. 年平均 從業員數가 50명

② 中規模의 資本會社란 第1項에 게기한 세가지 基準値중에서 적어도 두가지를 초과하고 다음의 세가지 基準値중에서 적어도 두가지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借邊(Aktivseite)에 表示된 缺損額(第268條 第3項)을 공제한 後の 貸借 對照表合計額이 1,550만 독일 마르크

2. 決算日前 12個月間의 賣出額이 3,200만 독일 마르크

3. 年平均 從業員數가 250명

③ 大規模의 資本會社란 第2項에 게기한 세가지 基準値중에서 적어도 두가지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資本會社는 株式 또는 資本會社에 의하여 發行된 기타 有價證券이 유럽經濟共同體會員國의 證券去來所에서 正式去來를 許可받고 있는지 또는 規制下에 놓인 自由去來에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正式去來의 許可申請이 行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항상 大規模의 資本會社로 본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 第1文에 의한 基準値의 法律效果는 연속되는 두 營業年度의 決算日 現在에 이들 基準値를 초과하거나 또는 이에 달하지 않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合併, 組織變更 또는 新規設立의 경우에 第1項, 第2項 또는 第3項의 要件이 合併, 組織變更 또는 新規設立後의 최초의 決算日 現在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法律效果가 발생한다.

⑤ 平均 從業員數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및 12월 31일 各各의 日에 고용되어 있는 從業員으로 外國에서 고용되어 있는 者를 포함한 合計의

4분의 1을 말한다. 다만 職業訓練中인 者는 제외된다.

⑥ 이 法 이외의 法律에 의한 從業員의 代表가 가지는 情報請求權 및 說明請求權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第268條【貸借對照表의 個別項目에 관한 規定, 貸借對照表의 記載】 ① 貸借

對照表는 年度損益의 全部 또는 一部の 處分을 고려하여 이를 作成할 수도 있다. 年度損益의 일부분의 處分을 고려하여 貸借對照表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年度剩餘金/年度缺損金」 및 「移越利益金/移越缺損金」項目에 갈음하여 「貸借對照表利益/貸借對照表損失」項目이 사용된다. 移越利益金 또는 移越缺損金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貸借對照表利益/貸借對照表損失」項目에 산입하고 貸借對照表 또는 附屬明細書에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 貸借對照表 또는 附屬明細書에는 固定資産의 個別項目 및 「營業의 開業費 및 擴張費」項目의 變動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取得原價 및 製造原價의 總額을 비롯하여 그 營業年度의 增加額, 減少額, 代替額 및 增額記入額 및 減價償却의 總額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營業年度의 減價償却費는 貸借對照表에서 당해 項目에 기재되거나 또는 固定資産의 項目分類에 상응하는 分類에 따라 附屬明細書에 기재되어야 한다.

③ 自己資本이 損失로 인하여 蠶食되고 또 借邊(Aktivseite)項目에 대한 貸邊(Passivseite)項目의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金額을 「自己資本으로 補填되지 않는 缺損金」이라는 명칭으로 貸借對照表의 借邊(Aktivseite)의 말미에 구분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④ 辨濟期間이 1년 이상인 債權의 金額은 구분하여 표시된 各 項目에 기재되어야 한다. 決算日 이후에 비로소 法律上 발생하는 資産의 金額은 「기타 資産」項目下에 표시되는 경우에는 그 주된 金額은 附屬明細書에 설명되어야 한다.

⑤ 辨濟期間이 1년 이내인 債務의 金額은 구분하여 표시된 各 項目에 기재되어야 한다. 受注先受金은, 在庫資産에 대한 先受金이 「在庫資産」項目에서

명시적으로 공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債務로서 구분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決算日 이후에 비로소 法律上 발생하는 債務의 金額이 「債務」項目에 표시되는 경우에는 그 주된 金額은 附屬明細書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⑥ 第250條 第3項부터 借邊(Aktivseite)의 計算區分項目에 기입된 差額は 貸借對照表에서 이를 별개로 표시하거나 또는 附屬明細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⑦ 第251條에 계기된 責任關係는 貸借對照表의 欄外에 기재하거나 또는 附屬明細書에 제공된 質權 및 기타 擔保의 기재와 함께 각각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한다; 당해 實務가 結合企業에 대하여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第269條 [營業活動의 開業 및 擴張을 위한 費用] 營業活動의 開業 및 擴張을 위한 費用은, 그것이 貸借對照表 計上能力을 갖지 않는 한, 貸借對照表 副次項目으로서 借邊(Aktivseite)에 계상될 수 있다; 이 項目은 貸借對照表에서 「營業活動의 開業 및 擴張을 위한 費用」이라는 名稱으로 固定資產의 앞에 표시하고 附屬明細書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당해 費用을 貸借對照表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배당후에 잔존하고 언제나 處分할 수 있는 利益準備金에 移越利益金を 더하고 移越缺損金を 뺀 金額이 적어도 그 計上額과 일치하는 때에 한하여 利益의 配當이 허용된다.

第270條 [特定項目의 設定] ① 資本準備金에 대한 積立 및 그 處分은 貸借對照表 作成時에 이미 실행되어 있어야 한다. 第1文은 準備金部分을 포함한 特別項目에 대한 積立 및 處분에 적용되어야 한다.

② 貸借對照表가 年度損益의 全部 또는 一部の 處分을 고려하여 作成되는 경우에는 法律, 會社契約 또는 定款에 따라 행하여지든가 또는 이러한 規定에 의하여 결의된 利益準備金으로부터 引出 및 이에 대한 積立은 貸借對照表 作成時에 이미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第271條【資本參加，結合企業】 ① 資本參加란 他企業에 대하여 정해진 持分으로서, 당해 企業과의 계속적인 결합을 형성함을 통하여 自己의 營業經營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그 持분이 有價證券이라는 形態를 취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 경우에는 資本會社에 대한 持分으로 그 額面額의 合計가 당해 會社의 公稱資本金의 5분의1을 초과하는 것은 資本參加로 본다. 그 計算에 관하여는 株式法(AktG) 第16條 第2項 및 第4項을 準用하여야 한다. 등기된 協同組合의 組合員資格은 이 編에서 의미하는 資本參加로 보지 않는다.

② 이 編에서 의미하는 結合企業이란 全部連結에 관한 規定에 의하여 母企業의 콘체른決算書에 母企業 또는 子會社(第290條)으로서 編入된 企業을 말한다. 또 그것은 그 作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第2節에 따라 가장 포괄적인 콘체른決算書를 최상위의 母會社로서 作成하여야 하거나 또는 第291條에 따라 또는 第292條에 의하여 공포된 法令에 따라 作成을 免除하는 콘체른決算書를 作成할 수 있는 企業이다. 第295條 또는 第296條에 의하여 連結되지 않은 子會社도 結合企業이다.

第272條【自己資本】 ① 引受資本金은 資本會社의 債權者에 대한 債務에 관하여 社員의 債務履行責任이 限定되어 있는 資本金이다. 引受資本金에 대한 未納入出資金은 借邊(Aktivseite)의 固定資産의 앞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상당한 名稱을 붙여야 한다. 그 중에서 納入催告가 행하여진 出資金은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納入催告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未納入出資金은 「引受資本金」項目에서 명시하여 控除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控除 後의 殘額은 「納入催告 資本金」項目으로서 貸邊(Passivseite)의 中央欄에 표시하고 그 위에 納入催告는 행하여진 未納入金額은 債權아래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상당한 名稱을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에 기재하는 것을 資本準備金으로서 표시하여야 한다.

1. 新持分을 포함하는 持分の 發行時に 額面金額을 초과하여 取得한 金額
 2. 持分을 取得하기 위한 轉換社債 및 選擇權附社債의 發行時に 取得한 金額
 3. 社員이 그 持分을 위하여 優先權의 附與에 대하여 給與한 加算額.
 4. 社員이 自己資本에 대하여 給與한 기타 加算額
- ③ 당해 營業年度 또는 前營業年度에 利益으로 형성된 金額만을 利益準備金으로서 表示할 수 있다. 利益準備金에는 利益으로부터 形成되어야 할 法定準備金 또는 會社契約 또는 定款에 의한 準備金 및 기타 利益準備金이 속한다.
- ④ 貸借對照表의 借邊(Aktivseite)에 있어서 自己持分에 대하여 計上되어야 할 金額에 합치하는 金額은 이를 自己持分準備金에 적립하여야 한다. 自己持分을 發行, 賣却 또는 回收하는 경우 또는 第253條 第3項에 의하여 借邊(Aktivseite)에서 보다 낮은 金額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自己持分에 대한 準備金을 處分할 수 있다. 貸借對照表의 作成時に 이미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 自己持分準備金은 이미 現존하는 利益準備金이 임의로 處分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 利益準備金으로부터 形成될 수 있다. 第1文에 의한 準備金은 支配企業 또는 過半數로 資本參加하고 있는 企業의 持分에 대하여도 形成될 수 있다.

第273條 [準備金부분을 포함한 特別項目] 稅法이 準備金부분을 포함한 特別項目을 貸借對照表에 설정하는 것을 條件으로 稅法上の 利益算定時に 計上價額을 承認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準備金부분을 포함한 特別項目(第247條 第3項)은 설정될 수 있다. 이 特別項目은 貸邊(Passivseite)에서 充當金の 앞에 표시하여야 한다. 特別項目을 설정하는 根據가 된 모든 規定은 貸借對照表 또는 附屬明細書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第274條 [租稅의 期間區分] ① 稅法上の 規定에 의하여 課稅되어야 할 利益이

商法上の利益보다 작기 때문에 당해 營業年度와 前營業年度에 귀속하여야 할 租稅費用이 과소하게 된 경우 및 당해 營業年度와 前營業年度의 과소한 租稅費用이 당해 年度 이후의 各 營業年度에서 相計된다고 예측되는 경우에는 後續의 營業年度의 예측되는 租稅負擔額으로써 第249條 第1項 第1文에 의한 充當金を 설정하고 이를 貸借對照表 또는 附屬明細書에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보다 큰 租稅負擔이 발생한 경우 또는 보다 큰 租稅負擔이 예측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이 充當金を 處分하여야 한다.

② 稅法上の 規定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할 利益이 商法上の 利益보다 많기 때문에 당해 營業年度와 前營業年度에 귀속되어야 할 租稅費用이 과대하게 된 경우 및 당해 營業年度와 前營業年度의 과대한 租稅費用이 당해 年度 이후의 各 營業年度에서 相計된다고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음 營業年度의 예측되는 租稅輕減額으로써 貸借對照表의 借邊(Aktivseite)에 貸借對照表 副次項目으로서 計算區分項目을 설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計算區分項目은 상당한 名稱을 붙인 후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附屬明細書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項目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利益配當 後에 남은 인제나 處分可能한 利益準備金에 移越利益金を 가산하여 移越缺損金を 控除한 金額이 적어도 計算區分項目에 計上된 金額에 합치하는 경우에만 利益을 배당할 수 있다. 租稅輕減이 발생한 경우 또는 租稅輕減이 예측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計算區分項目의 金額을 處分할 수 있다.

第3款 損益計算書

第275條 [項目分類] ① 損益計算書는 總原價法 또는 賣出原價法에 의하여 報告式으로 이를 作成하여야 한다. 그 경우에 第2項 또는 第3項에 게재된 項目은 소정의 順序에 따라 구분하여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總原價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에 게재하는 項目을 표시하여야 한다.

獨逸商法

1. 賣出收入
2. 製品 및 半製品에 대한 在庫의 增加 또는 減少
3. 借邊(Aktivseite)에 表示된 기타 自己給與
4. 기타 營業收益
5. 材料費
 - a) 原材料費, 補助材料費, 工場消耗品費 및 買入部品費
 - b) 買入給與費
6. 勞務費
 - a) 賃金 및 給料
 - b) 社會保障賦課金, 老齡年金費, 共濟扶助費
7. 減價償却費
 - a) 無形固定資産 및 有形固定資産에 대한 減價償却費 및 借邊(Aktivseite)에 表示된 營業經營의 開業費 및 擴張費에 대한 減價償却費
 - b) 流動資産에 대한 減價償却費; 다만 이것은 資本會社에 있어서 통상의 減價償却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8. 기타 營業費用
9. 資本參加에 의한 收益
結合企業으로부터의 收益
10. 財務固定資産인 기타 有價證券과 貸出金에 의한 收益
結合企業으로부터의 收益
11. 기타 利子 및 이와 유사한 收益
結合企業으로부터의 收益
12. 流動資産인 財務資産과 有價證券에 대한 減價償却費
13. 支給利子 및 이와 유사한 費用
結合企業에 대한 費用
14. 經常損益
15. 特別收益

16. 特別費用
17. 特別損益
18. 所得稅 및 收益稅
19. 기타 租稅
20. 年度剩餘金/年度缺損額.

③ 賣出原價法을 適用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項目을 표시하여야 한다.

1. 賣出收入
2. 賣出收入을 얻기 위하여 提供된 給與의 製造原價
3. 賣出總收益
4. 販賣費
5. 一般管理費
6. 기타 營業收益
7. 기타 營業費用
8. 資本參加에 의한 收益
結合企業으로부터의 收益
9. 財務固定資産인 기타 有價證券과 貸出金에 의한 收益
結合企業으로부터의 收益
10. 기타 利子 및 이와 유사한 收益
結合企業으로부터의 收益
11. 流動資産인 財務資産과 有價證券에 대한 減價償却費
12. 利子 및 이와 유사한 費用
結合企業에 대한 收益
13. 經常損益
14. 特別收益
15. 特別費用
16. 特別損益

獨逸商法

17. 所得稅 및 收益稅

18. 기타 租稅

19. 年度剩餘金/年度缺損金

④ 資本準備金 및 利益準備金의 增減額은 損益計算書의 「年度剩餘金/年度缺損額」의 項目 뒤에 비로소 表示할 수 있다.

第276條 [規模에 의한 簡便措置] 中·小規模의 資本會社(第267條 第1項, 第2項)는 第275條 第2項 第1號부터 第5號 또는 第3項 第1號부터 第3號 및 第6號의 項目을 「雜收益」이라는 名稱을 붙인 項目으로 통일할 수 있다.

第277條 [損益計算書의 個別項目에 관한 規定] ① 資本會社의 통상의 營業活動에 高유한 製品과 商品의 販賣 및 使用賃貸 또는 用役賃貸에 의한 收益 및 資本會社의 통상의 營業活動에 高유한 서비스에 의한 收益으로부터 賣出減額과 賣上稅를 控除한 후의 金額을 賣出收入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數量의 增減과 동시에 價値의 增減도 또 在庫變動으로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減價償却費는 그것이 資本會社에 있어서 통상의 減價償却費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③ 第253條 第2項 第3文에 의한 計劃외의 減價償却費 및 第253條 第3項 第3文에 의한 減價償却은 各各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또는 附屬明細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損失引受에 의한 收益과 費用 및 利益共同契約, 利益移轉契約 또는 部分利益移轉契約에 의하여 수취한 利益 또는 지급받은 利益은 各各 구분하여 상당한 名稱을 붙인 후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資本會社의 통상의 營業活動 이외에서 발생한 收益과 費用이란 「特別收益」 및 「特別費用」 項目下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表示된 金額이 收益狀況의 판단에 있어서 적지않은 重要性을 가진 경우에 한하여 이들 項目은 그 金額과 種類에 관하여 附屬明細書에서 說明하여야 한다. 第2文은 다른 營業年度에 귀속되어야 할 收益과 費用에 대하여도 適用한다.

第278條【租稅】所得稅 및 收益稅는 利益處分에 관한 決議에 기하여 이를 計上하여야 한다. 이러한 決議가 年度決算書 作成의 時點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利益處分에 관한 議案을 前提로 하여야 한다. 利益處分에 관한 決議가 議案과 다른 경우에는 年度決算書를 變更할 必要가 없다.

第4款 評價規定

第279條【規定의 適用除外, 減價償却】① 第253條 第4項은 適用할 수 없다. 第253條 第2項 第3文은 예측되는 계속적인 價値減少가 問題되지 않는 경우에 財務固定資産인 資産에 대하여만 이를 適用할 수 있다.

② 第254條에 의한 減價償却費가 貸借對照表로부터 분명하게 된다는 것을 條件으로 하여 稅法이 稅法上的 利益確定時에 이를 承認하는 경우에 한하여 第254條에 의한 減價償却이 실시될 수 있다.

第280條【價値回復原則】① 資産에 관하여 第253條 第2項 第3文 또는 第3項 또는 第254條 第1文에 의한 減價償却이 실시되고 있고, 後의 營業年度에서 減價償却을 실시하는 理由가 존재하지 않음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그 사이에 실시되어야 할 減價償却費을 고려한 價値의 引上範圍內에서 이 減價償却의 金額을 增額記入하여야 한다. 第253條 第5項, 第254條 第2文은 이 경우에 한하여 適用할 수 있다.

② 稅法上的 利益確定時에 낮은 쪽의 計上價額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및 貸借對照表에서도 낮은 쪽의 計上價額을 유지할 수 있는 條件인 경우에는 第1項에 의한 增額記入은 이를 무시할 수 있다.

③ 稅法上的 理由에서 營業年度에서 발생하지 않은 增額記入의 金額은 附屬明細書에 기재하고 충분한 理由를 붙여야 한다.

第281條 [稅法規定의 考慮] ① 第279條와 관련된 第253條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評價와 第254條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評價와의 差額은 準備金部分을 포함한 特別項目에 적용하는 方法에 의하더라도 第254條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減價償却을 실시할 수 있다. 價値修正項目을 설정하는 근거가 된 規定은 貸借對照表 또는 附屬明細書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價値修正項目을 설정하는 대상이 된 資産을 재산에서 除外시키는 경우 또는 稅法上的 價値修正을 商法上的 減價償却에 갈음하는 경우에 한하여 處分에 관한 稅法規定에 관계없이 價値修正을 할 수 있다.

② 당해 營業年度에서 稅法規定에만 의하여 실시된 減價償却의 金額이 貸借對照表 또는 損益計算書에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 減價償却의 金額은 附屬明細書에 固定資産 및 流動資産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충분한 理由를 붙여야 한다. 準備金部分을 포함한 特別項目의 處分에 의한 收益은 損益計算書의 「기타 營業收益」項目에 표시하고 準備金部分을 포함한 特別項目에 대한 積立額은 損益計算書의 「기타 營業費用」項目에 各各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또는 附屬明細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第282條 [營業의 開業費 및 擴張費의 減價償却] 營業의 開業 및 擴張에 관하여 表示된 金額은 설립후 各 營業年度에서 적어도 그 4분의1을 減額하여 償却하여야 한다.

第283條 [自己資本의 計上價額] 引受된 資本은 額面金額으로 計上하여야 한다.

第5款 附屬明細書

第284條 [貸借對照表 및 損益計算書의 說明] ① 附屬明細書에는 貸借對照表 또는 損益計算書의 個別項目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 記載事項을 포함하거나 또는 選擇權의 行使로 貸借對照表 또는 損益計算書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附屬明細書에 기재하여야 하는 事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附屬明細書에는

1. 貸借對照表 및 損益計算書의 個別項目에 대하여 適用된 貸借對照表 表示方法 및 評價方法を 기재하고,
2. 外國通貨로 表示되어 있는 金額 또는 원래 外國通貨로 表示되어 있던 金額에 의한 項目이 年度決算書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독일 마르크에 대한 換算基準을 기재하고,
3. 貸借對照表 表示方法과 評價方法의 差異를 기재하고 그 理由를 붙여야 한다. 다만 財産狀態, 財務狀態, 收益狀態에 미치는 영향은 이를 구분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4. 第240條 第4項, 第256條 第1文에 의한 評價方法を 適用한 경우에 당해 評價가 決算日 전에 確認된 최종의 證券去來所 上場時勢 또는 市場價格에 의한 評價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그 差額을 그룹별로 일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5. 製造原價에 他人資本利子を 산입한 것에 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第285條 [기타 義務的 記載事項] 附屬明細書에는 다음의 事項을 기재하여야 한다.

1. 貸借對照表에 表示된 債務에 관하여,
 - a) 辨濟期間이 5년을 넘는 債務의 總額,
 - b) 擔保의 種類 및 形態를 記載함과 동시에 質權 또는 이와 類似한 權利를 통하여 保證되고 있는 債務의 總額.
2. 第1號에서 요구되는 記載事項이 貸借對照表에서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規定상의 分類樣式에 의한 債務의 各 項目에 대하여 第1號에서 요구되는 記載事項의 內譯.
3. 그 記載事項이 財務狀況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경우에는 貸借對照表에 표시되지 않고, 第251條에 의하여도 記載할 필요가 없는 다른 재무상의

債務의 總額, 그 중에서 結合企業에 대한 債務는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4. 資本會社의 통상의 營業活動에 固有製品의 販賣 및 資本會社의 통상의 營業活動에 고유한 勞務提供의 組織을 고려하여 活動範圍와 지리적으로 정하여진 市場이 相互間에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活動範圍別 및 지리적으로 정하여진 市場別 賣出收入의 內譯.

5. 資産에 관하여 당해 營業年度 또는 이전의 각 營業年度에서 第254條, 第280條 第2項에 의한 減價償却을 稅法規定에 의하여 실시한 것이나, 舊價額을 유지한 것에 의하여, 또는 第273條에 의한 特別項目을 설정한 것에 의하여 年度損益이 영향을 받은 範圍. 그리고 이러한 評價로부터 발생하는 장래의 현저한 負擔의 範圍.

6. 經常損益 및 特別損益이 부담하는 所得稅와 收益稅의 範圍.

7. 營業年度중에 고용한 從業員의 集團別 平均數.

8. 賣出原價法(第275條 第3項)을 適用한 경우에는

- a) 第275條 第2項 第5號에서 分類한 營業年度의 材料費,
- b) 第275條 第2項 第6號에서 分類한 營業年度의 勞務費.

9. 業務執行機關, 監事會, 諮問會 또는 이와 유사한 機構의 構成員에 관하여는 各 人的 集團別로 다음에 기재하는 事項.

a) 營業年度의 活動에 대하여 부여된 給與總額(給料, 利益分配額, 經費補償額, 保險料, 手數料 및 각종의 부대하는 給與). 給與總額에는 現金에 의한 지급이 아니고 다른 種類의 請求權으로 전환된 給與 또는 다른 請求權을 增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給與도 산입하여야 한다. 營業年度에 대한 給與 이외에 營業年度에 부여되는 기타 給與로 종래 年度決算書에 記載되지 않은 기타 給與도 기재하여야 한다.

b) 상기의 모든 機關의 舊構成員 및 그 遺族의 給與總額(退職一時金, 年金, 遺族에 대한 給與 및 이와 유사한 給與). a)의 第2文 및 第3文을 準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人的 集團에 관하여 설정된 당시의 年金 및 年金

受給期待權에 대한 充當金の 金額 및 이 債務에 대하여 설정되지 않았던 充當金の 金額을 기재하여야 한다.

c) 利子率, 중요한 모든 條件 및 경우에 따라서는 營業年度에 辦濟된 金額을 명기한 후에 지급된 前渡金과 融資 및 이들을 위하여 引受된 債務保證關係.

10. 營業年度 또는 그 후에 사임한 경우에도 業務執行機關 및 監事會의 全構成員의 姓名은 생략하지 않고 명기한다. 監事會會長, 副會長 및 경우에 따라 業務執行機關의 議長은 그 職位를 기재하여야 한다.

11. 資本會社 또는 資本會社의 計算으로 活動하는 者가 적어도 持分の 5분의1을 所有하고 있는 다른 企業의 名稱과 所在地, 그리고 당해 企業의 年度決算書가 提出된 최근의 營業年度의 資本金에 대한 持分の 金額, 自己資本 및 損益을 기재하여야 한다. 持分の 計算에 관하여는 株式法 第16條 第2項 및 第4項을 準用하여야 한다.

12. 貸借對照表의 「기타 充當金」項目에 구분하여 表示되지 않은 充當金은 그 金額이 적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13. 第255條 第4項 第3文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營業權 또는 商號價値의 계획적 減價償却의 根據.

14. 各 企業의 最大範圍에 관하여 consolidated 決算書를 作成하는 資本會社인 母企業의 名稱과 所在地 및 各 企業의 最小範圍에 관한 consolidated 決算書를 作成하는 資本會社인 母企業의 名稱과 所在地 및 이들 母企業이 作成한 consolidated 決算書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수할 수 있는 場所.

第286條 [記載의 禁止] ① 獨逸聯邦共和國 또는 各州의 公益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報告를 中止하여야 한다.

② 합리적인 商人의 판단에 의하면 第285條 第4號에 의한 賣出收入의 內譯이 資本會社 또는 資本會社가 적어도 持分の 5분의1을 所有하는 企業에 대하여 현저한 不利益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第285條 第11號에 의한 記載는 그것이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第264條 第2項에 의한 資本會社의 財産狀況, 財務狀況, 收益狀況의 表示에 있어서 중요성이 미미한 경우 또는,

2. 합리적인 商人의 判斷에 의하면 記載가 資本會社 또는 기타 企業에 현저하게 不利益을 주는 경우.

自己資本과 年度損益에 관하여 報告하여야 할 企業이 年度決算書를 개시할 필요가 없고, 또한 報告를 하는 資本會社가 당해 企業의 2분의1 미만의 持分을 所有하고 있는 경우에는 自己資本 및 年度利益의 記載를 하지 않을 수 있다. 第1文 第2號에 의한 例外規定의 適用은 이를 附屬明細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第287條 [所有持分の 明細書] 第285條 第11號가 요구하는 記載는 이를 당해 附屬明細書에 기재하는 대신에 所有持分明細書에서 별도로 행할 수도 있다. 당해 明細書는 附屬明細書의 構成要素가 된다. 특수한 所有持分明細書 및 그 保管場所가 附屬明細書에 記載되어 있어야 한다.

第288條 [規模에 의한 簡易措置] 第267條 第1項의 意味에 있어서 小規模의 資本會社는 第285條 第2號부터 第5號, 第7號, 第8號 a), 第9號 a) 및 b), 第12號에 의한 記載를 행할 필요가 없다. 第267條 第2項의 의미에 있어서 中規模의 資本會社는 第285條 第4號에 의한 記載를 할 필요가 없다.

第6款 狀況報告書

第289條 ① 狀況報告書에는 實質的 關係에 상응하는 狀況을 전달하기 위하여 적어도 資本會社의 營業經過 및 狀況이 기술되어야 한다.

② 狀況報告書는 다음 事項을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

1. 營業年度の終了 後に 발생한 매우 중요한 事項.
2. 資本會社の 發展展望.
3. 研究 및 開發의 領域.

第2節 consolidated 決算書 및 consolidated 狀況報告書

第1款 適用領域

第290條【作成義務】 ① 國內에 住所를 둔 資本會社(母企業)의 통일적 지휘에 따르는 企業이 consolidated 內에 존재하고 이 통일적 지휘에 따르는 하나 또는 複數의 企業(子會社)에 대한 第271條 第1項에 의한 資本參加가 母企業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母企業의 法定代表者는 consolidated 營業年度の 최초의 5個月 이내에 前consolidated 營業年度에 관한 consolidated 決算書 및 consolidated 狀況報告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② 國內에 둔 資本會社(母企業)가 어떤 企業(子會社)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상 consolidated 決算書 및 consolidated 狀況報告書를 作成할 義務를 부담한다.

1. 社員 議決權의 過半數를 가진 경우,
2. 經營機關, 業務執行機關 또는 監查機關의 構成員의 過半數를 選任 또는 解任할 權利를 가지고 당해 資本會社가 동시에 社員인 경우,
3. 이 企業과 체결한 支配契約 또는 이 企業의 定款規定에 의하여 지배적 영향을 행사할 權利를 갖는 경우.

③ 子會社에 귀속하는 權利 및 母企業 또는 子會社의 計算에서 行動하는 者에 귀속하는 權利도 第2項에 의한 母企業에 속하는 權利로 看做된다. 他 企業에 관하여 母企業에 귀속하는 權利에는 母企業 또는 子會社가 당해 企業의 他社員과의 協定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는 權利도 編入된다. 다만 다

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權利는 除外하여야 한다.

1. 母企業 또는 子會社가 다른 사람의 計算으로 보유하는 持分에 결합된 權利.

2. 擔保로서 보유하는 持分에 결합하는 權利로 당해 權利가 擔保提供者의 지시로 행사되는 것 또는 金融機關이 貸出金の 擔保로서 持分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擔保提供者에 갈음하여 행사되는 權利.

④ 第2項 第1號에 의한 過半數의 計算에 관하여는 企業에 속하는 議決權의 比率은 그에 속하는 持分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議決權數와 議決權總數의 比率에 따라 결정한다. 自己持分에 의한 議決權으로서 子會社 그 자체에 속하는 것, 그 子會社의 子會社에 속하는 것 또는 이들 企業의 計算으로 他人에게 속하는 것은 이를 議決權總數로부터 除外하여야 한다.

第291條 [콘체른決算書 및 콘체른狀況報告書의 作成免除] ① 母企業인 동시에 또는 유럽經濟共同體 會員國內에 住所를 두고 있는 母企業의 子會社인 企業은 콘체른決算書 및 콘체른狀況報告書의 作成免除規定에 따라 確認의 附記 또는 그 拒絶에 관한 簿記를 포함하고, 第2項의 要件에 합치하는 그 母企業의 콘체른決算書 및 콘체른狀況報告書가 獨逸語로 개시되어 있는 경우, 콘체른決算書 및 콘체른狀況報告書を 作成할 필요는 없다. 作成을 免除하는 콘체른決算書 및 作成을 免除하는 콘체른狀況報告書는 유럽經濟共同體 會員國內에 住所를 두고 있는 資本會社인 企業이 作成을 免除하여야 하는 母企業 및 그 子會社를 포함하여 콘체른決算書의 作成義務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法的 形態 및 規模에 상관없이 어떠한 企業도 이를 作成할 수 있다.

② 유럽經濟共同體 會員國內에 住所를 두고 있는 母企業의 콘체른決算書 및 콘체른狀況報告書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作成을 免除한다.

1. 作成을 免除하여야 할 母企業 및 그 子會社가 第295條 및 第296條에 관

제없이 作成을 免除하는 consolidated 決算書에 編入된 경우.

2. 作成을 免除하는 consolidated 決算書 및 作成을 免除하는 consolidated 狀況報告書가 作成을 免除하는 consolidated 決算書を 作成하는 母企業에 있어서 기준이 되고 또한 連結決算書에 관한 1983년 6월 13일의 理事會指針 83/349/EWG(유럽 共同體官報 第L193號 第1面)의 要件과 일치하는 法律에 적합하고 또 당해 法律에 따라 計算書類의 義務檢査人の 許可에 관한 1984년 4월 10일 理事會指針 84/253/EWG(유럽 共同體官報 第L126號 第20面)의 規定에 따라 許可 받은 決算檢査人에 의한 監査를 받은 경우,

3. 作成을 免除받을 企業의 年度決算書인 附屬明細書가 다음 事項을 포함 하는 경우에는

a) 作成이 免除된 consolidated 決算書 및 consolidated 狀況報告書を 作成하는 母企業의 名稱 및 住所,

b) consolidated 決算書 및 consolidated 狀況報告書を 作成하는 義務를 免除받은 뜻의 指示.

③ 第1項에 의한 作成免除는 第2項에 따른 條件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株式會社 및 株式合資會社에 있어서 作成을 免除할 母企業의 持分이 적어도 100분의10을 가지고 또 有限會社는 그 持分이 적어도 100분의20을 가진 社員이 늦어도 consolidated 營業年度의 終了前 6個月 이내에 consolidated 決算書 및 consolidated 狀況報告書의 作成을 請求한 경우에 母企業은 이를 要求할 수 없다. 당해 母企業에게 作成을 免除할 母企業에 대한 持分の 100분의90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타 社員이 作成免除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第1項을 適用할 수 있다.

第292條 [consolidated 決算書 및 consolidated 狀況報告書의 作成免除에 관한 法令授權]

① 聯邦財務長官은 聯邦財務長官 및 聯邦經濟長官과 協의한 후에 聯邦上院의 同意를 받지 않고, 作成이 免除되는 consolidated 決算書와 consolidated 狀況報告書가 指針 83/849/EWG의 要件과 일치하는 유럽經濟共同體 會員國의 法律에 따

라 作成하여야 하는 뜻 또는 유럽經濟共同體 會員國의 당해 法律에 따라 作成되는 콘체른決算書 및 콘체른狀況報告書와 동등한 것이어야 하는 뜻의 條件을 붙이고, 第291條가 유럽經濟共同體의 非會員國內에 住所를 두고 있는 母企業의 콘체른決算書 및 콘체른狀況報告書에 適用할 수 있다는 法令을 정할 權限이 있다. 다만 유럽經濟共同體의 다른 會員國의 法律이 作成을 免除하는 콘체른決算書 및 콘체른狀況報告書の 기초가 되고 또는 동등성의 확보를 위하여 원용할 수 있는 것은 당해 書類가 다른 會員國에서 당해 會員國의 法律로 따로 규정된 콘체른決算書 및 콘체른狀況報告書에 갈음하여 公示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規定의 適用에 관하여는 本節에 따라 作成되는 콘체른決算書 및 콘체른狀況報告書가 母企業이 住所를 두고 있는 국가내에서 이에 대응하는 法的 形態 및 業種의 企業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는 콘체른決算書 및 콘체른狀況報告書와 동등한 것으로 看做하는 것을 條件으로 第1文에 의한 法令에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의하여 認可되는 콘체른決算書는 그것이 指針 84/253/EWG의 規定에 따라 許可된 決算檢查人에 의한 監査를 받은 경우에 決算檢查人이 당해 指針의 요구와 동등한 資格을 가지고, 콘체른決算書가 第3節의 要件에 합치하는 方法으로 監査된 경우에 한하여 作成을 免除한다.

③ 또 第1項에 의한 法令에서 第1項에 따라 동등한 것이 되기 위하여 유럽經濟共同體의 非會員國內에 住所를 두고 있는 母企業의 콘체른決算書 및 콘체른狀況報告書가 各各 충족되어야 할 前提條件 및 第2項에 따라 동등한 것이 되기 위하여 決算檢查人이 구비하여야 할 자격을 규정할 수도 있다. 당해 法令에서 콘체른決算書에 관한 追加的 記載 및 說明을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콘체른決算書 및 콘체른狀況報告書와 本節 또는 유럽經濟共同體의 기타 會員國의 法律에 의한 것과의 同等性を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④ 法令은 公布前에 聯邦議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聯邦議會의 決議에 의하여 이것이 修正 또는 拒否될 수 있다. 聯邦議會의 決議는 聯邦法務長官에게

이송된다. 法令을 공포함에 있어서 聯邦法務長官은 이 決議에 구속된다. 聯邦議會가 法令을 입수한 후 3週間이 經過할 때까지 이를 심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法令은 變更되지 않고 聯邦法務長官에게 공포를 위하여 이송된다. 聯邦議會는 院內交涉團體를 결성하는데 필요한 數의 聯邦議會構成員의 同意에 의하여 法令을 심의한다.

第293條 [規模에 의한 作成義務] ① 母企業이 다음 各號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Konzern決算書 및 Konzern狀況報告書를 作成할 義務가 免除된다.

1. 그 年度決算書의 決算日 現在 및 前決算日 現在에 다음 세가지 基準 가운데 적어도 두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a) 母企業과 Konzern決算書에 編入된 子會社의 貸借對照表에 있어서 貸借對照表總額이 貸借對照表의 借邊(Aktivseite)에 表示되는 缺損額을 控除한 후 總額으로 4,680만 독일 마르크를 초과하지 않을 것.

b) 母企業 및 Konzern決算書에 編入된 子會社의 賣出收入이 決算日前 12個月間에 9,600만 독일 마르크를 초과하지 않을 것.

c) 母企業 및 Konzern決算書에 編入된 子會社가 決算日前 12個月間에 年平均 500명을 초과하는 從業員을 고용하고 있지 않을 것.

2. 母企業이 作成하여야 할 Konzern決算書의 決算日 現在 및 前決算日 現在에 다음 세가지 기준 가운데 적어도 두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a) 貸借對照表總額이 借邊(Aktivseite)에 表示되는 缺損額을 控除한 후 3,900만 독일 마르크를 초과하지 않을 것.

b) 賣出收入이 決算日前 12個月間에 8,000만 독일 마르크를 초과하지 않을 것.

c) 母企業 및 Konzern決算書에 編入된 子會社가 決算日前 12個月間에 年平均 500명을 초과하는 從業員을 고용하고 있지 않을 것.

從業員의 평균수의 산출에 관하여는 第267條 第5項이 適用된다.

② 金融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상관없이 다음 各號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

獨逸商法

우에는 콘체른決算書 및 콘체른狀況報告書を 作成할 義務가 免除된다.

1. 그 年度決算書の 決算日 現在 및 前決算日 現在에 그 貸借對照表에 있어서 貸借對照表總額 및 콘체른決算書에 編入된 子會社の 貸借對照表에 있어서 貸借對照表總額에 전체 企業에 대하여 信用利用者에 의하여 決濟되는 流通中の 自己發行어음, 어음背書債務 및 保證債務, 어음保證債務, 手票保證債務 및 擔保契約에 의한 債務의 額을 가산한 額이 總額으로 1억3,200만 독일 마르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그것이 作成되어야 할 콘체른決算書の 決算日 現在 및 前決算日 現在 콘체른貸借對照表總額에 信用利用者에 의하여 決濟되는 流通中の 自己앞어음, 어음背書債務 및 保證一般, 어음保證, 手票保證 및 擔保契約에 의한 債務의 額을 가산한 額이 1억1,000만 독일 마르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③ 保險企業은 第1項의 規定에 상관없이 다음 各號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콘체른決算書 및 콘체른狀況報告書を 作成할 義務를 免除한다.

1. 그 保險業務의 전체에서 保險料收入總額 및 콘체른決算書에 編入된 子會社の 그것이 決算日前 및 前決算日前의 12個月에 各各 4,320만 독일 마르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그것이 作成되어야 할 콘체른決算書에서 保險業務全般에서의 保險料收入總額이 決算日前 및 前決算日前의 12個月間에 各各 3,600만 독일 마르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保險業務全般에서의 保險料收入金額이란 原保險業務 및 再保險分擔部分을 포함하는 再保險業務에서의 保險料收入을 말한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경우 이외에 第1項, 第2項 또는 第3項의 條件이 決算日 現在에서만 또는 前決算日 現在에만 충족되고, 母企業이 前決算日 現在에 콘체른決算書 및 콘체른狀況報告書の 作成義務가 免除되어 있는 경우에는 母企業은 콘체른決算書 및 콘체른狀況報告書の 作成義務가 免除된다.

⑤ 決算日 現在에 株式 또는 母企業 또는 母企業의 콘체른決算書에 編入된 子會社가 發行한 기타 有價證券이 유럽經濟共同體 會員國內의 證券去來所

에서 正式去來를 인가받고 있는지, 規制下에 놓인 自由去來에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正式去來의 認可申請중에 있는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4項을 適用할 수 없다.

第2款 連結의 範圍

第294條【編入되어야 할 企業, 提出 및 說明義務】① 母企業과 모든 子會社가 子會社의 住所 여하에 상관없이 consolidated 決算書에 編入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 編入이 第295條 및 第296條로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 consolidated 決算書에 編入된 企業의 구성이 營業年度중에 현저하게 변화된 경우에는 연속하는 consolidated 決算書의 의미있는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記載事項이 consolidated 決算書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義務는 consolidated 決算書의 해당 金額을 그 變更에 적합하게 修正함으로써도 이행될 수 있다.

③ 子會社は 母企業에 대하여 그 年度決算書, 狀況報告書, consolidated 決算書, consolidated 狀況報告書 및 그 年度決算書 또는 consolidated 決算書가 監査가 개시된 때에는 監査報告書, 그리고 中間決算書가 作成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consolidated 決算書의 決算日에 作成된 決算書를 遲滯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母企業은 각 子會社에 대하여 consolidated 決算書 및 consolidated 狀況報告書の 作成上 필요한 모든 說明 및 證憑書類를 請求할 수 있다.

第295條【編入의 禁止】① consolidated 決算書에 編入하는 것이 consolidated 財産狀態, 財務狀態 및 收益狀態의 실질적 모든 關係에 합치하는 狀況을 전달하는 義務와 양립하지 않을 정도로 子會社의 活動이 다른 被編入된 企業의 活動과 현저히 상이한 경우에는 그 子會社は consolidated 決算書에 編入하지 않는다. 다만 關聯企業의 編入에 관한 第311條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consolidated 決算書에 編入된 企業들이 일부는 工業, 일부는 商業 그리고 用役提供을 영위하는 企業이거나 또는 당해 企業이 상이한 製品을 製造하거나

상이한 製品의 거래를 행하거나 또는 다른 種類의 用役을 提供하는 것만을 理由로 第1項을 適用할 수는 없다.

③ 第1項의 適用은 이를 콘체른附屬明細書에 기재하고 理由를 붙여야 한다. 第1項에 의하여 編入되지 않는 企業의 年度決算書 또는 콘체른決算書가 본 법의 適用領域에서 公示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콘체른決算書와 함께 商業登記所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296條 [編入의 拋棄] ① 子會社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콘체른決算書에 編入할 필요가 없다.

1. 중대하고 지속적인 制約으로 인하여 당해 企業의 財産 또는 業務執行에 관한 母企業의 權利行使가 장기에 걸쳐 저해되는 경우.
2. 콘체른決算書의 作成에 있어서 필요한 記載事項이 과도하게 높은 費用 또는 遲延을 수반하지 않고서는 입수할 수 없는 것.
3. 당해 子會社의 持分이 주로 專賣를 目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② 子會社로 콘체른의 財産狀態, 財務狀態 및 收益狀態의 실질적 關係에 합치되는 狀況을 전달하는 義務에 관하여 중요성이 ̎결된 경우에는 그 子會社는 콘체른決算書에 編入될 필요가 없다. 複數의 子會社가 第1文의 前提條件에 적합한 경우에 그들이 전체로서 중요한 경우에는 당해 企業은 콘체른決算書에 編入되어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適用은 이를 콘체른附屬明細書에서 理由를 붙여야 한다.

第3款 콘체른決算書의 內容 및 形式

第297條 [內容] ① 콘체른決算書는 콘체른貸借對照表, 콘체른損益計算書 및 콘체른附屬明細書로 구성되며, 이들은 일체를 이룬다.

② 콘체른決算書는 명료하고 일목요연하게 作成되어야 한다. 그것은 正規의

簿記의 原則을 遵守하여 consolidated 財産狀態, 財務狀態 및 收益狀態의 實質的 關係에 상응하는 狀況을 전달하여야 한다. 特別한 事情으로 consolidated 決算書가 第2文에서 의미하는 實質的 關係에 상응하는 狀況을 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consolidated 附屬明細書에 追加的 記載를 하여야 한다.

③ consolidated 決算書에서는 編入된 企業의 財産狀態, 財務狀態 및 收益狀態는 당해 企業全體가 마치 單一企業인 것과 같이 기술하여야 한다. 前年度의 consolidated 決算書에 適用한 連結方法은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第2文으로부터의 變更은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된다. 이러한 變更은 이를 consolidated 附屬明細書에 기재하고 또한 理由를 붙여야 한다. consolidated 의 財産狀態, 財務狀態 및 收益狀態에 대한 영향은 記載되어야 한다.

第298條 [適用하여야 할 規定, 簡易措置] ① consolidated 決算書에 관하여는 그 特殊性이 變更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는 다음 規定에 特別한 정함이 없는 한, 年度決算書에 관한 第244條 내지 第256條, 第265條, 第266條, 第268條 내지 第275條, 第277條 내지 第283條 및 大規模의 資本會社에 적용하는 한에서 本法의 適用領域內에 住所를 두고 있는 consolidated 決算書에 編入된 企業의 法的 形態 및 業種에 대하여 적용되는 規定을 準用하여야 한다.

② consolidated 貸借對照表의 項目分類에서 在庫資産에 관한 內譯表示가 特別한 事情에 의하여 과도한 費用이 드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項目에 통합할 수 있다.

③ consolidated 附屬明細書와 母企業의 年度決算書인 附屬明細書는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consolidated 決算書 및 母企業의 年度決算書가 함께 公示되어야 한다. 第1文의 適用에 있어서는 監査報告書 및 確認의 附記도 各各 통합할 수 있다.

第299條 [作成의 基準日] ① consolidated 決算書는 母企業의 年度決算書의 基準日 또는 이와 다른 基準日인 경우에는 consolidated 決算書에 編入된 企業 가운데 가

장 중요한 것 또는 그 過半數의 年度決算書의 基準日로 作成하여야 한다. 다만 母企業의 決算日과 다른 경우는 이를 consolidated 附屬明細書에 기재하고 理由를 붙여야 한다.

② consolidated 決算書에 編入된 企業의 年度決算書는 consolidated 決算書의 基準日로 作成되어야 한다. 企業의 決算日이 consolidated 決算書의 基準日前 3個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企業은 consolidated 決算書의 基準日 및 期間에 作成된 中間決算書에 의하여 consolidated 決算書에 編入되어야 한다.

③ 決算日이 다른 企業이 consolidated 決算書의 基準日 및 期間에 作成된 中間決算書에 의하여 consolidated 決算書에 編入되지 않은 경우에는 consolidated 決算書에 編入된 企業의 財産狀態, 財務狀態 및 收益狀態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狀況으로 당해 企業의 決算日과 consolidated 決算書의 基準日과의 사이에 발생한 것은 이를 consolidated 貸借對照表 및 consolidated 損益計算書에서 고려하거나 또는 consolidated 附屬明細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第4款 全部連結

第300條 [連結諸原則, 完全性原則] ① 母企業의 年度決算書는 consolidated 決算書에서 子會社의 年度決算書와 통합되어야 한다. 母企業에 적용되는 法律에 의하여 貸借對照表上 能力을 가지고 또한 consolidated 決算書의 特殊性이 變更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또는 다음 規定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編入된 子會社에 대한 母企業歸屬持分에 갈음하여 子會社의 資産, 負債, 計算區分項目, 貸借對照表 副次項目 및 特別項目을 들 수 있다.

② 母企業에 적용되는 法律에 의하여 貸借對照表 計上禁止 또는 貸借對照表 計上選擇權이 존재하지 않는 한, consolidated 決算書에 編入된 企業의 資産, 負債 및 計算區分項目, 收益, 費用은 당해 企業의 年度計算書에서의 記載與否에 관계없이 완전히 수용되어야 한다. 母企業에 적용되는 法律에 의하여 인정된 貸借對照表計上選擇權은 consolidated 決算書에 編入된 企業의 年度決算書

에서의 行使與否에 관계없이 이를 콘체른決算書에서 행사할 수 있다.

第301條 [資本連結] ① 콘체른決算書에 編入된 子會社에 대한 持分으로 母企業에 속하는 것의 計上價額은 子會社의 自己資本 가운데 당해 持分에 속하는 金額과 相計한다. 당해 自己資本은 다음 중의 한 金額으로 이를 計上하여야 한다.

1. 콘체른決算書에 수용하여야 할 資産, 負債, 計算區分項目, 貸借對照表 副次項目 및 特別項目의 帳簿價額에 합치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第308條 第2項에 의한 計上價額의 修正 後의 帳簿價額에 합치되는 金額.

2. 콘체른決算書에 수용하여야 할 資産, 負債, 計算區分項目, 貸借對照表 副次項目 및 特別項目의 價値에 합치되고, 第2項에 의한 相計를 위하여 선택된 時點에서 그것에 포함시켜야 할 金額.

第2文 第1號에 의한 帳簿價額으로 計上하는 경우에 이에 의하여 발생된 差額은, 당해 計上價額이 종전의 計上價額보다 높거나 또는 낮은 경우에 한하여, 콘체른貸借對照表에 計上하여야 할 各 子會社의 資産 및 負債의 計上價額에 가산하거나 또는 그와 相計하여야 한다. 第2文 第2號에 의한 價値로 計上하는 경우에 당해 自己資本持分은 編入된 子會社의 持分에 대한 母企業의 取得價額을 초과하는 金額으로 計上하여서는 안된다. 適用한 方法은 콘체른附屬明細書에 記載되어야 한다.

② 第1項에 의한 相計는 持分取得의 時點이나 子會社가 최초로 콘체른決算書에 編入된 時點의 計上價額 또는 持分이 다른 時點에서 取得된 경우에는 당해 企業이 子會社가 된 時點의 計上價額을 기초로 행하여진다. 선택한 時點은 콘체른附屬明細書에 記載되어야 한다.

③ 第1項 第2文 第2號에 의한 相計로 발생되는 差額 또는 第1項 第3文에 의한 增額記入 또는 相計 後에 남는 差額은, 콘체른貸借對照表에 있어서, 그것이 借邊(Aktivseite)에 발생되는 경우에는 營業權 또는 商號價値로서, 그것이 貸邊(Passivseite)에 발생되는 경우에는 資本連結差額으로서 表示되

어야 한다. 당해 項目 및 前年度와의 대비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는 附屬明細書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借邊(Aktivseite)의 差額을 貸邊(Passivseite)의 差額과 相計하는 경우에는 相計金額을 附屬明細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第1項은 母企業 또는 Konzern決算書에 編入된 子會社에 속하는 母企業에 대한 持分에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당해 持分은 Konzern貸借對照表에서 流動資産下에 自己持分으로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第302條 [持分集合에 의한 資本連結] ① 母企業이 다음에 列擧된 條件을 갖춘 경우에는 第301條 第1項에 규정된 持分の 相計를 子會社の 引受資本金으로 限定할 수 있다.

1. 相計하여야 할 持分이 子會社の 持分으로 自己持分이 아닌 것의 額面金額의 100분의90 이상에 달하거나, 額面金額이 없는 경우에는, 그 計算價値의 100분의90 이상에 달하는 경우.

2. 당해 持分이 Konzern決算書에 編入된 企業의 持分の 發行을 정한 協定에 의하여 取得한 것일 것.

3. 당해 協定에 규정되어 있는 現金支給額이 發行時 持分の 額面金額의 100분의10을 초과하지 않거나 또는 額面金額이 없는 경우에는 計算價値의 100분의10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② 第1項에 의하여 생긴 差額으로 借邊(Aktivseite)에 발생한 것은 이를 準備金으로 相計하고, 貸邊(Passivseite)에 발생한 것은 準備金에 加算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의한 方法의 適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準備金の 변동 및 企業의 名稱 및 住所는 Konzern附屬明細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第303條 [債權債務連結] ① Konzern決算書에 編入된 企業間の 貸出金 및 기타 債權, 充當金, 債務 및 이에 상응하는 計算區分項目은 이를 除去하여야 한다.

② 除去되어야 할 金額이 콘체른의 財産狀態, 財務狀態 및 收益狀態의 實質的 關係에 합치되는 狀況의 전달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第1項을 適用할 필요가 없다.

第304條 [中間成果의 處理] ① 콘체른決算書에 인계되어야 할 資産으로 콘체른決算書에 編入된 企業間에 행하여진 引渡 또는 給與의 全部 또는 一部에 기인하는 것은, 콘체른決算書에 編入된 企業이 법적으로도 單一企業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콘체른決算書의 基準日에 作成되는 당해 企業의 年度貸借對照表에 計上할 수 있는 金額으로 콘체른貸借對照表에 計上하여야 한다.

② 당해 引渡 또는 給與가 통상의 市場條件으로 행하여지고 또한 第1項에 규정된 計上價額의 산출이 과도하게 높은 費用을 요하는 경우에는 第1項을 適用할 필요가 없다. 第1文의 適用은 콘체른附屬明細書에 기재하고, 콘체른의 財産狀態, 財務狀態 및 收益狀態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第1項에 의한 中間成果의 處理가 콘체른의 財産狀態, 財務狀態 및 收益狀態의 實質的 關係에 합치되는 狀況의 전달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第1項을 適用할 필요가 없다.

第305條 [費用收益連結] ① 콘체른損益計算書에서 다음 各號에 列舉된 收益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費用과 相計하여야 한다.

1. 賣出收入에 있어서 콘체른決算書에 編入된 企業間の 引渡 및 給與로부터의 수입으로, 製品 및 半製品의 在庫의 增加 또는 借邊(Aktivseite)에 計上되는 기타 自己給與로서 표시할 수 없는 것.

2. 콘체른決算書에 編入된 企業間の 引渡 및 給與로부터의 기타 收益으로, 借邊(Aktivseite)에 計上되는 기타 自己給與로서 표시할 수 없는 것.

② 제거하여야 할 金額이 콘체른의 財産狀態, 財務狀態 및 收益狀態의 實質的 關係에 합치되는 狀況의 傳達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費用

獨逸商法

및 收益을 第1項에 따라 除去할 필요가 없다.

第306條 [租稅의 期間區分] 本款의 規定에 따라 실행된 措置에 의하여 콘체른 決算書에 表示된 年度損益이 콘체른決算書에 編入된 企業의 個別成果의 총계보다 낮거나 또는 높은 경우에는 당해 營業年度 및 前營業年度에 대하여 발생된 租稅費用에 관하여 당해 年度損益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借邊 (Aktivseite)에 있어서 期間區分項目의 설정에 의하여 또 당해 年度損益과 비교하여 과소한 경우에는 第249條 第1項 第1文에 의한 充當金의 설정으로 이를 적합하게 修正하여야 한다. 다만 과다하거나 과소한 당해 租稅費用이 장래의 營業年度에서 平均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項目은 콘체른貸借對照表 또는 콘체른附屬明細書에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그것은 第274條에 의한 項目과 통합될 수 있다.

第307條 [기타 社員의 持分] ① 콘체른貸借對照表에서 콘체른決算書에 編入된 子會社에 대한 持分으로 母企業에 속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는 기타 社員의 持분에 대한 調整項目이 自己資本에 대한 당해 持分の 높음으로 상응하는 名稱을 붙인 후에 自己資本의 내부에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당해 調整項目에는 第301條 第1項 第2文 第2號에 의한 資本連結方法의 適用에 있어서 自己資本에 대한 기타 社員의 持분에 상당하는 金額도 산입하여야 한다.

② 콘체른損益計算書에서는 年度損益에 編入된 것으로 기타 社員에 귀속되는 利益 및 損失은 상응하는 名稱을 붙여서 「年度剩餘金/年度缺損金」項目 다음에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第5款 評價規定

第308條 [統一的 評價] ① 콘체른決算書에 編入된 企業의 資産 및 負債로 第

300條 第2項에 의하여 콘체른決算書에 인계되는 것은 母企業의 年度決算書에 適用할 수 있는 評價方法에 따라 통일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母企業에 적용되는 法律에 의하여 인정된 評價選擇權은 콘체른決算書에서, 콘체른決算書에 編入된 企業의 年度決算書에서의 행사에 관계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母企業의 年度決算書에 적용한 評價方法으로부터의 變更은 콘체른附屬明細書에 기재하고 또한 理由를 붙여야 한다.

② 母企業 또는 子會社の 資産 또는 負債로 콘체른決算書에 수용되어야 할 것을 당해 企業의 年度決算書에서 콘체른決算書에 적용하여야 하는 方法 또는 母企業의 法定代表者에 의한 評價選擇權의 行使에 의하여 콘체른決算書에 적용되는 方法과는 다른 方法으로 評價한 경우에는 다른 評價를 받은 資産 또는 負債는 콘체른決算書에 적용하는 評價方法에 따라 이를 새로이 평가하고 새로운 評價額으로써 콘체른決算書에 인계하여야 한다. 業種의 特殊性으로 인하여 金融機關 또는 保險企業에 대하여 적용되는 規定의 適用에 의한 評價額은 이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예외의 適用에 관하여는 콘체른附屬明細書에서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第1文에 의한 통일적 評價로 그 영향이 콘체른의 財産狀態, 財務狀態 및 收益狀態의 實質的 關係에 합치되는 狀況의 傳達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행할 필요가 없다. 그 밖에 예외의 경우에는 變更이 허용되고 있다. 다만 콘체른附屬明細書에서 그 뜻을 기재하고 理由를 붙여야 한다.

③ 콘체른決算書에 인계하여야 할 資産 또는 負債가 콘체른決算書에 編入된 企業의 年度決算書에서 稅法上の 利益算定에 있어서 오직 稅法만에 의하여 인정된 價値를 計上하지 않으면 그 計上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理由로 당해 價値로 計上된 경우 또는 이 理由로 貸邊(Passivseite)에 特別項目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計上價額은 變更됨이 없이 이를 콘체른決算書에 인계할 수 있다. 第1文에 의하여 年度決算書에서 행하여진 당해 營業年度의 減價償却, 價値修正 및 特別項目積立金の 金額 및 중지된 增額記入의 金額은 콘체른附屬明細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措置는 理由를 붙여야 한다.

第309條 [差額の處理] ① 第301條 第3項에 의하여 表示된 營業權 또는 商號價値는 次年度 이후의 各 營業年度에서 적어도 그 4분의1을 減價償却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 營業權 또는 商號價値의 減價償却費는 그 이용이 예상되는 營業年度에 걸쳐서 이를 계획적으로 배분할 수도 있다. 營業價値 또는 商號價値는 이를 貸借對照表에 명시하여 準備金과 相計할 수도 있다.

② 第301條 第3項으로 貸邊(Passivseite)에 表示할 差額は 다음 各號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 成果를 有效하게 處分할 수 있다.

1. 持分の 取得時點 또는 최초의 連結時點에서 예상되었던 企業의 將來收益狀態의 악화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해 時點에서 예상되었던 費用이 고려되어야 할 경우.

2. 그것이 實現利益에 상응한다는 것이 決算日 現在에 確定되어 있을 것.

第6款 比例連結

第310條 ① 콘체른決算書에 編入된 母企業 또는 子會社가 콘체른決算書에 編入되지 않은 하나 또는 複數의 企業과 공동으로 다른 企業을 經營하는 경우에는 당해 他企業을 母企業에 속하는 資本金持分比率에 따라 콘체른決算書에 編入시킬 수 있다.

② 이 持分比率에 따른 連結에 대하여는 第297條 내지 第301條, 第303條 내지 第306條, 第308條, 第309條를 準用하여야 한다.

第7款 關聯企業

第311條 [定義, 適用免除] ① 콘체른決算書에 編入된 企業이 第271條 第1項에 의한 資本參加를 하고 있는 編入되지 않은 企業의 營業政策 및 財務政策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關聯企業), 당해 資本參加는 콘체른貸借對

照表에서 상응하는 名稱을 붙인 별개의 項目下에 표시하여야 한다. 한 企業이 적어도 他企業의 社員議決權의 5분의1을 가진 경우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推定된다.

② 關聯企業에 대한 資本參加로 당해 資本參加가 콘체른의 財産狀態, 財務狀態 및 收益狀態의 實質的 關係에 합치되는 狀況의 전달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第1項 및 第312條를 適用할 필요가 없다.

第312條 [資本參加의 計上價額 및 差額의 處理] ① 關聯企業에 대한 資本參加는 다음에 열거된 金額 가운데 한 가지를 콘체른決算書에 計上하여야 한다.

1. 帳簿價額.

2. 당해 關聯企業의 持分比率에 상당하는 自己資本額.

第1文 第1號에 의하여 帳簿價額으로 計上하는 경우에는 당해 帳簿價額과 최초 適用時의 關聯企業의 持分比率에 상응하는 自己資本額과의 差額は 콘체른貸借對照表에 기재하거나 또는 콘체른附屬明細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第1文 第2號에 의하여 持分比率에 상응하는 自己資本額으로 計上하는 때에 自己資本은 關聯企業의 資産, 負債, 計算區分項目, 貸借對照表 副次項目 및 特別項目을 第3項에 의하여 선택한 時點에 붙여야 할 가격으로 計上하는 경우에 생기는 金額으로 計上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金額은 關聯企業에 대한 持分の 取得原價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당해 計上價額과 資本參加의 帳簿價額과의 差額は 최초 適用時에 콘체른貸借對照表에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또는 콘체른附屬明細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適用한 方法은 콘체른附屬明細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第1項 第2文에 의한 差額は 이것이 종전의 計上價額보다 높거나 또는 낮은 경우에 한하여 關聯企業의 資産 및 負債의 計上價額에 귀속시켜야 한다. 第1文에 의하여 귀속된 金額 또는 第1項 第1文 第2號에 의하여 발생한 金額은 關聯企業의 年度決算書에서 당해 資産 및 負債의 計上價額의 處理

에 합치시켜 이를 콘체른決算書에 移越하거나, 減價償却하거나 또는 處分하여야 한다. 第1文에 의한 귀속후에 남은 差額 및 第1項 第3文 後段에 의한 差額에 관하여는 第309條를 準用하여야 한다.

③ 당해 資本參加의 計上價額 및 당해 差額은 持分の 取得 또는 關聯企業의 콘체른決算書에 최초로 編入된 시점의 計上價額 또는 다른 시점에서 持分을 取得한 경우에는 당해 企業이 關聯企業이 된 시점의 計上價額에 의하여 이를 산출한다. 선택한 時點은 콘체른附屬明細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第1項에 의하여 산출된 資本參加의 計上價額은 次年度에 關聯企業의 資本金에 대한 持分으로 母企業에 속하는 持分에 상응하는 自己資本變動額을 增額 또는 減額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資本參加로 발생된 利益配當額은 控除하여야 한다. 關聯企業에 대한 資本參加에 의하여 발생된 成果는 콘체른 損益計算書에서 별개의 項目下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關聯企業이 콘체른決算書와 다른 評價方法을 그 年度決算書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평가를 받은 資産 또는 負債는 第1項 내지 第4項의 目的을 위하여 이를 콘체른決算書에 적용한 評價方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당해 評價의 適合修正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뜻을 콘체른附屬明細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中間損益의 處理에 관한 第304條는, 그 判斷基礎가 되는 狀況이 이미 알려진 사실이거나 또는 입수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準用되어야 한다. 또 당해 中間損益은 關聯企業의 資本金 가운데 母企業에 속하는 持분에 상응하여 이를 持分比率에 따라 제거할 수 있다.

⑥ 그것은 關聯企業의 직전의 年度決算書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關聯企業이 콘체른決算書를 作成하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 것으로 하고, 당해 關聯企業의 個別決算書에 기초하여서는 안된다.

第8款 콘체른附屬明細書

第313條 [콘체른貸借對照表 및 콘체른損益計算書의 說明, 資本參加所有者

관한記載] ① 콘체른附屬明細書에는 콘체른貸借對照表 또는 콘체른損益計算書의 個別的인 項目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 事項이나, 選擇權의 행사에서 콘체른貸借對照表 또는 콘체른損益計算書에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콘체른附屬明細書에 기재하여야 할 事項을 수용하여야 한다. 콘체른附屬明細書에는,

1. 콘체른貸借對照表 및 콘체른損益計算書의 項目에 適用한 貸借對照表 計上方法 및 評價方法을 기재하고,
2. 콘체른決算書가 外國通貨로 表示된 金額 또는 처음부터 外國通貨로 表示되어 있는 金額을 基礎로 하는 項目을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독일 마르크로 換算하기 위한 基礎를 기재하고,
3. 貸借對照表 計上方法, 評價方法 및 連結方法과의 差異를 기재하고 또한 理由를 붙여야 한다. 다만 콘체른의 財産狀態, 財務狀態 및 收益狀態에 미치는 영향은 이를 구분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콘체른附屬明細書에는 다음 各號에 列擧된 事項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콘체른決算書에 編入된 企業의 名稱 및 住所, 子會社의 資本金에 대한 持分으로, 母企業 및 콘체른決算書에 編入된 子會社에 속하거나 이 企業의 計算으로 活動하는 者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 또는 콘체른決算書에 編入할 義務가 있는 事案으로 당해 編入이 資本參加에 상응한 議決權의 過半數에 의하지 않은 것. 당해 事項은 第295條 및 第296條에 따라 編入되지 않은 子會社에 관하여도 기재하여야 한다.
2. 關聯企業의 名稱 및 住所, 子會社의 資本金에 대한 持分으로 母企業 및 콘체른決算書에 編入된 子會社에 속하는 것 또는 이들 企業의 計算으로 活動하는 者가 보유하고 있는 것. 第311條 第2項의 適用에 관하여는 그 뜻을 기재하고 理由를 붙여야 한다.
3. 第310條에 의하여 오직 持分比率에 따라 콘체른決算書에 編入된 企業의 名稱 및 住所, 당해 規定의 適用을 야기한 事由 및 당해 企業의 資本金

에 대한 持分으로 母企業 및 consolidated 決算書에 編入된 子會社에 속하는 것 또는 이들 企業의 計算으로 활동하는 者가 보유하고 있는 것.

4. 第1號 내지 第3號에 열거된 企業 이외의 企業으로, 母企業, 子會社 또는 이들 企業의 計算으로 활동하는 者가 적어도 그 持分の 5분의1을 所有한 企業에 있어서는 決算書가 作成된 직전 營業年度의 資本金에 대한 持分, 自己資本 및 損益額의 記載와 동시에 그 名稱 및 住所. 당해 事項은 그것이 consolidated 의 財産狀態, 財務狀態 및 收益狀態의 實質的 關係에 상응하는 狀況의 전달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被投資企業은 그 年度決算書를 公示할 필요가 없고, 母企業, 子會社 또는 個人이 당해 企業의 持分の 2분의1 미만을 所有하는 경우에는 自己資本 및 損益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③ 商人의 合理的 判斷에 의하면, 第2項에서 요구한 事項의 記載로 인하여 母企業, 子會社 또는 第2項에 열거된 他企業에 대하여 현저한 不利益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이 例外規定의 適用에 관하여는 그 뜻을 consolidated 附屬明細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第2項에서 요구한 記載事項은 당해 附屬明細書에 기재하는 대신에 所有 持分明細書에 따로 이를 기재할 수도 있다. 당해 明細書는 附屬明細書의 構成要素가 된다. 所有持分明細書를 특별히 作成한 뜻 및 그 保管場所가 附屬明細書에 표시되어야 한다.

第314條 [기타 義務的 記載事項] ① 그 밖에도 consolidated 附屬明細書에는 다음 事項을 기재하여야 한다.

1. consolidated 貸借對照表에 표시된 辨濟期間이 5년을 초과하는 債務의 總額 및 consolidated 貸借對照表에 표시된 債務로, consolidated 決算書에 編入된 企業에 의하여 質權 또는 이와 類似한 權利를 통하여 保證되어 있는 것에 관하여는 擔保의 種類 및 形態를 記載함과 동시에 그 總額.

2. 기타 金錢債務로, consolidated 貸借對照表에는 표시되지 않은 것 또는 第251

條와의 관련하여서 第298條 第1項에 의하여 기재하여서는 안되는 것 가운데 당해 事項의 記載가 کن체른의 財務狀態의 判斷에 있어서 중요한 것에 한하여 그 總額. 다만 그 가운데 및 第251條에 의한 債務關係 가운데 کن체른決算書에 編入되지 않은 子會社에 대한 債務는 各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کن체른의 通常 營業活動에 있어서 전형적인 製品 및 用役에 관한 販賣組織을 고려하여 活動領域과 지리적으로 限定된 市場이 상호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活動領域別 및 地理적으로 한정된 市場別 賣出收入의 內譯.

4. 콘체른決算書에 編入된 企業의 營業年度중의 從業員의 集團別 平均數 및 그것이 콘체른損益計算書에 구별되어 表示되지 않은 경우에는 營業年度중에 발생된 人件費. 다만 第310條에 의하여 오직 持分比率에 상응하여 編入된 企業의 從業員의 平均數는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5. 資産에 관하여 營業年度 또는 前營業年度에서 第254條, 第280條 第2項에 의하거나 이를 準用하여 稅法規定을 근거로 減價償却을 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하거나 또는 第273條에 의하거나 이를 準用하여 特別項目을 설정함으로써 콘체른의 年度損益이 영향을 받은 정도. 그 밖에 당해 評價로부터 콘체른에 대하여 발생한 장래의 현저한 부담의 정도.

6. 母企業의 業務執行機關, 監事會, 諮問會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의 構成員에 대하여는 各 人員集團別로 다음에 列舉하는 事項.

a) 營業年度내에 母企業 및 子會社에서 그 職務遂行에 대하여 부여한 給與總額(給料, 利益配當額, 經費補償額, 保險給與金, 手數料 및 各種 附帶給與). 당해 給與總額에는 지급되지 않고 다른 種類의 請求權으로 전환된 것이나 다른 請求權을 增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 것도 산입하여야 한다. 營業年度에 관한 給與 이외에 營業年度중에 부여하였으나, 종래 콘체른決算書에 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기타 給與도 기재하여야 한다.

b) 母企業 및 子會社에서 그 職務遂行에 대하여 상기 機關의 舊構成員 및 그 遺族에 부여된 給與總額(退職一時金, 退職年金, 遺族에 대한 給與 및

獨逸商法

이와 유사한 給與). 다만 a)의 第2文 및 第3文이 準用되어야 한다. 그 밖에 當期の 年金 및 年金受給期待權에 대한 充當金으로 당해 人員集團을 위하여 설정된 金額 및 당해 債務 때문에 설정되지 않은 充當金の 金額을 기재하여야 한다.

c) 利率, 주요한 條件 및 營業年度중에 辨濟된 때에는 그 金額의 記載와 함께 母企業 및 子會社에 의하여 부여된 先給金과 貸出金 그리고 당해 人員集團을 위하여 引受한 責任關係.

7. 母企業에 대한 持分으로, 母企業, 子會社 또는 콘체른決算書에 編入된 企業의 計算으로 다른 者가 取得하거나 質物로서 받은 在庫. 다만 이 경우에는 당해 持分の 數와 額面金額 및 資本金에 대한 比率이 기재되어야 한다.

② 賣出收入은 그 세분류에 의하여 콘체른決算書에 編入된 企業에 대하여 현저한 不利益이 발생하는 것이 商人의 合理的 判斷에 의하여 예상되는 경우에는 第1項 第3號에 의하여 그 內譯을 記載할 필요가 없다. 이 예외의 適用에 관하여는 그 뜻을 콘체른附屬明細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第9款 콘체른狀況報告書

第315條 ① 콘체른狀況報告書에서는 實質的 關係에 상응하는 狀況을 전달하기

위하여 적어도 콘체른의 營業經過 및 狀況이 기술되어야 한다.

② 콘체른狀況報告書는 다음 事項을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

1. 콘체른營業年度の 終了 후에 발생한 특히 중요한 狀況.
2. 콘체른의 發展展望.
3. 콘체른의 研究 및 開發領域.

③ 콘체른附屬明細書와 附屬明細書의 통합에 관한 第298條 第3項이 準用되어야 한다.

第3節 監 査

第316條【監査義務】① 第267條 第1項에서 의미하는 小規模의 資本會社가 아닌 資本會社의 年度決算書 및 狀況報告書는 決算監査人이 監査하여야 한다. 監査가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年度決算書を 確定할 수 없다.

② 資本會社의 consolidated 決算書 및 consolidated 狀況報告書는 決算監査人이 監査하여야 한다.

③ 監査報告書의 提出後에 年度決算書, consolidated 決算書, 狀況報告書 또는 consolidated 狀況報告書を 변경한 경우 決算監査人은 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들 證據書類를 다시 監査하여야 한다. 決算監査人은 이 監査의 結果에 관하여 報告하여야 한다. 確認의 附記에서 그 뜻을 補充하여야 한다.

第317條【監査의 對象 및 範圍】① 年度決算書의 監査에는 帳簿記帳을 포함하여야 한다. 年度決算書 및 consolidated 決算書의 監査는 法律의 規定 및 이를 補充하는 會社契約 또는 定款의 規定이 遵守되고 있는가에 미친다. 狀況報告書 및 consolidated 狀況報告書는 狀況報告書가 年度決算書와 합치되고 consolidated 狀況報告書가 consolidated 決算書와 합치되고 있는가를 檢査하여야 하고, 또 狀況報告書에 있어서 기타 記載事項이 企業의 狀況에 관하여 各各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는가에 관하여 監査하여야 한다.

② consolidated 決算書의 決算監査人은 consolidated 決算書에 통합한 各 年度決算書도 그것이 正規簿記의 原則에 합치되어 있는가 또는 各 年度決算書を consolidated 決算書에 인계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모든 規定이 遵守되고 있는가에 관하여 監査하여야 한다. 이것은 本節에 의한 法律規定에 의하여 監査한 年度決算書 또는 法律上的 義務없이 本節의 諸原則에 따라 監査한 年度決算書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consolidated 決算書에 編入된 外國에 住所를 두고 있는 子會社의 年度決算書에 대하여 第2文을 準用하여야 한다. 당해 年度決算

書가 유럽經濟共同體 指針 第84/253號의 規定과 일치하여 인가된 決算監查人이 監査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決算監査人이 유럽經濟共同體 指針의 要件과 동등한 資格을 가지고, 年度決算書가 本節의 要件에 상응하는 方法으로 監査된 경우에 한하여 第2文이 適用된다.

第318條【決算監査人の 選任 및 解任】 ① 年度決算書의 決算監査人은 社員에 의하여 選出된다. Konzern決算書의 決算監査人은 母企業의 社員이 이를 選任한다. 有限會社에서는 會社契約에 다른 規定을 둘 수 있다. 決算監査人은 그 監査活動이 미치는 營業年度의 終了 前에 選出되어야 한다. 法定代表者는 選任後 遲滯없이 監査委任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第3項에 따라 다른 監査人이 選任된 경우에만 監査의 委任은 撤回될 수 있다.

② 다른 監査人이 選任되지 않은 경우에는 Konzern決算書에 編入된 母企業의 年度決算書의 監査를 위하여 選任된 監査人이 Konzern決算書의 決算監査人으로서 選任된 것으로 看做한다. 中間決算書에 의하여 年度決算書を Konzern決算書에 編入된 경우에 다른 監査人이 選任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Konzern決算日 前에 作成된 母企業의 최근 年度決算書의 監査를 위하여 選任된 監査人이 中間決算書에 의한 Konzern決算書의 監査人으로서 選任된 것으로 看做한다.

③ 法定代表者나 監事會의 申請 또는 株式會社 및 株式合資會社의 경우에는 그 社員의 持分을 합하여 基本資本金의 10분의1 또는 額面金額이 200만 독일 마르크에 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社員의 申請으로 選出된 監事의 人格에 관계되는 理由에서 다른 決算監査人の 選任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특히 불공정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法院은 關係人 및 選出된 監事の 聽聞 후에 다른 決算監査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申請은 決算監査人の 選出日로부터 2주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株主가 議決時에 決算監査人の 選出에 대하여 異議를 提起한 경우에만 그 申請을 할 수 있다. 株主가 申請을 하는 경우에 株主는 적어도 總會日 3個月 前부터 株式의 所持人임을 疏明하여야

한다. 이 疏明은 公證人의 앞에서 宣誓에 갈음하는 保證을 하면 충분하다. 會社가 국가의 감독하에 있는 경우에는 監督官廳도 이 申請을 할 수 있다. 法院의 決定에 대하여는 即時抗告가 허용된다.

④ 決算監査人이 營業年度의 終了時까지 選出되지 않은 경우에는 法定代表者, 監事會 또는 社員의 申請으로 法院이 決算監査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選出된 監査人이 監査의 委任의 承諾을 거부한 경우, 監査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적시에 監査終了가 방해되고 다른 決算監査人이 選任되지 않은 경우도 동일하다. 法定代表者는 申請할 義務를 부담한다. 法院의 決定에 대하여는 即時抗告가 가능하다. 決算監査人의 選任은 취소될 수 없다.

⑤ 法院에 의하여 選任된 決算監査人은 適當한 現金費用의 보상 및 그 活動에 대한 報酬請求權을 갖는다. 法院은 이 費用 및 報酬를 결정한다. 이 決定에 대하여는 即時抗告가 허용된다. 再抗告는 인정되지 않는다. 確定力을 갖는 決定에 의하여 民事訴訟法에 의한 強制執行이 행하여진다.

⑥ 監査委任을 승낙한 決算監査人은 중대한 理由가 있는 경우에만 解約을 고지할 수 있다. 確認의 附記의 內容에 관한 意見의 相違, 確認의 附記의 限定 또는 拒絶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중대한 理由로 볼 수는 없다. 解約告知는 書面으로 理由를 붙여야 한다. 決算監査人은 그 당시까지 監査한 結果에 관하여 報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第321條가 準用되어야 한다.

⑦ 決算監査人이 第6項에 의하여 監査委任을 解約告知하는 경우에는 法定代表者는 解約告知를 監事會, 次期の 株主總會 또는 有限會社의 경우에는 社員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法定代表者는 解約告知를 한 決算監査人의 報告書를 지체없이 監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監事會의 各 構成員은 이 報告書에 관하여 閱覽할 權利를 갖는다. 監事會가 다른 決議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 報告書는 요구에 따라 監事會의 構成員에 대하여도 交付하여야 한다.

第319條【決算監査人の選出】 ① 決算監査人은 經濟監査人 및 經濟監査會社

등이 될 수 있다. 宣誓帳簿監査人과 帳簿監査會社도 中規模의 有限會社(第 267條 第2項)의 年度決算書 및 狀況報告書의 決算監査人이 될 수 있다.

② 經濟監査人 또는 宣誓帳簿監査人은 그 自身이나 自身과 그 職業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者가 다음 各號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決算監査人으로 될 수 없다.

1. 監査하여야 할 資本會社의 持分을 所有하고 있는 경우.
2. 監査하여야 할 資本會社의 法定代表者, 監事會의 構成員 또는 從業員이든가 또는 그 選任前 3년 이내에 이러한 지위에 있었던 경우.
3. 法人의 法定代表者 또는 監事會의 構成員, 人的會社, 個人企業이 監査하여야 할 資本會社와 결합하고 있는 경우 또는 監査하여야 할 資本會社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持分을 所有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法人의 法定代表者 또는 監事會의 構成員, 당해 人的會社의 社員, 당해 個人企業의 所有者인 경우.
4. 監査하여야 할 資本會社와 結合하고 있는 企業의 從業員 또는 監査하여야 할 資本會社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持分을 所有하고 있는 企業의 從業員 또는 監査하여야 할 資本會社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持分을 所有하고 있는 自然人的 從業員인 경우.
5. 監査하여야 할 資本會社의 帳簿記帳 또는 年度決算書의 作成時에 監査行爲 이상의 活動을 한 경우.
6. 法人이나 自然人, 人的會社, 人的會社의 社員의 1人 또는 個人企業이 第5號에 의하여 監査하여야 할 資本會社의 決算監査人이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法人이나 自然人 또는 人的會社의 法定代表者, 從業員, 監事會의 構成員, 社員이거나 또는 당해 個人企業의 所有主人 경우.
7. 監査時에 第1號부터 第6號에 의하여 決算監査人이 될 수 없는 者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8. 최근 5년간 各 年度에 監査하여야 할 資本會社와 監査하여야 할 資本會社가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持分을 所有하는 企業에 대한 監査와 諮問에

의한 수입이 그 職務上의 活動에 의한 全收入의 2분의1를 초과하고 있고, 이것이 당해 營業年度에도 예측되는 경우, 다만 가혹한 경우를 피하기 위하여 經濟監査人會議所는 한시적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③ 經濟監査會社 또는 帳簿監査會社는 다음 各號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決算監査人이 될 수 없다.

1. 經濟監査會社 또는 帳簿監査會社가 監査하여야 할 資本會社의 持分을 所有하고 있거나 所有하여야 할 資本會社와 결합되어 있는 경우 또는 經濟監査會社 또는 帳簿監査會社와 결합하고 있는 企業이 監査하여야 할 資本會社의 100분의20을 초과하는 持分을 所有하고 있거나 監査하여야 할 資本會社와 결합되어 있는 경우.

2. 經濟監査會社 또는 帳簿監査會社가 第2項 第6號에 의한 法人 또는 人的會社의 社員으로서 또는 第2項 第5號, 第7號 또는 第8號에 의하여 決算監査人이 될 수 없는 경우.

3. 法人인 經濟監査會社 또는 帳簿監査會社에 있어서 그 法定代表者 또는 社員 1인이 社員에게 귀속하는 議決權의 100분의50 또는 그것을 초과하는 議決權을 所有하거나 또는 기타 經濟監査會社 또는 帳簿監査會社에 있어서 그 社員의 1인이 第2項 第1號부터 第4號에 의하여 決算監査人이 될 수 없는 경우.

4. 經濟監査會社 또는 帳簿監査會社의 法定代表者의 1人 또는 社員의 1人이 第2項 第5號 또는 第6號에 의하여 決算監査人이 될 수 없는 경우.

5. 經濟監査會社 또는 帳簿監査會社의 監事會의 構成員 1인이 第2項 第2號 또는 第5號에 의하여 決算監査人이 될 수 없는 경우.

④ 第2項 및 第3項은 큰체큰決算書의 決算監査人에게 이를 準用하여야 한다.

第320條【提出義務, 說明請求權】 ① 資本會社의 法定代表者는 年度決算書 및 狀況報告書를 作成한 후 遲滯없이 決算監査人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資本會

社의 法定代表者는 決算監査人에게 資本會社의 帳簿와 書類, 資産 및 負債, 특히 現金과 有價證券 및 商品의 在庫를 監査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 決算監査人은 신중한 監査를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說明 및 證據를 法定代表者에게 請求할 수 있다. 決算監査의 준비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決算監査人은 年度決算書의 作成 前이라도 第1項 第2文 및 第1文에 의한 權利를 갖는다. 신중한 監査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決算監査人은 母企業 및 子會社에 대하여도 第1文 및 第2文에 의한 權利를 갖는다.

③ consolidated 決算書를 作成하여야 하는 資本會社의 法定代表者는 consolidated 決算書의 決算監査人은 consolidated 決算書, consolidated 狀況報告書, 年度決算書, 狀況報告書 및 監査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母企業 및 子會社의 監査報告書を 제출하여야 한다. 決算監査人은 母企業 및 子會社에 관하여는 第1項 第2文 및 第2項에 의하여 또 母企業 및 子會社의 決算監査人에 대하여도 第2項에 의한 權利를 갖는다.

第321條【監査報告書】 ① 決算監査人은 監査의 結果에 관하여 서면으로 報告하여야 한다. 監査報告書에는 특히 帳簿記帳, 年度決算書, 狀況報告書, consolidated 決算書 및 consolidated 狀況報告書가 法律規定에 적합한가 또 法定代表者가 요구 받은 說明 및 證據書類를 제출하였는가를 確認하여야 한다. 年度決算書의 項目은 그 內譯을 표시하고 충분히 이를 說明하여야 한다. 前年度에 대한 財産狀態, 財務狀態 및 收益狀態의 불리한 變更과 年度損益에 영향을 미친 損失은 상세히 기재하고 충분히 이를 說明하여야 한다.

② 決算監査人이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監査한 企業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는 事實 또는 그 발전을 현저하게 沮害할 수 있는 事實 또는 法律, 會社契約 또는 定款에 대한 法定代表者의 중대한 違反을 認知시킬 수 있는 事實을 確認한 경우에는 決算監査人은 이 事實에 관하여도 報告하여야 한다.

③ 決算監査人은 報告書에 署名하고 이를 法定代表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322條【確認의 附記】 ① 監査의 最終結果에 의하여 異議를 申請할 需要가 없는 경우에는 決算監査人은 年度決算書 및 consolidated 決算書에 다음과 같은 簿記를 통하여 이를 確認하여야 한다. 「나/우리의 義務에 따른 監査에 의하면 이 帳簿記帳 및 年度決算書/ consolidated 決算書는 法律規定에 合致된다. 이 年度決算書/ consolidated 決算書는 正規簿記의 原則을 遵守하며, 資本會社/ consolidated 財産狀態, 財務狀態 및 收益狀態의 實質的 關係에 合致하는 狀況을 전달하고 있다. 狀況報告書/ consolidated 狀況報告書는 年度決算書/ consolidated 決算書와 合致되어 있다.

② 監査의 內容 및 確認의 附記의 有效範圍에 관한 그릇된 印象을 피하기 위하여 補充的인 記載가 需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確認의 附記는 적절한 方法에 따라 이를 補充하여야 한다. 會社契約 또는 定款이 年度決算書 또는 consolidated 決算書에 관하여 인정된 方法으로 補充規定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會社契約 또는 定款과 일치되도록 指示되어야 한다.

③ 異議를 提起하여야 할 경우에는 決算監査人은 確認의 附記를 限定 또는 拒絕하여야 한다. 拒絕은 年度決算書 또는 consolidated 決算書에 대한 簿記를 통하여 이를 表明하여야 한다. 限定 및 拒絕은 理由를 붙여야 한다. 限定은 그 有效範圍가 명확하게 인식되도록 이를 기술하여야 한다. 第2項에 의한 確認의 附記의 補充은 限定으로 看做되지 않는다.

④ 決算監査人은 確認의 附記 또는 그 拒絕에 관한 簿記에 場所 및 期日을 명기한 후에 署名하여야 한다. 確認의 附記 또는 그 拒絕에 관한 簿記는 이를 監査報告書에도 포함하여야 한다.

第323條【決算監査人의 責任】 ① 決算監査人, 그 從業員 및 監査時에 협력하는 監査會社의 法定代表者는 양심적이고 公평한 監査와 默秘義務를 부담한다. 이들은 그 活動時에 알게 된 營業 및 經營上의 秘密을 權限없이 利用할 수 없다. 故意 또는 過失로 그 義務를 違反한 者는 당해 資本會社에 대하여 또

結合企業이 損害를 입은 경우에는 이 結合企業에 대하여 그에 의하여 발생한 損害를 賠償할 義務를 부담한다. 數人인 경우에는 連帶債務者로서 責任을 부담한다.

② 過失에 의한 行爲를 한 者의 賠償義務는 1件의 監査에 관하여 50만 독일 마르크로 限定된다. 數人이 監査에 관여한 경우 또는 賠償義務를 가진 몇가지 行爲를 한 경우도 동일하다. 다른 關係人이 故意에 의한 行爲를 하였는지는 묻지 않는다.

③ 監査會社가 決算監査人인 경우에는 默秘義務는 監査會社의 監事會와 그 構成員에 대하여도 존재한다.

④ 이들 規定에 의한 賠償義務는 契約에 의하여 排除하거나 制限할 수 없다.

⑤ 이들 規定에 의한 請求權은 5년의 時效에 의하여 消滅한다.

第324條 [資本會社와 決算監査人의 意見差異] ① 決算監査人과 資本會社 사이에 年度決算書, 狀況報告書, Konzern決算書 또는 Konzern狀況報告書에 관한 法律規定 및 會社契約 또는 定款規定의 解釋 및 適用에 관하여 見解差異가 있는 경우에는 決算監査人 또는 資本會社의 法定代表者의 申請으로 地方法院이 專屬으로 이를 결정한다.

② 이 節次에는 非訟事件에 관한 法律을 적용하여야 한다. 地方法院은 理由를 붙인 決定으로 裁判을 행한다. 決定은 確定力を 가지고 비로소 有效하게 된다. 地方法院이 그 決定으로 即時抗告를 許可한 경우에는 決定에 대하여 即時抗告가 행하여진다. 地方法院은 即時抗告에 의하여 근본적 重要性을 가진 法律問題의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만 即時抗告를 許可하여야 한다. 抗告는 辯護士에 의하여 署名된 抗告狀의 提出로만 이를 할 수 있다. 이 抗告에 관하여는 州高等法院이 결정한다. 非訟事件에 관한 法律 第28條 第2項 및 第3項을 準用하여야 한다. 再抗告는 인정되지 않는다. 統一的 裁判의 保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州政府는 法令으로 複數의 州高等法

院의 管轄地區에 대한 抗告에 관한 決定을 州高等法院 또는 州大法院中 한 곳에 委託할 수 있다. 州政府는 法令에 의하여 授權을 州法務部에 委託할 수 있다.

③ 訴訟費用에 관하여는 訴訟費用法이 適用된다. 第1審 訴訟에 대하여는 手數料總額의 2倍를 징수한다. 第2審에 대하여는 동일한 手數料를 징수한다. 抗告가 받아들여진 경우도 동일하다. 決定이 있기 전에 申請 또는 抗告를 撤回한 경우에는 手數料는 半額으로 減額된다. 手數料의 業務價額은 職權으로 確定되어야 한다. 이 手數料의 業務價額은 訴訟費用法 第30條 第2項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決算監査人은 費用의 先支給에 관한 義務를 부담하지 않는다. 訴訟費用의 債務者는 資本會社이다. 다만 그것이 적정한 경우에 訴訟費用은 그 全部 또는 一部를 決算監査人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第4節 公示(登記所에 提出, 聯邦官報에서의 公告), 公表 및 複寫, 登記法院에 의한 檢査

第325條【公示】① 資本會社의 法定代表者는 年度決算書를 社員에게 提出한 후 遲滯없이, 다만 늦어도 決算日에 이은 營業年度가 9個月을 經過하기 전에 確認의 附記 또는 그 拒絶에 관한 簿記를 붙여 資本會社의 住所의 商業登記所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시에 狀況報告書, 監事會의 報告書 및 成果의 處分에 관한 議案 및 그 處分에 관한 決議가 提出된 年度決算書로부터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成果의 處分에 관한 議案 및 그 處分에 관한 決議가 年度剩餘金 또는 年度缺損金의 記載와 함께 提出되어야 한다. 法定代表者는 第1文에 列擧된 書類를 提出한 후 遲滯없이 당해 書類가 어떤 商業登記所에 또 어떤 登記番號로 提出되었는가를 聯邦官報에 公告하여야 한다. 第1文에 의한 期間을 遵守하기 위하여 年度決算書 및 狀況報告書를 기타

書類를 添附하지 않고 提出한 경우에는 報告書 및 議案은 그 提出 후에, 決議는 議決 후에 또 簿記는 交付 後에 遲滯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年度決算書가 提出後의 監査 또는 確定時에 變更되는 경우에는 이 變更도 또 第1文에 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② 大規模의 資本會社(第267條 第3項)에 관하여는 먼저 第1項에 열거된書類가 聯邦官報에 公告되어야 하고, 이 公告가 上記書類를 添附한 후에 당해 資本會社의 所在地의 商業登記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條件으로 第1項이 적용되어야 한다. 第1項 第2文에 의한 公告는 요구되지 않는다. 所有持分明細書(第287條)는 聯邦官報에 公告할 필요가 없다.

③ 큰 決算書를 작성하여야 하는 資本會社의 法定代表者는 큰 決算書를 社員에게 提出한 후 遲滯없이 늦어도 큰 決算日에 이은 營業年度 開始 후 9個月이 경과되기 이전에 確認의 附記 또는 그 拒絶에 관한 簿記를 붙여 큰 決算報告書와 함께 聯邦官報에 公告하고 이 公告를 上記書類를 添附하여 당해 資本會社의 住所의 商業登記所에 제출하여야 한다. 所有持分明細書(第313條 第4項)는 聯邦官報에 公告할 필요는 없다. 第1項 第3文을 準用하여야 한다.

④ 第2項 및 第3項을 적용하는 경우에 第1項 第1文 및 第3項 第1文에 의한 期間의 遵守에 관하여는 당해書類를 聯邦官報에 提出한 時點이 기준이 된다.

⑤ 法律, 會社契約 또는 定款에 의한 年度決算書, 狀況報告書, 큰 決算書 또는 큰 決算報告書를 다른 方法으로 公告 또는 제출하거나 一般人の 閱覽에 提供하여야 할 會社義務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第326條 [公示에 있어서 資本會社에 대한 規模에 따른 簡易措置] 小規模의 資本會社(第267條 第1項)에 관하여는 法定代表者가 貸借對照表 및 附屬明細書만을 늦어도 貸借對照表基準日에 이은 營業年度 開始 後 12個月이 經過하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의 條件을 붙여 第325條 第1項을 적용하

여야 한다. 年度損益, 損益의 處分에 관한 議案, 그 處分에 관한 決議가 提出된 貸借對照表 또는 提出된 附屬明細書로부터 분명하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成果의 處分에 관한 議案 및 그 處分에 관한 決議를 年度損益의 記載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附屬明細書는 損益計算書와 관련된 記載事項을 포함할 필요는 없다.

第327條 [公示에 있어서 中規模資本會社에 대한 規模에 따른 簡易措置] 中規模資本會社(第267條 第2項)에 관하여는 다음 條件을 붙여 第325條 第1項을 적용하여야 한다.

1. 法定代表者는 貸借對照表를 第266條 第1項 第3文에 의하여 小規模의 資本會社에 대하여 정하여진 形式으로만 商業登記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第266條 第2項 및 第3項의 項目 가운데 다음에 열거된 것은 특히 貸借對照表 또는 附屬明細書에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借邊(Aktivseite)

A I 2 營業權 또는 商號價值

A II 1 不動産, 不動産과 類似的한 權利 및 他人의 不動産上에 존재하는 建物を 포함한 建物

A II 2 技術的 設備 및 機械

A II 3 기타 設備, 工場用 및 營業用計器

A II 4 先給金 및 建設中の 設備

A III 1 結合企業에 대한 持分

A III 2 結合企業에 대한 貸出金

A III 3 資本參加

A III 4 資本參加關係를 가진 企業에 대한 貸出金

B II 2 結合企業에 대한 債權

B II 3 資本參加關係를 가진 企業에 대한 債權

獨逸商法

B III 1 結合企業에 대한 持分

B III 2 自己持分

貸邊(Passivseite)

C 1 社債

轉換社債

C 2 金融機關에 대한 債務

C 6 結合企業에 대한 債務

C 7 資本參加關係를 가진 企業에 대한 債務

2. 法定代表者は 第285條 第2號, 第5號 및 第8號 a), 第12號에 의한 記載事項을 결한 附屬明細書를 商業登記所에 提出할 수 있다.

第328條 [公示, 公表 및 複寫에 있어서 書類의 形式 및 內容] ① 年度決算書 및 consolidated 決算書의 全部 또는 一部를 公示하는 경우, 그리고 會社契約 또는 定款에 의하여 다른 形式으로 公表 또는 複寫하는 경우에는 다음 規定을 遵守하여야 한다.

1. 年度決算書 및 consolidated 決算書는 第326條, 第327條에 의한 簡易措置가 이용되지 않는 한, 그 作成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規定에 합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年度決算書 및 consolidated 決算書는 이 범위에서 완전하고 정확한 것이어야 한다. 年度決算書가 確定된 경우에는 그 確定日이 기재되어야 한다. 法律上の 規定에 의하여 年度決算書 또는 consolidated 決算書가 決算監査人에 의하여 監査된 경우에는 確認의 附記 또는 그 拒絶에 관한 簿記의 全文이 기술되어야 한다. 簡易措置를 이용함으로써 年度決算書가 부분적으로 밖에 公示되지 않고 또한 確認의 附記가 완전한 年度決算書와 관련되는 것인 때에는 그 뜻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2. 年度決算書 또는 consolidated 決算書가 法律로 규정되어 있는 한에서 그 公示

에 관한 法定期間을 遵守하기 위하여 監査 또는 確定에 앞서 公示하거나 또는 添附하여야 할 書類를 添附하지 않고 公示하는 경우에는 당해 公示時에 그 뜻을 지시하고 있어야 한다.

② 年度決算書 또는 consolidated 決算書가 法律 또는 會社契約 또는 定款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公表 및 複寫에서 第1項에 규정된 形式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法律上の 形式에 상응하는 公表가 아닌 뜻이 表題에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確認의 附記가 添附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法律上の 規定에 의하여 決算監査人에 의한 監査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決算監査人이 法律上の 形式으로 作成된 年度決算書 또는 consolidated 決算書에 관하여 確認을 한 뜻 또는 그 確認을 限定 또는 拒絕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公示가 어떤 商業登記所에서 또는 어떤 聯邦官報番號가 있든가 또는 公示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뜻의 記載를 하여야 한다.

③ 第1項 第1號는 狀況報告書, consolidated 報告書, 損益의 處分에 관한 議案 및 그 處分에 관한 決議 및 所有持分明細書에 準用되어야 한다. 第1文에 열거하고 있는 書類가 年度決算書 또는 consolidated 決算書와 동시에 公示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의 事後公示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決算書에 關係되고 당해 決算書가 어디에 公示되어 있는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것은 또 確認의 附記 또는 그 拒絕에 관한 簿記의 事後的인 公示에도 適用된다.

第329條【登記法院의 檢査義務】 ① 法院은 商業登記所에 全部 또는 部分的으로 提出되어야 할 書類가 모두 갖추어져 있고 또한 규정된 대로 公告되어 있는가를 檢査한다.

② 第1項에 따른 檢査에서 資本會社의 規模에 의한 簡易措置가 허용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法院은 적당한 期間內에 賣出收入(第277條 第1項) 및 平均從業員數(第267條 第5項)에 관한 報告를 通知로써 당해 資本會社에 請求할 수 있다. 당해 資本會社가 이 期間內의 報告를 懈怠하는 경우에는 簡易措置가 부당하게 이용된 것으로 본다.

第5節 樣式 및 기타 規定에 관한 法令授權

第330條 營業部類가 第266條, 第275條와는 다른 年度決算書 또는 consolidated 決算書의 項目分類를 필요로 하거나 또는 第1章 및 第2章 第1節 및 第2節의 規定과는 다른 規定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聯邦法務長官은 聯邦財務長官 및 聯邦經濟長官과 協議한 후에 聯邦上院의 承認을 필요로 하지 않는 法令으로 資本會社에 대하여 年度決算書의 樣式을 규정할 權限 또는 年度決算書 또는 consolidated 決算書의 項目分類, 附屬明細書의 內容, consolidated 附屬明細書의 內容, 狀況報告書의 內容 또는 consolidated 狀況報告書의 內容에 관한 기타 規定을 공포할 權限을 갖는다. 이와 상이한 規定에 의하여 발생하는 第1文에 列擧된 書類에 대한 요구는 大規模의 資本會社(第267條 第3項)에 대하여는 第1章, 第2章 第1節 및 第2節의 規定 및 당해 營業部類에 적용되는 規定으로부터 생기는 요구와 동등한 것이어야 한다. 現行法을 초과한 요구는 그것이 유럽 共同體理事會의 立法에 기인하는 한 허용될 수 있다.

第6節 罰則 및 過怠料規定, 強制金

第331條 [虛偽의 記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년 이하의 自由刑 또는 罰金刑에 처한다.

1. 資本會社의 代表權을 가진 機關 또는 監事會의 構成員으로 資本會社의 모든 관계에 관하여 開業貸借對照表 또는 年度決算書 또는 狀況報告書에 虛偽의 記載를 하거나 事實을 隱蔽한 者.
2. 資本會社의 代表權을 가진 機關 또는 監事會의 構成員으로 consolidated 的인 모든 關係에 관하여 consolidated 決算書 또는 consolidated 狀況報告書에 虛偽의 記載를 하거나 事實을 隱蔽한 者.
3. 資本會社의 代表權을 가진 機關의 構成員으로 第291條 또는 第292條에

의하여 발포된 法令에 따른 作成免除를 받기 위하여 콘체른의 모든 關係에 관하여 虛偽의 記載를 하거나 事實을 隱蔽한 콘체른決算書 또는 콘체른狀況報告書を 故意 또는 過失로 公示한 者, 또는

4. 資本會社의 代表權을 가진 機關의 構成員 또는 그 子會社(第290條 第1項, 第2項)의 代表權을 가진 機關의 構成員 또는 代表權을 가진 社員으로 第320條에 의하여 資本會社 또는 結合企業 또는 콘체른의 決算監査人에게 하여야 할 說明 또는 證明에 있어서 虛偽의 記載를 한 者 또는 資本會社, 子會社 또는 콘체른의 모든 관계에 관하여 虛偽의 記載를 하거나 事實을 隱蔽한 者.

第332條【報告義務違反】 ① 決算監査人 또는 決算監査人の 從業員으로 資本會社의 年度決算書, 狀況報告書, 콘체른決算書 또는 콘체른狀況報告書の 監査結果에 관하여 虛偽의 報告를 하고, 監査報告書(第321條)에서 중요한 事實을 隱蔽하거나 또는 虛偽內容의 確認의 附記(第322條)를 한 者는 3년 이하의 自由刑 또는 罰金刑에 처한다.

② 行爲者가 報酬를 받고 行動하거나 또는 自己나 第3者에게 利益을 줄 目的 또는 第3者에게 損害를 끼칠 目的으로 行動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自由刑 또는 罰金刑에 처한다.

第333條【默秘義務違反】 ① 年度決算書 또는 콘체른決算書の 監査時에 決算監査人 또는 決算監査人の 從業員으로서의 資格에서 얻은 資本會社, 子會社(第290條 第1項, 第2項), 共同經營企業(第310條) 또는 關聯企業(第311條)의 秘密, 특히 經營 또는 營業上の 秘密을 權限없이 漏泄한 者는 1년 이하의 自由刑 또는 罰金刑에 처한다.

② 行爲者가 報酬를 받고 行動하거나 自己나 第3者에게 利益을 줄 目的 또는 第3者에게 損害를 끼칠 目的으로 行動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自由刑 또는 罰金刑에 처한다. 第1項에 열거된 秘密, 특히 第1項의 條件下에서 知

得한 經營 또는 營業上의 秘密을 權限없이 이용한 者도 동일하다.

③ 이 行爲는 資本會社의 告訴에 의하여만 訴追된다.

第334條 [過怠料規定] ① 資本會社의 代表權을 가진 機關 또는 監事會의 構成員으로 다음의 各號에 列擧된 規定에 違反한 者는 이를 秩序違反으로 한다.

1. 年度決算書의 作成 또는 確定에 있어서,

a) 形式 또는 內容에 관한 第243條 第1項 또는 第2項, 第244條, 第245條, 第246條, 第247條, 第248條, 第249條 第1項 第1文 또는 第3項, 第250條 第1項 第1文 또는 第2項, 第251條 또는 第264條 第2項,

b) 評價에 관한 第255條 第1項 또는 第2項 第1文, 第2文 또는 第6文과 결합한 第253條 第1項 第1文, 第279條 第1項 第2文과 결합한 第253條 第1項 第2文 또는 第2項 第1文, 第2文 또는 第3文, 第253條 第3項 第1文 또는 第2文, 第280條 第1項, 第282條 또는 第283條,

c) 項目分類에 관한 第265條 第2項, 第3項, 第4項 또는 第6項, 第266條, 第268條 第2項, 第3項, 第4項, 第5項, 第6項 또는 第7項, 第272條, 第273條, 第274條 第1項, 第275條 또는 第277條,

d) 貸借對照表 또는 附屬明細書에서 하여야 할 記載에 관한 第280條 第3項, 第281條 第1項 第2文 또는 第3文 또는 第2項 第1文, 第284條 또는 第285條의 規定.

2. 連結決算書의 作成에 있어서,

a) 連結의 範圍에 관한 第294條 第1項,

b) 內容 또는 形式에 관한 第244條, 第245條, 第246條, 第247條, 第248條, 第249條 第1項 第1文 또는 第3項, 第250條 第1項 第1文 또는 第2項 또는 第251條와 결합한 第297條 第2項 또는 第3項 또는 第298條 第1項,

c) 連結諸原則 또는 完全성 命令에 관한 第300條,

d) 評價에 관한 第1號 b)에 열거된 規定과 관련된 第308條 第1項 第1文 또는 第308條 第2項,

- e) 關聯企業의 取扱에 관한 第312條와 결합한 第311條 第1項 第1文 또는,
- f) 附屬明細書에 하여야 할 記載에 관한 第308條 第1項 第3文, 第313條 또는 第314條의 規定,
- 3. 狀況報告書의 作成에 있어서 狀況報告書의 內容에 관한 第289條 第1項의 規定,
- 4. 큰체른狀況報告書의 作成에 있어서 큰체른狀況報告書의 內容에 관한 第315條 第1項의 規定,
- 5. 公示, 公表 또는 複寫에 있어서 形式 또는 內容에 관한 第328條의 規定
- 6. 第330條 第1文에 의하여 발포된 法令. 다만 그것이 特정한 事實에 관하여 당해 過怠料規定의 適用을 提示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 ② 法律規定에 의하여 監査하여야 할 年度決算書 또는 큰체른決算書에 관하여 第319條 第2項에 의하여 그 者가 또는 第319條 第3項에 의하여 그 者가 근무하는 經濟監査會社 또는 帳簿監査會社가 決算監査人이 되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第322條에 의한 簿記를 행한 者도 秩序違反이 된다.
- ③ 秩序違反은 50,000만 독일 마르크의 過怠料로써 이를 懲戒할 수 있다.

第335條【强制金の 確定】 資本會社の 代表權을 가진 機關의 構成員으로 다음 各號의 하나에 따르지 않는 者에 대하여는 登記法院이 非訟事件에 관한 法律 第132條 第1項에 의한 强制金の 確定을 통하여 그 이행을 强制할 수 있다.

- 1. 年度決算書 및 狀況報告書의 作成義務에 관한 第242條 第1項 및 第2項, 第264條 第1項.
- 2. 큰체른決算書 및 큰체른狀況報告書의 作成義務에 관한 第290條 第1項 및 第2項.
- 3. 監査委任書を 遲滯없이 交付할 義務에 관한 第318條 第1項 第4文.
- 4. 法院에 의한 決算監査人 任命의 申請義務에 관한 第318條 第4項 第3文.
- 5. 決算監査인에 대한 義務에 관한 第320條.

6. 年度決算書, 狀況報告書, 콘체른決算書, 콘체른狀況報告書 및 기타 計算書類의 公示義務에 관한 第325條.

다만 登記法院이 提訴를 하는 경우에는 社員, 債權者 또는 全體 經營協議會가 또는 이에 해당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資本會社의 經營協議會가 第1文에 관한 告訴를 한 경우에 한한다. 이 限度에서 第14條는 적용되지 않는다. 콘체른決算書 및 콘체른狀況報告書에 관한 義務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子會社의 社員, 債權者 및 콘체른經營協議會도 第2文에 의한 告訴를 할 수 있다. 告訴權은 疏明하여야 한다. 告訴權의 事後消滅은 效力을 갖지 않는다. 告訴는 取下할 수 없다. 法院은 強制金の 警告 및 確定的 반복을 할 수 있다. 개개의 強制金은 10,000 독일 마르크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③ 破産節次의 開始 또는 裁判上の 和議의 申請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過失이 없는 것이 確認된 者는 벌하지 아니한다.

韓國租稅研究所 研究委員 名單

職 位	姓 名	略 歷
所 長	申 相 式	韓國稅務士會 會長・國會議員
研 究 委 員	郭 泰 元	西江大 教授・經博
"	金 東 建	서울大 教授・經博
"	宋 雙 鍾	서울市立大 教授・法博
"	吳 載 善	稅務大學 教授・經博
"	尹 建 永	延世大 教授・經博
"	尹 桂 燮	서울大 教授・經營博
"	李 愚 澤	漢陽大 教授・經營博
"	李 哲 松	漢陽大 教授・法博
"	李 泰 魯	서울大 教授・法博
"	鄭 泰 仁	江陵大 教授・經營博
"	崔 洸	韓國外國語大 教授・經博
"	崔 明 根	서울市立大 教授・法博
"	黃 厦 周	前 國稅審判所長
"	權 海 浩	稅務士・法博
"	金 冕 圭	稅務士
"	金 完 石	江南大 教授・法博
"	明 炯 植	稅務士・圓光大 教授・法博
"	徐 順 鍾	稅務士・法博
"	李 元 錫	稅務士
"	李 承 文	稅務士
"	李 澤 龍	稅務士・明知專門大 教授・經營博
"	張 珩 鍾	稅務士・經營博
"	趙 暎 來	稅務士・經營博
"	洪 學 杓	稅務士・建國大 教授・行政博

■ 研究叢書案内

① 資本市場 育成을 위한 租稅政策方向

宣 炳 完 1987. 3
李 愚 澤

② 特別消費稅制의 合理的 改善方向

金 完 淳 1987. 3
金 完 石

③ 租稅確定의 適正節次 保障에 관한 研究

崔 明 根 1988. 2
金 冕 圭
李 承 文

④ 附加價值稅의 政策課題와 改善方向

崔 洸 1988. 3
李 愚 澤

⑤ 租稅審判制度의 合理的 改善方案

李 哲 松 1988. 4
金 完 石

〔6〕 韓國稅制의 合理化에 관한 研究

金 東 建 外 1988. 7

〔7〕 稅務士制度의 發展方向

申 東 雲 外 1988. 10

〔8〕 附加價值稅 納付稅額計算과

課稅特例制度의 改善에 관한 研究

崔 明 根 外 1991. 11

〔9〕 土地稅制의 長期的 改編方案에 관한 研究

金 東 建 外 1993. 8

〔10〕 相續課稅의 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李 鎮 淳 1994. 10

李 哲 松

① 西獨의 稅務士法에 관한 研究

李 承 文 1987. 2

② 主要國의 法人所得課稅制度

吳 赫 柱 1987. 3
李 愚 澤
李 哲 松
權 海 浩

③ 主要國의 個人所得課稅制度

吳 赫 柱 1988. 3
崔 炳 哲
李 哲 松
權 海 浩

④ 主要國의 相續課稅制度

崔 炳 哲 1989. 3
李 哲 松
權 海 浩
吳 赫 柱

■ 研究調査資料案内

[5] 主要國의 消費課稅制度

金	文	守	1993. 4
崔	炳	哲	
李	哲	松	
權	海	浩	

[6] 獨逸의 稅務代理制度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1994. 10
李	鍾	永	

[7] 獨逸의 租稅基本法과 財政法院法

李	愚	澤	1995. 3
張	台	柱	

[8] 日本의 稅理士制度에 관한 研究

權	海	浩	1995. 6
---	---	---	---------

[9] 獨逸會社法

李	炯	珪	1996. 1
---	---	---	---------

調 查 報 告 書
第 9 輯(1996. 1)

獨 逸 會 社 法

1996年 1月 3日 印刷

1996年 1月 9日 發行

著 者 李 炯 珪

發行人 申 相 式

發行處 韓 國 稅 務 士 會

137-073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97-16

電話(代) 587-6021

登錄：1988年 11月 11日(바 1184)

〈非賣品〉